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1
제 1 절 문제의 제기- 중국의 WTO가입과 법적 환경의 변화 .....	11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4
1. 연구의 목적 .....	14
2. 연구의 범위 .....	15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	19
제 1 절 의 의 .....	19
제 2 절 WTO협정과 회원국의 의무 .....	22
1. WTO 협정과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 .....	22
(1) WTO 협정체제 .....	22
(2) 기본원칙과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 .....	23
2. 외국인투자관련 의무 .....	25
제 3 절 중국의 가입의정서·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 .....	27
1. WTO 규칙분야 .....	27
2. 외국인투자관련 대외적 수락내용 .....	31
(1) 의 의 .....	31
(2) 경제정책 .....	32
(3) 무차별 원칙(내국인대우포함) .....	33
(4)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외환관리 .....	39
(5) 투자체제 .....	41
3. 중국의 부문별 시장개방일정 .....	46
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에 대한 평가 .....	56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	58
1. WTO가입이 중국법제에 미치는 영향 .....	58
2. WTO가입과 중국경제법령 정비현황 .....	61
(1) 기본방향 .....	61
(2)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제정비작업 .....	62
3. 분야별 현황 .....	66
(1) 대외상품무역 분야 .....	66
(2) 서비스무역 분야 .....	67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 .....	76
(4) 외상투자와 관련된 기타 분야 .....	78
4. 향후 입법 또는 정비 준비중인 기본법률 분야 .....	79
(1) 의 의 .....	79
(2) 독점금지법 .....	80
(3) 민법전 .....	83
(4) 정비 준비중인 기타 분야 .....	86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	89
제 1 절 기본적인 고찰 .....	89
1. 최근의 국제투자 동향 .....	89
2.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90
3. 중국의 시각에서 본 외국인직접투자의 리스크 .....	91
제 2 절 TRIMs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94
1. TRIMs협정의 주요내용 .....	94
(1)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의 의의 .....	94
(2) TRIMs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문제 .....	96
2. TRIMs 협정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99
(1) 외국인투자법령의 투명성 제고 .....	99
(2) 외국인투자의 승인(Admission of Foreign Investment)과 외자의 대우 문제 .....	100

(3) TRIMs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법령의 폐지 .....	104
(4) 중국의 TRIMs 협정 예외조항의 이용가능성 .....	109
제 3 절 최근의 외상투자3법 정비 .....	111
1. 의 의 .....	111
2. 개정 내용 .....	112
(1) 전형적인 무역관련투자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의 개정 .....	112
(2) 계획경제제도 잔재 규정과 기업자율성 저해 규정의 개정 .....	118
(3) 설립업종 금지 또는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	122
(4) 현행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의 개정 .....	124
(5) 새로운 개혁상황에 부적절한 규정의 개정 .....	129
(6) 차별대우 규정의 개정 .....	134
(7) 기타 개정 .....	135
제 4 절 외상투자산업지도방향에 관한 법규 .....	138
1. 의 의 .....	138
2.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	140
(1) 장려영역(제5조) .....	140
(2) 제한영역(제6조) .....	140
(3) 금지영역(제7조) .....	141
(4) 평 가 .....	141
3.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	142
(1) 장려영역 .....	143
(2) 외국인투자 제한산업 리스트 .....	157
(3) 외국인투자 금지산업 리스트 .....	164
(4) 평 가 .....	166
제 5 절 외상투자기업의 국내재투자 .....	167
1. 제정목적 .....	167
2.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의 개요 .....	168
(1) 적용범위 .....	168

(2)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요건 .....	170
(3)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구체적인 절차 .....	173
(4) 외자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대우의 부여 .....	178
3. 평 가 .....	181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	182
1. 의 의 .....	182
2. IT 분야 법령의 특징과 체계 .....	184
(1) 기본적 특징 .....	184
(2) 체 제 .....	186
3. 《電氣通信條例》 .....	188
(1) 제정배경 .....	188
(2) 특 징 .....	189
(3) 주요 내용 .....	191
4. 인터넷 분야 .....	198
(1) 인터넷 안전관리 .....	198
(2) 전자상거래 .....	200
(3)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 .....	206
(4)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	209
5. 전기통신 통신분야의 외국인투자 .....	210
(1) 의 의 .....	210
(2) WTO가입이 통신사업분야에 미칠 영향 .....	212
(3) 《전기통신조례》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	213
(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의 전기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	214
(5)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관리규정》 .....	215
제 7 절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제도 .....	221
1. 《外商投資企業的合併與分立的規定》 .....	221

(1) 의 의 .....	221
(2) 주요내용 .....	222
(3) 최근 개정 내용 .....	222
2. 국제적인 합병인수제도의 입법화 필요성 .....	224
제 8 절 기타 주요 분야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	226
1. 금융분야 .....	226
(1) 외상투자성회사잠정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 暫行規定) .....	226
(2)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잠정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創業 投資企業的暫行規定) .....	228
(3)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 管理條例) .....	230
(4)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 管理條例) .....	231
(5) 외국인투자리스회사심사승인관리관법(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 管理暫行辦法) .....	233
(6) 외국인투자주식회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外商投資股份 有關問題的通知) .....	236
2. 석유자원개발채굴분야 .....	237
(1) 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中華人民共和國對外 合作開采海洋石油資源條例) .....	237
(2) 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 開采陸上石油資源條例) .....	241
3. 운수분야 .....	245
(1)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관리규정(外商投資國際貨物運輸 代理企業管理規定) .....	245
(2) 외상투자도로운수기업관리규정(外商投資道路運輸企業管理 規定) .....	246
(3) 외상투자민간항공업규정 《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 .....	247

제 4 장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와 입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전망 .....	251
제 1 절 외국인투자관련법 정비의 기본방향 .....	251
1. 의 의 .....	251
2. 정비의 기본방향 .....	252
3. WTO 가입이후 외자의 대우에 관한 입법방향 .....	254
제 2 절 외상투자3법에 대한 개정 전망 .....	258
1. 외상투자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	258
2. 외상투자비율의 최저한규제의 폐지 .....	260
3. 출자자의 채무부담과 리스크 배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	261
4. 이사회 기능재조정 .....	261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제(준칙주의)의 점진적인 실시 .....	263
제 3 절 세제 통일화 문제 .....	264
1. GATT 관련 규정 .....	264
2. 조세제도의 변천 .....	265
(1) 1990년 이전의 조세제도 .....	265
(2) 현행 조세제도 .....	266
3. WTO 가입이후 세제일원화 논의 .....	268
제 4 절 회사법 및 외자기업관련법의 조화문제 .....	270
제 5 절 WTO 가입에 따른 입법제도 개혁논의 .....	273
1. 현행 입법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	273
(1) 투명성 제고 .....	273
(2) 통일적인 법집행 .....	275
(3) 행정기관의 법집행 감독강화 .....	276
(4) 다층차적 입법과 법률, 법규 및 규장간의 충돌 해소 .....	277

2. WTO 가입에 따른 입법체제에 대한 개혁 논의 .....	279
3. 중국의 국제법규칙의 유효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법제도 .....	280
제 5 장 결 론 .....	283
參 考 文 獻 .....	297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문제의 제기- 중국의 WTO가입과 법적 환경의 변화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특히 1986년 GATT 가입을 선언한 이후 폐쇄적인 국내법과 제도를 단계적으로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하여 왔으며 1993년에는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sup>1)</sup> 도입을 선언하여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한 법제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1995년 WTO 출범 이후에는 WTO 가입을 목표로 WTO 회원국들과의 활발한 쌍무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지속적으로 국내법령을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여 왔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 대외수출의 5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기술이전 효과로 중국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up>2)</sup> 중국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의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또는 WTO 규범에 부합될

1)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확립에 대한 승인은 1993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7조의 개정을 통해 선포되었다 할 것이다. 이 개정 이전에는 중국은 항상 “중국특색을 가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확립을 공식노선으로 고수하여 왔다. 그러한 입장은 시장요소를 포함하는 다양한 개혁조치와 실험들이 실제에서는 허용되고 있지만 시장경제의 발전가능성을 이론적으로는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고수에 따라, 동 개정 이전의 헌법은 국가는 경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경제계획의 종합적인 균형”을 도모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1993년 헌법개정에 의하여 경제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국가 권력이 제거되었고 국가의 역할은 미시적 통제로부터 법령의 제정·시행을 통한 거시적 통제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1993년 개정헌법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시장경제”가 중국의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론적인 면에서 급격한 선회를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에 의하여 GATT/WTO와 같은 국제조직과 중국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이 뒤따르게 되었다. 개혁정책의 시장경제로의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인 전환에 따라, 중국은 또한 대외무역제도의 주요 분야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王家福, “WTO與中國社會主義市場法律制度建設問題,” 『中國法律』, 2001年 1期(總 第99期), pp.3-10 및 李曙光·肖建華, “中國市場經濟法律:發展與評價”, 『政法論壇』, 2000年 5期(總95期), pp.3-15 참조.

2) Benjamin Hamm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american.edu/projects/mandala/TED/smith/hammer.htm>.

수 없는 법령 또는 그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WTO 규범에 부합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도 WTO가입을 위한 많은 다자간·양자간 무역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며 WTO 중국가입실무단은 가입조건 등을 담은 보고서와 가입 의정서 등을 제출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정기 각료회의에서 가입이 승인됨으로써 동년 12월 11일 15년을 끌어온 WTO가입이 실현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정식으로 WTO의 제143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은 WTO를 마지막으로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 및 무역기구에의 가입을 완료하게 됨에 따라 국제적 지위와 대외신인도는 크게 향상되었으며 대외무역과 투자는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으로 WTO는 자유무역(free trade)과 공정경쟁(fair competition)을 추구하는 국제무역규범을 형성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는 바, 중국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TO 규범에 부합시키기 위한 국내법 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실제로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계획경제체제하의 법령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는 등 완전한 시장경제체제의 정착을 위한 법제정비는 아직 갈 길이 멀다.<sup>3)</sup> 따라서 WTO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경제·무역체제를 국제수준에 맞추어야 하므로 향후에도 대대적인 법령 정비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WTO가입은 중국의 법제건설 특히涉外경제법률제도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WTO의 관련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정부는 WTO의 협정 및 가입의정서 및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이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고 무역·투자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법규 및 기타 정책조치(지방 각급 정부와 기타 관련 부문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포함한다)가 WTO의 협의와 가입의정서의 규정에 부

3) 중국의 WTO가입은 global economy에 편입됨을 의미한다. 즉 국제무역규범과 준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갖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국내법규와 관행에서 벗어나, 공정무역과 자유경쟁이란 '게임의 룰'을 배워야 한다. 이로써 중국경제는 세계경제로 편입이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대외개방의 가속화 및 국내시장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WTO가입은 무역·투자장벽을 완화시키고, 업종별 진입장벽을 낮추게 됨으로써 중국경제의 대외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 "The Impact of WTO membership on China's domestic economy, Part 1,"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1010160.asp>.

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은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기 전부터 그러한 법률·법규와 기타 정책조치에 대하여 1차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지만 향후에도 WTO 협정 또는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법률·법규 및 정책조치들을 수정 또는 폐지하여야 하며 WTO 가입에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새로운 법률, 법규를 신속하게 제정하여야 한다.

한편,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경제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도태하는 內資기업들의 도산 및 실업의 증가<sup>4)</sup> 등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내에서의 경영환경의 커다란 변화와 시장 재분할이 이루어지고, 그 동안 연해지역과 제조업종에 치우쳤던 개방효과가 내륙지역과 서비스 및 하이테크 업종으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중국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 비관세 장벽의 점진적 폐지에 따라, 왜곡되었던 자원배분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WTO가입은 대외적으로는 중국경제의 투명성(transparency) 및 예측가능성 제고로 대외무역과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sup>5)</sup> 미국 연구기관의 분석으로는 2005년에 중국무역이 현재보다 약 2배에 달하는 연간 6,000억불, 외국인 투자도 연간 1,0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국무원 연구중심 등 중국측 연구기관은 국내 산업구조조정 영향 등을 고려, 연간 10% 증가 등의 보수적인 예측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만과의 WTO 동시가입이 실현되고,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중국대륙·홍콩과 마카오·대만을 묶는 중화경제권내에서의 교역 및 투자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sup>6)</sup>

4) 王會偉, “失業保障:應對WTO挑戰的必要措施”, 『法制日報』, 2002年 7月 7日字;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많은 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입초기 실업인구의 증가는 현행 실업보장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업관련 사회보장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5) 方浩·楊國華, “WTO對成員貿易法律制度的透明度要求”, 『法學雜誌』, 2001年 第2期(總 第125期), pp.28-29.

6) WTO 가입은 또한 중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분야의 개혁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을 위한 법제정비 노력과 WTO가입이 중국이 받을 영향과 대처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 제 2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연구의 목적

WTO협정은 최혜국대우·내국인대우 원칙을 기초로 하여 전세계경제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원칙은 WTO협정체제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WTO협정은 관세, 투자, 지적재산권보호, 동식물검역, 보장조치, 반덤핑조치, 국가간 무역분쟁해결절차 등 여러 분야에 미치고 있고 그 범위도 대단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WTO 회원국이 된 중국은 최혜국대우, 내국인대우 원칙을 향후 섭외경제무역활동을 전개하는 때에 준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정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sup>7)</sup> 광범위한 WTO 협정 내용에도 부합되도록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은 WTO가입으로 법률정비분야에서 일대 혁명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중국이 WTO가입으로 부담하는 의무는 WTO 諸협정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대외적으로 수락한 내용들도 중국은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내용은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및 중국가입의정서(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및 그 9건의 부속문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sup>8)</sup> 가입의정서와 가

---

은행, 국유기업에 대한 장기간의 미변제 대출자금은 은행장부에서 삭제되어야 하며 은행들은 예탁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구성재편성(recapitalization)이 요구될 것이다. 투자신탁회사(investment trusts)가 크게 성장하게 될 것이며 거래소(exchanges)는 투자가보호를 위하여 더 많은 규칙들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이 될 것이며 중국이 외국의 보험업자와 은행 등과 5년 내에 경쟁하여야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7) 劉弓强, “WTO協定及其法律影響”, 『法制日報』, 2001年 11月 14日字.

8) 9건의 부속문서는 다음과 같다. Annex 1a: Information to be Provided by China in the Context of the Transitional Review Mechanism, Annex 1b: Issues to be addressed by the General Council in Accordance with Section 18.2 of China's Protocol of Accession, Annex 2a1: Products Subject to State Trading(Import), Annex 2a2 Products Subject to State

입실무단 보고서의 수락내용은 WTO협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WTO 협정체제는 직접 투자에 관한 세밀한 규정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TRIMs 협정에서는 현지부품 사용의무, 수출실적 요구 및 가격에 의한 수입제한, 외환할당 등에 의한 수출입규제 등을 투자허가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9)</sup>

중국의 경우 수출장려(실제로는 의무사항), 외환수지균형의무, 현지부품 사용의무 등과 관련된 법규·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WTO가입이전에 실제로 관련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그 약속을 일부 이행한 것도 적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투자허가 및 관행상의 불합리한 요소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방향에 대해 전망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연구서는 이와 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법령정비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환경을 분석해보고 우리 기업들의 對중국투자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연구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2. 연구의 범위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서는 제2장에서 중국의 WTO협정상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WTO협정상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 및 외국인투자관련 의무와 더불어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도 아울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에 대한 평가도 덧붙이고 지금까지 중국이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하여 진행한 법제정비 현황을 외국인투자관

---

Trading(Export), Annex 2b Products Subject to Designated Trading, Annex 3 Non-Tariff Measures Subject to Phased Elimination, Annex 4 Products and Services Subject to Price Controls, Annex 5a Subsidies to be Phased Out, Annex 6 Products Subject to Export Duty, Annex 7 Reservations by WTO Members 등이다.

9) 자세한 것은 張智勇·王慧, “《與貿易有關的投資措施協議》與中國外資法”, 『法學雜誌』, 2001年 1期(總 第118期), pp.19-20.

런 분야별로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1절에서 본격적인 외국인투자관련법 정비내용을 살펴보기 앞서,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시각에서 본 외국인직접투자의 리스크, TRIMs 협정을 통해서 본 외국인투자관련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그 시행령 등에 대한 최근의 개정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평석을 하였다. 제3절에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과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및 그 첨부문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제4절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국내재투자에 관한 관련 법령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는 문제 조항에 대한 분석과 내용 소개를 위주로 하였다.

제5절에서는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를 소개하였는 바, 여기에서는 IT 분야 법령의 특징과 체계, 《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 《中華人民共和國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管理辦法》등 인터넷 분야의 주요 법령 그리고 통신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제6절에서는 최근 중국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제도와 관련하여 《外商投資企業的合併與分立的規定》의 최근 개정내용 및 국제적인 합병인수제도의 필요성과 그 논의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제7절에서는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최근 제정 또는 개정된 주요 법령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러한 법령으로 《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暫行規定》·《외국인투자벤처개피탈기업잠정규정》·《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외국인투자리스회사심사승인관리판법》·《외국인투자주식회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등 금융분야의 법령, 《외상투자도로운수기업관리규정》·《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관리규정》·《외상투자민간항공업규정》 등 운수분야의 법령 및 해양 및 육상에서의 석유자원개발채굴관련 조례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와 입법체계의 개선에 관하여 전망하여 보았다. 먼저, 외국인투자관련법 정비의 기본방향을 서술하고 외상투

자3법에 대한 개정대상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외자기업간 및 내외자기업간의 稅制통일화문제 및 회사법 및 외자기업관련법의 조화문제를 다루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중국에서 WTO가입이후 논의되고 있는 현행 입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하여서는 방대한 중국의 법령의 모든 조항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서는 특히 2000년부터 2002년까지 WTO가입을 전후하여 정비된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용의 핵심과 쟁점사항만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중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법령의 내용들로서 최근에 수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위하여 중국의 WTO가입과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이 외국인투자관련법의 문제 조항으로 언급한 사항 및 그러한 법령의 개정을 위한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수록한 최신 저서들과 논문 및 法制日報 등을 참고하였으며 그 일부는 인터넷의 법학 논문과 법령을 소개한 중국의 여러 사이트에서 찾은 것임을 밝힌다.

##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 제 1 절 의 의

현재 외국기업들은 1949년 이래 가장 높은 시장접근과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의 GDP 성장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sup>10)</sup>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중국의 사영기업 부문의 하나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노동력의 14.5%(비국영기업부문의 25.8%)를 떠맡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향후 사기업부문(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이 국유기업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을 흡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까지 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전문기술, 훈련, 장비 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동안 많은 합영·합작기업들에게 사업 승인의 조건의 하나로 중국측 당사자에 대한 기술이전을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WTO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외국인투자기업들이 WTO가 수락할 만한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유화 정책을 착수하였다. 여기에는 중국내에서의 지리적인 접근제한·시장접근제한·지분제한 및 수출요구 등의 폐지가 포함된다.

WTO가입과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가 부여되면서 점차 외국인투자기업들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중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이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현지부품사용 의무·수출의무·외환수지균형의무 등이 폐지되고(각 지방입법에 의한 경우도 포함),<sup>11)</sup>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외국기업에 최혜국대우가 부여됨으로써

10)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총조세수입의 약 11%를 납부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외환보유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11) 최근 외국인투자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외국인 독자기업과 중외합영기업은 계약

중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될 것이다.<sup>12)</sup>

또한, 평균관세율이 22.1%에서 11.7%로 인하되며 특히 부품, 원자재에 대해 우선적으로 인하될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원자재 조달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점진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무역업을 개방하고 WTO 가입 즉시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생산품의 물류 및 관련서비스를 허용할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에도 지역 및 수량제한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04년 1월까지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접판매에 대한 모든 제한을 폐지하게 될 것이다.<sup>13)</sup> 금융시장에서도 외자계기업의 인민폐 업무제한이 폐지되면서 중국내에서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다.<sup>14)</sup>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쟁압력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중국이 고관세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을 보호하여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WTO 가입으로 중국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중국기업의 상품, 외자계기업의 상품 및 수입상품간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세제상의 우대, 수출기업 우대)의 축소가 불가피해지게 됨에 따라 기업의 수입(收入)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서 등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하여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그런데, 중국의 WTO가입후 기존의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국내법 규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중국측 당사자와 종전 계약의 재협상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다 할지라도 중국의 계약승인 주관기관인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지방의 관련 기관이 그 계약의 개정을 쉽사리 승인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지적("Free Traders beware: Renegotiating contracts after China enters WTO can be tricky busines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une/C00061250...>)이 있으나 그러한 경우 WTO협정에 위배되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12) 安心, "WTO 《政府採購協定》的幾個問題," 『中國法律』, 2001年 2期(總 第100期), pp.10-11.

13) 이와 같이 무역 및 유통분야 개방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내 자체적인 판매망과 물류망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해지고 외자계 금융기관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금융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수입용 원자재에 대한 관세 인하로 중국내 생산비를 낮춤으로써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될 것이다. 제도의 투명성이 제고됨으로써 기업의 은폐된(hidden) 비용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14) 姜一春, "中國의WTO에加盟に向ける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狀課題", 『國際商事法務』, Vol.29, No8(2001). p.958.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장에서 중국의 수입시장과 내수시장을 살펴보면, 수입시장은 높은 관세율로 인한 관세장벽(tariff barriers)과 각종 수입금지, 수입쿼터, 수입제한 및 비공식적 수입규제 등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이라는 무역장벽에 의해 진입이 제한되어 있었으며,<sup>15)</sup> 내수시장은 특정산업의 투자진출 또는 외자기업 설립에 대한 많은 법령상의 제한이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통산업의 경우 두드러졌다.<sup>16)</sup> 대외무역권과 관련하여서는 제조업분야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신의 영업 범위 내에서만 수출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허용받지 못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WTO 가입 3년 이내 중국은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내수시장진입에는 관료적인 가격결정구조, 유통구조 등이 주요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운송 및 물류인프라, 지역보호주의 등으로 인해 지역간 유통장벽도 존재하고 있었다. 사실상 이러한 현상은 단

15) 중국은 지금까지 곡물, 식용유, 설탕 등 일부 내구소비재에 대해 수입허가와 수입쿼터제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해 수입을 제한하여 왔다. 1999년의 경우 수입허가 및 쿼터제 대상품목의 수입액이 300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5%에 해당하였다. 이중 석유제품이 88억 달러, 석유류와 화학비료가 각각 44억 달러와 22억 달러였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격통제로서 고정가격제, 수출가격상한 및 하한, 반덤핑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이다. 둘째, 금융부문에서 선금금 요구, 외환 분배 및 할당, 엄격한 수입외환 결제조건, 송금제한, 자금이체 지연 및 기타 금융통제 등이다. 셋째, 수량제한으로서 수출입쿼터, 수입금지, 수출입제한, 수출입허가 등이다. 넷째, 독점권 유형으로 무역 및 도매유통의 국유기업 독점, 수입창구 일원화 등이다. 다섯째 기타 기술적 제약으로서 중국의 기술인증 표준 및 기준의 강요, 기술규제, 운송전 검사, 복잡하고 관료적인 통관절차, 국산품과 수입품의 이원적 검사제도 등이다.

현행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는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 비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실시(6종 116개품목) 및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주요개방일정과 내용은 WTO가입 5년후 수입허가증제 취소, 가입 4년후 비정부 구매의 기계·전자전기 제품 입찰제 취소, 가입 5년내 모든 쿼터제의 점진적 취소 등이다.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터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李徑敬·蔡偉文·朱建農·楊琴, 『WTO與國際貨物貿易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pp.212- 251 참조.

16) 姜一春, *op.cit.*, (*supra* note 14), p.958.

17) 다만,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 수출입권 인정하고 있다.

순히 자연적·지리적 요인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입에 의한 요인이 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외환, 관세, 통관 뿐 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 대한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개입이 극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개방은 수입시장의 개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내부경제체제 개혁의 진전, 산업발전, WTO가입, 중국내 유통·운송산업의 발전 등이 수반되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sup>18)</sup>

## 제 2 절 WTO협정과 회원국의 의무

### 1. WTO 협정과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

#### (1) WTO 협정체제

중국은 WTO가입이후 자국의 법령을 WTO협정이 미치는 모든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WTO협정은 현재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국제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정이므로 중국은 자신의 무역분쟁해결제도 분야에서도 일대 혁신을 하여야 한다. WTO협정은 WTO설립에 관한 협정과 부속협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부속협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상품무역에 관한 다변적 협정(부속문서 1A),<sup>19)</sup> (2) 서비스무역협정(부속문서 1B),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1C), (4) 분쟁해결규칙과 절차양해협정(부속문서 2), (5) 무역정책평가심의(부속문서 3)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모든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모든 협정 이외에도 몇 개의 다국간 무역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부속문서 4)이 있으며 이러한 협정에는 민간항공기협정, 정부조달협정, 국제낙농품협정 및 국제牛肉협정이 있으며 이들 협정을 수락할 의사가 있는 회원국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WTO협정의 불가분의 일부(integral part)는 아니다.

18) 馬宇, “關於中國的外資導入促進政策的調整,” 『外貿調研』, 1998年 第13期, p.23.

19)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협정이 포함된다. 즉,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농산물협정, 동식물검역협정, 방직품과 복장협정, 기술성 무역장벽협정, 무역과 관련된 투자조치협정, 반덤핑협정, 세관평가(valuation)협정, 선적전검역협정, 원산지규칙협정, 수출입허가절차협정, 보조금·반보조금협정 및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이다.

## (2) 기본원칙과 회원국의 일반적인 의무

WTO협정상의 무차별(non-discrimination)원칙<sup>20)</sup>, 시장개방(이것은 주로 관세양허<sup>21)</sup>, 수량제한의 폐지, 비관세장벽의 제거<sup>22)</sup> 및 투명성(transparency)<sup>23)</sup>으로 구현된다) 및 공정경쟁<sup>24)</sup>이라는 3대 기본원칙은

- 20) 이것은 주로 최혜국대우와 내국인대우로 구현된다. 무차별 원칙의 경우에는 WTO협정의 어떠한 조항에서도 무차별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러한 무차별은 상호주의(reciprocity),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 대우 원칙들의 논리적인 귀결이라 할 것이다. 무차별 원칙은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어떠한 계약국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이 자동적으로 다른 계약국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개혁 이전의 대외무역제도는 대단히 차별적인 것이었다. 국가가 모든 무역활동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상품의 교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상품과 외화를 정부가 조달하기 위하여 대외무역을 지시하였던 것이다. 중앙정부는 대외무역계획을 이용하여 평등대우의 원칙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무역정책과 법령을 자의적으로 수립·제정하였던 것이다. 관세율, 환율 및 수출입 쿼터와 수출입허가를 조종함으로써, 국가는 대외무역기관들을 다른 국내기업과는 달리 취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필요성에 따라 각각의 산업에 대해 달리 취급할 수도 있었다.
- 21) 무차별원칙에 근거하여 GATT의 구조는 다자간 관세인하를 통하여 무역량은 증가할 수 있고 무역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전제에 입각해 있다. 시장경제에서 관세인하는 가격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짐으로써 소비자들의 경쟁 및 산업의 인센티브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비상정제하에서는 관세인하가 효과를 발휘하는데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큰 장애에 부딪치게 된다. 만약 중국이 개혁이전의 비시장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어떠한 관세인하도 그 경제 메커니즘에 지엽적인 효과만을 미칠 뿐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중국의 관세율은 GATT의 주요 서방계약국들이 부과하는 평균 10%이하의 관세율에 비해 대단히 높은 평균 44%에 달하고 있었다.
- 22) 무역에 대한 비관세장벽(NTBs: non-tariff barriers)의 보편적인 이용은 대외무역을 강력한 중앙통제와 계획체제하에 두고 있는 국가에서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각국의 비교우위에 근거한 자유무역과 공정경쟁을 보장하려는 GATT 원칙과는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이전에 중국정부는 대외무역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위하여 수많은 비관세장벽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장벽으로는 정부보조금, 수출입 쿼터 및 허가제도, 환율통제 및 다양한 형태의 행정규제 등이 대표적이었다. 중국은 WTO가입과 더불어 그러한 비관세장벽들을 실질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 23) 투명성 원칙은 대외무역에 관한 모든 법규정과 분쟁해결절차가 국내외의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중국은 국가대외무역계획과 국가기밀로 다루어지는 “비공개 내부문건”에 따라 대외무역정책을 집행하였다. 또한, 법령의 내용과 그 구체적인 적용방향도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투명성의 결여가 중국의 대외무역제도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GATT, GATS, TRIPS협정, TRIMS협정의 지도적인 원칙이 되고 있다. WTO 법률문건의 주요 내용은 모든 이러한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으며 회원국 정부의 국제 무역에 대한 간섭을 제한 또는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WTO협정은 각회원국들이 모두 공동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전제하에 개개의 회원국이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고려하여 WTO협정상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유연성을 남기고 있다. 무역자유화라는 원대한 목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구성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갖는 특정한 이익을 고려하여 WTO 협정상의 무역자유화촉진관련 조항들이 충분히 통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협정상의諸원칙과 회원국의 의무들이 모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약간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과도기적이고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sup>25)</sup>

WTO 협정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투쟁과 상호타협을 통하여 얻은 산물이므로 합의된 내용은 반영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내용은 보류하고 있다.<sup>26)</sup> WTO 규칙중에는 대다수의 회원국들이 수락할 수 있는 것은 이론적·원칙적 성격을 가진 것이며 적지 아니한 조항들은 비교적 애매하거나 또는 일부 예외규정, 과도기적인 배려, 완화된 조건 등을 인정하고 있다. 내용상으로 볼 때, WTO 협정은 국제무역의 경험과 교훈을 결산하고 다변적 무역실천과정에서 통용되는 방식 이른바 국제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적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 개발도상국 또는 다수 회원국들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WTO규칙이 국제경제교류과정에서 강제적인 힘을 통한 문제 해결의 방식 대신에 합의된 규칙에 의거한 문제 해결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면에서 WTO규칙은 세계무역자유와 각 회원국의 정당한 이익을 조화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sup>27)</sup>

24) 각각의 회원국들이 관세를 무역보호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허용하지만 덤핑,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수단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확보한다.

25) 이에 대해서는 李雙元·蔣新苗, 『世界組織(WTO)的法律制度 - 兼論中國“入世”后的應對措施』, (北京:中國方正出版社, 2001), pp.364-378.

26) 楊景宇, “加入世界貿易組織與我國的法制建設”, 『法制日報』, 2002年 1月 31日字

27) *Ibid.*

또한, WTO 협정은 권위성과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WTO규칙의 실시를 보장하고 또한 WTO 규칙이 회원국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경제관계를 유효하게 조정하고,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신속하고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WTO협정은 WTO체제하의 무역정책심의제도와 분쟁해결제도를 확립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 2. 외국인투자관련 의무

WTO에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외국인직접투자와 관련된 여러 협정들이 부단히 발전·정비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제투자문제는 점점 더 WTO체제의 조정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규칙의 자유화 경향도 점점 현저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향후 WTO가 국제투자문제를 전면적으로 조정하는 forum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아직 전지구적인 종합적인 다자간 투자조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학자는 이미 WTO체제내에서 종합적인 투자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WTO가 국제투자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제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sup>28)</sup>

전체적으로 볼 때 WTO 협정상의 여러 규칙들은 모두 시장개방과 회원국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간섭 축소와 관련된 것들이며 대체적으로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이 전지구적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WTO 협정중에서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과 서비스무역 일반협정(GATS)은 외국인투자 자유화에 대하여 보다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TRIMs 협정 제2조는 “GATT 1994하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손상함이 없이 각 회원국은 GATT 1994 제3조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무역관련 투자조치도 사용하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는 계속하여 “GATT 1994상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손상함이 없이 각 회원국은 동 협정 제11조 제1항의 규정과 부합되

28) Thomas L. Brewe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 Evolving Regime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Business*, Vol. 26, 1995, pp.658-662.

지 아니하는 어떠한 투자조치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29)</sup>

이러한 TRIMs 협정 제2조의 투자조치의 개괄적 금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종의 외자도입 자유화 규칙이 될 수도 있다. TRIMs 협정의 부속 해석성 목록에서는 TRIMs 협정이 금지하는 5종의 투자조치를 열거하고 있으며 향후 TRIMs 협정상 금지되는 투자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실제로 TRIMs 협정의 협상과정에서 많은 서방국가들이 각종 이행요구를 광범위하게 넓혀 금지할 것을 주장하였다.<sup>30)</sup>

한편, GATS은 보다 명확한 방식으로 국제서비스무역의 시장진입 승인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GATS 제3부(특정한 의무 부담)는 시장진입승인과 내국인 대우 및 추가적인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GATS상의 시장진입에 대한 승인은 성질상 일종의 단계적인 자유화에 의한 시장진입의 승인이다. 다시 말해서 WTO체제하에서 각회원국은 경중과 완급을 가려서 각종 서비스무역에 대해 협상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단계적으로 서비스무역시장의 진입에 대해 불리한 영향을 주는 규칙, 제도와 조치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고 최후에는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다.<sup>31)</sup> 강제적인 서비스무역자유화는 관련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와 발전정책의 자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외자가 자국의 어떠한 서비스분야 시장에 적극적인 작용을 하지 못한다면 자본도입국이 그러한 외자의 서비스시장 진입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도 WTO 가입이후 대폭적인 시장개방 확대와 무역 및 투자장벽 완화를 추진할 것인 바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관련법도 지속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가해 왔던 금융, 은행, 증권업, 정보통신 등 서비스부문에 대한 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투자방식도 기존의

29) 外經貿部國際經貿關係與貿易總協定上海研究中心編, 『馬拉圭會合多邊貿易談判結果最後文件』, (北京:法律出版社. 1995), p.108.

30) David MacDougall & Peter Cameron, “Trade in Energy and National Resources,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Focus on Eastern Europe,” *Journal of World Trade*, Vol. 28(1994), p.174.

31) GATS 협정이 국제투자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劉筭, 『國際投資保護的國際法制: 若干重要法律問題研究』, (北京:法律出版社, 2001), pp.378-385.

외자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등의 三資企業 이외에 BOT(Build-Operate-Transfer; 즉 건설-경영-양도)방식<sup>32)</sup>, 외자에 의한 M&A<sup>33)</sup>, 프랜차이즈, 주식투자 등 신규 투자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 3 절 중국의 가입의정서·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

#### 1. WTO 규칙분야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와 실무단 보고서에 기록된 중국의 WTO 규칙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대외적 수락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내국인대우: 상품수입, 관세, 국세 등의 방면에서 외국상품에 대하여 중국의 동종 상품보다 낮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현재 내국인대우원칙을 위반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식 및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변경과 조정을 진행한다.

2) 무역제도의 통일적인 실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내의 자치지방·경제특구·연해개방도시·경제기술개발구 등에서 무역정책을 통일적으로 실시한다. WTO 회원국의 관련 개인 및 기업은 그와 같이 무역정책이 통일적으로 실시되지 아니하는 상황에 대해 중국 중앙정부에 주의를 환기시켜 그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중국의 주무기관으로 하여금 반영하도록 하고 그러한 문제가 사실인 경우에는 주무기관이 중국의 법률이 허용하는 구제방식을 통하여 그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3) 투명도: 모든涉外경제무역의 법률법규 및 부문 규장은 공포하여야 하고 공포되지 아니한 법규 및 규장은 집행될 수 없다. WTO가입후에 대외경

32) 이에 대해서는 黃輝, 『WTO與國際投資 法律實務』, (長春:吉林出版社, 2001), p.136-153 참조: 중국의 WTO가입후 BOT분야에서의 중국 국영기업의 전략에 대해서는 石業西, “入世之后的BOT戰略--兼論國有企業能否作爲BOT項目公司”,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961](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961). 참조.

33) *Ibid.*, p.153-162.

제무역주관부문에 照會處를 설치한다. 대외경제무역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기타 조치는 시행하기 전에 초안을 제공하여 그에 대한 의견제출을 허용한다. 중국측이 WTO 관련 회원국의 조회에 대하여 행한 답변은 중국정부를 완전히 대표하는 유권적인 것이어야 하며,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무역정책정보를 제공한다.

4) 사법심사: 중국의 《행정소송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 사법적 결정 및 행정재결 분야에서 당사자에게 사법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며<sup>34)</sup> 여기에는 당초에 행정기관에 상소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법기관에의 상소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도 포함된다.

5) 대외무역경영권(무역권): 중국은 WTO 가입 3년 후 대외무역권 심사 승인제를 폐지하며 중국의 모든 기업은 법에 따라 등기를 한 후 국영무역상품으로 배당된 비율이외의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동시에 현재 부분적인 수입권을 향유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이 WTO에 가입한 때로부터 3년내에 단계적으로 완전한 무역권을 가진다.

6) 국영무역: 중국은 原油, 加工油, 화학비료, 식량, 면화, 植物油 및 연초 등 8종의 상품의 수입은 국영무역으로 관리하되, 제한적인 수의 국영무역공사에 한하여 그러한 무역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유보를 하였다. 동시에 일정한 비율의 수입은 非국영무역회사가 담당하도록 한다. 그 밖에 植物油의 국영무역관리는 2006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국영무역회사는 국영무역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상업적인 원칙에 따라 경영하되 통지관련 의무를 이행한다.

7) 비관세조치: WTO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정서 부속문건에 기재된 스케줄에 근거하여 현재 400여 품종의 상품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비관세조치는 2005년 1월 1일전에 전부 폐지하며, WTO규정에 부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후 어떠한 새로운 비관세조치도 추가 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8) 수출입허가절차: WTO의 수출입허가절차협정을 준수하고 이행한다. 여기에는 수입허가의 신청, 표준, 발급 및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다.

9) 국가가격결정: 현재 국가가 가격을 정하는 상품과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국가가 그와 같이 가격을 정하는 권리를 행사하며 구체적인

34) 이에 대한 중국의 대비방안에 대해서는 張軍旗, 『WTO監督機構的法律與實踐』,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1). pp.243-246.

국가가가격결정의 상품과 서비스 항목은 의정서의 부속문건에 게재되어 있다.

10) 수출보조금: WTO 보조금협정의 규정에 따라 협정이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고 협정이 허용하는 기타 보조금 항목을 통지한다.

11) 세관평가: WTO 세관평가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여 인도가격을 세관평가<sup>35)</sup>의 기초로 삼으며 “최저가격” 및 “참고가격”을 세관평가의 수단으로 삼지 아니한다.

12) 표준 및 기술법규: WTO의 내국인대우 원칙에 근거하여 가입일로부터 18개월의 과도기가 경과한 후 국내의 모든 合格評定機構는 국산품에 대해서도 또한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합격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3) 무역관련 투자조치: WTO 가입후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을 시행하며 무역과 外換의 수지균형 요구, 기술양허 요구 등 무역관련투자조치를 폐지한다. 대부분의 WTO회원국들에서 통용되는 방식에 근거하여, 법률, 법규 및 규장에서 수출실적 요구와 기술양허 요구를 강제적인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투자하는 기업 쌍방이 협상을 통하여 정한다.

14) WTO 회원국의 중국에 대한 제한적인 조치 폐지: WTO회원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금지 또는 수량제한조치를 모두 당해 협정 부속문건에서 명시하고 협상으로 합의된 스케줄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한다. 예컨대, EU의 중국 신발·도자기제품에 대한 수량제한은 2005년 1월 1일 前에 완전히 폐지된다.

15)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WTO회원국은 「중국이 상품을 수출하여 자국시장에 대하여 이른바 “시장혼란”을 조성하는 경우의 당해 수출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제한적 차별 조치와 규정」을 중국의 WTO가입 후 12년내에 완전히 폐지한다. 만약 중국의 수출상품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WTO 회원국 국내시장에 시장교란을 조성하는 때에는 쌍방이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협상과정에서 쌍방이 모두 중국의 수입상품이 그러한 상황을 조성하여 반드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국이 자체적으로 구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협상이 성과가 없으면, WTO 회원국은

35) 이에 대한 중국의 입법대응에 대해서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161-163 참조.

충격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축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WTO 회원국이 이 조항에 의거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반드시 일련의 조건과 기준을 충족시키고 公告를 하고 다방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임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6) 반덤핑조항: WTO 회원국은 중국의 가입후 15년내에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는 때에 “제3국 대체가격”을 채택하는 방식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을 수락한다. 반덤핑협정은 이 과도기동안 중국 상품에 대하여 제3국 가격을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측이 중국상품이 시장경제조건하에서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데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한, WTO 회원국도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야 하고 중국 국내원가를 채택하여야 한다. 이 과도기적 조항의 모델은 반보조금조치에도 적용된다.<sup>36)</sup> 동시에 가입실무단 보고서에 이 조항을 인용하는 기준, 정의 및 절차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둬으로써 남용가능성을 방지하였다.

17) 방직품조항: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의 어느 한 품목의 방직품이 WTO회원국 시장에 “혼란”을 조성하게 되면 임시적으로 그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 다만, 4년내에는 어느 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1회만 제한조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1회는 1년 동안 지속되며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2008년 12월 31일 전에는 WTO 회원국이 방직품에 대하여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과 방직품 조항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18) 과도기적 심의메커니즘: 중국 가입후 8년내의 기간동안, WTO의 관련 위원회는 중국과 다른 WTO 회원국들의 WTO 의무이행 및 중국의 WTO 가입 협상에서 행한 대외적 수락내용의 실시 상황에 대하여 매년 심의를 진행한다. 그후, 제10차 연도에 그러한 심의는 완전히 중단된다. 중국측은 다른 회원국의 의무 이행상황에 대하여 위원회에 질의를 할 권리가 있다.

19) 정부조달: 중국은 정부조달과정에서 투명도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준수하고, WTO 가입 후 정부조달협정의 observer가 되며, 중국의 정부조달 관련 활동을 살펴보고 조건이 구비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가입협상을 개

36) 이에 대해서는 趙雄田, “對補貼要履行的三項義務--《中國入世加入議定書》 諸10條解讀”,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90](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90).

시한다는 것을 수락한다.<sup>37)</sup>

## 2. 외국인투자관련 대외적 수락내용

### (1) 의 의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은 WTO협정과 그 부속문서중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중에 언급된 의무도 포함된다. 다만, 중국은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제2조 제1항의 규정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조치가 가입의정서에 첨부된 제2조 적용제외 리스트(the List of Article II Exemptions)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Annex to the GATS on Article II Exemptions의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 그러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한편 WTO협정과 중국의 가입의정서의 규정은 중국의 전체 영역에 적용되며 따라서 특별한 관세, 조세 및 법령 제도가 확립된 변경무역지구, 소수민족자치지구,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및 기타 지역(이하 “특수경제구”라 한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국은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및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또는 외환관리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 정부의 법률, 법규 및 기타 정책조치 및 지방정부가 제정 또는 적용하는 지방성 법규, 규장 및 기타 조치들을 통일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중국의 지방 법규, 규장 및 기타 조치도 WTO 협정과 가입의정서에서 중국이 부담하는 의무에 부합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은 개인 및 기업이 무역제도의 비획일적 적용 사례에 대해 국가 당국에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립하여야 한다.

중국은 특수경제구와 관련된 모든 법률, 법규 및 기타 조치를 WTO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들 특수경제구와 관련된 법률, 법규 및 기타 조치를 포함하여 특수경제구의 추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지체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국은 공포되고 개인 또는 기업이 용이하게 입수가 가능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TRIPS 또는 외환관리와

37) 이상은 管仁林(主編), 『中國入世承諾法律文本解釋』, (北京: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02), pp.12-15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치는 법률, 법규 기타 조치만을 집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WTO 회원국들이 요청하면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TRIPS 또는 외환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기타 조치들을 그 시행 또는 집행에 앞서 입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38)</sup>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수락내용중 경제정책 분야로서 외국인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2) 경제정책

엄격하게 말해서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시는 일국의 국내문제이며 어떠한 개인, 국가 또는 국제조직도 간섭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WTO는 국제적인 무역·경제조직으로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국제무역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국의 경제정책(주로 불공정한 국제무역정책과 산업보호정책 등의 국내정책)을 통하여 국제무역을 축소시키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무역의 자유화와 투명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입시 행한 약속에 따라 자국의 경제정책을 수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WTO에 의한 각회원국들의 경제정책 제한의 합법성은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주권에 속하는 사항을 WTO에 양도한 자발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WTO가입 협상은 14년 9개월을 끌어왔으며 그 동안 중국은 계획경제체제에서 계획에 의거한 상품경제(有計劃商品經濟)로, 다시 사회주의시장경제로<sup>39)</sup> 옮겨가는 과정을 거쳤다. 중국경제체제의 전환은 WTO회원국

38) 그 밖에 가입의정서상의 나타난 목차만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4) 사법심사, (3) 무차별, (4) 특수무역약정, (5) 무역권, (6) 국영무역, (7) 비관세조치, (8) 수출입허가절차, (9) 가격통제, (10) 보조금, (11) 수출상품에 대해 징수하는 조세 및 부담금, (12) 농업, (13) 기술적 무역장벽, (1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5) 보조금 및 반덤핑 판정시의 가격비교, (16) 상품특정의 과도기적 세이프가드 메커니즘, (17) WTO 회원국들의 유보, (18) 이행 심사메커니즘 등이다.

39) 현행 중국 헌법에 규정된 사회주의시장경제라 함은 사회주의공유제를 기초로 하여 국가의 거시적 통제하에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대한 기초적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제체제라고 한다. 宋壽(主編), 『政治經濟學教程』(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p.294. 1993년 헌법개정에 의해 사회주의시장경제가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대체한 것이지만 여전히 사회주의공유제는 유지되고 있다(중국헌법 제6조, 제15조). 이와 같은 사회주의공유제라 함은 생산수단(토지, 천연자

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었으나 중국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각 회원국들은 중국의 WTO가입문서에 중국정부 경제정책의 국제 무역의 대한 통제 수준과 제한 정도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중국가입 실무단 보고서는 하나의章에서 중국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시하고 중국대표가 그에 상응하는 해석, 소개 및 수락을 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가입의정서도 경제정책과 관련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3) 무차별 원칙(내국인대우포함)

#### 1) 중국가입실무단의 요구사항

중국가입의정서 제3조는 “이 의정서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분야에서 외국의 개인, 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는 다른 개인과 기업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그러한 분야는 (a)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 상품과 및 서비스의 구입 및 그러한 상품이 국내시장에서 또는 수출을 위하여 생산, 시장 출하 또는 판매되는 조건 및 (b) 운수, 에너지, 기초통신, 기타 생산 시설·요소를 포함하는 분야에서 국가 및 국가이하(sub-national)의 당국과 공유기업 또는 국유기업이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이용가능성”의 분야이다.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 제15조 내지 제23조도 이러한 무차별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차별대우 원칙과 시장개방 원칙, 공정경쟁 원칙은 WTO의 3대 기본원칙이다. 무차별원칙은 WTO회원국들에게 다른 회원국의 경제주체에 대하여 평등한 시장진입조건과 공정한 운영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며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하거나 인위적인 무역장벽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

원, 생산설비 등)을 공유(국가 또는 집단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국 경제제도의 기초가 된다(중국헌법 제6조). 그러나 중국에서는 생산수단의私有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중국헌법 제11조, 제18조 등) 중국에서 사회주의 공유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완화된 사회주의 공유제하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행하는 것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영자주권을 가진 기업이 자유롭게 상품거래를 하도록 하여 수급관계가 반영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무차별대우 원칙의 핵심은 권리의 평등이다. 무차별원칙은 “內外平等”과 “外外平等”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모두 적용된다.<sup>40)</sup> 내외평등 즉 무차별원칙의 제1파생 원칙은 이른바 내국인대우 원칙이다. 내국인대우 원칙은 WTO 회원국들에게 다른 회원국의 경제주체들에게 자국 경제주체와 동등한 시장 진입조건과 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러한 외국의 경제주체들과 자국 경제주체를 구별하여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外外平等” 즉 무차별원칙의 제2파생 원칙은 최혜국대우 원칙이다. 최혜국대우 원칙은 WTO 회원국들에게 다른 어느 특정한 회원국의 경제주체에 대해서만 우대조치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며 무조건 모든 WTO 회원국 경제주체들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무차별대우 원칙은 WTO 회원국들의 법률과 경제정책에서 내국인대우와 최혜국대우 원칙을 관철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를 보면,<sup>41)</sup> 실무단이 중국에 대하여 무차별대우원칙 분야에서 요구한 것은 주로 다음 몇 가지에 집중되어 있다. 첫째, 실무단의 일부 단원들은 중국에 대하여 외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무차별 원칙의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sup>42)</sup> 실무단의 일부 단원들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투입요소,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분야 및 상품의 국내판매와 수출분야에서 모든 외국의 개인, 기업 및 외상투자기업(합자경영기업 포함)에게 무차별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중국이 수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밖에 이들 단원은 중국이 국가와 지방 주무기관, 공공사업단위와 국유기업이 제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과 이용가능성 분야에서 무차별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에는 당연히 운수, 에너지, 기초통신, 기타 생산시설과 생산요소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둘째, 일부 단원은 중국이 경제주체의 국적에 따라 중국 경제에 참여하는 조건과 제한을 부과한다는 점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단원들은 특히 중국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결정과 구매, 수출입허가증 배분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경제주체들을 구별하여 대우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

40) 管仁林, *op.cit.*, (*supra* note 37), p.17.

41) 제15 내지 제23조.

42) 管仁林, *op.cit.*, (*supra* note 37).p.18.

였으며 중국이 경제주체의 국적을 차별대우의 기준으로 삼지 아니한다는데 대하여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sup>43)</sup>

셋째, 일부 단원은 중국의 현행의 법률·법규·행정통지와 요구중의 일부가 GATT 1994 제3조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 중국의 현행의 상품등록과 인증, 국내세수, 가격과 이윤통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입허가절차 및 수입화물의 판매에 관한 규정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GATT 1994의 제3조 위반을 구성하는 불리한 대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 단원은 중국이 설령 자국 상품에 대해서도 이러한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수입상품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불리한 대우를 완전히 폐지하여야 내국인대우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 밖에 일부 단원은 중국이 국내의 GATT 1994의 제3조에 위배되는 다른 현행 법령의 규정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제청하였다. 특히 중국이 원산지 아닌 상품의 수입, 판매, 재판매 및 소매에 대하여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는 절차, 비용 및 조건에 대하여도 관심을 표명하였다. 중국이 원산지 아닌 상품에 대하여 지우는 실제 부담은 중국 상품에게 지운 부담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성과 기타 일치성에 대한 고려의 요구를 포함하는 승격評定절차와 기준은 모두 WTO의 기술적무역장벽협정(TBT협정)과 GATT 1994 제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sup>44)</sup>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중국가입실무단의 상기의 요구에 대하여 중국대표는 중국정부가 무차별원칙에 대하여 수락한 내용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에 기록된 소개, 해석 및 수락은 다음과 같다.

## 2) 중국대표단의 소개, 해석 및 수락

### ①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경제주체에 대한 무차별원칙

중국의 대표들은 중국가입의정서와 실무단의 상기의 요구들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하는 중국기업과 중국국경밖의 외국기업과 개인에게 무차별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수락내용도 중국가입의정서의 기타 규정의 준수

43) *Ibid.*

44) *Ibid.*, p.19.

를 필수적인 것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GATS 협정, 중국이 구체적으로 수락한 양허표 및 TRIMs 협정과 관련된 대외적 수락내용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중국정부가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경제주체들에게 무차별대우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를 하는 경우 중국의 가입의정서, GATS, 중국의 수락양허표와 TRIMs협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WTO의 기본원칙이 되는 무차별원칙은 결코 경직적이거나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회원국간의 양보와 국제무역의 실제 필요에 따라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내국인대우 원칙에 대해 말한다면, 이러한 예외는 주로 서비스무역과 투자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 양허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어(GATT협정), 회원국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서비스 무역은 대단히 민감한 분야이며 양허도 각국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비스무역 분야에서 WTO 회원국은 단독협상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바, 회원국들이 GATS의 기본규칙을 수락한다는 것을 기초로 각 회원국간에 서비스 무역의 개개의 사업분야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고 별도로 협정을 체결하며 이것들이 구체적인 수락양허표를 구성하게 된다. 서비스 무역분야에서 각 회원국들의 WTO 가입에 관한 법적 문서들은 GATS와 구체적인 수락양허표로 구성된다. 중국의 WTO 가입문서도 WTO 제협정이외에 중국가입의정서와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중의 서비스 무역부분의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무역관련투자조치 분야에서 TRIMs협정은 개발도상국들이 내국인대우 원칙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적인 조치를 유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무차별 원칙을 실시함에 있어서 GATS, 구체적인 수락양허표와 TRIMs 협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외적인 조치를 채택하였으며 이것을 무차별원칙에 관한 수락내용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 된다.<sup>45)</sup>

중국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이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하는 중국기업」 과, 중국내의 외국 기업·개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것을 대

---

45) *Ibid.*, p.20.

외적으로 수락하였다. 중국은 장래에 이증가격제를 폐지할 것이며 아울러 국내판매상품과 수출상품의 차별대우를 폐지할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을 포함하는 중국기업, 중국내의 외국기업과 개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는 중국정부의 수락은 실제로는 외상투자기업과 중국 국경내의 외국경제주체들에 대하여 “내외평등”의 내국인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수락한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중국에 진입하는 외자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기업, 또는 지사(分支機構)나 중국국적을 갖지 아니하는 기타 경제주체 등 그 어떠한 형식을 채택하여 경영활동을 하든 간에 모두 중국 內資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향유한다.<sup>46)</sup>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중국이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경제주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차별대우의 예외는 주로 시장진입과 투자분야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그 밖에는 이미 중국에 진입한 투자와 경제주체에 대하여 어떠한 차별도 실시하지 않는다.<sup>47)</sup>

중국의 대표는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경제주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내국인대우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분야를 포함한다는 것을 수락하였다; 첫째, 이증가격제도를 폐지하여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경제주체가 중국내에서 고정설비와 자산, 에너지, 생산원자재를 조달하고 생산에 필요한 기초설비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의 분야에서 내자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중국 국내에서는 과거에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국가가격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도 기업 자신이 원가분석, 시장예측 및 시장조사에 근거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가격주관부문이 거시적인 경제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확정하였다. 근년에 들어와서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이미 대부분의 영역에서 시장가격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가격통제를 포기하였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내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 및 중국내의 외국경제주체가 국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자유롭게 시장경쟁에 참여하고 시장가격을 채택할 수 있다. WTO가입이후 중국정부는 계속하여 가격관리체제를 완화해나갈 것이다.<sup>48)</sup>

46) *Ibid.*

47) *Ibid.*

48) *Ibid.*, p.21.

둘째, 국내판매상품과 내수판매상품의 차별대우를 폐지하였다. 개혁개방 초기, 국제무역에서의 수출초과를 달성하고, 국내외환보유고를 확대하기 위하여 또한, 정부가 기업, 특히 외상투자기업과 중국내 외국경제주체들로 하여금 국제경쟁에 참여하여 수출형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 행정법규와 규범성 문건에서 국내판매상품과 수출상품에 대한 차별대우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대우는 다음 두 가지 분야에 표현되어 있었다. 먼저, 국가는 외부지향형 기업 즉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데 사용하는 국내기업(외자계 기업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과 중국내의 외국경제주체에 대하여 예컨대, 세수우대와 외자진입의 우대 등 일련의 우대조치를 부여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정책과 법률제도도 외상투자기업과 중국내의 외국경제주체들이 생산하는 상품을 수출하도록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개정이전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중에 규정되어 있었다. 중국 대표가 수락한 국내판매상품과 수출상품의 차별대우의 폐지는 상기 두 분야에서의 생산자의 평등대우를 실현하는 것이다. 첫 번째, 분야의 평등대우는 주로 국가재정·세수 정책과 법률제도를 통하여 실현하였으며 두 번째 평등대우는 국가의 투자관련 정책과 법률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다.<sup>49)</sup> 현재 상기 외상투자3법과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및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는 이미 개정되었다.

## ② 외국경제주체간의 평등대우(최혜국대우)

중국대표는 WTO협정과 가입의정서 관련 규정상의 중국의 권리·의무와 상호 일치되는 경우 중국은 모든 WTO 회원국들(단독관세구에 속하는 WTO 회원인 지구를 포함)에게 무차별 대우를 부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수락내용은 중국이 WTO 가입관련 대외적 수락에 근거하여 모든 회원국들간에 평등대우, 이른바 “外外平等”의 최혜국 대우 원칙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면 중국이 WTO의 어느 회원국에게 우대조치를 부여하게 되면 그러한 우대조치를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 전면적으로 부여하

49) *Ibid.*, p.21.

여야 한다. 주목할 것은 WTO 회원자격은 주권국가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및 대만 등 비국가적 독립관세구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최혜국 대우에서의 “國”은 당연히 확대해석되어야 하며, 따라서 비국가적 독립관세구에 속하는 경제주체들도 최혜국 대우를 향유하게 된다.

내국인대우 원칙과 마찬가지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도 일정한 예외가 허용된다. 즉 “구역성 지역안배”의 예외이다. 예외가 인정되는 특정한 경제구역내의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과 구별되는 우대를 향유할 수 있다. 예컨대, EU 회원국들은 통일적인 유럽 大市場을 구축하여 상호 제공하는 우대조치는 EU이외의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1개국 4개 회원국(地區)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및 대만이 각각 단독의 관세구에 속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구역성 지역안배”라는 예외를 인정받고자 할 것이며 그에 앞서 최근 중국과 아세안(東盟)관계의 급진전에 따라 중국과 東盟국가가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요컨대, 중국은 적극적으로 “구역성 지역안배” 분야의 예외 규정을 활용할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판단된다.<sup>50)</sup>

### ③ 관련 법률, 법규와 행정조치의 개정·폐지

중국 대표는 모든 법률, 법규 및 행정조치들이 가입의정서 또는 가입작업단 보고서에서 기타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중국의 WTO 가입일부터 중국상품과 수입상품간의 무차별 원칙을 전면적으로 준수하고 집행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중국 대표는 WTO 가입에 즈음하여 중국은 WTO의 내국인대우 원칙과 불일치하는 모든 현행법률, 법규 및 기타 조치(잠정법령, 행정조치, 규정과 통지 및 기타 모든 형식의 규정과 준칙을 포함한다)의 내용을 폐지하고 실시를 정지할 것임을 선언하였다.<sup>51)</sup>

## (4)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외환관리

제3절 외환정책(중국가입작업단보고서 제27-36조)과 관련하여서도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관리에 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중국에 설립된

50) *Ibid.*, p.22.

51) *Ibid.*, p.23.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관리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및 《외환판매, 매입 및 지불관리규정》 및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외합작경영기업법》의 실시세칙 등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 왔다. 1996년 7월 1일부터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거래는 전부 은행의 외환제도내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외상직접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은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관리에 대하여 내국인대우를 부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외상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국가외환관리국이 규정한 최고한도액까지 외환결산계좌를 개설하여 경상항목의 외환수입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외환수입은 지정된 외환은행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상거래의 지불과 이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외상투자기업은 유효한 증빙을 가지고 지정된 외환은행 또는 국가외환관리국에서 사실조사를 받은 후 경상거래의 지불을 위하여 외환을 구입하거나 외환계좌에서 차입할 수 있다.<sup>52)</sup> 외상투자기업은 외화계좌를 개설하여 외국측 당사자가 불입한 자본금을 보유할 수 있으며,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은 후 이 계좌에서 외환을 매각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직접 중국 내외의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국가외환관리국에登記하여야 하며 채무상환과 서비스에 대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어 청산후 자신의 외환계좌에서 지불하거나 지정된 외환은행에서 매입한 외환으로 지불할 수 있다.

중국 대표는 중국이 WTO협정과 WTO의 IMF에 관한 관련 선언과 결정에 따라 외환문제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중국 대표는 중국은 IMF 협정 당사국으로서 이미 동 협정 제8조를 수락하였음을 상기시켰다.<sup>53)</sup> 제8조는 “각회원국은 IMF의 동의 없이 경상적인 국제거래의 지불과 이체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대표는 중국이, 이러한 의무에 따라 또한 IMF협정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관세영역내에서 어떠한 개인 또는 기업이 경상적인 국제거래를 위

52) *Ibid.*, p.29.

53) 이에 대해서는 繆劍文·羅培新, 『WTO與國際金融 法律實務』, (長春:吉林出版社, 2001), p.286.

한 외환을 당해 개인 또는 기업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외환 유통과 관련된 금액까지만 조달할 수 있도록 - 계약조건에 관한 요구를 포함하여 - 제한하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기타 조치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sup>54)</sup>

## (5) 투자체제

### 1) 현재의 상황

투자체제에 대해서는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 제41조 및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투자정책은 국가가 자본도입의 방향, 수량 및 흐름에 대하여 행하는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다. 국가는 합리적인 산업구조를 구축하고 자국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산업별로 각기 다른 자본유입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투자체제에 대하여 일련의 개혁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통적인 계획경제하의 고도로 집중된 투자관리는 투자자의 다양화, 資金源의 다변화, 투자방식의 다양화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점차 변화되어 왔다.

중국정부는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자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현재 중국의 투자방향은 《지도외상투자산업방향잠행규정》 및 그 목록의 규정에 확정되어 있다. 중국에서 외자도입 방식은 주로 4가지 형식이 있다. 즉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상독자경영기업 및 자연자원 개발 등이다. 중국은 이러한 형식의 기업에 대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이들 법의 실시세칙(또는 시행조례)과 중외합작의 자연자원개발채굴법규 등이 적용된다. 대외 개방과 동시에 중국 정부는 근년에 “대내개방”을 진행하여 점차 민영기업이 투자경영할 수 없는 금지영역을 폐지하고 민간투자영역을 확대함으로써 민간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sup>55)</sup>

### 2) 개혁방향

중국의 투자정책은 이미 공정하고 투명하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국가자본과 민영자본 · 외상자본간의 불필요한 차별대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현

54) 管仁林, *op.cit.*, (*supra* note 37), p.29.

55) *Ibid.*, p.33.

재 중국은 일부 특수한 분야에서는 여전히 국유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한다는 것을 토대로 중국의 투자체제를 개혁하여 WTO 협정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sup>56)</sup> 먼저, 중국의 투자법률제도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다.

중국의 3자기업법은 앞서 언급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독자기업법 및 그 실시세칙을 포함하며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하는 주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개정전의 3자기업법 및 실시세칙중에서는 “외환평형”, “수출실적”, “현지물품사용” 및 “경영기한”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외환평형”은 3자기업에게 외환수지균형을 실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며 예컨대, 개정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75조는 “합영기업의 외환수지는 당연히 평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승인된 합영기업의 사업타당성연구보고, 계약에 근거하여 상품이 내수를 위주로 하고 있어 외환평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대외경제무역부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의 비준을 얻은 후 계획에 편입하여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수출실적 요구”은 3자기업의 상품은 주로 수출에 사용되도록 하고 국내시장에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예컨대, 개정전 합영기업법 실시조례 제60조는 “중국정부는 합영기업이 국제시장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중외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제38조는 “국가는 합작기업이 국제시장에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장려한다. 합작기업은 스스로 국제시장에 그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국외의 판매기구 또는 중국의 대외무역회사에 위탁하여 그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전의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45조는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승인된 판매비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이 승인된 판매비율을 초과하여 중국시장에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현지물품사용”이라 함은 외상투자기업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는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중국의 상품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예컨대, 개정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57조는 “합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

56) *Ibid.*, p.34.

기기설비, 원재료, 연료, 부품, 운송수단 및 사무용품 등(이하 "물자"라 한다)은 중국에서 구매할 것인지 국외에서 구매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다만,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우선적으로 중국에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경영기한"에 대해 개정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개정전의 실시조례 제100조는 "합영기업의 합영기한은 각각의 사업과 항목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합영 각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일반 항목의 합영기한은 원칙적으로 10년 내지 30년으로 한다.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주기가 장기이고 자본수익율이 낮은 항목의 경우 합영기한은 30년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외합작기업법, 외자기업법과 실시세칙 및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실시조례 등의 개정후 이상의 4가지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외상투자기업은 원자재 구매, 상품판매, 외환수지균형 및 경영기한의 면에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內資企業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다음 중국정부는 중국정부가 정부의 투자지도방향과 그 실시가 WTO 협정에 완전히 부합될 수 있도록 《지도외상투자산업방향잠행규정》과 그 목록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상투자산업지도방향잠행규정》과 그 부속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중국 중앙정부-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연합으로 공포하는 행정규장이며 중국정부는 그 《규정》과 《목록》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중국투자에 대한 정책지도방향을 제공한다.

그 밖에 "對內開放" 즉, 민영기업에 대한 개방의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다. 대외개방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내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영기업들은 불공정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일부 산업분야의 시장에 대한 민영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면 중국으로서도 국유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보완할 수가 없게 되며 외자기업이 전체 산업 내지 관련 산업에 대하여 독점을 형성하는 것도 피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공업을 예로 들어보자.

자동차공업의 이미 중국정부가 국유기업정책일변도가 가장 두드러진 산업분야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민영자본의 진입을 엄격히 제한하여 왔다.<sup>57)</sup> 그러나 중국의 3개 국유자동차집단에 대한 지원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

다. WTO 가입후 국가산업주관부문은 산업보호만으로는 국유 자동차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동차산업의 생산효율성 저하만을 초래하여<sup>58)</sup> 자동차 가격은 인하되지 아니하는 등의 폐단을 인식하여 2001년 민영기업의 자동차진입제한에 대한 해금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sup>59)</sup>

### 3) 기술양허와 외상투자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제43조 내지 제49조)중의 국유기업과 국가투자기업 부분에서도 “기술양허와 외상투자”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중국대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근거하여 투자과정에서의 기술양허의 조항과 조건, 생산 공정 기타 관련 문제는 투자 쌍방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협상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가 이에 대해 간섭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 정부는 그 영토내의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TRIPS)협정과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기술양허·생산공정 또는 기타 노우 하우 관련 법률, 법규 또는 조치만을 실시, 적용 또는 집행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대표는 부단히 발전하는 중국경제의 특징과 외상투자기업과 사영부문의 경제에서의 중요한 작용을 강조하고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이미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외상투자기업과 민영기업이 중국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상투자기업과 민영기업과의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유기업과 국가투자기업의 상업활동의 정책결정도 WTO 협정이 규정한 상업적 고려 (commercial consideration)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60)</sup>

57) *Ibid.*, p.35.

58) “자동차산업정책”중의 국산화요구, 자동차수입량 및 유형의 심사승인, 수출비율을 기준으로 한 용자여부 결정 등의 요구는 중국의 정책과 입법상의 수입대체 우대경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陳俊,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法制日報』, 2001年 9月 2日字.

59) 管仁林, *op.cit.*, (*supra* note 37), p.36.

60) *Ibid.*, p.39.

#### 4) TRIMS 협정관련

중국가입실무단 보고서 D.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책”(Internal Policies Affecting Foreign Trade In Goods) 제203조는 “중국대표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때부터 의정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TRIMS협정을 전면적으로 준수할 것이며 향후 TRIMS 협정 제5조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외환평형과 무역평형요구(foreign-exchange balancing and trade balancing requirements), 현지물품사용요구(local content requirements) 및 수출실적요구를 폐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관련 주무기관도 이러한 요구가 포함된 계약조항을 당사자들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강요할 수 없게 되었다.

輸入과 투자에 관한 배분, 허가 또는 권리(allocation, permission and rights for importation and investment)는 국가 또는 지방(sub-national authorities)당국이 정하는 실적요구(performance requirement)의 이행을 조건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예컨대 연구의 수행, 벌충(offsets)의 제공 또는 - 특정된 유형 또는 수량의 사업기회를 포함하는 - 기타 형태의 산업보상(industrial compensation)의 제공, 현지투입물의 사용 또는 기술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간접적인 조건이 붙어서도 아니 된다. 투자의 허용, 수입허가, 쿼터 및 관세율 배정 등은 경쟁하는 중국 국내공급자의 존재를 고려하여 허용될 것이다.

WTO 협정과 중국가입의정서상의 의무와 일치되는 범위내에서 중국은 기업계약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다. 한편 정부의 자동차 부문에 관한 산업정책의 논의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표는 이러한 정책의 WTO 규칙 및 원칙과의 양립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정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실무작업단은 이러한 약속에 주목하였다.<sup>61)</sup> 중국의 대표는 생산이 허용되는 차량의 유형, 형식 또는 모델을 제한하는 자동차제조업자에게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점진적으로 폐지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변경을 할 것임을 부언하였다.

그러한 조치들은 가입 2년후 완전히 제거될 것이며 이로써 자동차제조업자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유형, 형식 및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을 보장받게

---

61) 제204조.

될 것이다. 다만, 정부에 의한 차량 유형의 승인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트럭과 버스, 경상용차 및 승용차(다목적 차량과 스포츠용 차량을 포함)들을 구별하여 행하여질 것이다. 실무작업단은 이러한 약속에 주목하였다.<sup>62)</sup> 중국의 대표는 중국이省政府 차원에서 승인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투자 한도액을 현재의 미화 3000만 달러에서 가입 1년후 6000만 달러, 가입 2년후 9000만 달러, 가입 4년후 1.5억 달러까지 인상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sup>63)</sup>

### 3. 중국의 부문별 시장개방일정

#### (1) 비관세 장벽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허가증 관리(35종 373개 품목)</li> <li>○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제품 입찰 실시(6종 116개 품목)</li> <li>○ 수입쿼터관리(28종 245개 품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가입 5년후 수입허가증제 취소</li> <li>● 가입 4년후 非정부 구매 기계전자전기 제품 입찰제 취소</li> <li>● 가입 5년내 모든 쿼터제 점진 취소</li> </ul>

\*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월 15일부로 22개종의 기계전자전기제품에 대해 비관세장벽(쿼터관리, 특정품목관리 등)을 취소함.

#### (2) 관세 장벽

현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 평균 관세율 17%</li> <li>○ 농산품 평균 관세율 1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산품 관세율 2005년까지 9.4%로 인하</li> <li>● 농산품 관세율 2004년까지 17%로 인하</li> <li>● 중국은 WTO가입후 정보통신기술협정(ITA)에 서명하고 ITA 적용품목중 2/3 에 대해 2003년 1월 1일까지 관세폐지, 잔여분은 2005년 1월 1일까지 관세폐지</li> <li>● 자동차 관세는 현행 80~100%에서 2006년 7월까지 25%로 인하, 같은기간 중 부품은 23.4%에서 10%로 인하</li> <li>● 중국은 밀, 옥수수, 쌀 등 민감품목에 대해 'tariff-rate quota system' 및 'state trading' 적용</li> </ul>

62) 제205조.

63) 제206조.

(3) 투자 조건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독자.합자기업은 계약서상에 외환수지 균형, 수출/내수판매 비율을 명시, 정부의 심사를 득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RIMs 시행</li> <li>● 외환수지균형 요구 폐지</li> <li>● 각 지방별 강제요구 규정 폐지</li> <li>● 수출의무비율 폐지</li> </ul>

(4) 대외무역권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투자 제조업체 및 소업체는 자사 영업범위내에서만 수출입권 보유, 기타 제품의 수출입 대리권은 불인정</li> <li>○ 상하이(浦東), 선전(深圳)의 합자무역 회사에 한해 각종 제품 수출입권 인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WTO 가입 3년 이내 점진적으로 대외무역권 부여</li> </ul>

(5) 유통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도 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선전(深圳) 소재 합자무역회사 및 개방 시범도시 소재 합자소매업체에 한해 외국생산제품의 중국내 유통 허용</li> <li>○ 외국인기업의 타사제품 도매 금지</li> <li>○ 4개 직할시에 한해 외국인 소수지분 합자도매업체 각 1개 사 설립허용</li> <li>○ 외국기업의 유통망, 도매점, 창고시설 소유 및 경영 금지</li> </ul>	<p>▶도 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기업의 식염, 연초 도매업은 불용</li> <li>● 2005년 1월 이전 합자기업의 화학비료, 석유제품, 원유 유통 허용. 2003년1월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약품, 살충제, 제초(除草)필름 유통 허용</li> <li>● 2002년1월 이전 합자기업의 외자 다수 지분 허용; 유통업체 진출지역 및 수량 제한 폐지</li> <li>●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내 제조상품 유통 및 관련 서비스 제공 허용</li> <li>● 외국서비스업자의 유통상품 관련 서비스 전면 허용(A/S 포함)</li> </ul>

제 2 장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의무와 그 이행을 위한 법제정비 동향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 소 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성 성도(省都),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일시, 경제특구에 한해 합자소매업체 '제한적' 허용</li> <li>○ 3개 이하 분점보유 합자소매업체의 외국측 지분 65% 허용. 분점 3개 초과 시에는 중국측 다수 지분 요구</li> <li>○ 합자소매업체의 도매업 가능(별도승인 건)</li> </ul> <p>▶ 프랜차이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8년 4월부터 내외자(内外資) 기업의 직판(direct sales) 금지</li> </ul>	<p>▶ 소 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초(煙草)는 개방대상에서 제외</li> <li>● WTO가입후 5개 경제특구, 北京, 上海, 天津, 廣州, 大連, 青島, 鄭州, 武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li> <li>● 北京, 上海는 합자소매업체 4개 이하 허용. 기타 도시는 2개 이하로 제한</li> <li>● 北京소재 합자기업 2개사의 北京내 분점설치 허용</li> <li>● 2002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 및 각 성 성도(省都), 重慶, 寧波에 합자소매업체 허용</li> <li>● 2003년 1월 이전 소매유통업의 지역, 수량, 주식보유비율 제한규정 폐지</li> <li>● 외국 유통업체 점포면적 20,000s/m 미만 제한규정 폐지(中-EU 타결안)</li> </ul> <p>▶ 프랜차이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3년 1월 이전 모든 제한규정 폐지</li> <li>● 향후 직판활동 관련 조례·규정 제정시 WTO 회원국들과 논의</li> </ul>

(6) 운송 및 관련 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 철도·도로 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허용</li> <li>● 2003년 1월 이전 외국인독자 도로운송 업체 설립 허용. 2006년 1월 이전 외국 인 독자 철도운송업체 설립 허용</li> </ul>

제 3 절 중국의 가입의정서 ·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 화물운송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측 지분율 50% 미만으로 제한</li> <li>○ 극히 제한적 · 예외적 범위내에서 외국 인 단독투자업체 설립 허용</li> <li>○ 합자기업 설립허용지역 제한</li> <li>○ 절대다수 합자기업은 국제화물운송 영업만 허용되고 극소수만이 국내화물 운송영업 가능</li> </ul> <p>▶ 항공기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기업내 외국측 소수지분만 허용</li> </ul>	<p>▶ 창고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입과 동시에 외국측 소수지분 합자기업 설립허용</li> <li>● 2003년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li> </ul> <p>▶ 화물운송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li> <li>● 2004년 1월 이전 외국유통기업의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li> <li>● 합자기업 설립 1년후 지사설립 허용 (등록자본금 US\$ 12만 추가 요구)</li> <li>● 합자기업 최초 설립 5년후 합자기업 추가설립 허용</li> <li>● (합자기업의 업무범위를 국제운송으로 제한하는 규정 없음)</li> </ul> <p>▶ 항공기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기업내 중국측의 지배지분 요구</li> <li>● 영업허가증은 경제상황에 따라 발급</li> <li>● 국내기업과 달리 합자기업은 국제시장 업무 수행 의무</li> </ul> <p>▶ 특사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측 다수지분 점진 허용</li> <li>● 2004년1월 이전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li> </ul>

(7) 통신, 인터넷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업체도 보유(또는 경영)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경쟁원칙 도입</li> <li>● 부가서비스(인터넷 포함)</li> </ul>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선호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후 上海, 廣州, 北京에 외자 지분을 30% 초과 합자기업 설립 허용</li> <li>● 成都, 重慶, 大連, 福州, 杭州, 南京, 寧波, 青島, 瀋陽, 深圳, 廈門, 西安, 太原, 武漢 등지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을 49%까지 허용</li> <li>● WTO 가입 2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을 50%까지 허용</li> </ul> </li>   <li>▶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을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허용</li> <li>● WTO 가입후 1~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을 허용범위를 35%로 인상</li> <li>●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을 49%까지 허용</li> </ul> </li>   <li>▶국내 및 국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上海, 廣州, 北京에 외국지분을 25%의 합자기업 설립 점진허용</li> <li>● WTO 가입후 1~3년내 대상지역을 기타 도시로 확대하고 외국지분을 허용범위를 35%로 인상</li> <li>● WTO 가입 3년후 지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외국지분을 49%까지 허용</li> <li>● WTO 가입후 1~3년내 통신회선 임차 허용, 외국기업의 국내외 기업에 대한 재임대 허용</li> </ul> </li> </ul>

(8) 은행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외국계은행은 외국기업과 외국 인대상 외환업무에 종사</li> <li>○ 일부 외국계은행은 제한된 범위내에서 외국기업/외국인대상 위엔화업무 실시</li> <li>○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중국인대상 영업 금지</li> <li>○ 외국계 독자/합자은행 설립 허용</li> <li>○ 모든 주요 도시에 외국계은행 지점 각 1개 설치 허용(자산 US\$ 200억 이상)</li> <li>○ 외국계은행의 자회사 설치 허용(자산 US\$ 100억 이상)</li> </ul> <p>▶ 위엔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하이 및 선전 소재) 32개 외국계은행이 위엔화 영업허가증 보유</li> <li>○ 상하이(上海), 선전(深圳)지역 외국기업/외국인 상대의 제한적인 위엔화 영업</li> <li>○ 선전소재 외국계은행은 廣東·廣西·湖南 지역 고객상대 영업 가능</li> <li>○ 중국내 3년이상 영업기록과 최근 2개년도 흑자경영일 경우에 한해 위엔화 영업 허가증 신청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격한 심사관리기준 적용</li> <li>● 심사기준에 부합되는 모든 외국계은행에 대해 위엔화업무 허용</li> <li>● 2003년까지 23개 도시 개방</li> <li>● WTO 가입 5년 이내 모든 지역 및 고객 제한규정 폐지</li> <li>● 2005년 1월까지 외국계은행의 소유권, 경영 및 법정형태 등에 관한 제한규정 폐지</li> <li>● 중국계은행과 동시에 외국계은행에 대해서도 금융리스업무 허용</li> <li>●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동차 할부금융 업무 허용</li> </ul> <p>▶ 외환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후 외환업무의 지역제한 규정폐지</li> <li>● WTO 가입후 외국계은행의 중국기업/중국인 대상 외환업무 허용</li> </ul> <p>▶ 위엔화업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 5년 이내 위엔화업무 지역 제한규정 단계적 폐지 [上海·深圳·大連·天津], [廣州·青島·南京·武漢], [濟南·福州·成島·重慶], [昆明·珠海·北京·廈門], [汕頭·寧波·瀋陽·西安] 순으로 폐지</li> <li>● WTO 가입 2년내 중국기업, 5년내 일반 가계대상 위엔화영업 허용</li> <li>● 한 지역에서 위엔화영업이 허용된 외국계은행은 다른 개방지역 고객에 대한 서비스도 가능</li> </ul>

(9) 보험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여개 외국계 보험회사가 영업중이나 지역 및 업무영역에 엄격한 제한</li> <li>○ 1997년부터는 합자보험회사만 허용 (외국인독자보험회사 설립은 극히 제한적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li> <li>○ 외국계 보험회사는 상하이와 광저우(廣州)에서만 영업 가능</li> <li>○ 각 도시별로 지점 1개 사만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후 5년내 지역제한규정 폐지, 외국 독자보험회사 설립 허용. 주요도시 2~3년내 진출 허용, 단체·건강·연금 등 보험업무 영역 확대</li> <li>● 기존 외국 손보사의 전국영업 허용, 향후 외국측지분 51% 허용</li> <li>● 재보험 100% 외국인 단독지분 허용</li> <li>※ 중-EU간 타결안은 상기 중-미 타결안의 주요 개방일정을 2년 앞당김</li> </ul>

(10) 증권업 및 자산관리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계 증권회사는 외국인전용 B株만 거래 가능</li> </ul> </li> <li>▶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기업의 자산관리업무 참여 불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증권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후 3년내 합자증권회사내 외국측지분 33% 허용</li> <li>● 중국 중개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A株, B株, 국채, 사채 업무 허용</li> </ul> </li> <li>▶자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후 증권투자기금관리 합자 기업 설립 허용(단, 외국측지분은 33% 를 초과하지 못하나 3년 경과후 49% 까지 확대 가능함)</li> </ul> </li> </ul>

(11) 전문 서비스업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계 로펌은 중국법률 관련 업무 종사 금지</li> <li>○ 아래 지역에 영리성 사무소 설치 가능 : 北京, 上海, 廣州, 深圳, 海口, 大連, 青島, 寧波, 煙台, 天津, 蘇州, 廈門, 珠海, 杭州, 福州, 武漢, 成都, 瀋陽, 昆明</li> <li>○ 외국계 로펌의 중국내 사무소는 기업 별 1개로 제한</li> </ul> <p>▶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합자 회계사사무소는 존재하지만 최근 추가 인가사례는 없음</li> <li>○ 외국계 회계사사무소는 외국기업 및 해외증시/중국 B증시 상장 중국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가능</li> <li>○ 외국인에 대해서도 중국 CPA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인증 후 서비스 제공 가능</li> </ul>	<p>▶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 설치 지역/수량 제한 폐지</li> <li>● 외국계 변호사사무소는 중국이외 지역 에서 연속 3년이상 영업경험 필요</li> <li>● 외국계 변호사는 매년 중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구</li> <li>● 외국계 로펌의 사무소는 중국인 등록 변호사 고용 불가</li> </ul> <p>▶회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CPA 자격 획득후 회계사무소 설립 가능</li> <li>● 중국 CPA 자격획득 외국인에 대한 내국인 대우실시</li> <li>● 외국 회계사무소는 중국 회계사무소와 제휴 가능</li> <li>● 본지화(本地化) 요구 강제규정 폐지</li> </ul> <p>▶도시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li> <li>● 외국을 대상으로한 관련서비스에 대해 서는 중국 전문단체와 협력 요구</li> </ul> <p>▶의료서비스(치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 병원 및 진료소 설립 허용</li> <li>● 중국의 필요에 따라 합자 의료기관 숫자 제한 가능</li> <li>● 의사 및 의료진 대부분은 중국국적자로 구성</li> <li>● 외국인 의사는 위생부 허가증 취득후 중국에서 단기적(6~12개월)으로 의료 활동 가능</li> </ul>

(12) 상업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광고 ○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 49%로 제한</p>	<p>▶세무서비스 ● 외국인 다수지분 합자기업 설립 허가, 2005년 이전까지 외국인독자기업 허용</p> <p>▶컴퓨터서비스 ● 자격요건 부합 엔지니어 또는 학사 학위 소유자로서 3년이상 유경험자에 대해 중국내 서비스업무 허용 ● 하드웨어 인스톨레이션 관련 컨설팅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조치 없음 ●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처리 서비스는 독자기업을 제외한 합자기업에 한해 영업허용</p> <p>▶부동산서비스 ● 외국인독자기업의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업무 허용(단, 호화부동산은 제외) ● 합자기업에 대해 수수료 또는 계약 체결방식의 서비스 허용</p> <p>▶광고 ● 2002년 1월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인정, 2004년 1월이전 외국인독자기업 인정</p> <p>▶기술 테스트 및 분석 서비스, 화물검사 ● 화물검사 서비스에 법정(法定) 화물 검사업무는 미포함 ● 2002년 1월이전 합자기업내 외국측 다수 지분 허용. 2004년 1월이전 외국인 독자 자회사 설립 허용 ● 합자기업의 외국측 파트너에 대해 3년 이상의 영업경험 보유 요구. 합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US\$ 50만 이상</p>

(13)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기업에 한해 허용</li> <li>● 중국건축기업과 합자건축기업에 대한 등록자본금 요구조건은 별도 관리</li> <li>● 합자건축기업에 대해 외국인투자 건축 프로젝트 수주 의무화</li> </ul>

(14) 시청각 부문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10편의 외국영화 수입</li> </ul> <p>▶영화상영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소수지분 조건하에 영화상영권 설립 허용</li> </ul>	<p>▶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익분담원칙에 따라 매년 20편의 외국영화 수입</li> </ul> <p>▶시청각제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기업 설립후 영화를 제외한 시청각 제품 유통 허용</li> </ul>

(15) 관광

현 행	주요 개방일정 및 내용
<p>▶호텔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기업내 외국측 지분율 25% 이상</li> </ul> <p>▶여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자여행사내 외국측 소수지분 요구</li> <li>○ 합자기업의 외국측 연간 매출액 US\$ 5,000만 이상 요구</li> <li>○ 합자기업 등록자본금 US\$ 500만 위안 이상 요구</li> <li>○ 합자여행사의 영업범위는 중국 국내로 제한하며 해외(출국)여행은 불허</li> </ul>	<p>▶호텔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TO 가입후 외국측 지배지분 허용</li> <li>● 2003년까지 외국인 독자호텔 설립허용</li> </ul> <p>▶여행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 휴양지내 영업 허용 (北京, 上海, 廣州, 西安 등)</li> <li>● 2003년 1월 이전 외국측 다수지분 허용</li> <li>● 2005년 1월 이전 외국인독자기업 허용</li> <li>● 2005년 연말이전 지사설립 제한규정 폐지</li> </ul>

(16) 기타 서비스

- 1) 교육서비스 : 법률과 규정에 명시된 특수교육을 제외한 기타분야에서 합자학교 설립허용
- 2) 환경서비스 : 합자기업에 대해서만 허용
- 3) 기타 금융서비스 : WTO 가입후 금융정보·데이터·자문 서비스 허용<sup>64)</sup>

4.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에 대한 평가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체제가 구축된 단계가 아니라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관련 국내법을 완전히 WTO 규범과 단기간에 조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WTO 규칙에는 “각회원국은 자신의 법률, 법규 및 행정절차가 WTO 각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sup>65)</sup>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내에서 WTO 규칙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며 그 내용을 국내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도 일부 WTO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일부 법령들을 폐지, 개정하였으며 일부 새로운 법률들도 제정하였다.

WTO 가입의정서에서는 섭외경제무역의 법률, 법규 기타의 조치(이것은 대단히 넓은 개념이다)의 투명성을 요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오랫동안 내부분건 및 고위층에 의한 심사승인 관리경제에 의존하여 왔지만 투명성이 요구됨으로써 이러한 폐단은 시정되어야 한다. 가입의정서는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소를 허용하고 사법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66)</sup> 법원,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중국법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sup>67)</sup>

64) 중국의 시장개방약속에 대하여는 管仁林, *op.cit.*, (*supra* note 37), p.244-272.

65) 제6조.

66) 이에 대해서는 江偉·王景琦, “WTO協議與中國民事司法制度的完善”, 『中國法學』, 2001年 1期(總 第99期), pp.28-36.

67) 趙維田, “解讀入世後的法律問題”, 『法制日報』, 2002年 5月 16日字.

한편 중국의 가입의정서에 나타난 민감한 조항에 대해 살펴보자.<sup>68)</sup> 먼저 새로 추가된 무차별원칙이다. 무차별이라 함은 최혜국대우와 국민대우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는데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제3조는 WTO협정에는 원래 존재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수혜대상을 추가시키고 있다. 즉 “외국의 개인 · 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이 그것들이다. 새로운 수혜범위는 상품생산 · 판매과정중의 필요한 원자재 · 반제품 · 서비스 및 운수 · 기초통신 · 에너지 분야 및 기타 생산요소 등의 제공 · 구매 · 가격에 대해서까지 미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경제의 일체화속에서 다국적 기업과 외국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sup>69)</sup>

다음으로 중국에 가장 유리한 조항으로서 가입의정서 제6조의 국영무역 (state trading) 관련 내용이다. 국영무역이란 실제적으로 국가가 무역을 독점하는 특수한 형식이다.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에는 “국영무역기업”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가입의정서 제6조는 중국이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는 국가독점무역상품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문서 2A state trading항에서의 수입상품에는 소맥, 옥수수, 보리, 豆油, 화학비료, 면화 등 84종 그리고 수출상품에는 차, 대두 등 88종이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국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중국에 가장 유리한 내용이다.

한편 중국에 가장 불리한 조항은 과도기간동안의 외국의 중국수출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에 관한 것이다.<sup>70)</sup> 원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는 다음 4가지 요건 또는 표준이 포함된다. 즉, 첫째, 어떤 상품의 수입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 둘째, 수입국의 동일상품 생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 셋째, 당해 국가는 관세인상 또는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러한 조치는 당해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 상품의 원산지는 불문하는 것이므로 수출량이 많은 몇 개의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할 것(즉 선택성

68) *Ibid.*

69)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李雙元 · 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95-98 참조.

70) 이에 대해서는 楊國華, “WTO與保障措施基本法律問題研究”,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514](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514).

이 없음). 넷째,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른 방면에서 수출국에 대하여 상응하는 보상을 할 것(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은 보복을 할 권리가 있음) 등이다.

그러나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16조의 “과도기적인 특정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상기 4가지를 요건 또는 표준으로 하면서도, “시장교란”이 발생한 경우 당해 국가는 (1) 중국으로부터 수입상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 자국의 동종상품 생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를 초래하였음(원래의 “심각한 피해”(significant injury)보다는 한 단계 낮은 개념이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선택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2년 내지 3년 동안 중국은 보복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또한 당해 국가의 제한조치로 수출이 막힌 중국의 상품이 다른 국가인 乙國 및 丙國으로 수출되는 경우, 乙國, 丙國 등의 국가는 중요한 무역의 방향전환(significant diversion of trade)이 있음을 증명하기만 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sup>71)</sup>

한편, 중국은 무역투자정책검토제도(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TPRM)와 관련하여 경제력에 걸 맞는 무역정책 검토간격(2년이 아닌 4년)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중국의 WTO 가입실무단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장개방 및 자유무역규정에 대한 준수사항 점검을 매년 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불리한 점이라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제 4 절 WTO가입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법제정비작업

### 1. WTO가입이 중국법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이 WTO가입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대외개방을 하여 세계각국과의 경제·과학기술·문화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선진 문물을 흡

71)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이러한 제도가 12년(過渡期)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유효할 뿐만 아니라, 法理上으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다. 즉 “시장교란”과 “무역방향전환”을 구실로 중국의 특정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6조는 대단히 중국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Ibid.*

수하고 차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었다.<sup>72)</sup> 즉, “WTO가입은 첫째, 중국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안정적 외부환경 조성, 국제경제활동규칙의 형성과 정비에 직접 참여, 신국제경제질서 형성 추진 및 중국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유리하다. 둘째, 중국이 평등하게 다른 국가와 경제무역활동을 하고 시장다원화 전략의 실시를 촉진하고 수출을 확대하는데 유리하다. 셋째, 국내관련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자를 도입하는데 유리하다. 넷째, 경제체제개혁을 촉진하고 경제구조의 전략적인 조정과 진보를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유리하다”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sup>73)</sup>

그러므로 WTO 가입은 전체적으로 중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되고, 중국의 개혁개방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WTO 협정의 각종 규칙이 선진국들의 주도하에 제정된 것이므로 완전히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어찌되었건, WTO협정은 광범위하게 회원국들의 경제·정치·사회생활에 개입하게 되며 그 영향은 전면적이고 심각하고 장기적인 것이다. WTO는 강제성 규칙을 기초로 하는 국제조직이기 때문에, WTO에 가입하게 되면 WTO 협정의 규율과 의무를 수락하고 무역정책심의제도와<sup>74)</sup> 분쟁해결제도를 통하여 WTO 및 그 회원국들의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WTO 협정이 회원국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논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정관리제도에<sup>75)</sup> 미치는 영향이다. WTO의 다변적 무역체제는 상품무역분야의 법률규칙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관할범위를 서비스무역·지적재산권·<sup>76)</sup>투자활동 등 광범위한 영역에까지 확대하고 있

72) 보다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李徑敬·蔡偉文·朱建農·楊琴, *op.cit.*, (*supra* note 15), pp.69-73 참조.

73) 楊景宇, *op.cit.*, (*supra* note 26).

74) 이에 대해서는 方洁·楊國華, “WTO對成員貿易法律制度的透明度要求”, 『法學雜誌』, 2001年 2期(總 125期). p.29.

75) 이에 관한 중국의 논문과 저서는 대단히 많다. 대표적인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江必新, 『WTO與行政法治』, (北京: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1); 石佑啓, “WTO與中國行政法治建設的影響”, 『中國法律』, 2001年 1期(總 第99期), pp.11-23; 揚解君, “WTO加盟餘中國行政法的任務”, 『中國法學』, 2000年 6期(總 第98期), pp.3-12.

76) WTO의 知的財産權協정이 회원국의 법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楊國華, “世界組

다. 실제로도 WTO 협정상의 규칙들은 전통적으로 국내법의 조정범위에 속하고 있던 각종 영역까지 다루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 후 WTO 협정을 준수하고 WTO 가입과 관련하여 수락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WTO 협정을 충분히 이용하여 그로 인한 혜택도 얻고자 할 것이다.<sup>77)</sup>

WTO가입은 중국 정부의 경제관리방식·기업경영제도·경제운용규칙 및 환경 등에 대해 일대 심각한 혁명을 가져오게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정치·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sup>78)</sup>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부담하게 된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법제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게 될 것이다.<sup>79)</sup> 국제적인 경제통합의 시대에 개개의 국가의 법제에 대해 국제관계가 미치는 영향은 법의 세계화과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국내법의 형성이 당해 국가의 통제밖에 있는 다양한 힘에 의하여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경험적 증거가 되고 있다.<sup>80)</sup>

어찌되었건 WTO가입은 중국의 법치국가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WTO가입에 대한 근본대책은 依法治國의 원칙을 성실하게 관철하고 중국의 시장경제법률체계를 완비하여 시장경제의 수요와 WTO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81)</sup> 사실, WTO 가입으로 인하여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법률제도의 완비이다.<sup>82)</sup>

---

織對成員法律制度的影響-知識產權協議規定的義務”, 『法學雜誌』, 2000年 4期(總 121期), pp.16 이하 참조.

77) 楊景宇, *op.cit.*, (*supra* note 26).

78) 이에 대해서는 曹建明·賀小龍, “加入WTO與我國對外經貿立法”, 『中國法學』, 2000年 1期(總 第93期). pp.7-16 참조.

79) 이 분야에 관한 중국 학자들의 소개는 대단히 많고 다양하지만 WTO협정의 국내적 실시 문제에 따른 법리와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于安, “WTO協定的國內實施問題”, 『中國法學』, 2000年 3期(總 第95期) 및 周忠海, “對中國入世“的法律思考”, 『政法論壇』, 2000年 2期(總 第92期) 등이 참고할 가치가 있다.

80) 이와 관련된 한 분야로서 중국 중재기구의 민간성 강화, 임시(*ad hoc*)중재 도입, 중재기구의 전문성 강화, 중재인의 책임제도 도입 등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관해서는 肖永平·胡英慶, “加入WTO與我國仲裁法律制度改革”, 『中國法律』, 2001年 2期, (總 第100期), pp.13-19.참조.

81) 劉弓強, *op.cit.*, (*supra* note 7).

82) WTO가입이 중국의 주요 분야 입법에 대해 미칠 영향에 대한 소개는 張桂紅,

이것은 바로 경제체제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시장경제법률체계를 정비하여 야 함을 의미한다.<sup>83)</sup> 한편, 지금까지 중국이 제정한 외상투자관련법률, 법규는 200여개에 달하며 각지방도 대량의 외상투자관련 지방성 법규를 제정 하였으며, 현재 이들 법률, 법규와 지방성 법규의 각종 규정을 어떻게 원활 하게 조화시키고 통일시키느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WTO가입의 요구에 근거하여 “3대 외자법”중의 초국민대우와 내국민대우를 어떻게 조 화·수정·통일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sup>84)</sup> 또한, 환경, 노동, 상품품질 등의 분야에 관한 법령도 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환경법중에 일부 오염지 수기준을 제정하고 일부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자진입제한기준을 마련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WTO가입과 중국경제법령 정비현황

### (1) 기본방향

WTO가 국내규범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의 대외무역법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중국의 대외경제법제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중국경제 개혁이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볼 때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외국인 투자와 경제교류를 규율하는 주요 법령의 시행은 새로운 경제법제의 확립의 선봉장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1980년대 개혁이 시작된 이후 나타난 모든 법제도중에서 외국인투자자와 관련된 것들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여 왔다.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 세율의 통일은 1991년 외국인투자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도입되었다.

중국이 경제법제도 정비의 초기단계에서 GATT/WTO 관행을 채택하게 되면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국제규범에 기초한 법제도를 확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sup>85)</sup> 또한, 중국은 WTO 가입과 더불어 “내국민 대

“WTO對中國法律的影響”，『中國法學』，總第102期(2001.4)，pp.182-185 참조.

83) 王利明，“建立合作與競爭的規則”，『法制日報』，2002年 5月 16日字.

84) 중국으로서는 지방정부의 WTO 규범위반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지방정부의 WTO 규칙에의 부합성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다. “從法律上制度上迎接入世”，『法制日報』，2001年 12月 11日字.

85) 그러한 관행은 중국의 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적극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우” 및 “시장 접근(market access)” 등의 WTO 규정 준수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내국인 대우와 관련하여서는 ① 외자유대 정책 개선, ② 외자 관련 법규 정비, ③ 지적소유권 보호 관련법 정비 등, 그리고 시장 접근과 관련하여서는 ① 정부·행정 개혁(금융, 외환 등 제도)의 추진, ② 무역·투자 관련 정보의 공개, ③ 법체제 및 운영 절차의 정비·개선, ④ 부정부패 단속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sup>86)</sup>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외국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철폐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도매업종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불허하고 있으며, 소매업종에 대해서도 “1盛 1企業”의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WTO 가입후 3년이내에 상당 부분을 완화해야 하며, 5년후까지는 외자기업의 진입을 완전자유화해야 한다. 둘째, 중국 유통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외국투자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WTO 가입에 따라 선진국 유통기업의 중국진출이 가속화될 것이고, 이들 기업과 중국 기업간의 합작투자도 증가할 것인 바, 중국 유통시장은 선진 경영기법의 도입과 함께 외국기업(합작기업 포함)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sup>87)</sup>

## (2) 국가와 지방정부의 법제정비작업

### 1) 정비 원칙

중국은 WTO 협정 및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

---

이 1970년대말 최초로 외부세계에 대한 개방정책을 시행하였을 당시에는 30년동안 행정통제가 실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교류에 관한 이렇다 할 법제도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경제체제에 관한 법제도의 부존재가 중국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법구조 또는 관습에 의한 제한을 크게 받지 아니하고 쉽게 가장 최근의 국제관례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한 측면도 있었다. 그 결과 중국의 현행 경제법 구조는 비록 완전하지도 않고 또한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상당 부분이 서방세계에서 최선이라고 여겨지는 원칙과 관행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법은 GATT의 원칙과 관행을 거의 답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첩외경제계약에 관한 법령의 내용들도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지적재산권보호에 관한 법률들은 유럽국가들 특히 독일제도와 대단히 유사하다. 1993년 12월 공포된 회사법 역시 영미법제와 대륙법제를 혼합한 것이다.

86) 李徑敬·蔡偉文·朱建農·楊琴, *op.cit.*, (*supra* note 15), pp.73-84.

87) 이에 대해서는 史樹林, “入世“影響我國外貿制度的幾個問題,” 『法學雜誌』, 2001年 21期(總 第125期), p.5 이하 참조할 것.

내용에 근거하여 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국의 법률·법규·규장 및 기타 조치들을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up>88)</sup>. 이는 중국이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인 동시에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1999년 이후 중국은 무역에 관련된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법규·규장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정비작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왔는 바, 그러한 정비작업은 WTO 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고 그와 동시에 依法行政을 관철한다는 원칙하에 현행 법령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들을 분석하여 WTO 가입이후 중국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와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 및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폐지·개정할 것인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할 것인가, 잠정적으로 보류할 것인가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작업은 입법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2) 국가의 법령 정비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공동으로 법률 및 관련 법률문제의 결정 20건을 심의·통과시켰다. 그중 시장경제분야의 법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葯品관리법》(개정), 《민족자치법》(개정), 《중외합자경영기업법》(개정), 《稅收徵收관리법》(개정), 《신탁법》, 《상표법》(개정), 《저작권법》(개정), 《법관법》(개정), 《검찰관법》(개정), 《해역사용법》(개정), 《변호사법》(律師法)(개정) 등이다. 200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작업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입법수량이 대규모라는 점이다. 공동심의를 통하여 법률안 16건, 법률해석 1건, 법률문제관련 결정 3건을 통과시켰다. 둘째 통과된 법률과 법률문제관련 결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이들 법률안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완비를 위한 것도 있고 기본정치체제의 완비를 위한 것도 있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 특히 법률이 WTO 규칙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2001년 《중외합자

---

88) WTO협정 제16조 제4항.

경영기업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셋째 개정법률의 수량이 새로 제정하는 법률의 수량보다 많다. 16건의 법률안중 10건은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 입법공작과 개혁개방의 과정이 서로 상응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sup>89)</sup>

2001년 국무원이 공포하거나 승인한 행정법규 및 규범성 문건은 모두 104건이었다. 국무원은 이미 2000년말 까지 756건의 행정법규에 대하여 대대적인 분석작업을 마친 후 그 주요 내용이 새로운 법률 또는 이미 개정된 법률, 당과 국가의 새로운 정책과 서로 모순되거나,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법규로 대체된 행정법규를 폐지하였다. 현재 중앙정부의 법령정비작업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정비작업의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은행 등 유관 부문들도 국무원의 주관 부서의 통일, 통일적인 법제준수, 무차별 및 공개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WTO 협정 및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법률, 행정법규, 규장<sup>90)</sup> 및 기타 조치에 대한 분석작업결과에 따라 부문 규장의 개정, 폐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sup>91)</sup>

국가계획위원회는 1992년의 가격법규 정비를 토대로 하여 2000년말 이전에 공포된 가격 규장 및 기타 규범성 문건 341건을 정비하여 그중 166건은 보류, 51건은 개정, 124건은 폐지하였으며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1991년부터 2000년말까지 현행 부문 규장 총 113건중 19건은 폐지, 56건은 보류, 38건은 개정을 하였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431건을 정비하였는 바. 그중 대외경제무역 관련 법률은 6건, 행정법규는 164건, 부문 규장 887건, 쌍무적 경제무역협정은 191건, 쌍무적 투자보장협정은 72건, 이종과세방지협정은 93건이다.

89) 자세한 내용은 張德霖, 『中國加入WTO經濟法律調整概覽』, (北京:法律出版社, 2002), p.4.

90) 최고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이 제정하는 법형식을 행정법규라고 부르며, 규장이라 함은 국무원의 각 부문이 제정하는 부문규장과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지방 규장을 말한다. 지방성 법규라 함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성, 자치구 정부 소재시, 경제특구 소재지 시 및 국무원이 승인한 비교적 큰 시의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한다. 劉和海·李玉福, 『立法學』, (北京: 中國檢察出版社, 2001), pp.36-37.

91)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5.

한편, 60건의 법률문서 개정안을 작성하였는 바, 그중 48건을 개정·공포하였으며 기타 12건은 초안이 완성되어 있다. 또한 20건의 법률문건의 제정안을 작성하였는 바, 10건은 공포되었고 나머지 10건은 초안이 완성되어 승인절차를 거친 후 공포될 것이다. 중국은행은 1999년부터 2001년 6월 30일의 기간동안 공포된 금융규장과 규범성 문건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거쳐 3건에 대해서는 폐지를 결정하고 6건에 대해서는 실효를 선포하였다.<sup>92)</sup> 또한, 2001년 12월 12일에는 국무원령 제340호로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를 개정하였다.<sup>93)</sup> 국가공상총국도 2000년 이후 1,021건의 규장과 규범성 문건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고 WTO 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부합되고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3가지 기준에 따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이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600건의 사법해석과 사법해석성 문건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공포한 사법해석 및 규범성 문건 총 781건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진행하여 그중 140건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WTO가입이후 출현한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였다.<sup>94)</sup>

### 3) 지방정부의 법령정비

이와 같이 국가의 법령정비작업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성되었으며 2002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법규, 규장 및 규범성 문건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수립한 대외무역정책의 통일적 실시에 관한 대외적 수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2001년 9월 19일 《關於適應中國加入世貿組織進程，清理地方性法規，地方政府規章和其他政策措施的意見》을 공표하여 각급 지방정부의 법규정비

92) *Ibid.*, pp.2-3.

93) 胡建芳, “中國WTO加盟後の外資金融機構に對する法規制の動向-「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の改正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30, No.6(2002), p.789.

94)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3.

작업의 통일적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8월 3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대외경제무역부역관련 행정법규 및 규장 정비공작 좌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정부 외경무주관부문 좌담회를 소집하여 법규정비작업에 관한 논의를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1년 11월 5일 지방 외경무주관부문에 대하여 《關於適應中國加入世貿組織進程，清理地方性外經貿法規，規章的通知》를 하달하여 지방 外經貿 주관부문에 대하여 법규정비작업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sup>95)</sup> 이것은 지방 각급정부의 관련 정책조치가 중국이 대외 승낙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되는 대외경제무역 관련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sup>96)</sup>

### 3. 분야별 현황

#### (1) 대외상품무역 분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라 상품무역을 포함하는 중국의 대외경제무역의 국내입법은 국제규범 및 국제관례와 부합되어야 한다. 대외상품무역에 관한 법률규정은 이미 상당부분이 세계무역규칙의 관련 내용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하에서 중국의 국내입법의 개정과 정비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1994년 5월 12일 제8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은 중국 대외무역분야의 기본법이다. 그 입법취지는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대외무역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사회주의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여 중국상품무역자유화 등의 기본적인 대외무역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의 시행을 통하여 중국의 대외무역이 국제무역규칙, 특히 WTO법률체계와 부합되도록 하는 조건을 조성하고 아울러 대외무역활동을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마련되었다.<sup>97)</sup>

95) 이에 대해서는 胡振杰, “入世對地方法制建設的影響”, 『法制日報』, 2001年 11月 7日字.

96)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p.3-4.

97) 그러나 현행 대외무역법의 규정중에서도 WTO 규범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제2장에서 대외무역경영권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 대외무역경영권이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대외무역대리 기업에 무역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이러한 무역 허가제도는 등록을 하

중국의 《대외무역법》, WTO 협정 및 WTO 가입관련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고 중국의 상품수출입관리의 경험을 결산하여 2001년 12월 31일 《貨物進出口管理條例》를 제정하였는 바, 동 조례는 《進口貨物許可制度暫行條例》등 5건의 행정법규와 국무원 문건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또한, 2001년 12월 31일 국무원이 공포한 《技術進出口管理條例》는 《技術引進合同管理條例》와 그 《實施細則》을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 밖에도 《貨物進出口管理條例》와 《技術進出口管理條例》의 조화로운 실시를 위하여 2001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4건의 部門 規章을 제정하였는 바,<sup>98)</sup> 이러한 규장들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 부령으로 공포되거나 국무원 관련 부문과 연합하여 공포되었다. 예컨대, 《中國禁止進口,限制進口技術目錄》등 15개 상품·기술목록과 기업목록이 공포되었으며 《貨物進出口管理條例》의 시행을 위한 規章의 하나인 《紡織品被動配額管理辦法》이 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up>99)</sup>

## (2) 서비스무역 분야

### 1) 의 의

중국의 서비스무역분야 입법은 WTO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낙후되어 있으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중국의 일부 법령은 내용이 불합리하고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고 법령 상호간의

---

여 자동적으로 대외무역경영권을 획득하도록 하는 등록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장에서도 “상품의 수출입과 기술수출입”과 관련하여 국가가 그러한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제16조 제17조). 그 밖에도 WTO 규범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조항 몇 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즉 제 16조 제3항 및 제4항, 제19조, 제26조, 제29조 등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李 戡, “我國《對外貿易法》與WTO規則”, 『法學雜誌』, 2000年 6期(總 123期). p.33이하 참조.

98) 이러한 部門 規章은 《禁止進口,限制進口技術管理辦法》, 《禁止出口,限制出口技術管理辦法》, 《技術進出口合同登記管理辦法》, 《出口許可證管理條例》, 《出口商品配額管理辦法》, 《出口商品配額標準辦法》, 《貨物進口許可證管理辦法》, 《貨物進口指定經營管理辦法》, 《貨物自動進口許可管理辦法》, 《機電產品進口管理辦法》, 《機電產品出口標準辦法》, 《機電產品地球配額管理實施細則》, 《機電產品自動進口許可管理實施細則》, 《特定機電產品進口管理實施細則》이다.

99) 기타 자세한 내용은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9.

충돌도 극심하다.<sup>100)</sup> 서비스 무역일반협정은 단계적 자유화 등의 정책을 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비스무역의 경우 특히 금융, 보험, 법률서비스 시장, 증권, 여행, 기본통신, 상업소매, 항공 등의 부문에서 특히 관련법이 극히 낙후되어 있다.<sup>101)</sup> 그러나, 향후 중국이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련 입법이 향후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102)</sup>

한편, 중국에서 일련의 법제도 개선 및 제안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금융법제도이다.<sup>103)</sup> 현재 중국에서는 상업은행법·보험법·증권거래법 등에 의해 외국인의 금융분야에의 직접투자가 규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자금융기관에 관한 관리조례와 국무원의 관련 조례에 의해서도 개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혁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sup>104)</sup>

첫째, WTO가입후 외자계 금융기업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면치 못할 중국 금융기업의 구조개혁과 체력강화를 위한 구상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회사로의 전환 가속화, 비국유자본의 참여규제 완화 등을 통하여 국유상업은행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금융업의 통합재편·업무제휴·리스크 관리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전체가 건전하게 움직이도록 하고, 주식·채권 등에서 부터 생산관리·재무투자·가정은행·소비자금융·자산증권화에 이르는 금융방식의 다각화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sup>105)</sup>

둘째, 투자자와 소비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외자에 대한 금융감독체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외자계 금융기업에 대한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취지는 약자의 입장에 있는 예저축자와

100) 張桂紅, *op.cit.*, (*supra* note 82), p.184.

101) 이에 대한 중국의 기본적인 입법대응방안에 대해서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398-407 참조.

102) 張忠軍, “WTO與中國金融法制的完善,” 『中國法學』, 2000年 第3期(總 第95期), pp. 14-20

103) 중국 학자의 입장에서 본 중국 금융입법의 방향에 관해서는 江平, “關於金融立法的講演,” 『中國律師』 2001年 5期(總 第127期), pp.56-60.

104) 姜一春, *op.cit.*, (*supra* note 14), p.959.

105) 이에 관해서는 “Financial Reform in Chin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instreform/currentnews/secure/c00](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instreform/currentnews/secure/c00). 참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다.<sup>106)</sup>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심이 되는 감독기능을 종전처럼 유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한다는 금융정책의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감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자체가 안정 기준을 설정하고 정부가 설정하는 외자진출기준과 조건을 따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sup>107)</sup> 실제문제로서 WTO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금융 분야에 관한 개방 스케줄에 따라 중국은 외자은행에 관한 소유권, 경영과 설립방식, 지점 및 허가증 제도 등과 관련된 제한을 폐지할 것이지만, 외국금융기업의 중국 금융시장에의 참입에 대한 심사기준·조건은 여전히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sup>108)</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향후 외자계 금융기업에 관한 관리조례를 기초로 하여 외자가 참여하는 금융기업의 자본구조·수량·관리자 상황·업무범위·경영능력 등을 심사하는 기준·조건이 법제화가 필요하며 외자계 은행의 인민폐 취급업무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지역을 초월하여 인민폐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심사허가를 요구하고 그 경영방식의 합법성·자산리스크·자본충실도·유통자금과 준비금 등의 투명성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위법한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금융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09)</sup>

셋째, 외자계 금융기업들은 발달된 정보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 산업을 변모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전자이체·전자화폐 등의 중개시스템은 금융서비스의 이용자(user)와 자금의 제공자가 직접 연결되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종래보다 낮은 가격에 간편하게 자금의 흐름을 가능하게 한다.

106) 陳俊, “WTO所要의我國金融立法創新”, 『法學雜誌』, 2001年 4期(總 127期), p.43.

107) 張忠軍, *op.cit.*, (*supra* note 102), p.16.

108)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劉洋海, “入世對中國金融業的影響及其法律對策”,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0](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0).

109) 史樹林, *op.cit.*, (*supra* note 87), p.4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은 수년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금리의 변동, 금융·이체시장의 유동성과 리스크 등이 결합된 투기적이면서 복잡한 고도의 기술을 가진 외국의 금융기업과 그룹이 국제적인 금융 상황을 신속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경계를 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금융수단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한편, 정부의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수단의 공급자와 구조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도<sup>110)</sup> 제기되고 있다.

넷째, 보험분야의 경우에는 외국보험회사로 하여금 충분한 상환능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험금을 일정비율로 억제하면서 가입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총량규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금융시장은 차츰 전지구적 금융시장일체화의 행렬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외국금융기업들이 차츰 중국금융시장에 진입하여 여러 가지 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현재, 외국은행·외국보험회사의 중국자본회사와의 합자를 통한 일부 유통시장에의 진입, 중외합작투자기금의 설치 형식에 대한 허용, 중외합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중국국내증권시장에의 상장, 요건을 구비한 외국투자자에 대한 일정한 한도내에서의 중국국내주식시장 개방 허용 등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sup>111)</sup> 금융시장의 개방은 중국금융기업들로 하여금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쟁과 도전에 직면하게 할 것이다.<sup>112)</sup>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은 가능한 빨리 경제체제개혁의 행보를 서두르고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금융시장의 개방은 국제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운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으며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분야의 법률은 내용면에서 시장경제운용법제에 부합되어야 하고 더 나

110) 張忠軍, *op.cit.*, (*supra* note 102), p.18.

111) 이에 대해서는 劉文華(主編), 『WTO與中國企業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2001), 참조.

112) 최근 중국은행(BOC)은 중국의 WTO(WTO)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1천개 이상의 사무소를 폐쇄하였다. 국내의 정보기술(IT) 센터 숫자를 1천40개에서 110개로 감축했으며 2002년 5월까지 추가로 106개 사무소의 문을 닫을 계획이라 한다. BOC는 기술적 기반과 응용 소프트웨어의 불일치로 인한 낮은 정보 공유율 때문에 애를 먹어왔으며 IT센터 중앙집중화 프로그램은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해 취해진 전략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가 GATS협정과도 연계되어야 한다.<sup>113)</sup>

중국이 현재 구상중인 단계적인 금융시장개방조치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해서 또한 금융분야의 법률이 GATS협정에 한 걸음 다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현행 《상업은행법》, 《보험법》 및 《증권법》 등 관련법률이 국제관례와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투자기금법》과 《先物法》 등의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 중국금융분야의 법률이 건전해지고 완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전자상거래, 稅收 및 사회보장 등의 관련 시장경제분야의 법률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정비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중국자본기업과 외자기업 소득세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WTO가입후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함과 동시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무역 분야에서는 단계적으로 은행, 보험, 전신, 무역, 여행, 광고, 건축공정, 대외노무합작, 변호사 업무 등의 개방을 추진하여야 하며 외상투자에 대하여 내국인대우를 하고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법규를 정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sup>114)</sup> 한편 중국으로서 WTO 규칙이 허용하는 보호성 조치와 과도기를 어떻게 충분히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바, 중점 사업에 대한 경쟁력의 제고 및 국내 서비스무역 분야에 대한 충격의 완화에도 고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미 이상의 서비스 분야의 개방에 대비하여 일련의 행정법규와 부문 규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으며 WTO 규칙과 중국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현행의 전문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진입 금지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야 함으로 향후 대규모의 독자, 합자 또는 합작의 외상전문서비스기업이 설립될 것이다.

## 2) 금융업 분야

WTO의 가입 및 더 나아가 중국금융시장의 개방확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국은 지난 수년동안에도 금융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왔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13) 張忠軍, *op.cit.*, (*supra* note 102), p.18.

114) WTO 규범에서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들은 대단히 많다. 예컨대, GATT 제10조, GATS 제3조, TRIPs 제63조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方洁·楊國華, *op.cit.*, (*supra* note 74), pp.28-29 참조.

1995년 3월 1일 《중국인민은행법》을 제정하였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그에 뒤이어 《商業銀行法》, 《票據法》(어음수표법),<sup>115)</sup> 《保險法》, 《證券法》, 《擔保法》 등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국무원은 《外匯管理條例》, 《企業債券管理條例》 등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중국인민은행, 중국 증권감독회, 중국보험감독회 등이 일련의 規章을 제정하였다.<sup>116)</sup>

중국의 WTO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 및 은행감독에 관한 국제관례, 선진국의 국가감독정책과 감독경험 그리고 중국의 中資은행에 대한 감독정책과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 국무원은 《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를 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외국보험회사의 보험활동을 규율하고 보험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保險法》은 외자주식참여의 보험회사의 설립, 외국보험회사의 중국내 지점설치에 대해서는 동 법을 적용하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경우 그러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고 외자보험회사에 대한 감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22일 국무원은 《外商投資保險公司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sup>117)</sup> 동 조례는 외상투자보험공사의 설립과 등기, 업무의 범위, 영업증지와 청산, 감독관리, 법률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의 보험시장개방을 촉진하고 외자보험공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의 WTO 가입이후 단계적으로 보험과 금융업을 개방하여야 하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험법》과 《증권법》도 정비하여 시장경

115) 어음·수표법은 어음·수표제도를 규정하고 어음·수표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중국경제체제개혁이후, 어음수표제도는 차츰 회복되어 어음수표는 지불, 환어음, 신용, 상계채무 및 용자 등의 면에서 중요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작용을 발휘하여왔다. 1996년 1월부터 시행되어온 《중화인민공화국 어음·수표법》은 사람들이 날로 발전하는 거래중에서 더욱 빈번하게 더욱 원활하게 어음·수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음·수표가 가져야 할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 보장을 하였으며, 시장경제의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116) 이에 대해서는 張忠軍, *op.cit.*, (*supra* note 102), p.14-15.

117) 이에 대해서는 沙銀華, “中國WTO의加盟後外資保險公司に對する新しい法規則- 「外資保險會社の管理條例」の構造解明問題點(上)”, 『國際商事法務』, Vol.30, No.2(2002), pp.197-199 참조.

제요구에 적합한 보험제도와 증권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 3) 전기통신서비스업 분야

WTO의 이 분야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고 중국전기통신사업시장질서를 규율하고 전기통신사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전기통신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전기통신시장을 개방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2000년 9월 25일 《電信條例》,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관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2001년 12월 5일 국무원은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을 제정하였으며 信息産業部는 《電信網間互聯管理暫行規定》, 《設置衛星網絡空間電臺管理規定》, 《衛星電信廣播地面接收設備定點生產管理辦法》 등 부문 규장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규들은 전기통신서비스업의 대외개방에 대비한 것들이며 질서 있는 시장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전기통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다. 또한, 《外商投資企業電信管理規定》도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분야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연구서 제3장 제6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 4) 광고업 규정

중국 WTO 가입후 광고업시장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여 외상투자광고기업에 대해 최혜국대우와 내국인대우를 부여하였다. 광고활동을 규율하고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광고가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 갖는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국은 《광고법》과 《광고관리조례》를 제정하였다. 이것들은 중국의 광고업을 규율하는 기본법률과 법규이며 광고주가 중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불문하고 광고사업자 및 광고발표자는 중국 국경내에서 광고활동을 하는 때에 《광고법》과 《광고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광고업은 중국의 대외개방이 비교적 빠른 업종이며 외상투자광고기업의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국가공상국과 대외무역경제협력부가 이미 1994년 11월 공동으로 《關於設立外商投資廣告企業的若干規定》, 1995년 5월 《關於執行設立外商投資廣告企業的若干規定有關問題的通知》, 《關於外商投資廣告

《企業設立分地機構有關問題的通知》를 제정하였다.<sup>118)</sup>

#### 5) 건축업 분야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건축업관련 현행 법률, 법규 및 WTO 규칙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간에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공정건축업영역에서 큰 변화는 외상이 단독투자로 공정설계기구와 건축기업을 허용하는 것인데 현재 구체적인 辦法의 제정이 준비중이다. 현행 건축공정 업무에 관한 주요 법제도는 다음과 같다.<sup>119)</sup>

##### ① 中外合營工程設計機構 설치에 관한 규정

중국공정설계영역에서 국제적인 기술교류를 꾸준히 진행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공정설계인원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설계절차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점차 국외의 선진설계기술, 설계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설계표준과 규범도 꾸준히 완비되어 왔다. 그러므로 이미 1980년대부터 중국은 중외합영공정설계기구 설립을 허용해 왔으며 건설부가 제정한 《成立中外合營工程設計機構審批管理的規定》은 중외합영공정설계기구의 설립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 ② 외상투자건설기업설립에 관한 규정

외상투자건설기업의 설립을 위해서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등의 법률과 법규의 규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상이 투자하여 건축기업을 설립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건설부와 대외경제무역부는 공동으로 《關於設立外商投資建築企業的若干規定》 및 《關於設立外商投資企業的若干規定的實施意見》을 제정하였다.

##### ③ 中國領域內工程都給外國企業 資格管理規定

대외개방의 필요에 부응하고 중국 영역내에서 공정을 도급받는 외국기업을 관리하고 중국건축시장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부는 1994년 《在中國境內承包工程的外國企業資質管理暫行辦法》 및 《在中國境內承包工程的外國企業資質管理暫行辦法實施細則》을 제정하였다.

118)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p.11-12.

119) *Ibid.*, p.12.

## 6)涉外법률서비스 분야

涉外법률서비스는 외국변호사가 중국내에서 전개하는 법률서비스와 중국 변호사가 외국에서 전개하는 법률서비스를 말한다. 2001년 第9屆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을 개정하였다. 변호사 활동을 규율하는 이 법률에는涉外법률서비스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단지 부칙에서 “외국변호사사무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기구를 설립하여 종사하는 법률서비스활동의 管理辦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었다. 중국의 WTO 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 국무원은 《外國律師事務所在華代表機構管理條例》를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sup>120)</sup>

## 7) 시청각서비스 분야

### ① 音像製品管理條例

국무원은 《音像製品管理條例》(Audio-Video 제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신조례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화부, 외경무부는 《中外合作音像製品分銷企業管理辦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② 電影管理條例

국무원은 《電影管理條例》를 개정하여 새로운 조례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③ 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문화부는 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을 제정하여 200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sup>121)</sup>

---

120) *Ibid.*, pp.12-13.

121) *Ibid.*, p.13.

#### 8) 섬유회계서비스 분야

《中華人民共和國注冊會計師法》(중화인민공화국 등록회계사법) 제4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부는 《中外合作會計師事務所暫行規定》을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중외합작회계사사무소 설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외합작회계사사무소의 설립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자산평가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비교적 빠른 분야이다. 자산평가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외상투자자산평가기구의 심사승인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유자산관리국은 《設立外商投資資產評估機構的若干規定》(외상투자자산평가기구의 설립에 관한 약간의 규정)을 제정하였다.

#### 9) 의료서비스 분야

위생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공동으로 《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辦法》을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10) 여행서비스 분야

2001년 국무원은 《旅行社管理條例》를 개정하였으며 신조례에는 “외상투자여행사 특별규정”이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였다. 개정후의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밖에 서비스무역분야의 행정법규와 부문규장에는 《中華人民共和國國際海運條例》, 《外商獨資船務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外商投資鐵路貨物運輸業審批與管理暫行條例》등이 있다.

###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분야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법체계는 비교적 정비되어 있으며 WTO가입에 대비하여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의 관련 규정 개정이 있었지만, 중국의 지적재산권관련법은 WTO 지적재산권 관련 규정 및 국제재산권보호제도와는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있으며<sup>122)</sup> 현재 각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중국도 이에 보조를 맞추는 정비

122)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WTO의 TRIPs 협정과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曹建明(主編), 『WTO與中國的司法審判』, (北京: 法律出版社, 2001), pp.175-182 참조.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sup>123)</sup>

중국정부는 향후에도 특허권과 상표권 보호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이를 보다 엄격히 실행함으로써 외국 하이테크 기업의 대중 직접투자 유인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종전에도 중국의 WTO가입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당국자들이 중국이 WTO에 가입되면 보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을 할 것임을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sup>124)</sup> 향후, 중국은 중국내의 지적재산권과 다른 나라들과의 지적재산권과의 조화를 도모하며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 신청 심사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sup>125)</sup>

한편, 가정 기기의 특허 신청율은 최근 들어 감소 추세에 있는데, 그 이유는 실용신안과 설계특허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의 지적재산권 관계자는 기술적인 혁신에 따른 특허 신청이 급격히 늘어감에 따라 특허법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분야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0년 8월에는 1985년 제정된 《專利法》(특허법)을, 2001년 10월에는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온 저작권법과 1983년 3월부터 시행되는 상표법을 개정하였다.<sup>126)</sup> 또한, 2001년 국무원은 《計算機軟件保護條例》(컴퓨터소프트웨어 보호조례), 《專利法實施稅則》(특허법 시행세칙) 등 지적재산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규들을 개정하였다. 이들 이외에도 중국은 지적재산권보호 법제도를 TRIPs 협정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sup>127)</sup> 《植物新品種保護條例》(식물신품종보호조례), 《集成電路布圖設計保護條例》(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 등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법규들을 통하여 중국은 식물신품종과 IC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123) 張桂紅, *op.cit.*, (*supra* note 82), p.184.

124) 지적재산권에 국제투자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劉筓, *op.cit.*, (*supra* note 31), pp.406-417 참조.

125) 이에 대해서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434-448.

126) 중국의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 등이 TRIPs 협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鄭成思. “WTO與知識財產權研究,” 『中國法學』, 2000年 3期(總 第95期), pp.32-36.

127) 중국의 학자들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저 TRIPs협정과 관련된 중국법의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劉筓, “知識產權保護立法的不足及TRIPs協議國際投資法的關係”, 『政法論壇』, 2001年 2期(總 第98期), pp.126-128.

#### (4) 외상투자와 관련된 기타 분야

##### 1) 외환관리 분야

외환관리체제를 개혁하여 시장을 기초로 하여 관리되는 변동환율제도와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외환시장을 확립하고 단계적으로 인민폐를 대환화폐가 되도록 하는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둔다는 것이 중국의 외환체제개혁의 방향이다. 《外匯管理條例》(외환관리조례)는 현재 중국의 외환관리분야에서의 최상위의 행정규범이며 1997년 1월 14일 전문 개정되었으며 중국은 이미 경상항목의 외환자유태환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향후 《外匯管理條例》의 핵심이 되는 외환관리제도 역시 단계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것이다.<sup>128)</sup>

##### 2) 수출입상품검사 분야

1989년 2월 21일 제7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통과된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은 중국이 수출입 상품에 대한 검사업무를 강화하고 수출입상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대외무역업 종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WTO 가입이후에는 특히 대외상품무역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 국가의 수출입상품 검사를 통한 수출입상품의 품질관리, 수출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 열등상품의 수입방지 등을 위하여 그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2년 4월 28일 전면개정하여 새로운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이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sup>129)</sup>

##### 3) 해운 분야

WTO가입의 필요에 따라 2000년 7월 第9屆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1987년 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海運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128) 이에 대해서는 劉文華, *op.cit.*, (*supra* note 111), pp.200-218.

129)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15.

이 개정은 중국의 해운법을 국제협약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한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아울러 중국의 WTO 가입에도 대비하고 WTO 협정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하고 대외경제무역과 국민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원은 1985년 3월 7일, 그후에는 다시 1987년 9월과 1992년 3월에 양차에 걸쳐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關稅條例》를 개정한 바 있으며,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정확히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海關總署는 《中華人民共和國海關審定進出口貨物完稅價格辦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01년 12월 31일 國務院 關稅稅則委員會의 심의를 거치고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WTO 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2002년 관세양허의무<sup>130)</sup>를 정식으로 이행하기 시작하였다.<sup>131)</sup>

#### 4. 향후 입법 또는 정비 준비중인 기본법률 분야

##### (1) 의 의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중국의 현행 관련분야의 법령은 그 일부 내용이 계획경제체제의 잔재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중국의 기업관련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는 두 가지 입법형식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계획경제체제하의 소유제 형식에 의거한 입법, 예컨대 《中華人民共和國全人民所有制工業企業法》, 《中華人民共和國 城鎮集體企業法》이 있는가 하면, 시장경제체제하의 기업조직형식을 갖고 있는 입법, 예컨대 《公司法》(회사법), 《공정경쟁법》, 《독자기업법》 등이 혼재된 중국의 입법상황은 기업의 법률적용상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앞서 WTO의 협정과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의 이행에도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다.

130) 이에 대한 중국의 입법 대응에 대해서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144-152 참조.

131)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p.15-16.

지금까지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옮겨가는 과도기의 중국정부의 산업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중점 발전산업과 상품목록에 근거하여 정부 투자, 국유은행의 여신, 관세감면, 무역정책(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행하여졌으며, 따라서 외국자본의 중국시장 진입 허용정책 실시 역시 중국의 산업정책을 실시하는 중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WTO 가입 후에는 관세정책의 제약으로 인해 국내시장 보호는 일부 유치산업과 시장개방에서 제외되는 소수상품에 국한될 것이다. 중국정부의 산업정책 운용범위 또한 축소될 것이며 정부의 기업에 대한 간섭 역시 감소될 것이며,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도 강화될 것이다.<sup>132)</sup>

WTO 가입 후 시장개방 적응기간 내에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의 개혁과 재배치, 자본금 확충, 채권의 주식전환, 기술혁신, 전통산업체제의 개조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유치산업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WTO 가입 후 과도기간 내에 소수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를 할 것이다. 이 밖에 중국은 8억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어 비교적 장기간동안 중국정부는 “농산물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에 따라 농산품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특히 농업과학연구, 기술확장, 품종개량, 구조조정과 환경보호에 집중될 것이다.<sup>133)</sup>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국가안전과 중국관습에 어긋나는 문화상품의 진입을 환경보호등을 목적으로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독점금지법

중국의 독점금지입법에서 반영하여야 할 요소로서 지적되고 있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관에 의한 독점조장행위에 대한 규제이다.<sup>134)</sup>

132) 王曉暉, “反壟斷立法不能再拖”, 『法制日報』, 2002年 3月 6日字.

133) 이에 대한 중국의 입법대응에 대하여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347-356 참조.

134) 이에 대해서는 陳嘉珉, “論入世后政府行為的價值取向”,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28](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28).

WTO의 기본원칙상 중국이 제정하여야 할 독점금지법에서는 최혜국대우, 내국인대우, 법령과 조치의 투명성과 통일적 실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WTO 기본원칙의 핵심은 무차별·평등대우·공정경쟁이다. 중국의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의 독점금지법의 첫번째 임무는 바로 행정기관에 의한 농단행위를<sup>135)</sup>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중국의 학자 黃欣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sup>136)</sup>

① 전국적인 통일의 공정경쟁법제를 확립·완비하여야 하는 바, 독점금지법의 제정을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독점금지법의 목적은 질서있는 시장체제의 확립임을 제1조에서 천명하여야 한다는 것, ② 열거·개괄 방식으로 각종 형식의 행정기관에 의한 독점조장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러시아의 1995년 경쟁과 상품시장에서의 독점활동제한에 관한 법률중의 관련 규정을 차용하여야 한다는 것, ③ 행정기관에 의한 독점조장행위에 대한 책임제도를 도입하여 그러한 행위주체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 ④ 행정기관에 의한 독점조장행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관련 주무기관을 창설하여야 한다는 것, ⑤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추상적인 독점조장행위에 대해서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sup>137)</sup>

둘째, 경제의 세계화경향에 부응하여 독점금지법에서도 새로운 사고의 반영이 요구된다고 한다. 즉, 경제의 세계화 경향이 객관적인 추세이고 신기술 혁명과 지식경제의 확대·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각국의

135) 2001년 3월 第9屆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승인된 《中華人民共和國國民經濟和社會發展第10個5年計劃綱要》와 朱鎔基總理의 보고서에는 “部門, 事業의 독점행위와 地區封鎖(지역폐쇄)를 타파하고 지역보호주의를 반대하여 가능한 빨리, 전국통일의 공정경쟁과 규율의 질서있는 시장체계를 확립·완비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第9屆 全國人民代表大會 常務委員會 李鵬 위원장도 반독점금지법 제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黃欣, “WTO, 經濟全球化, 知識經濟與我國反壟斷立法關係研究”, 政法論壇, 2000年 5期(總101期), p.15.; 지금까지 중국에서도 독점금지법안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비교적 최근자료로는 王先林, “反壟斷法的基本性質和特徵”, 『法學雜誌』, 2002年 1期(總 130期), pp.16-17, 및 江珊, “中國獨占禁止法要綱案”, 『國際商事法務』, Vol.30, No.1(2002), pp.64-69 참조,

136) 黃欣, “反壟斷法應當具有的先進性”, 『法制日報』, 2001年 9月 15日字.

137) 이에 대해서는 江必新, *op.cit.*, (*supra* note 75), pp.58-65.

독점금지법은 큰 도전을 받고 있으므로 중국도 독점금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추세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黃欣은 이를 위해 중국의 독점금지법에서도 다음과 같은 제도가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sup>138)</sup>

①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원칙”을 도입하여 중국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독점행위를 중국의 관할권범위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역외효력원칙은 효과 원칙 또는 영향원칙이라고도 부르는 바, 기본적으로는 역외에서 발생한 법률행위가 국내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효력 또는 효과가 있기만 하면 그 주체의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독점금지 주관기관이 자국의 독점금지법에 의하여 관할권과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연방최고법원의 1945년 Aluminum사건의 판결인데 오랫동안 패권주의적 발상이라 하여 비난을 받아왔으나 현재 많은 국가들이 이를 자국의 독점금지법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예컨대, 러시아의 1995년 경쟁과 상품시장에서의 독점활동제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러시아 연방의 각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상업적 관계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상업적 관계라 함은 러시아와 외국의 법인, 연방의 행정권력기구, 러시아 각부문의 행정권력기관과 각 市정부 당국 및 자연인이 참여하는 상업적 관계를 말한다. 상기의 주체가 러시아 영토밖에서 종사한 활동 또는 체결한 협정이 러시아 시장에서의 경쟁에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중국법인이 되는 외상투자기업중에는 외국 모기업의 거대한 경제력과 국제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중국영역내에서 각종 독점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바(예컨대 Microsoft의 고액의 차별성 독점가격으로 중국시장에서 판매되는 Window 98 등), 국제성을 가지면 바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

③ 중국시장의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국가와 적극적으로 쌍무적 및 다변적 독점금지관련 국제협정을 체결하여 평등호혜협력의 기초하에 국제독점금지행위를 억제하여야 한다.

138) 黃欣, “反壟斷法應當具有的先進性”, *op.cit.*, (*supra* note 136).

셋째, 독점금지법에는 “적용제외”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는 동시에 지적 재산권을 남용한 경쟁제한적 독점금지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유효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한다.<sup>139)</sup> 그는 중국의 독점금지입법은 두 가지 임무를 가지고 있는 바, 한편으로는 WTO 규칙상의 의무를 이행하여 “적용제외”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지적 재산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사법부와 연방위원회가 1995년 4월 6일 공동으로 공표한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의 앤티트러스트 가이드라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1999년 7월 3일의 《특허와 기술비밀허가증계약중의 독점금지법가이드라인》등 법규중의 관련 규정 및 사법적 실천경험을 차용하되 중국의 실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黃欣은 이를 위하여 중국의 《專利法》(특허법) 및 《合同法》(계약법) 제 329조의 “불법적 독점기술이 기술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적 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라는 규정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이미 출현한 또는 장래에 출현할 수 있는 각종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경쟁 제한적 독점 금지행위에 대하여 적시의 유효한 감독과 제재를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지적한다.<sup>140)</sup>

### (3) 민법전

민법전은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기본법률규칙이다. 중국의 WTO가입이후 공정경쟁의 발전에 따라 민사관계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를 조정하는 기본법률이 되는 민법전도 더욱 그 작용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시장경제에 관한 법률체계를 완비하여야 하는데 민법전의 제정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만약 민법전이 없으면 시장경제의 법률체계는 큰 기둥이 빠진 건물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설령 중국이 민사법률, 법규를 대량으로 제정한다 할지라도 민법전을 통하여 계통화·체계화·완비화시키지 않는다면 시장경제의 법률체계는 여전히 완전하지 못하게 되고 中國의 이른 바 依法治國 政策의

139) *Ibid.*

140) *Ibid.*

시행도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민법전을 제정하여야 공민과 법인의 민사권리를 법제화·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고 각종 행정 규장의 제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依法行政을 보장하고 공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것들은 WTO가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sup>141)</sup>

한편, 물권법은 통상적으로 공민, 법인, 비법인 단체가 직접 통제하고 지배하는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시장주체가 보유하는 자신의 재산은 상품교환의 기초이다. 그러므로 물권법은 시장경제를 발휘하는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중국개혁개방이후 한 걸음 한 걸음 물권법제도를 확립시켜왔다. 현재 물권과 관련된 법률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과 기타 몇개의 단행법속에 각기 포함되어 있다. <sup>142)</sup> 1986년 4월 중국인민대표대회 第6届 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이며 주로 평등한 주체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5장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 있는 재산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소유권을 소유권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인민과 집체 소

141) 王利明, *op.cit.*,(supra note 83).

142) 1986년 4월 중국인민대표대회 第6届 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법통칙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법률이며 주로 평등한 주체간의 재산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제5장 제1절 <재산소유권 및 재산소유권과 관련 있는 재산권>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소유권을 소유권자가 법에 따라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를 향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인민과 집체 소유의 재산 및 공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보호된다. 그와 동시에 경영권과 사용권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소유권과는 적절하게 구분되어야 할 중요한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자신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한 재산에 대해 경영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국가소유의 토지, 삼림,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은 법에 의거하여 전민소유제 단위 또는 집체소유제 단위가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보호한다. 셋째, 집체가 소유하는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집체가 사용하는 토지, 삼림, 초원, 황무지, 수면은 법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집체가 경영을 도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도급경영권을 보호한다. 넷째, 국가소유의 광산은 법에 의거하여 전민소유제 단위와 집체소유제 단위가 개발채취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공민도 채취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합법적인 채광권을 보호한다. 보다 구체적인 것은 楊振山, “社會主義市場經濟與中國物權法制度”, 『法學雜誌』, 2001年 第2期(總 第125期), pp.2-4.

유의 재산 및 국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보호된다.

그와 동시에 경영권과 사용권은 소유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소유권과는 적절하게 구분되어야 할 중요한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국유기업은 국가가 자신에게 경영관리를 위탁한 재산에 대해 경영권을 향유하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둘째, 국가소유의 토지, 삼림, 초원, 황무지, 간석지, 수면은 법에 의거하여 전민소유제 단위 또는 집체소유제 단위가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보호한다. 셋째, 집체가 소유하는 또는 국가가 소유하고 집체가 사용하는 토지, 삼림, 초원, 황무지, 수면은 법에 의거하여 개인 또는 집체가 경영을 도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는 그 도급경영권을 보호한다. 넷째, 국가소유의 광산은 법에 의거하여 전인민소유제 단위와 집체소유제 단위가 개발채취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국민도 채취할 수 있으며 국가는 합법적인 채광권을 보호한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는 민법전 제정은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아직 민법전의 제정을 위한 조건이 성숙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장이<sup>143)</sup> 나누어져 있지만 전자가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입장에 의하면 중국의 개

143) 이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은 사법이며 민법이 조정하는 사회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서 시장경제가 추진되기 시작한 지 9년을 넘지 못하여 사회는 여전히 경제 변천의 과정에 있고 공유제가 여전히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도 여전히 경제 건설에 영향을 주고 있고 시장주체의 공유제가 아직 제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유제 경제 특히 국유경제는 정부가 某種의 의미 있는 강제적인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진정한 의미의 독립된 주체가 형성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둘째, 민법이 조정하는 대상은 주로 公民인데 중국의 국민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풍속과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각지의 경제발전수준도 큰 차이가 있어서 좀 더 民間法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법률관계의 주체가 되는 법인의 지위도 차이가 있는 바, 법인은 성질상, 「전인민」, 「집체」 및 「전인민, 집체 또는 개인이 형성하는 公司制法人」이 있으며 「私營獨資」, 「合夥기업(합자기업)」, 그리고 「單位도 아니고 公民도 아닌 個體工商戶, 農民都給經營戶와 個人合夥(合資)」 등 비법인조직이 있다. 그런데, 이들 주체는 현재 상이한 법률조정을 받고 있으며 그 법률적 지위도 동일하지 않으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민법은 평등한 주체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상의 이유 때문에 아직 민법전을 제정할 시기가 성숙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許增裕, “中國民法典的立法條件是否成熟?”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168](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168).

방된 시장경제활동에 양호한 제도와 틀 및 활동준칙을 제공하여 중국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적 자치” 정신을 구현하여 경제참여자들이 충분한 자유를 가지고 계획하고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다.<sup>144)</sup>

#### (4) 정비 준비중인 기타 분야

##### 1) 통일파산법 등 상사 분야

WTO가입 이후 치열한 경쟁의 전개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장래에 파산의 위협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업파산제도를 조정하는 통일파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WTO가입은 외상투자자에 대한 내국인대우와 무차별정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외상투자기업법, 회사법, 합자기업법(合伙法), 독자기업법은 공히 시장경제주체를 규율하는 기본법률제도의 통합과 더불어 내외자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통합파산법이 필요하다고 한다.<sup>145)</sup>

##### 2) 서비스시장 분야

서비스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므로 관련 법률, 법규제도를 완비하여야 하며 금융, 보험, 전신, 상업, 대외무역, 항공 등의 분야에서의 법률은 내용면에서 시장경제에 부합한 것이어야 하며 서비스무역일반협정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어야 한다. 여행업은 중국시장경제의 중요한 산업이 되어야 한다. 현재 통일적인 법률규정이 없고 여행업 관련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WTO의 관련 조칙을 참조하여 여행업의 기본법률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sup>146)</sup>

##### 3) 대외 무역 분야

중국은 1994년 대외무역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률은 중국의 대외무역분야의 기본법이다. WTO가입이후 중국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간의 융합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외무역대리체제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

---

144) 劉洋海, “淺談中國現代的民法和民法的現代化”,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6](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6).

145) *Ibid.*

146) *Ibid.*

다. 그러한 개혁과 더불어 보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대외무역대리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외무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정부도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도가 높은 법령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허가증 등 수입제한조치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함으로써 WTO의 규범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sup>147)</sup>

한편, 반덤핑법은 상품을 수입하는 측이 경제와 본국 생산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국제경제무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덤핑행위를 제한하고 조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중국은 WTO가입이후에는 관세장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중국이 동의한 사항과 WTO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반덤핑법을 이용하여<sup>148)</sup> 중국의 민족산업 또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고자 할 것이다.<sup>149)</sup>

#### 4) 외상투자관리 분야

현재까지 중국이 제정한 외상투자관련 법률, 법규는 이미 200건을 넘어섰으며 각지방도 외상투자와 관련된 대규모의 지방성법규를 제정하였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이들 법률, 법규 및 지방성 법규의 규정들을 WTO 규범에의 부합성을 조건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통일시킬 것인가이다. 또한 중국으로서는 “외상투자3법”중의 超내국인대우와 非내국인대우 등에 대한 해결이외에도 환경·노동·상품품질 등의 외상투자의 관리분야의 법령을 신속히 완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예컨대, 환경법중에서도 오염지수표준을 정하고 일부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外資進入을 제한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5) 사회보장 분야

현재까지 중국은 전체적인 사회보장체제가 전국성 법률을 통하여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자질구레한 몇가지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및 규범성 문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각 지방의 법규도 통일되어 있지 아

147) *Ibid.*

148) 이에 대한 중국의 입법대응에 대하여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275-284 참조.

149) 王利明, *op.cit.*, (*supra* note 83).

니하며 그 원칙과 내용도 상이하여 사회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시급히 통일적인 사회보장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150)</sup>

#### 5) 무역관련 환경 분야

WTO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그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각 체약국이 세계자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환경을 보호·유지하며 상이한 경제발전수준하에서 자신의 필요에 부합되는 방법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시에 WTO는 무역과 환경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국의 환경보호법과 정책은 이러한 경향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 현재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은 모두 환경 보호를 자국 상품과 시장의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중국은 1995년 일부 수출상품과 그 포장이 선진국의 환경법규와 환경표시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은 경험도 있어 수출상품이 선진국의 환경보호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환경영향의 조사·평가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 따라 중국 시장을 보호하고 중국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보호법의 정비가 있을 것이다.

---

150) *Ibid.*

##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 제 1 절 기본적인 고찰

#### 1. 최근의 국제투자 동향

20세기 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는 두 가지 주목할만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첫째, 국제직접투자가 국제상품무역보다 국제경제관계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둘째, 국제직접투자가 국제적인 은행간 loan보다 개발도상국의 외자도입에서 더 중요한 구성인자가 되어 각국정부는 유한한 국제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제직접투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자유화한다”로부터 “원칙적으로 자유화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한다”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인 중국의 경제도 이러한 국제자본 쟁탈전에 뛰어들어 장족의 발전을 보이게 되었다.<sup>151)</sup>

세계경제의 전지구화·일체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개발도상국 투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자본도입을 위하여 국제화, 자유화 및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일련의 경제체제개혁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자국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등 자유화 경향의 외국직접투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2002년 1월 1일, 중국은 정식으로 WTO의 각종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고 중국정부도 중국의 WTO 가입문서상의 모든 수락내용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누차에 걸쳐 강조하여 왔다. WTO의 국제투자와 직접 또는 간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많은 협정들은 필연적으로 중국의 외자법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중국의 WTO 가입후 외국직접투자 법령의 최근의 변화와 향후의 전망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sup>152)</sup>

151)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도입규모는 1993년이후 개발도상국중 10년 연속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唐以今, “外國直接投資的新特點和我國引資環境的重整”, 『國際論壇』, 2001年 第5期, p.51.

152) 梁咏·章海彤, “外國直接投資的中國市場進入許容問題研究”, [http://www.law-lib.com/lw/lw\\_view.asp](http://www.law-lib.com/lw/lw_view.asp).

## 2.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건설자금의 보완을 통한 경제발전의 촉진을 촉진한다. 오랫동안 국제무역은 세계각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여겨져 왔지만 국제분업의 심화에 따라 국제적인 직접투자의 경제의 원동력으로서의 작용을 세계각국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커다란 관심을 보여왔다. 중국의 개혁개방 20년도 외국인직접투자를 도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도입규모가 커졌으며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으로서는 건설자금부족이 중국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이며<sup>153)</sup> 따라서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 국내의 자금을 충분히 이용하는 이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중국 국내건설자금의 부족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一國의 경제성장은 일련의 거시경제 추진인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바, 국제적인 자본의 이동도 그러한 추진인자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은 대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의 도입을 통한 생산영역에의 투입에 힘입은 바 크다.<sup>154)</sup> 다시 말해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적극적인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을 통해 외자도입율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sup>155)</sup>

둘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도입국의 국제무역과 관련하여 수출·수입의 규모와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세계화 경향의 심화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와 무역은 상호 상승작용을 하는 관계에 있다.

먼저,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의 수출을 크게 촉진하여 왔다. 국제연합 무역 개발회의(UNCTAD)는 일찌기 52개 자본도입국의 1995년 데이터를 근거로 수행한 통계분석(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도입국 수출에 기여한 정도에 관한 분

153) 盧進勇, 『入世與中國利用外資和海外投資』, (北京: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1), p.9.

154) 騰家國, 『外商對華直接投資研究』.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2001), p.9.

155) 張宏, “跨國併購和我國利用外國直接投資”, 『山東財政學院報』, 2001年 第5期, p. 17.

석)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는 자본도입국의 제조업의 수출에 기여하는 바. 개발도상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1% 증가하면 제조업의 상품 수출은 0.45% 증가하고 고급과학기술상품의 수출은 0.78% 증가하며 저급기술상품은 0.31% 증가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다.<sup>156)</sup>

다음, 외국인직접투자는 중국 수입을 촉진한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는 초기단계에서는 현지의 자본재와 생산요소가 투입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장기경제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수입은 오히려 국내공급부족,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 공급의 부족을 해소시키는데 기여하며 장래에 자본도입국의 상품경쟁력을 크게 개선시켜 경제발전을 촉진하게 된다.<sup>157)</sup>

셋째, 외국인직접투자는 선진기술 설비·관리기법의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한다. 80년대이후의 경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직접투자 특히 다국적 기업의 직접투자는 통상적으로 자본, 기술 및 관리기법이 하나의 셋트가 되어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투자자는 자본도입국에 자본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생산기술과 설비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자본도입국에는 없는 설비와 관리기법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국인직접투자는 종전의 국제은행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갈음하여 개발도상국의 가장 큰 외부 자금원이 되고 지난 몇 년동안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하여 볼 때, 순수하게 이윤만을 추구하는 간접투자 또는 국외 은행으로부터의 대부(loan)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자본도입국의 경제에 훨씬 안정적인 순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 3. 중국의 시각에서 본 외국인직접투자의 리스크

첫째, 중국은 외국인투자자의 지배적 지분확보로 인한 중국의 거시적 경제통제능력의 저하를 우려한다. 중국의 개정전의 외국인투자자법체계에서 외국인직접투자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상품수출비율을 의무화한

156) 吳國生, “跨國直接投資對東道國的影響”, 『商業研究』, 2001年 第7期(總 第231期), p.133.

157) *Ibid.*, p.135.

규정이 있었다. 90년대 이후 세계각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경쟁이 가속화되고 중국의 WTO가입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중국은 더 이상 상품수출비율을 요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以市場換資金”, “以市場換技術”(시장을 내주고 자본과 기술을 도입한다)이라는 새로운 외국인직접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들은 자신의 중국내 상품판매수량을 크게 확대하여 음료, 화장품, 통신상품 등과 같은 일부 사업분야를 선도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내에서 독점적 지위까지 획득하기도 하였다.<sup>158)</sup>

한편,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관련법중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보면 합자경영기업에서 점하고 있는 외자의 최저비율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한 산업분야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령에서는 외국인 투자지분이 중국측 투자지분보다 높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때로는 합영 또는 합작기업내에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외국인보유지분 제한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지만, 중국 당국은 이를 허용할 경우 국가의 거시적인 경제통제능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과 관련하여 각 산업 및 업종별로 외국인 지분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수락하였기 때문에 향후 분야별 시장개방 스케줄에 따라 中國內資企業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한 외자계기업의 중국측 당사자들이 왕왕 자신의 상표의 무형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외국자본의 도입과정에서 그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즉, 외자인 투자자가 외자계기업에서 지배적 지분을 확보한 후 외자 상표 또는 새로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중국 본토의 저명상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sup>159)</sup>

158) 梁咏·章海彤, *op.cit.*, (*supra* note 152).

159) 예컨대 廣東省 嶺南餅干廠은 1999년 60%의 국유자산 인민폐 3000만원으로 香港 遠東公司와 合資경영기업을 설립하면서 광동성의 저명상표인 “嶺南”이라는 상표를 무상으로 합자기업에 양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東凱公司가 외자와 합작기업을 설립하면서도 “柯達”이라는 상표는 美貨貨 116억 달러의 상품가치를 인정하였으나 東凱라는 상표는 인민폐 6억 원에 불과하였음을 중국 저명상표의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예로 들고 있다.

둘째,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우려한다. 중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메커니즘의 작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외국인직접투자가 중국의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에서 이탈하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국에서 외국인직접투자는 현재까지는 여전히 노동집약적 제조산업과 일반조립가공(Assembly & Processing)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 기초설비와 기초산업, 고도의 신기술산업, 신흥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비교적 적다.

1999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외국인투자총액중에서 농업투자는 1.76%, 과학기술서비스투자는 0.31%에 불과하다고 한다.<sup>160)</sup>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투자가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동부 연해지역과 경제특구에 집중되고 있어 경제가 상대적으로 낙후한 서부지구에도 도입되는 외자규모는 비교적 작아 이로 인해 중국경제발전의 지구간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sup>161)</sup>

셋째, 중국은 투자성 외자의 급속한 유입·유출로 인한 금융혼란을 우려한다. 투기성 외자의 급속한 유입·유출은 국내자본의 流量변화를 크게 하여 금융혼란을 초래하고 경제에 대한 통제상실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그

160) 易雪玲, “引用外商直接投資的風險防範”, 『財經理論與實踐』, 2001年 3月號(第22卷, 第110期), p.70.

161) 현재,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가 1999년의 기준으로 1797억원으로 역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2000년 국무원의 《政府工作報告》에서 처음으로 재정적자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서부대개발은 중국의 국가재정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칭 《중화인민공화국서부개발법》을 제정하여 법률로서 영도자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서부개발을 보장하여야 하며 《서부개발투자법》을 제정하여 법률로서 국제투자와 국내투자에 대하여 정책상의 우대 조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陳嘉珉, “論西部大開發的投資需求與法治對策”,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29;](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29;) 그런데 중국의 WTO가입후 서부대개발을 WTO협정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논문도 참고할 만하다. 예컨대, WTO협정상의 내국인대우라 함은 내국인대우 이상의 대우를 외국인투자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부지구에서 모든 기업에 대해 동등한 우대조치를 인정한다면 공정경쟁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WTO의 무차별원칙이라 함은 국가별로 차별하거나 기업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 어떤 국가에서 특정한 지역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우대조치를 부여한다고 해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屈廣清, “中國入世后的西部大開發及其法制環境研究”,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621](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621).

밖에도 외국자본의 도입과정에서 일부 오염산업의 진입으로 중국의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한다.<sup>162)</sup> 외국자본의 도입과정을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또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없다면 낮은 효율성을 갖는 분야에 대규모 중복투자가 이루어져 국가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이 주목하고 있다.<sup>163)</sup>

## 제 2 절 TRIMs 협정과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1. TRIMs협정의 주요내용

#### (1)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의 의의

무역관련투자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는 국제적으로 그 개념에 대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일반적으로 자본도입국 정부가 정책 또는 법령을 통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가 우선시하는 영역에서 외국투자자에 투자장려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무역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을 채택한 조치를 말한다.<sup>164)</sup> 이러한 조치는 장려성 투자조치와 제한성 투자조치라는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장려조치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잠재적인 외국인투자자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무역과 투자를 하도록 촉진하게 된다.<sup>165)</sup>

162) 이와 관련하여 중국도 환경보호를 위한 WTO 규범의 예외조항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潘惜唇, “論GATT環保例外條款的適用條件和發展趨勢”, 『中國法學』, 2001年 5期, pp.166-169.

163) 梁咏·章海彤, *op.cit.*, (*supra* note 152).

164) WTO는 직접 투자에 관한 세밀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다만 TRIMs 협정에서 현지부품 사용의무, 수출실적 요구 및 가격에 의한 수입제한, 외환할당 등에 의한 수출입규제 등을 투자허가 조건으로 하는 관행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경우 수출장려(실제로는 의무사항), 외환수지균형의무, 현지부품사용의무 등과 관련된 법규·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직접투자 허가과정에서 기술 이전 요구 등이 실제로 없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중협정의 내용을 보면 투자 허가 및 실행상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고 자의적 금지조치를 배제하는 것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165) 투자와 기술이전에 관해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불공

이와 동시에 무역관련투자조치는 일부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불리한 영향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 무역과 투자에 대하여 제한적·왜곡적 작용을 야기하기도 한다.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외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장려조치와 제한조치를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있다.<sup>166)</sup> 투자제한조치가 국제무역에 소극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라케쉬회의에서 무역관련투자조치를 주요 협상의제의 하나로 포함시켰으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투자장려조치와 경영요구조치라는 두 가지로 대별되기도 한다. 투자장려조치에는 국내세 감면, 관세 감면, 보조금<sup>167)</sup> 및 투자 양도<sup>168)</sup>의 4가지 그리고 경영요구조치는 현지기업의 지배적 지분 요구, 허가증 요구, 송금제한, 외환제한, 생산제한,<sup>169)</sup> 기술양도요구, 국내판

---

평한 차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은 중국과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쌍무적인 협상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이와 같은 차별적 관행을 시정하고 내국인 대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다. 즉, 1) 중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원부자재 설비수입을 규제하는 정책을 폐지한다. 2) 개도국에게 허용하는 유예기간없이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WTO 협정을 즉시 시행한다. 3) 외환지균형의무를 폐지·중단한다. 4) 현지 원부자재조달의무(local content requirement)를 폐지·중단한다. 5) 이상의 내용에 반하는 계약의 이행을 거부한다. 6) 중국내 기술·노우하우 이전 관련법규는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WTO entry to benefit U.S. companies despite problems”, [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currentnews/security/C000110652.asp](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currentnews/security/C000110652.asp)). 이러한 미국측의 요구는 외국기업의 對중국 직접투자시 중국측이 과도한 기술이전을 요구하거나 투자허가의 조건으로 부품현지조달의무, 기술이전의무, 중국내 R&D 수행의무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미·중간의 협정에서는 이에 관한 중국의 구체적인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아직도 외자를 유치하여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하여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166) 聲炯星, 『中外外商投資法問題研究』, *op.cit.*, (*supra* note 166), pp.39.

167) 자본도입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 또는 장려하기 위하여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鐘立國, 『中國:WTO法律制度的適用』, (長春; 吉林出版社, 2002), p.201.

168) 자본도입국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무상으로 원래의 투자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Ibid.*

169) 자본도입국이 외자계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자국 상품과 경쟁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자계 기업으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Ibid.*

매요구<sup>170)</sup>, 생산요구<sup>171)</sup>, 상품지령요구,<sup>172)</sup> 무역균형요구, 현지물품사용요구, 수출요구, 수입대체요구 등 13항의 내용이다.

## (2) TRIMs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문제

### 1) 의 의

TRIMs 협정은 9개의 조항과 1개의 附件을 포함하고 있다. TRIMs협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중국 학자들간에도 서로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데 “TRIMs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투자조치는 協定 附表상의 열거된 몇 개의 항목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현지 성분요구, 무역수지균형요구, 수입대체요구, 수입용외환제한 및 국내조달요구가 그것이다”라는 견해, 금지된 투자조치는 협정 附表중에 명확히 열거된 몇 가지 항목으로 국한되는데, 무역수지균형요구와 수입대체요구는 기본적으로 서로 동일한 것이므로 이 2가지를 하나로 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4개 항목이라는 것이다“는 견해 및 TRIMs협정의 附件의 목록에서 금지하고 있는 TRIMs는 결코 열거된 5항의 투자조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의 일반취소조항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조치와 방법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sup>173)</sup>

그런데, TRIMs 협정은 개괄성 규정과 열거성 규정을 상호 결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금지되는 TRIMs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 협정 제2조가 규정한 “국민대우와 수량제한”에는 양면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먼저 개괄성 규정은 “GATT 1994하의 기타 권리와 의무를 손상시키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회원국도 GATT 1994 의 제3조 또는 제11조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TRIMs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열거성 규정은 TRIMs협정의 附件에서 금지

170) 자본도입국이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생산하는 일정한 수량의 상품을 반드시 국제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본도입국 국내시장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Ibid.*

171) 자본도입국이 신속하게 수입대체를 이루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여 동종 상품의 수입을 대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Ibid.*, p.202.

172) 자본도입국이 외국투자자가 국제카르텔과 자본도입국 시장의 분할 또는 독점을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생산하여 일정비율을 수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Ibid.*

173) 聶炯星, *op.cit.*, (*supra* note 166), pp.40-41.

되는 조치를 특별히 열거하고 있다.

## 2) 개괄성 규정

TRIMs협정의 개괄성 규정에서 인용한 GATT 1994의 제3조 규정은 내국민대우인데, 당해 조항이 규정한 내국민대우 의무는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국내 稅收에 관한 것이며 둘째는 기타 각종 국내법령상의 내국민대우를 말한다. 국내세수측면에서의 내국민대우는 바로 “어느 체약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이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때에는 자국의 동일 상품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징수하는 것보다 높은 국내세 또는 기타 비용을 그러한 상품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법령상의 내국민대우라 함은 “어느 체약국 영역의 상품이 다른 체약국 영토로 수입되는 경우 당해 상품의 국내판매, 공급, 운수,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과 규칙에 의하여 향유하는 대우는 동일한 국내상품이 향유하는 대우보다 낮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조항은 체약국이 자국 시장에서 국내상품과 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률과 규칙은 모두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GATT 94의 내국민대우 조항은 특정한 적용범위를 갖는다. 내국세 세수요건은 어느 체약국이 자국 영역내에서 다른 체약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내국세수 및 국내법령면에서 국내상품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RIMs 협정이 GATT 제3조의 내국민대우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이상, 어떠한 투자조치가 내국민대우의 표준에 위배되는가를 검토하려면 그러한 조치가 수입상품이 향유하는 대우가 국내상품보다 낮아서 상품무역에 대해 제한적이고 왜곡적인 작용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3) 열거성 규정

TRIMs 협정의 열거성 규정에서 언급한 “GATT 1994의 제3조 제4항이 규정한 내국민대우 의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TRIMs”는 국내의 법령과 행

정명령하의 의무성 또는 강제성 집행 조치, 우월적인 지위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구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즉, (a) 기업이 자국 상품 또는 국내 유통경로를 갖는 상품을 구입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경우 그러한 구체적인 요구가 특정한 상품, 상품의 수량 또는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든, 현지 상품을 구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가치 또는 수량의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든 상관없다), (b) 기업이 구입 또는 사용하는 수입상품의 수량을 제한하여 그 수량과 당해 기업이 현지 상품을 수출하는 수량 또는 가치와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열거성 규정은 내국민대우의 투자조치와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미치고 있는 바 실제적으로는 자본도입국 정부의 현지물품사용요구, 수입제한 및 수출요구 등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체약국은 만약 이상의 투자조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들은 모두 내국민대우의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투자조치로 볼 수 있다.

TRIMs 협정이 원용한 GATT 1994규정은 “어떠한 체약국이 관세 및 기타 세비를 징수하는 이외에는 쿼터, 수출입허가증 또는 기타 조치를 설정 또는 유지하여 다른 체약국 영토의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이 조항이 금지하는 수량제한조치는 수출입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행위와 간접적인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TRIMs 협정의 또 다른 열거성 규정에서 언급한 “GATT 1994 제11조 제1항이 규정한 수량제한의 보편적인 취소의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에는 국내의 법령과 행정명령하의 강제성 조치 또는 강제집행될 수 조치, 우월적 지위를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다음의 조치가 포함된다. 즉, (a) 어떠한 기업이 수입하는 상품이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또는 현지생산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상품인 경우, 일반적으로 이것을 근거로 하여 현지 상품의 수출수량 또는 가치를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 (b) 기업이 현지 생산 또는 현지생산과 관련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당해 기업이 획득하는 외환 또는 기타 외환의 흐름과 연계하여 제한을 하는 것, (c) 기업이 수출하는 또는 수출을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특정한 종류의 상품, 수량 또는 가치로 규정하는 제한조치 또는 당해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하는 수량

또는 가치의 비중을 규정하는 제한조치이다.<sup>174)</sup>

이상에서 규정된 금지되는 수량제한적 조치는 주로 자본도입국의 수입상품과 수입상품 생산 요구, 무역평형(외환관리)요구, 수출 및 수입판매제한 등과 관련된 것이다.

## 2. TRIMs 협정의 관점에서 본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법

### (1) 외국인투자법령의 투명성 제고

중국은 WTO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TRIMs 협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국으로서 “통지”와 “통보”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즉 WTO협정이 발효한 후 90일 이내에 각 회원국들은 상품무역이사회에 자신의 모든 현재 실시중이면서 본 협정의 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TRIMs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인 회원국은 WTO협정 발효후 5년 이내에 자신이 통지한 TRIMs를 폐지하여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투명성은 각 회원국들에게 사무국에 통보하여 TRIMs(자국 영역내의 지구와 지방정부기관이 실시한 것을 포함한다)를 출판물에 등재하여야 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이미 WTO협정이 발효한 지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국은 WTO과 동시에 WTO협정에 규정된 통지와 통보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지방성 법규를 포함한다)중에 현재 시행중이지만 TRIMs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규정들을 폐지하여야 한다.<sup>175)</sup> 현재 중국은 이미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전국성 법률, 법규를 200여건 제정하였으며 여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 국무원 및 각부위가 제정한 행정법규와 규장이 있다. 그 밖에도 이러한 전국성 법률, 법규이외에도 지방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가 제정한 행정규장도 대단히 많다. 그러므로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이들 외상투자기업 법률, 법규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비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174) WTO의 《TRIMs협정》 부록해석성표 제2조 (a)(b)(c).

175) 이에 대해서는 張智勇·王慧, *op.cit.*, (*supra* note 9), p.20.

## (2) 외국인투자의 승인(Admission of Foreign Investment)과 외자의 대우 문제

### 1) 외국인투자의 승인

자본의 국제적인 흐름은 유리한 투자환경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일국의 투자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와 조건은 각양각색이며 개략적으로는 유형환경과 무형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자원·자연환경·노동력 수준·기초설비 등은 유형환경에 속하며, 사회안정, 정국안정, 정치·경제체제 및 정책의 안정성, 법률체계의 건전성 정도, 사회의식의 개방정도 등은 무형환경에 속하며 상술한 유형 및 무형의 요소중에서 법적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sup>176)</sup>

통상적으로 一國의 외자입법상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두 단계로 구분되는 바, 첫 번째는 외자도입승인단계(Admission of Foreign Investment) 단계이며 두 번째는 외자계기업의 경영(Operation of Foreign Investment)단계이다.<sup>177)</sup> 그중 선행하는 단계인 외자도입승인에 대해서는 각국이 입법은 대단히 중요시 다루고 있으며,<sup>178)</sup>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를 규율하는 법령에 대한 연구는 바로 외국인직접투자의 도입승인에 관련된 법률들이 그 출발점이 된다 할 수 있다.

외자도입승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왕왕, 다른 관련 개념에 마주치게 되는데 이것은 외자에 대한 대우문제이다. 외자도입의 승인과 외자에 대한 대우는 사실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 후자는 전자의 전제이자 기초가 되며 이를 달리 표현하면 전자는 후자의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sup>179)</sup> 중국의 현행 외국인투자관련법은 그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외자에 대한 대우는 일정한 범위의 내국민 대우, 우대 및 차별대우 등 3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sup>180)</sup>

176) 梁咏·章海彤, *op.cit.*, (*supra* note 152).

177) 徐崇利, “外資准入的晚近發展趨勢與我國的實踐”, 『法學研究』, 1996年 第5期, p.67.

178) 楊鵬慧, “世貿組織法框架下我國外資准入”, 『投資研究』, 2000年 10月號, p.43.

179) 徐箒, “加入WTO與我國外資法的完善”, 『法學』, 2001年 第1期, p.67.

180) 郭立剛, “TRIMs協定與我國對外資的待遇標準”, 『法商研究』, 1999年 第1期, p.

## 2) 내국민대우의 법적 의미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크고 작은 제한을 받고 있는 바, WTO 협정을 비롯하여 투자관련 국제협정에서, 내국민대우를 채택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이하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금지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외자대우의 발전추세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결코 내자와 외자의 절대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권국가가 외자에 대하여 절대적인 내국민대우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안전, 사회의 공공이익, 전통민족산업, 특별한 자연자원 등의 수요에 근거하여 내국민대우의 합리적인 예외를 둘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예외조항을 둔다 할지라도 결코 내국민대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외자도입 영역에서 순수한 내국민대우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각국은 모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자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가령 외자에 가장 개방적인 미국에서도 국내의 航運, 원자력, 수력발전 등의 분야에서는 외자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 통신과 항공, 관련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외자에 대해 소수지분참여만을 허용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개발도상국이 외자도입허용영역의 제한은 엄격한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전통적으로 외자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부문의 상당수가 서비스 산업에 속한 것이다.<sup>181)</sup>

또한, 내국민대우는 외국인직접투자자에 대해 시장진입조건면에서 초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종의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다. 외국투자자에게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의 의미는 외국투자자에게 자국 투자자의 대우보다 낮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며 자국의 시장, 기간설비 기타 투자환경 자체가 선진국보다는 열악한 경우 우대조치를 통해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sup>182)</sup>

---

59-60.

181) 楊鵬慧, “世界組織法框架下我國外資和海外投資”, *op.cit.*, (*supra* note 178), p.44.

182) 聲進勇, *op.cit.*, (*supra* note 158), p.108.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더욱 많은 외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등 이른바 三資企業에 대하여 “초국민대우”를 부여하여 內外企業을 차별하는 이원적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sup>183)</sup>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의 도입과 도입후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심사승인과 관리제도를 통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함으로써, 기업의 자주권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기능은 제약을 받아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하여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근본적으로 또한 대규모로 정비하여 왔는 바, 예컨대, 투자조치(TRIMs) 분야에서 2000년 10월과 2001년 3월과 7월 중국이 각기 이른바 외상투자3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TRIMs 협정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외환수지균형요구, 무역평형요구, 수출실적요구 및 현지물품 우선구매 요구 등의 투자조치를 폐지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국제적 기준에의 부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발전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중에는 아직도 TRIMs 협정의 정신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들도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WTO가입 의정서와 가입실무작업단 보고서에서의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 정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3) 내외자통일입법과 내국민 대우

중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는 이미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인정하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쌍무적투자보장협정에서는 이미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전국성 법률, 법규도 외국인투자자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들이 적지 않다. 외상투자기업의 부가가치세(增值稅), 소비세, 영업세 등의 세수면에서 국내세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성 법규 특히 深圳과 厦門의 법규중에는 이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183) 易雪玲, *op.cit.*, (*supra* note 160), p.69.

두고 있다.<sup>184)</sup>

이와 관련하여 외상투자법률, 법규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내외자 입법의 통일을 고려하여야 하며 종전의 내외자를 구분하여 입법을 하는 이른바 쌍궤제 입법모델은 수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185)</sup> 내외자통일입법을 고려하여 현재의 3건의 외상투자기업법령에서 경영관리 활동의 내용 예컨대, 외상투자기업 설립, 해산, 내부조직관리기구, 경영관리 기구, 법률책임등을 분리하여 직접 회사법의 관련규정들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회사법을 개정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규정중 비교적 선진적인 제도 예컨대 수권자본과 법정자본을 결합하는 제도, 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 등을 회사법에 흡수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관리 예컨대, 외자도입의 승인, 투자방향, 자본구성, 투자비율, 심사승인, 투자기한, 내국민대우, 외자우대조치, 수용국유화시의 보상, 외자의 보호, 분쟁의 해결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정하는 외상투자법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중국이 이와 같이 외상투자법을 새로 제정하는 때에도 TRIMs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새로운 무역관련투자조치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sup>186)</sup> 세수분야에서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조세 항목은 폐지하여 《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과 국내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하여 단일의 통일된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과 국내기업의 소득세율은 근접시켜 통일적인 “기업소득세법”을 제정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구비되어 있으므로 외상투자관계에 대하여 직접 국내법률, 법규를 적용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를 서둘러서 외상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sup>187)</sup>

184) 梁咏·章海彤, *op.cit.*, (*supra* note 152).

185) *Ibid.*

186) *Ibid.*

187) *Ibid.*

(3) TRIMs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법령의 폐지

1) 국가입법 및 행정법규·규장의 폐지

TRIMs 협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법률, 법규를 폐지하는 기본원칙을 확립하여야 한다. TRIMs 협정의 열거성 규정상의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의<sup>188)</sup> 보편적 폐지 의무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TRIMs에는 국내법 또는 행정명령에 의한 강제성 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조치 또는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련 제한조치가 포함되며 이것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 동안 중국은 기업들로 하여금 수입대체를 장려하기 위한 적지 않은 입법을 통하여 우대조치를 부여하여 왔으며, 여기에는 용자, 조세환급, 감가상각율 인상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국산설비 또는 조립 부품의 구입도 수입으로 간주하여 수입관세를 감면하여 주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현지 부품사용요구도 WTO 협정이 그 시행을 금지하고 있는 일종의 자국산업 보호조치이며, 외자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와 현지 생산과 관련된 기타 상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sup>189)</sup>

최근 외상투자법률중 수입을 위한 외환사용 제한(외환평형) 규정도 폐지되었다. 현재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상투자기업의 외환평형요구를 폐지하더라도 전국적인 외환평형에 대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이다.<sup>190)</sup> 중국은 이미 경상항목하의 인민폐의 자유대환을 실현하였으며 자본항목하의 인민폐도 단계적으로 자유대환이 실현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외환평형은 기업경영관리중의 문제이며 외상투자기업이 생존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외환평형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므로 국가가 강제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양호한 외환사정을 고려하여 “以產頂進”(생산량에 따른 수입), “替對進口”(수입대체) 등의 규정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중국의 수출입에

188) 수량제한에 대한 중국의 입법대응에 대해서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201-219 참조.

189) 陳俊,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op.cit.*, (*supra* note 58).

190) 聶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 2000年 第4期, p.16.

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점이 중국의 WTO가입 수 년전부터 중국내부에서 지적되어 왔다. “以產頂進”은 계획경제적 색채를 가진 것이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와는 부합되지 아니한다. WTO가입과 더불어 외국상품이 꾸준히 중국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가격은 저렴하고 품질은 최고인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替對進口” 규정을 폐지한다면 중국국내기업의 상품품질을 제고시키고 원가를 절하시키고 기업의 경쟁력도 제고시키는 것을 촉진하여 중국 상품이 다른 국가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바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수출비율요구조치도 폐지되어야 한다. WTO가입과 더불어 다른 회원국들은 중국상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폐지하여야 하며 중국에 대한 불평등대우를 폐지하여야 하며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중국의 상품은 더욱 용이하게 WTO의 다른 회원국시장에 수출될 수 있을 것이므로 수출비율요구제도는 장래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데, TRIMs 협정에서 금지되어야 할 투자조치를 분석하는 때에는 개괄성 규정과 구체적인 열거성 규정을 연결시켜야 살펴보아야 한다. 이로 인해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작업이 된다. 附表에 열거된 몇가지 항목이외에도 일부 투자조치들은 금지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외자입법과 대외무역입법의 관점에서 국제투자과 국제무역을 결합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금지되는 투자조치를 식별할 수 있게 되며<sup>191)</sup> 무역이 초래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예측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sup>192)</sup>

이를 위해서는 먼저 TRIMs 협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관련 법률법규의 개정에 관한 원칙을 확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TRIMs 협정의 열거성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지만 내국민대우와 수량제한조치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모든 투자조치도 무역과 투자에 대하여 제한과 왜곡의 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개정되어야 한다.<sup>193)</sup> 그런데 이에 상응하여 내국민대우보다 높은 투자장려조치 예컨대, 내국세 감면 등 국내세수분야에서의 우대조치,

191) 이에 대해서는 劉筭, 『國際投資保護的國際法制: 若干重要法律問題研究』, (supra note 31), pp.332-341.

192) 張智勇·王慧, *op.cit.*, (supra note 9), pp.21-22.

193) 이에 대해서는 李雙元·蔣新苗, *op.cit.*, (supra note 25), pp.465-480 참조.

관세감면, 보조금<sup>194)</sup> 등에 대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195)</sup>

한편, 수출입허가증<sup>196)</sup> 쿼터관련 규정상의 투자조치는 TRIMs 협정에서는 “설정 또는 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출허가증을 절대적으로 또는 금지 또는 폐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국가 허가증은 이중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허가증의 합리적이고 적당한 사용은 일국의 대외무역질서, 국가무역통계, 국제수지균형의 유지 등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허가증의 남용은 국제무역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수입수량제한의<sup>197)</sup> 투자조치를 생성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수출입허가증, 쿼터에 관한 규정을 둔 투자조치는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강제성 수량제한 관련 조문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직접 쿼터를 정하고 수출입허가증으로 관리 받는 상품의 목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한다.<sup>198)</sup> 현재 많은 국가들이 수출입허가증, 쿼터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단 어떠한 국가가 중국 수입상품에 대하여 쿼터, 수출입허가증을 통하여 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중국도 그와 대등한 대우를 할 수 있다.

한편, 무역관련 기타 투자조치에서는 국내판매요구, 외환통제, 생산요구, 생산제한, 허가요구, 송금제한, 기술양허 요구 등도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194) 이에 대한 중국의 입법대응에 대해서는 *Ibid.*, pp.288-305 참조.

195) 중국의 현재의 상황을 보건대, 일부 우대조치는 국가의 산업정책의 시행과 외국인투자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WTO협정에의 부합성을 위해 이들 조치를 3년 내지 5년의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여금 일정한 적응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시에 모든 우대조치를 폐지하여 외자도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聲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op.cit.*, (*supra* note 190), p.19.

196) 수입허가증제도는 무역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중국이 오랫동안 실시하여온 수입신청 등기는 통상적으로 여러 단계의 심사승인을 거쳐야 하는 문턱이 높은 절차이며 WTO 규범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陳俊,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op.cit.*, (*supra* note 58).

197) 1994년 GATT협정 제2조 “양허표”와 제11조 “수량제한의 일반적 폐지”는 전형적으로 회원국들로 하여금 관세를 인하하고 수입수량제한을 철폐하여 외국상품이 자국시장에 진입하고 자국상품과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198) 聲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op.cit.*, (*supra* note 190), p.19.

중국의 관련법의 내용도 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중국기업의 지배적 지분권 보유 요구와 관련하여 중국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외국합영자의 투자비율이 최소한 등록자본의 25%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최고 비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 제정한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 및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중에서는 외국인 獨資경영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배적 지분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 외국인투자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중국의 의무에 위배되는 지배적 지배보유제한은 폐지 또는 완화될 것이다.<sup>199)</sup>

## 2) 지방성 법규·지방 규장의 폐지

개혁개방과정에서 일부 지방성 법규에는 TRIMs 협정에 저촉되는 투자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당연히 폐지 또는 수정되어야 한다.

첫째, 현지성분 요구이다. 예컨대, 《廣東省經濟特區條例》 제17조는 “특구기업이 우리 나라가 생산하는 기계설비, 원재료, 기타 물자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가격은 중국의 동종 상품의 수출가격에 의거하도록 하되, ...외화로 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輸入代替” 또는 “生産에 맞춘 輸入”과 같은 규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성 법규는 대단히 많다. 예컨대, 《北京市人民政府關於實施《國務院關於外商投資的規定》的若干規定》 제12조는 “進口替代”를 규정하고 있는 바, “외상투자기업이 本市가 輸入하여야 할 상품을 생산하는 경우, 상품의 품질·규격·성능·가격·인도시기에 대한 보증이 있는 때에는 市經委의 승인을 얻어 수입대체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天津市外商投資企業項目前期工作服務管理規定》 제5조 제3항은 “상품이 수입상품의 수입을 대체하고 국내판매시 외환수취항목에 속하는 경우,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天津 외환관리국이 승인한 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라

199) *Ibid.*

고 규정하고 있다.

《上海市鼓勵外商投資浦東新區的若干規定》 제10조는 “替代進口”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데 “외상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입대체상품은 주관부문의 승인을 얻어 규정에 따라 관세 및 공상통일세를 추가지불 한 후 내수 판매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화로 일부를 수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山東省人民政府關於鼓勵外商投資的優惠措置》 제9조는 “產品代替”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외상투자자는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신의 이익을 자유외화(現匯) 형태로 해외송금하지 아니하고 우리 省의 상품으로 대체하여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때에는 동등한 가격, 품질의 조건하에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이 상품 부분에 대해서는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廣東省鼓勵外商投資實施辦法》 제13조는 “以產頂進, 替代進口”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외상투자기업이 국내수입의 필요가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그 규격과 품질이 동류의 수입상품 수준에 도달하고 가격과 인도시기가 적절한 경우, 국내기업은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상품을 輸入代替한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이 수출하고 국내기업이 수입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수출입허가증 및 쿼터에 관한 규정이다. 《廣東省鼓勵外商投資實施辦法》 제10조는 수출허가증, 쿼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외상투자기업의 상품 수출이 수출허가증을 신청·발급 받도록 요구되고 있는 경우, 계약의 연도별 수출계획의 승인에 의거하여 매 반년마다 1회씩 수출허가증을 신청·발급받되, (동 상품에 대한) 허가증 관리가 시행되기 전에 승인을 얻어 체결된 계약을 이행하여 생산된 상품은 일률적으로 원래의 계약에 따라 그 수출이 집행된다. 이후 수출허가증, 쿼터 관리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해서는 省經貿委의 승인을 얻은 후 바로 대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수출입허가증, 쿼터 규정은 GATT 1994 제11조가 규정한 일반최소적 수량제한조치에 해당된다.

넷째, 외환통제 규정이다. 외환통제는 많은 盛, 市の 지방성 법규에서도 규정되고 있다. 중국의 외환적자 상황하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조치였으나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비교적 충분하여 외환평형 관리는 차츰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WTO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해서도 폐지되어야 한다. 예컨

대, 《北京市外商投資企業外換管理暫行辦法》 제10조, 《上海市外商投資企業物資採購和產品銷售辦法》 제11조 제2항도 외환환리조치, 외환수지평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수량제한관련 투자조치이다. 《福建省人民政府貫徹《國務院關於外商投資的規定》的補充規定》 제5조는 “상품수출기업 및 선진기술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개별 상품이외에는 승인 받은 내수판매 비율내에서 그 국내판매가격을 기업 이사회가 자주적으로 정하며 행정부문이 간섭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상의 승인받은 내수판매 비율이라는 표현은 내수판매의 수량제한에 관한 것이다.

#### (4) 중국의 TRIMs 협정 예외조항의 이용가능성

WTO의 다른 법률제도와 마찬가지로 TRIMs협정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협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여 회원국은 다음 두 가지 상황에서 그러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첫째, TRIMs 협정은 “GATT 1994 협정상의 모든 예외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 협정의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먼저 특수한 예외로서 내국민대우, 수량제한금지, 최혜국 대우의 예외와 같은 GATT 1994의 조항·제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있다. 다음 보편적인 예외로서 모든 상품무역제도의 예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있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해 말한다면 《TRIMs 협정》의 실시는 어느 정도까지는 자국 공업의 발전에 불리하며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동 협정 제5조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비교적 장기의 과도기를 주고 있으며 제4조는 회원국들이 GATT 1994 제3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범위와 방식에서 이탈하여 잠정적으로 동 협정 제2조의 규정의 적용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므로 당연히 GATT 1994의 예외관련 조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sup>200)</sup>

200) GATT 94 제36조.

예컨대 유치산업보호의 예외<sup>201)</sup>, 국가수지균형의 예외,<sup>202)</sup> 긴급보장예외의 원용<sup>203)</sup>, 일반예외<sup>204)</sup>와 안전예외의 원용<sup>205)</sup> 등을 통하여 일정기간동안(대략 3-5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중국의 외자정책을 조정하고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TRIMs 협정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투자조치를 수정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내국민 대우 이상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수정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러한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외상투자제한 및 금지 항목에 대하여 제한을 완화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계획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영역이나 항목이외의 기타 영역에서의 외상투자를 점진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06)</sup> 또한, 외상투자의 심사승인제도는 등록제로 변경하여 국제무역투자 자유화발전의 추세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은<sup>207)</sup> 향후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입법의 방향을 시사해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중국 학자의 지적은 향후 중국의 입법과 관련하여 대단히 큰 시사점을 던져두고 있는 바,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GATT 94 제20조의 “일반예외”와 제21조의 “안전예외”가 미치는 범위는 대단히 넓어서 一國의 “공공유보조항”제도와 대단히 유사하여 강행법적 성질을 가지며 이러한 예외와 상충되는 모든 규칙은 당해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 이러한 예외는 회원국들에 의하여 현재 점점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므로 무역의 보호막이 되고 있다. 예컨대 많은 국가들이 “환경보호 예외”의 규정을 이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도 WTO 가입후 이러한 예외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sup>208)</sup> 이와 같이 중국도 이러한 예외조치를

201) GATT 94 제18조.

202) GATT 94 제12조.

203) GATT 94 제19조.

204) GATT 94 제20조.

205) GATT 94 제21조.

206) 張德修, “WTO的基本原則與幾種例外規定”, 『法學雜誌』, 2002年 1期(總 130期), pp.30-31; 潘惜唇. “論GATT環保例外條款的適用條件和發展趨勢”, 『中國法學』, 2001年 5期, pp.168-169.

207) 聲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op.cit.*, (*supra* note 190), p.19.

208) 鐘立國, *op.cit.*, (*supra* note 167), p.208.; 미국 등 선진국이 환경보호를 위하여 수입상품에 대해 생태관세, 환경덤핑관세 및 무역금지와 제재라는 새로운 경향을 보

활용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놓고 그러한 조치를 활용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제 3 절 최근의 외상투자3법 정비

#### 1. 의 의

중국외상투자 법률·법규라 함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과 그 실시세칙(또는 실시조례)을 위주로 하는 외상투자3법, 행정법규, 부문 규장과 지방성법규를 말한다. 외상투자의 법률·법규의 WTO규칙에의 부합성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은 WTO 규칙과 중국정부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외상투자3법을 정비하였다. 외상투자3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중국에서는 정부부문, 학자, 변호사 및 외상투자기업간에 광범위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년동안 많은 견해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sup>209)</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외자기업법》과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sup>210)</sup> 2000년 10월 31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2001년 3월 15일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공포되었다. 또한 2000년 3월 15일 국무원도 《외자기업 실시세칙》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그런데, 2000년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중외합작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개정에 대한 심의에서는 별다른 논의가 없었지만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는 여러 대표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그후 2000년

이고 있으므로 중국이 이 점을 주의하여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賀小勇, “論世界貿易組織協定在我國法院的適用”, 『國際貿易問題』, 2001年 3期, p.43.

209)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上)”, 『國際商事法務』, Vol.29, No.5(2001). p.582.

210)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1979년 7월 1일 개최된 제5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처음 채택된 후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인대 제3차 회의에서 한 차례개수정된 바 있다. 이 법이 처음 제정되었던 1979년은 외국기업에 대한 문호개방의 시발점이었으며 1990년의 개정은 관련 규정을 국제관례에 보다 부합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1월 개최된 중국변호사 2000년 대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결국, 2001년 3월 15일 第9屆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회의에서<sup>211)</sup> 《중외 합자경영기업법》이 개정(2차)되었으나, 수정범위가 1백자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폭에 그쳤다. 그후 2001년 7월 22일 국무원은 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에 근거하여 그 실시조례의 상응하는 조항들을 대폭적으로 개정(제3차) 하였다. 그러나, 1983년에 시행된 후 18년이 경과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 있거나 WTO 규범과의 부합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하므로 향후에도 그에 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212)</sup>

이상의 외상투자3법의 개정은 중국이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WTO 가입을 위한 목적에서 WTO 협정 특히 TRIMs협정 및 중국의 가입 의정서 등에서 나타난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평가되며,<sup>213)</sup> 그 심의와 논의과정에서 개개의 규정들에 대해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외국인투자관련법의 향후 개정 방향을 시사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sup>214)</sup>

## 2. 개정 내용

### (1) 전형적인 무역관련투자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의 개정

#### 1) 외환수지균형요구

외환수지균형의 문제는 종전부터 외국투자자의 불만을 사왔으며 그 동안 외 환수지균형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상품을 수출하는 외에 외환조달 센터 등의 기관으로부터의 조달, 수입대체제품의 생산 및 기타 상품의 수출

211)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에서는 修正案(草案)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법률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王維澄, “第9屆全國人民代表大會法律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修正案(草案)》審議缺課的報告”, 『法制日報』, 2001年 3月 15日字 참조.

212) “就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 『法制日報』, 2001年 8月 3日字.

213) *Ibid.*

214) 胡振杰, *op.cit.*, (*supra* note 95).

등에 의한 종합적 외환수지균형 방법도 인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금융·외환이체시장에서의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중외합작기업법》 및 《외자기업법》이 제정된 1980년대에는 중국의 외환준비가 불충분하여 외화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외환관리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중외합작기업법》과 《외자기업법》에서는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한다」<sup>215)</sup>는 점을 명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증대됨에 따라 중국의 외환관리는 완화되어 경상항목에 대해서는 인민폐를 외화로 교환하는 것이 1990년대 중반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원자재, 부품구입, 임금·배당금의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외환은 은행에서 구입하여 지불하거나 외상투자기업의 외환구좌에서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sup>216)</sup> 그러므로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WTO가입과 관련하여서도 그러한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수지균형을 요구하는 것은 TRIMS 협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수지균형에 관한 요구를 굳이 법령에 규정할 의미가 없게 되었다.<sup>217)</sup>

이러한 상황에서 먼저 《중외합작기업법》의 「중외합작경영기업은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중외합작경영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에 협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제20조를 삭제하였다. 《외자기업법》에서도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제품이 관련 주관기관의 인가를 얻어 중국시장에서 판매되어 그러한 기업의 외환수지균형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도록 인가한 기관이 해결할 책임을 진다」는 舊제18조 제3항의 조항<sup>218)</sup>을 삭제하였다. 뒤이어 2001년에는 외자기업의 외환수지균형을 요구하였던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제56조를 폐지하였

215) 원칙적으로 외국측 당사자가 출자금으로서 납입한 외환 및 자신의 수출활동으로 얻어진 외환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216) 系賀了·森川伸吾·大西宏子, “中國外商投資企業法の改正”, 『國際商事法務』, Vol. 29, No.1(2001), p.63.

217)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6.

218) 구법 제18조 제3항.

다.<sup>219)</sup> 2001년 7월 개정된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제75조의 합자기업의 외화수지규형을 유지하도록 한 규정도 폐지되었다.

## 2) 국내물자 우선구입요구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제19조의 “합작기업은 허가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연료 등의 물자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합작기업은 ……등의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다. 《외자기업법》의 「외자기업이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자재 및 연료 등 물자에 대하여 중국에서 구입하루도 있고 국내시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중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구법 제15조)라는 규정이 「외자기업이 인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및 연료 등 물자에 대하여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또는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현 제15조)로 변경되었다.<sup>220)</sup>

개정전의 「동등한 조건하에서인 반드시 중국에서 구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외상투자기업에 외환수지균형 규정과 더불어 중국으로부터의 외환유출을 방지하고 중국 국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물자의 국내구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중국이 도입한 사회주의시장경제하에서는 기업의 물자구입활동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WTO가입과 관련하여서도 이러한 조항은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sup>221)</sup> 《외자기업법》 구 제15조의 변경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219) 종전 제56조 규정은 다음과 같았다; 외자기업은 외환수지균형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외자기업이 외환수지균형을 자체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외국투자자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 이를 밝히고,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비준기관은 이를 관련 부서와 상의한 후 회신한다;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서 외환수지균형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명시한 경우, 어떠한 정부 부서도 그 기업의 외환수지 균형문제에 대한 해결을 책임지지 않는다;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중국에서 절실히 필요하거나, 수입대체품목이 아닌 이유로 중국내 판매를 승인받은 경우, 중국 외환관리기관의 승인을 거쳐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220) 외자기업법 현행 제15조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라는 구절은 국무원이 제출한 외자기업법 개정초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221) 系賀了·森川伸吾·大西宏子, *op.cit.*, (*supra* note 216), p.63.

한편, 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는 종전의 제9조를 제10조로 변경하고 제2항에서 「합자경영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재료, 연료, 부속품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의 구입을 우선순위로 하지만 합자경영기업은 스스로 외환을 조달하여 직접 국제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다」(合營企業所需原材料, 燃料, 配套件等, 應盡先在中國購買, 也可由合營企業自籌外匯, 直接在國際市場上購買)라는<sup>222)</sup> 구절을 「합자경영기업은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필요한 원재료, 연료 등의 물자를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국내시장에 또는 국제시장에 구입할 수 있다」(合營企業在批准的經營範圍內所需的原材料, 燃料等物資, 可以在國內市場購買, 也可以在國際市場購買)라고 개정하였다.<sup>223)</sup>

개정전에도 외국인투자기업의 필요한 원자재, 연료, 부품, 설비의 현지도달에 관한 강제적인 규정은 없었으며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현지부품 조달조달계획과 국산화율을 투자신청시의 허가조건으로 하고 있었으며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를 합자경영계약에 규정하도록 요구받기도 하였다. 또한 지방에 따라서는 그 지방행정법규 및 산업정책에 따라 국산화율 및 현지부품조달 계획을 외국투자에 대한 승인 및 면세등의 우대조치를 향유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예도 있었다.

예컨대, 어느 지방에서는 자동차 산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차체에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도록 요구하였다.<sup>224)</sup> 최근에는 외상투자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물자구입의 자주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또한 이러한 국산화율과 부품 등의 현지조달요구는 GATT 제3조, WTO 협정의 TRIMs 제2조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번 수정으로 그러한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졌다.<sup>225)</sup>

222) 제9조 제1항의 중국내물자조달과 관련하여서는 합자기업이 다른 국내기업들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그러한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依法保護促進對外開放爲修改合資企業法建言”, 『法制日報』, 2001年 3月 11日字.

223)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라는 구절은 합자경영기업법 개정초안에서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0년 개정된 외자기업법 제15조의 예에 따라 최종개정안에 삽입되었다.

224)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3.

225) *Ibid.*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중국에서의 우선적인 물자구매 문제에 대해서는 顧昂然은 그 개정이유를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서 기업이 어떻게 구매하는가는 기업이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공평거 | 합리의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정부가 간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외상 투자기업은 국내의 기타 유형의 기업과 마찬가지로 구매자주권을 가진다. 동시에 WTO의 《貿易關聯投資措置協定》제2조 및 그 협정에 부속된 《해석성 목록》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기업이 현지에서 생산한 또는 현지에서 유래하는 상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국정부가 WTO 가입협상과정에서 이미 그러한 제한조치를 철폐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sup>226)</sup> 그후 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51조는 종전의 제57조의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가능한 한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수출의무

《외자기업법》의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하고 선진적인 기술과 설비를 채용하고 제품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수출하여야 한다』(구 제3조 제1항)라는 규정은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품을 수출하고 기술이 선진적인 외자기업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현 제3조 제1항)로 변경되었다. 구법에서 수출의무규정이 설치된 취지는 외환수지균형의 유지촉진, 수출산업의 진흥 등에 있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자의 국내물품 우선구입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즉, 사회주의시장경제 및 WTO가입을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sup>227)</sup>

2001년 《외자기업법 시행세칙》도 수출의무관련 규정의 개정이 있었다. 즉 시행세칙 제3조의 종전 규정은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고 경제효율을 현저히 높여야 하며, 적어도 1. 선진기술과

226) “全國人大常委會法工委主任顧昂然說:修改中外合資經營企業法是形勢發展的需要”, 『法制日報』, 2001年 3月 10日字.

227) *Ibid.*

설비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에너지와 원자재 절약형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을 실현하여 수입대체품을 생산하는 기업 또는 2. 연간 수출액이 해당 년도 제품생산액의 50% 이상으로써 외환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하여 ‘외자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의 국민경제발전에 유리하고 경제효율을 현저히 높여야 한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선진기술, 설비를 이용해 신제품 개발에 종사하고 제품개선 및 에너지, 원자재를 절약하도록 장려하며 수출형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로 수정하였다. 여기에서 보듯이 외자기업에 대하여 수출의무를 부담시키기보다는 수출형 외자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외자기업법 시행세칙》의 종전의 제10조 규정도 외자기업 설립을 신청하기 위해 소재지 현(縣)급 또는 현(縣)급 이상 지방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에는 외자기업 설립목적, 경영범위 및 규모, 생산제품, 사용할 기술설비, 제품의 중국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지면적 및 조건, 용수, 전기, 석탄, 가스 및 기타 에너지원의 종류와 사용량, 공공시설 요구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나 2001년 개정을 통하여 ‘제품의 중국내 판매량과 수출량의 비율’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개정에 의하여 종전 제15조 제7호에 규정된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했던 “제품의 판매 방향, 지역, 유통경로, 방식 및 내수·수출 비율”이 삭제되었다.

종전의 제45조의 “외자기업이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경우, 반드시 허가 받은 판매비율에 따라야 한다. 그 밖에 외자기업이 허가 받은 판매비율을 초과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비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도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 국가는 외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도록 장려한다’로, 제46조 제2항의 “외자기업은 허가 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직접 중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중국의 상업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대리판매할 수 있다”는 “외자기업은 생산제품을 중국내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상업기구에 위탁해 대리판매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48조 2항 “외자기업이 허가 받은 판매비율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중국의 관련 가격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및 제3항 “앞에서 언급한 가격은 물가관리기관과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였다.

사실상, 합작경영과 합자경영의 형식으로 중국에 투자를 한 경우에 외국측 당사자는 중국측 투자자와 공동으로 합작경영기업 또는 합자경영기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회피하여 100% 외자기업을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었으며, 비록 실제적으로는 수출의무가 形骸化되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수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합작경영기업이나 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미 무의미해진 수출의무조항을 현시점에서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WTO 가입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시켜야 할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외자계 기업의 수출의무가 법률상으로 폐지됨으로써 그러한 우려가 불식되었으며 그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sup>228)</sup>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14조는 개정에 의하여 제11조가 되고 계약의 주요 내용으로서 열거되었던 제1항 내지 제14항의 사항중 제7항의 “원자재의 구매와 제품의 판매방식, 제품의 중국 내외에서의 판매비율” 및 제8항의 “외화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였다. 또한, 舊 제61조의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중국이 시급히 필요로 하거나 수입하여야 하는 제품에 속할 때 중국 국내시장에서의 판매를 위주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는 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은 수입대체품인 경우에 한하여 합영기업의 제품을 중국 내수시장 위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수시장의 진출을 사실상 규제하는 것이었다.

## (2) 계획경제제도 잔재 규정과 기업자율성 저해 규정의 개정

### 1) 생산경영계획의 제출

개정된 《외자기업법》에서 『외자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그 주관부문에 제출하여 기록되어야 한다』(구 제11조 제1항)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2001년 개정된 《외자기업법 시행세칙》도 종전 제43조의 “외자기업은 생산 및 경영계획을 자주적으로 제정, 집행할 수 있으나 그 계획은 반드시 소재지 관할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228) 系賀了·森川伸吾·大西宏子., *op.cit.*, (*supra* note 216), p.64.

개정된 《합자경영기업법》에서도 제9조 제1항의 「합자경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정부의 주관부문에 제출하고 경제계약의 방식으로 실시되어야 한다」(合營企業生產經營計劃,應報主管部門備案,并通過經濟合同方式執行)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사회주의시장경제하에서<sup>229)</sup> 기업은 법률에 따라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가지며 정부는 주로 거시적 관리를 하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기업에서는 모두 정부의 기업주관부문에 생산경영의 계획을 보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정되었던 것이다.<sup>230)</sup>

229) 현행 중국 헌법에 규정된 사회주의시장경제라 함은 사회주의공유제를 기초로 하여 국가의 거시적 통제하에서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에 대한 기초적 작용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제체제라고 한다. 國家教委社科司編, 『中國社會主義建設』(遼寧人民出版社, 1996), p.158; 宋濤主編『政治經濟學教程』(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p.294. 1993년 헌법 개정에 의해 사회주의시장경제가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것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대체한 것이지만 여전히 사회주의공유제는 유지되고 있다(중국헌법 제6조, 제15조). 이와 같은 사회주의공유제라 함은 생산수단(토지, 천연자원, 생산설비 등)을 공유(국가 또는 집단소유)하는 제도를 말하며 중국 경제체제의 기초가 된다(중국헌법 제6조). 그러나 중국에서는 생산수단의 私有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으며(중국헌법 제11조, 제18조 등) 중국에서 사회주의 공유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완화된 사회주의 공유제하에서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을 행하는 것이 사회주의시장경제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영자주권을 가진 기업이 자유롭게 상품거래를 하도록 하여 수급관계가 반영된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230)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顧昂然是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은 1979년 7월 제5屆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990년 4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개정을 한 적이 있으며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등 이들 3건의 외상투자기업법률의 제정과 실시는 대외개방정책을 관철하고 외상투자를 촉진하고 대외경제협작과 기술교류를 확대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정안초안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합영기업의 생산경영계획은 주관부문에 보고를 하여 등록하고 경제계약방식을 통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는 바,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서 기업은 법에 따라 경영자주권을 향유하고 정부는 주로 거시적인 통제만을 할 뿐이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현재 국내의 다른 모든 유형의 기업들에게 일반적으로 생산경영계획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지 않고 중외합자경영기업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全國人大常委會法工委主任顧昂然說: 修改中外合資經營企業法是形勢發展的需要”, 『法制日報』, 2001年 3月 10日字.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제56조의 “합영기업은 합영계약이 규정하고 있는 경영범위와 생산규모에 따라 생산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 의 비준을 거쳐 집행하며, 그 생산경영계획은 기업주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기업주관부문과 각급 계획관리부문은 합영기업에 대하여 명령성의 생산경영계획을 하달하지 못한다”를 폐지하였다

## 2) 등록자본의 감소

개정된 《외자기업법 시행세칙》은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는 종전 제22조의 규정을 “외자기업은 경영기간 내에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다만, 투자총액과 생산, 경영규모 등의 변화가 발생해 등록자본금의 감소가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심사허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여기에서 보듯이 종전의 금지규정은 제한 규정으로 변화되었다. 따라서 향후 외자기업의 등록자본의 감소에 관한 승인이 부여되는 근거에 관한 내용의 법제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는 개정전의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중 등록자본금을 감소시킬 수 없다”라는 단순한 규정을 “합자기업은 합자기간중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다. 투자총액과 생산경영 규모등의 변화로 불가피하게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여 밑줄 친 부분을 추가하였다. 종전의 규정이 등록자본금의 감소 절대불가의 입장이었던데 반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등록자본금을 감소할 수 없지만, 투자총액과 생산경영규모 등의 변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얻어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여 예외적인 감소를 인정하고 있다.<sup>231)</sup>

## 3)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제약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에 대하여 중국측 당사자가 그 지배를 계속하고 외국의 선진적 관리경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합자경영기업법》 제6

231) 회사법, 회계법,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입법법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중의 중외합자경영기업이 등록자본을 감소시켜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개정하였다. “就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 *op.cit.*, (*supra* note 212).

조에서는 「중국측 당사자 또는 외국측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이사장을 담당할 경우 타방이 부이사장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합작경영기업법》 제12조에서는 「중외합작당사자의 일방이 이사장, 또는 연합관리기구 주임을 담당하며 타방은 부이사장 또는 연합관리기구 부주임을 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중국측의 합영기업 또는 합작기업에 대한 공동관리권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투자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중국측 당사자가 소액의 출자를 하고도 합영기업 또는 합작기업의 이사장(주임) 또는 부이사장(부주임)에 취임할 수 있게 되어 출자에 따른 경영권의 분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불공평하다는 것이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이였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과정에서 중외 각 합자경영 당사자들이 각각 이사장, 부이사장 및 사장, 부사장을 담당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수정의견이 합영기업법 수정제안의 일부로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로부터 제출되었으나,<sup>232)</sup> 이 제안은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를 개정하는 때에 舊34조에서 “……이사장은 중국 합영자가 파견하고, 부이사장은 외국합영자가 파견한다. ……”라는 부분을 삭제하였다(제31조). 그러나, 《합작경영기업법》과 《합자경영기업법》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출자에 따른 경영권의 분배와는 아직도 거리도 멀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이 규정들을 개정할 지에 대해서는 주목을 요한다.

또한, 舊 제46조 제2款에서 규정한 기술양도계약의 내용상의 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 열거된 7개의 요건중 제1항의 요건인 “기술사용료는 공평하고 일반적이어야 한다. 기술사용료의 지불은 일정비율의 공제방식을 채택함이 일반적이다. 일정비율의 공제방식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지불시 공제비율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을 수 없다. 공제율은 그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순판매액을 근거로 하거나 또는 쌍방 협의한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에서 밑줄친 부분을 삭제하였다.

한편, 외국인투자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기타 물자, 산업재산권·특허 기술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제27조 종전의 제1항

232)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5.

은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기계설비는 외자기업의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이어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또한, 동 제28조의 종전의 제1항은 “외국투자자가 화폐가치로 평가해 출자하는 산업재산권, 특허기술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외국인투자자의 소유에 속할 것 …”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외국투자자가 산업재산권, 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산업재산권, 특허기술은 외국인 투자자가 소유에 속해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한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27조의 “외국합영자가 출자한 기계설비나 기타 물자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합영기업의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할 것, (2) 중국이 생산할 수 없거나 또는 생산할 수 있지만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기술성능이나 공급 시간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 (3) 그 가액의 결정은 동 종류의 기계설비나 기타 물자의 당시 국제시장가격을 상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 (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삭제하여 이를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舊 제28조의 “외국합영자가 출자한 공업재산권이나 특허기술은 반드시 다음 조건 중 하나와 부합하여야 한다. (1) 중국이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신제품을 생산 또는 수요 많은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 (2) 기존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거나 생산효율을 현저히 제고할 수 있는 것, (3) 원자재나 연료 동력 등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는 것”라는 규정에서 제1항을 삭제하여 개정 제24조로 하였다. 또한, 동 제55조의 “합영기업의 기본건설자금은 합영기업의 거래은행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를 폐지하였다.

### (3) 설립업종 금지 또는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

2001년 《외자기업법 실시세칙》의 개정 이전에는 제4조에서는 외자기업 설립금지업종으로서 1. 신문, 출판, 방송, TV, 영화, 2. 국내상업, 대외무역, 보험, 3. 우편, 통신, 4.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하는 업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제5조는 1. 공공사업, 2. 교통, 운수, 3. 부동산, 4. 투자신탁, 5. 리스 업종에 대해서는 외자기업의 설립을 제한하되, 이 분야의 외자기업을 설립하려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청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그런데, 예컨대, 제4조 상기 4호에서 보듯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열거된 업종이외에 “중국정부가 외자기업의 설립의 금지하는 업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외자기업의 설립을 제한하는 업종을 정할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서 중국의 입법투명성 수준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제5조의 제한업종 역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사실이 외자기업의 설립이 어려운 분야였으며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그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의 기준 자체도 없었다.

그러나 개정 《외자기업법 시행세칙》은 종전의 제4조와 제5조를 “외자기업의 설립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업종은 외국인투자지도 방향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른다”라고 통합하였으며, 그런데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외국인투자지도 방향에 관한 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은 대단히 금지업종과 제한업종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입법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크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종전에 중국은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제3조에서는 합자기업의 설립이 허용되는 주요업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열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의 가이드라인 관리는 중국의 외자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WTO가 주장하는 자유화원칙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또한 과학기술이 일취월장하는 오늘날에는 각 산업의 변화가 격심하여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기도 하고 종전의 업종이 소멸하기도 하므로 가이드라인에 의한 관리의 대응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근거로 일부 실무자들이 법률이 禁止類과 制限類의 업종을 정하되,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조정하는 제안도 제기된 바도 있다.<sup>233)</sup> 이러한 입장을 어느 정도는 반영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는 개정된 외자도입법 실시세칙과 유사하게 “국가가 합자기업의 설립을 장려, 허가, 제한 또는 금지하

233) 중국변호사 2000년 대회의 섭외경제법 포럼에서 논의됨.

는 업종은 국가의 《외국인투자지도방향규정》 및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따라 집행한다”라고 개정되었다.

한편,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조건과 절차에 관한 개정에 대해서도 개정하였다.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원칙이 시장경제에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4조의 합영기업설립과 관련하여 구비하여야 할 조건을 삭제하였다.<sup>234)</sup>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설립절차에 관하여서도 그 절차를 간소화하였는 바, 중국합영자로 하여금 기업주관부문에 외국합영자와 함께 설립하고자 하는 합영기업의 항목건의서와 초보적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sup>235)</sup> 신청인이 직접 심사승인기관에 관련 심사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sup>236)</sup>

#### (4) 현행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의 개정

##### 1) 의 의

현행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관련 규장간의 명확히 불일치하는 조건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는데, 주로 현행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하는 《중

234) 제4조는 합영기업의 설립신청시 중외합영자는 반드시 기업설립에 따른 경제적인 효용과 이익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합영기업은 다음의 한 가지 이상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선진기술설비와 과학적 관리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제품의 품종을 증가 할수 있어야 하고, 제품의 품질과 생산량을 제고할 수 있어야 하며 에너지와 자재를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2)기업이 기술개조에 유리하여 적은 투자에도 빠른 투자효과와 수익의 증대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3)제품의 수출을 확대하여 외화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4)기술인력과 경영관리 인력을 배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합영기업이 설립요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이 규정을 폐지하였다.

235) 합영기업 설립절차와 관련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9조 제1항의 “중국측 합영자는 외국 합영자와 설립하려고 하는 합영기업의 사업항목에 관한 건의서와 초보적인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건의서와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는 기업주관부문의 심사동의와 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아야 하고, 비준을 받은 후 합영 각방은 위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각 합영기업의 설립준비를 할 수 있으며, 그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합영자 각방은 협의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관을 작성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또한 舊 제9조 제2항의 합영기업의 설립신청과 관련하여 중국측 당사자가 책임지고 심사비준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 제7조에서 심사비준기관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중외합영 당사자의 공동 책임으로 바꾸었다.

236) “就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op.cit.*, (*supra* note 212).

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상의 공상등기, 토지사용권취득과 양도, 관세와 공상통일세의 감면,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 합영기회, 중외합자경영기업청산에 관한 규정들을 개정하였다. 또한 회사법, 회계법,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입법법 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조례중의 중외합자경영기업이 등록자본을 감소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외화 計帳 및 관련 재무회계보고에 관한 규정, 중외합자경영기업청산소득납세에 관한 규정, 실시조례의 해석권에 관한 규정 등도 개정하였다.<sup>237)</sup>

## 2) 심사비준기관

제8조의 “중국내에 합영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유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나 국무원 유관 부, 국(이하 수입기구라고 한다)에 심사 비준을 위탁하여야 한다; (1) 투자총액이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는 금액 내이고 중국합영자의 자금출처가 이미 확보되어 있을 때, (2) 국가에 의한 원자재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연료, 동력, 교통운송, 수출 쿼터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수입 기관은 합영기업의 설립을 인가한 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비준증서를 발급한다(이하 대외경제무역부와 수입 기관을 “인가 기관”이라 약칭함)“를 제6조로 변경하여”……. 다음 조건을 구비한 경우, 국무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의 관련 부서에 심사비준의 권한을 부여한다. (1) ……., (2) 국가에 의한 원자재의 추가지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연료, 동력, 교통운송, 수출 쿼터 등의 전국적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 (3) 위 조항에 따라 승인, 설립된 합영기업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권한을 부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관련 부서는 이하 “심사비준관리기관”이라 통칭한다.“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sup>237)</sup> Ibid.

### 3) 토지사용권의 취득과 양도

토지사용권과 관련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53조의 “합영기업은 허가받은 토지사용권만을 가지며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다. 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제50조 “합영기업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 외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다.

### 4) 관세와 공상통일세 감면

《외자기업법》 제52조의 내용중에서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라는 부분을 “외자기업이 아래의 물자를 수입할 경우,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로 개정하였다. 《외자기업법 시행세칙》의 종전 제53조의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의 세법에 의거, 관세와 공상통일세를 면제한다”를 “외자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제한 품목이 아닌 한,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 또는 세금을 환급한다”로 개정하였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71조의 “합영기업이 수입하는 다음 물자에 대하여는 관세와 工商統一세를 면제한다. (1)계약의 규정에 따라 외국합영자가 출자하는 기계설비나 부속품과 기타물자(기타 물자란 합영기업의 공장건설 및 기계 등의 설치와 기계를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재료를 말한다) (2) 합영기업의 투자총액 내의 자금으로 수입하는 기계설비나 부속품과 포장물자 (3)심사비준기구의 비준을 거쳐 합영기업이 증가한 자본으로 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 공급을 보증할 수 없는 기계설비와 부속품과 기타물자 (4) 합영기업이 수출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나 부속품과 포장물자. ; ……”에서 밑줄 친 부분을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減稅 또는 免稅한다. ……; ……”로 개정하였다(제61조).

또한, 舊 제72조의 “합영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제품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 공상통일세를 면제할 수 있다. 합영기업이 생산한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사업개시

초기 세금의 납부가 곤란할 때 일정한 기한내 공상통일세의 면제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를 “합영기업이 생산하는 수출제품은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경우이외에는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세, 면세 또는 조세환급을 받는다“로 개정하였다(제62조).

舊 제115의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노동자 근로자 및 홍콩, 마카오 근로자는 교통수단이나 사무용품 등을 반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정에 따라 관세 및 工商統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의 밑줄 친 부분을 “……중국 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제103조).

#### 5) 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91조의 “합영기업의 근로자 모집, 초빙, 해고, 퇴직, 임금, 복리, 노동보험, 노동조합, 노동기율 등의 업무는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국가의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 규정에 따라 …”로 개정하였다(제80조).

#### 6) 합영기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100조의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업종과 사업항목과 관련된 구체적 실정에 따라 합영 각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10년에서 30년까지로 한다. 다만, 투자규모가 크고 건설주기가 길며 자본 수익율이 낮은 업종과 외국 합영자가 선진기술 또는 관건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여 첨단제품을 생산하거나, 또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5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무원의 특별비준을 거친 때에는 50년 이상도 가능하다” 및 제101조의 “합영기업의 합영기간은 합영 각방이 합영기업의 협의, 계약, 또는 정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합영기간은 합영기업의 영업허가증이 발급된 날부터 기산된다; 합영 각방이 합영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영기한의 만료 6개월전에 심사비준기구에 합영 각방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표의 서명이 있는 합영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심사비준기구는 동 신청서를 수리한 때로부터 1개월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아 합병기간을 연장한 합병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등기관리관법>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기하여야 한다”의 규정을 모두 폐지하고 그에 갈음하여 “합영기업의 합병기간은 《중외합자경영기업 합병기간 잠정규정》에 따라 집행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제89조).

#### 7) 청 산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103조의 “합영기업이 해산을 선언한 경우, 이사회는 청산의 절차와 원칙 및 청산 위원회의 인선 관련 문서를 제출하고 기업주관부문의 인가 및 청산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합영기업은 해산을 선언한 경우, 반드시 청산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청산판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산위원회가 청산업무의 책임을 진다”로 개정하였다(제91조).

#### 8) 청산소득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106조 제2항의 “합영기업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순자산액이나 잉여재산이 등록자본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윤으로 간주되어 법률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합영자가 분배받은 자산잔액 또는 잉여재산에서 그 출자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외로 송급하는 경우,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합영기업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순자산액 또는 잉여재산에서 기업의 미분배 이윤과 각종 기금, 청산비용을 공제한 잔여 부분중에서 실제납입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이 청산소득이 되어 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제94조).

#### 9) 외화 計帳 및 관련 재무회계보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86조의 “합영기업의 계정과목은 기장단위화폐로 기록하는 것을 제외하고 현금이나 은행예금, 기타 화폐비용 및 채권채무, 수익과 비용 등의 단위화폐가 기장단위화폐와 일치하지 않을 때 실제 수입지출된 화폐에 따라 기장하여야 한다; 외국화폐로 기장하는 합

영기업은 외국화폐로 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외에 인민폐로 환산된 회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환산손익은 실제 발생된 액수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연도의 손익으로 기장하여야 한다; 기장 단위화폐의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화관련 각종 장부의 장부상 손익은 연말 결산시 중국의 관련법률 및 재무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의 밑줄 친 부분은 “……; ……편집·보고하는 회계보고서를 인민폐로 환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제75조).

또한, 舊 제89조의 “합영기업은 합영 각방과 소재지 세무기관, 기업주관부문 및 동급 재정부문에 분기 및 연도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회계보고서는 원심사비준기구에도 제출하여야 한다”를 ““합영기업은 합영 각방과 소재지 세무기관 및 재정부문에 분기 및 연도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제78조).

#### (5) 새로운 개혁상황에 부적절한 규정의 개정

##### 1) 의 의

중국의 개혁과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부응하여 명백히 부적당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하였다. 정부기구의 개혁과 직능 변화의 요구에 근거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중의 중외합자경영기업 주관부문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의 발전요구에 따라 실시조례중의 외국투자자의 합작대상자 물색경로에 관한 규정,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기본건설계획과 기본건설자금에 관한 규정, 물자공급에 관한 규정, 상품판매경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외환·금융관리체제개혁후의 새로운 상황에 근거하여 실시조례중의 외환 표시가격에 관한 규정, 개좌개설·외환수지 관리에 관한 규정, 자금조달(貸款)에 관한 규정, 자금송금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하였다. 가격관리체제개혁의 원칙에 따라 기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스스로 상품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시조례의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가격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sup>238)</sup>

238) *Ibid.*

## 2)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주관부문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관리권을 갖고 기업활동을 심사·관리하는 정부의 기업주관부문이 합자경영기업에 대해서도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전개되어 왔다. 합자경영기업의 운영은 자주성을 가진 것이며 중국의 WTO 이후에는 합영기업의 활동이 한층 다양화될 것이다. 중국은 주관부문에 의한 지도, 감독은 합자경영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 개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에서는 주관부문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였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주관부문은 당시계획경제체제하의 산물이므로 경제체제 개혁이후에는 정치와 기업이 분리되고, 행정기관과 기업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특히 사회주의시장경제조건하에 기업은 충분한 경영자주권을 향유하고 정부는 주로 거시적인 지도만을 하게 되어 기업의 구체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섭할 수 없게 되었다. 실시조례에서 기업주관부문에 대해 계속 규정하는 것은 현대기업제도를 확립하려는 방향과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부 기구와 직능의 변화에 따른 요구에도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sup>239)</sup> 삭제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외합자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6조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측 합영자의 정부 주관부문은 합영기업의 주관부문(이하 기업주관부문이라 약칭함)이 된다. 만약, 합영기업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중국측 합영자가 있고, 아울러 이들 중국측 합영자가 다른 부문이나 지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련부문과 지구가 서로 협의하여 하나의 기업 주관부문을 결정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舊 30조의 “외국측 합영자가 출자한 기계 설비나 기타 물자, 공업재산권 또는 특허기술은 중국측 합영자의 기업 주관부문의 심사와 동의를 거쳐 심사승인기간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여 개정 제27조가 되도록 하였다. 또한, 舊 제46조에서 합영기업이 체결하는 기술양도계약에 대해서 기업 주관부문의 심사 및 동의를 얻고 심사승인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부분에서 기업 주관부문

---

239) *Ibid.*

의 심사와 동의를 얻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단순히 심사승인기관의 승인만을 얻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舊 제114조의 “합영기업의 중국인 노동자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하여 시찰, 업무상담, 학습 또는 연수를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기업주관부문이 출국을 신청하고 출국절차를 밟는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절차를 밟는다”로 개정하였다(제102조).

舊 제68조의 “합영기업은 유관규정에 따라 생산, 공급, 판매의 통계표를 작성하고, 기업주관부문, 통계부문과 기타 유관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를 “합영기업은 《중국통계법》 및 중국의 외자유치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통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제58조).

### 3) 외국투자자의 합작대상자 물색경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12조의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합영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우,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나 관련 성, 자치구나 직할시의 신탁투자기구와 유관 정부부문 또는 민간조직에 합영대상의 소개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폐지하였다.

### 4) 중외합자경영기업기본건설계획과 기본건설자금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54조의 “합영기업의 기본건설계획(시공능력, 각종 건축자재, 물, 전기, 가스 등을 포함)은 승인받은 가능성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기업주관부문의 기본건설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업주관부문은 계획에 포함시킨 후 생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여야 하고 그 배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다.

### 5) 물자공급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58조의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물자를 구매하는 때에 그 공급경로는 다음과 같다. (1) 계획분배에 속하는 물자인 때 기업주관부문은 물자공급계획에 이를 포함시켜 물자부문이나 상업부문 또는 생산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물자의 공급을 보장한다. (2) 물자, 상업부문이 경영하는 물자에 속할 때 유관물자경영 단위로부터 구매한다.

(3)시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물자에 속할 때 생산기업 또는 그 판매기구나 대리판매기구로부터 구매한다. (4) 대외무역공사가 경영하는 수출물자에 속할 때 유관 대외무역공사로부터 구매한다”를 폐지하였다.

6) 상품판매경로에 관한 규정 삭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64조의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계획분배의 물자에 속하는 때 기업 주관부문을 거쳐 물자관리부문의 분배계획에 포함시킨 다음, 그 계획에 따라 지정된 사용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2) 물자, 상업부문이 경영하는 물자에 속하는 때 물자, 상업부문이 그 기업으로부터 구매한다. (3) 상기 두 종류의 구매계획에 속하지 않는 물자는 합영기업이 스스로 판매하거나 유관단위에 위탁하여 대리판매할 수 있다. (4) 합영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이 만약 중국의 대외무역공사가 수입하여야 할 물자에 속할 때 합영기업은 중국의 대외무역공사에 판매하고 외화로 그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다.

7) 외환 표시, 계좌개설·외환수지관리, 자금조달(貸款) 및 해외송금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74조의 “합영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에 의거하여 중국은행 또는 지정된 기타 은행에 외화구좌와 인민폐구좌를 개설하고, 구좌개설은행이 그 수취·지출을 감독한다; 합영기업의 모든 외화수입은 반드시 구좌를 개설한 은행의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여야 하고, 모든 외화지불은 그 외화예금구좌에서 행한다; 예금 이자율은 중국은행이 공포한 예금이자율에 따른다”를 “합영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의거하여 중국내 은행에 외환구좌와 인민폐구좌를 개설하고, 구좌개설은행이 수취·지출을 감독한다”로 개정하였다(제64조).

舊 제77조의 “국외나 홍콩, 마카오지구에 설치된 합영기업의 지점이나 지사는 현지에 중국은행이 있을 경우에는 중국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영기업의 지점이나 지사는 당해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합영기업을 거쳐 국가외화관리국이나 그 분국에 보고하여야 한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삭제하였다(제66조).

舊 제78조의 “합영기업은 경영업무상 필요할 때 《중국은행의 중외합자경영기업에 대한 대출에 관한 잠행판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은행에 외화대출이나 인민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합영기업에 대한 대출이자율은 중국은행이 공시한 이율에 따른다; 합영기업은 국외나 홍콩, 마카오지역의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외화관리국이나 그 분국에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를 “합영기업은 업무경영의 필요에 따라 중국내 금융기관에 외환대출과 인민폐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지역의 은행으로부터 외환자금을 대출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국가외환관리국 또는 그 分局에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로 개정하였다(제67조).

舊 제79조의 “합영기업의 외국국적 및 홍콩, 마카오 노동자의 임금, 기타 정당한 수익은 법률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고 중국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공제한 후 그 잉여부분을 중국은행에 신청하여 외화를 국외로 송금할 수 있다”의 밑줄 친 부분을 “……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로 개정하였다(제68조).

#### 8) 가격관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제 66조의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물자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하여 가격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가격에 따라 판매하여야 하고, 제품의 질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며, 그 대금은 인민폐로 수령한다; 합영기업이 결정한 제품 판매가격은 반드시 기업주관부문과 물자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합영기업이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은 합영기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가격을 기업주관부문과 물자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를 폐지하였다.

#### 9) 외환공시기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제 26조의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외화는 당일 외환관리국이 공시한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거나 약정 환율로 환산한다”라는 부분을 제23조 “…… 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한 ……”로 변경하였다.

#### 10) 합자경영기업의 개정권

합자경영기업법 제15조 후단의 「이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를 삭제하였다. 1982년 헌법 및 2000년 제정된 《立法法》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기간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의 기본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수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 보충·수정만이 아니라 향후 대외개방의 확대발전에 의해 합자경영기업법의 전면적인 정비가 예상되고 있어 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권은 전인대에 속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게 된 것이다.<sup>240)</sup>

#### (6) 차별대우 규정의 개정

내국민대우원칙에 근거하여 실시조례의 원자재구매와 상품판매 등의 분야에서 일부 제한적인 규정을 정비하였다. 즉 중외합자경영기업의 차별대우조항을 삭제하였다. 특히 합영기업이 필요한 기계설비·원자재, 연료, 부품, 운송수단과 사무용품 등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중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중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는 규정, 중국합자경영기업의 구매물품 공급체널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중외합자경영기업이 중국내에서 구매하는 물자의 가격과 서

240) *Ibid.*: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주임 顧昂然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서 그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이 제출한 개정시안과 상무위원회의 심의의견에 근거해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안 초안을 제출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를 거쳐 제청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의 개정권문제에 관련하여 顧昂然은 상무위원회 심의중에 위원들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동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속한다는 규정은 1979년 중국의 개혁개방초기에 필요하였던 것인 바 투자환경을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1982년 헌법과 2000년 제정된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부분적인 보충 또는 수정(즉 개정)을 할 수 있으나 그 법률의 기본원칙과 상충되어서는 아니 되는데 대외개방의 필요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시의 개정작업에 편리하여야 하므로 더 이상 “이 법의 개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있다”는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全國人大常委會法工委主任顧昂然說: 修改中外合資經營企業法是形勢發展的需要”, 『法制日報』, 2001年 3月 10日字.

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면에서 중국의 기타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중외합자경영기업이 중국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의 판매채널, 가격 등의 분야에서의 제한을 삭제하였다.<sup>241)</sup>

이상에서 중국구매물자 설비의 내국민대우이외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후자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舊 제65조의 “합영기업이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물자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1) 수출하는 제품에 직접 사용되는 금, 은, 백금, 석유, 석탄, 목재의 6가지 물자는 국가외화관리국 또는 대외무역부문이 제공하는 국제시장가격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고 그 대금은 인민폐나 외화로 지불한다. (2) 중국의 대외 무역공사가 경영하는 수출상품이나 수입상품을 구매할 때 공급, 수요 쌍방이 국제시장가격을 참고하여 협의로 그 가격을 결정하고 그 대금은 외화로 지불한다. (3)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연료용 탄, 차량용 기름, 그리고 위 제(1), (2)항에 기재된 물자를 제외한 기타 물자의 구매가격 및 합영기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물, 전기, 가스, 열, 물자운수, 노무, 공정설계, 자문서비스, 광고 등의 비용을 결정할 때 합영기업은 국영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그 대금은 인민폐로 지불한다.”를 “합영기업이 국내에서 구매하는 물자의 가격 및 물, 전기, 전기, 가스 에너지, 화물운송, 노무, 공사설계, 자문, 광고 등의 서비스 비용은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로 개정하였다(제56조).

## (7) 기타 개정

### 1)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제87조의 “이 세칙은 대외경제무역부의 해석에 따른다”를 삭제하였으며, 제84조 종전의 “외자기업이 중국의 기타 기업 또는 경제조직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 외자기업이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

241) “就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 *op.cit.*, (*supra* note 212).

화인민공화국 섭외경제계약법'이 적용된다"라는 규정을 "외자기업이 기타 회사, 企業 또는 경제조직 및 개인과 체결하는 경제계약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이 적용된다"로 개정하였다.

## 2) 합자경영기업법

① 제2조 제2항의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령 및 관계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sup>242)</sup>

② 제6조 제4항의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해서는 법에 기초하여 각 합자경영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계약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의 채용, 해고, 보수, 복리, 노동보호, 노동보험 등의 사항은 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되었다.<sup>243)</sup>

③ 추가내용으로는 「합자경영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조합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및 「합자경영기업은 당해 기업의 노동조합이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7조로 삽입하였다.<sup>244)</sup>

④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4항의 「합자경영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를<sup>245)</sup> 「합자경영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국내(境內)의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으로 한다」로 개정하였다.<sup>246)</sup>

242) 합자경영기업법 제3조 및 외자기업법 제4조를 참조한 것임.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6.

243) 합자경영기업법 제13조 및 외자기업법 제12을 참조한 것임. *Ibid.*

244) 합자경영기업 제14조 및 외자기업법 제13조를 참조한 것임. *Ibid.*

245) 초안에서 '합영기업의 보험은 마땅히 중국 보험회사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으나 최종개정안은 보험법 규정과의 상호 연결을 위해 '중국경내의 보험회사'로 수정하였다. *Ibid.*; 전국인민대표대회 광서대표단의 王議民 대표등은 분임조 심의과정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제8조 마지막 항의 "합영기업의 각종 보험은 중국보험공사에 가입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WTO가입의 임박한 시범에서는 중국의 WTO가입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依法保護促進對外開放爲修改合資企業法建言", *op.cit.*, (*supra* note 222).

246) 합자경영기업법 제18조 및 외자기업법 제16조를 참조한 것임. *Ibid.*

⑤ 제14조를<sup>247)</sup> 제15조로 하고 1개 항목을 제2항으로 하여 「각 합자경영당사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두지 아니하거나 사후에도 서면에 의해 중재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sup>248)</sup>

상기의 ① 내지 ⑤의 기타 개정부분은 대부분 법률용어만의 개정에 의해 중외합작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의 각각의 내용과 다른 규정들을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조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249)</sup> 그 밖에도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원자재조달, 상품판매등도 시장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대외개방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어 제1조의 “중국의 공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의 뒤에 “개인”을 삽입하자는 건의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sup>250)</sup>

### 3) 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① 舊 제110조의 “합영 각당사자는 중재관련 서면합의를 근거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지가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대외경제무역중재위원회는 동 중재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 피신청인의 소재지국 또는 제3국의 중재기구에서 동 중재기구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를 “합영 각당사자는 중재관련 서면 협의를 근거로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기타 중재기구에서 중재를 할 수도 있다”라고 개정하였다(제98조).<sup>251)</sup>

② 舊 제116조의 “경제특구에 설립된 합영기업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국무원을 통과한 법률, 법규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에서 밑줄 친 부분을 “...법률, 행정법규에서 ……”로 개정하였다(제104조).<sup>252)</sup>

247) 구조항은 합영 각방이 분쟁발생시 중재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48) 합자경영기업법 제26조를 참조한 것임.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6.

249) *Ibid.* p.583.

250) “依法保護促進對外開放爲修改合資企業法建言”, *op.cit.*, (*supra* note 222).

251) 이 개정 역시 중국의 중재제도를 WTO의 규범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何敏·王娟, “入世“與我國仲裁制度創新”, 『法學雜誌』, 2000年 第4期(總 121期), pp.22-24 참조.

252) 경제특구의 입법들은 중국에서 언제나 선행성·실험성을 그 특색으로 가지고 있었다.

## 제 4 절 외상투자산업지도방향에 관한 법규

### 1. 의 의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자들이 중국에 투자하여 이른바 3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여왔다. 동시에 외상투자방향을 지도하여 외상투자방향이 중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고 아울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도록 외상투자법규의 규정과 산업정책의 요구에 근거하여 1997년 12월 29일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外商投資方向的暫行規定》 및 《外商投資產業地圖目錄》을 공포하였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外商投資方向的暫行規定》과 국가경제기술발전상황에 근거하여 《外商投資產業地圖目錄》을 정기적으로 작성 또는 적시에 수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외상투자항목의 심사 및 외국투자자의 중국투자의 지침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외상투자 산업과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장려, 허용, 제한과 금지라는 4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장려류, 제한류 및 금지류에 속하는 외상투자항목은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에 게재되며 장려류, 제한류와 금지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외상투자항목은 허용류에 해당되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다.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외상투자경영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국유자산이 지배지분(控股)을 점유하여야 할 외상투자항목을 명시할 수 있다. 또한 국무원은 《關於當前產業政策要點的決定》, 《九十年代國家產業政策綱要》, 《汽車工業產業政策》 등을 공포하였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淘汰落後生產能力,工藝和產業鼓勵發展的產業產品和奇術目錄》,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sup>253)</sup> 등을 공포하였다.

---

물론 모든 법령이 그러한 것은 아니며, 명백히 WTO규범에 위배되는 내용도 적지 아니하였다. 중국으로서는 WTO가입과 더불어 중국 전역에 통일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법령들이 자칫하면 경제특구 입법이 수권범위밖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양자간에 상호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개정을 하였다고 생각된다. 陳俊, “WTO與中國經濟特區立法創新研究”, 『法學研究』, 第23卷 第3期(總 134期), 2001年 6月. pp.101- 102.

253) 2000년 6월 16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그런데, WTO규범에 비추어 보아,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부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이 수출보조금,<sup>254)</sup> 수입제한, 非내국민대우 등과 마찬가지로 공정경쟁과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경제의 세계화 경향에 따라 경쟁정책의 국제적 협조도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의 산업정책도 아직 WTO의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바, 앞서 언급한 97년의 《외상투자방향지도 집행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등도 외상투자의 방향과 산업지도목록을 구체화하여 장려, 제한, 금지 유형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하고 아울러 專向性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이러한 산업정책도 반드시 입법을 통하여 WTO규범에 맞는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sup>255)</sup>

그밖에도 국무원은 《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에 대해 개정을 하여 새로운 규정이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2002년 3월 11일 제21호령으로 새로운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및 그 부속문서를 공포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으로 공포한

제18호로 공포됨.

254) 그러나 아직 중국의 현행법중에는 여전히 그러한 원칙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심지어 충돌하는 부분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숫자도 많고 또한 그 범위도 광범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수출보조금입법에 관한 것이다. WTO 보조금 專向性 제한원칙에 의하면 WTO 가입국은 일련의 기업 또는 상품, 일부 지역 또는 산업에 경제적 보조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중국이 오랫동안 시행하여온 기업수출실적에 근거한 국가의 보조금지급, 기업이 국산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한 수출품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금지된 보조금에 속한다. 이에 상응하여 중국의 현존하는 적지 아니한 정책과 입법규정도 단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예컨대, 수출품 또는 수출기업 특히 선진기술형 기업과 수출형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流轉環節稅의 감면, 원가 및 비용 보조, 융자 또는 토지구입우대 등등이다. 또한 과기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재정부·국가세무총국·세관總署이 2000년 공동으로 발표한 《中國高新技術產品目錄》에 의한 8개의 영역에 대한 1900항목의 고도 신기술 산품에 대한 고도 신기술산품수출우대정책을 향유하도록 한 정책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입법상으로 WTO규칙이 허가하는 全額조세환급(退稅)原則에 근거하여 이에 상응하여 수출조세환급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급가능한 간접세는 영업세, 판매세, 인지세 등을 포함하며 거기에는 WTO규칙이 약속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라는 두 가지 종류의 내국세에 관한 입법은 국내입법을 통해 규율할 수 있다. 그 밖의 현행 입법과 장래의 입법도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陳俊,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op.cit.*, (*supra* note 58).

255) *Ibid.*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은 폐지되었다.

## 2.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중국 국무원은 2002년 2월 26일 중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에 적응하고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연간 7-8%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목적의 경제개혁과 산업조정을 추진하고 WTO 가입 이후 투자지침의 합리화를 위하여 199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투자 방향지도잠정규정》을 폐지하고 중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우대부여 및 심사비준의 정책적 기준이 되는 《외국인투자 방향지도규정》(2002년 2월 11일 국무원령 제346호)을 공포하여 2002년 4월 1부터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투자 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의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제4조), 규정 본문에서는 장려, 제한, 금지영역만을 열거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허가영역으로 간주한다.

### (1) 장려영역(제5조)

- ① 농업 신기술과 종합개발, 에너지, 교통 및 공업용 주요 원자재
  - ② 하이테크기술, 선진 실용기술, 제품성능 개선 및 기업 경제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중국내 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와 신자재
  - ③ 시장수요에 근거한 우수한 제품,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
  - ④ 신기술, 신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 ⑤ 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위를 이용한 국가산업정책에 적합한 영역
  - ⑥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 이외에도 '허가'분야 중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장려로 간주함

### (2) 제한영역(제6조)

- ① 기술수준이 낙후한 영역
- ② 에너지절약에 불리하고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영역
- ③ 국가가 규정한 보호성 광산 감축/채굴 영역

- ④ 점차적으로 개방이 추진되는 영역
- ⑤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3) 금지영역(제7조)

- ① 국가안전 혹은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끼치는 영역
- ② 환경오염, 자연자원 파괴 혹은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영역
- ③ 대량의 경작지를 점유하여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영역
- ④ 군사장비 안전 및 효율적 이용에 불리한 영역
- ⑤ 중국특유의 공예 혹은 기술을 이용한 생산영역
- ⑥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영역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에너지·교통·도시 기초시설건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기존의 우대정책 외에도 승인을 거쳐 경영범위를 확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9조). 또한 생산품의 전부를 수출하는 허가영역의 외국인투자도 장려영역으로 간주하고,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한영역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위시 인민정부 혹은 국무원 주관부처의 비준을 거쳐 허가영역으로 간주한다(제10조).

한편, 중서부지역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허가·제한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적정 범위에서 조건을 완화하였다. 이 중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sup>256)</sup>범위에 속하는 영역은 장려영역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향유한다(제11조). 적용대상으로는 화교,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투자기업도 외국인 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6조).

(4) 평 가

이 규정은 우대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장려영역'으로 농업신기술, 에너지, 교통, 신재료, 환경 분야 등을 규정하여, 향후 중국의 중점 투자유치 산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한편, 1995년 잠정규정에서는 시장수요에 적응하는 생산 및 수출업체의 투자를 '장려업종'

256) 『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北京:法律出版社, 2002) 참조.

에 규정하였으나,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서는 동 사항이 삭제되어 단 순가공형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의 발표로 인하여 중국의 투자정책 방향이 분명히 제시되었으며 특히 장려산업 관련 업종 및 은행, 보험, 증권, 관광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對중국 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또한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하여, 허가·제한 영역인 경우에도 《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범위에 속하는 영역은 장려영역에 준하는 외국인투자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 3.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

중국은 2002년 2월 26일 공포된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에 근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02년 3월 13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던 구 목록은 2002년 4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외국인 투자영역을 장려, 허가, 제한 및 금지 등 4개로 분류하고 국민통계분류방법에 따라 모두 371개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에서 '구 목록'은 제한 영역을 갑(甲), 을(乙)류로 구분하였으나, 신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에서는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개방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외상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장려영역은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한 반면,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되었다. 공용부두에 대한 중국측 지배지분 제한을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 지분율의 제한도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한 금지분야였던 통신, 가스, 열에너지, 급배수 등 도시 배관망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약속한 투자 지역, 수량, 경영범위, 지분 제한을 크게 완화하였다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특히, 은행, 보험, 유통, 무역업, 관광, 통신, 운수, 회계, 법률 등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 개방되었으며,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장려를 위하여 외국인의 지분율 및 산업별 제한을 한층 더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시장경쟁제도 도입, 경공업품을 허가류로 분류하여 산업경쟁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눈 여겨 볼만하다.

### (1) 장려영역

설비 수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 우대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려영역'은 다음과 같다.

- ① 전통농업 개조, 현대식 농업 발전 및 농업산업화를 촉진하는 투자
- ② 에너지, 교통 및 원자재 등 기초산업 및 설비 구축에 대한 투자
- ③ 전자정보, 생명공학, 신재료 및 항공분야 등 하이테크기술 투자
- ④ 기계, 경공업, 방직 등 전통산업을 현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 실용기술 투자
- ⑤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투자
- ⑥ 서부대개발정책에 따라 중서부지역의 우위 산업에 대한 투자
- ⑦ 100% 수출용 '허가' 분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장려 산업 리스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sup>257)</sup>

####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 (1) 산출량이 적은 농지의 개조,
- (2) 채소, 과일, 차의 무공해재배 기술 및 계열화 생산,
- (3) 설탕작물, 과수, 화훼, 목초 등 농작물의 우량품종 및 신기술 개발(유전자 변환 품종 제외),
- (4) 화훼 생산과 묘포기지 건설 및 경영,
- (5) 농작물 줄기(폐기물)의 재활용, 유기비료 자원의 개발 생산,
- (6) 중약재 재배(합자, 합작에 국한),
- (7) 목림(대나무 포함) 우량종 재배,
- (8) 천연고무, 사이잘 삼, 커피 재배,

257) \* 표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시장개방이행의무와 관련되어 있다.

- (9) 축산 및 가금과 수산물 우량종 번식(중국 고유의 진귀한 우량종 불포함),
- (10) 유명 특산 수산물 양식, 심수 그물 양식,
- (11) 사막화, 수토 유실을 예방하는 목초재배 등 생태환경 보호 건설공정,

## 2. 채굴업:

- \* (1) 석유, 천연가스 고난도 탐사, 발굴,
- \* (2) 저삼투 유전개발,
- \* (3) 원유 채수율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 \* (4) 유정측정 등 석유 탐사,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 (5) 석탄 및 부존자원 탐사, 개발,
- (6) 석탄층 탐사개발,
- (7) 저급 광산개발 및 선광작업(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 (8) 철, 망간 광산 채굴, 선광작업,
- (9) 구리, 납, 아연광 탐사 및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 (10) 알루미늄광 탐사,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 (11) 유황, 인, 칼륨 등 화학광 개발, 선광 작업,

## 3. 제조업:

### 一. 식품가공업;

- (1) 곡식, 채소, 과일, 축산품 저장 및 가공,
- (2) 수산물 가공, 조개류 세척 및 가공, 해조류 기능식품 개발,
- (3) 과일/ 채소/ 단백질/ 차/ 커피 음료개발, 생산,
- (4) 유아/ 노인/ 기능 식품 개발, 생산,
- (5) 유제품 생산,
- (6) 생물사료, 단백질 사료의 개발, 생산,

### 二. 연초가공업:

- (1) 셀룰로오즈 디아세테이트 가공,
- (2) 제지법을 이용한 연초 박편 생산.

三. 방직업;

- (1) 공업용 특수 방직품 생산,
- (2) 고급 직물 염색 및 후가공,

四. 피혁, 모피제품업;

- (1) 돼지, 소, 양 원피 신기술 가공,
- (2) 피혁 후공정 신기술 가공,

五. 목재가공, 죽, 등, 종려, 초제품업;

- (1) 임업지역의 '저급' 목재 및 대나무 종합이용 신기술, 신상품 개발 및 생산,

六. 제지 및 지제품업;

- (1) 연산 30만톤이상의 화학 목재펄프, 연산 10만톤 이상의 화학기계펄프(CTMP, BCTMP, APMP), 원료기지의 목재펄프 일체화 공정 건설, 경영(합자, 합작에 국한),
- (2) 고급지 및 판재 생산 (신문용지 제외),

七.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 (1) 침상코크스, 콜타르 심가공,
- (2) 스템프코크스, 건조냉각 코크스 생산,
- (3) 상급 (고속도로, 1급도로용) 아스팔트 생산,

八. 화학원료, 화학품 제조업;

- (1) 증유 촉매, 분해증류제 올레핀 생산,
- (2) 연산 60만톤급 이상 규모의 에틸렌 생산 (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 (3) 에틸렌 부산품 C5-C9 산품의 종합이용,
- (4) 대형 폴리염화 비닐 에틸렌 수지,
- (5) 유기 염소화합물 생산 (유기염소 잔존율이 높은 산품 제외),
- (6) 유기화공 기본원료 (벤젠, 크실렌, 톨루엔 계열산품의 종합 이용),

- (7) 합성재료의 배합원료(비스페놀A, 부타디엔-스틸렌 라텍스, 피리딘, 4,4 디페닐메탄 - 지이소시안산 에스테르, 톨루엔),
- (8) 합성섬유원료(테레후탈산, 아크릴로니트릴, 카프라락탐, 나일론 66염 등),
- (9) 합성고무(SOR라텍스, 부틸고무, 이소아밀고무, 에틸렌프로필렌고무, 부타디엔법클로로푸렌고무, 폴리우렌탄고무, 아크릴고무, 클로로히도린고무 생산),
- (10)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합금,
- (11) 정밀화공(촉매제, 보제 및 석유첨가제 신산품, 신기술, 염료 상품화 가공기술, 전자 및 제지용 고도화학품, 식품첨가제, 사료첨가제, 피혁 화학품, 유전보제, 표면활성제, 수처리제, 접착제, 무기섬유, 무기분말 충전제)생산,
- (12) 방직 및 섬유 추사(抽絲)용 보제, 유제, 염료 생산,
- (13)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제, 촉매제 및 기타 보제,
- (14) 천연 향료, 합성 향료, 단이온향료 생산,
- (15) 고성능 페인트 생산,
- (16) 염소법 티탄백분 생산,
- (17) 불소, 염소, 탄화수소 대체물 생산,
- (18) 대형의 석탄원료 화학산품 생산,
- (19) 임업 화학산품 신기술, 신산품 개발 및 생산,
- (20) 가성소다용 이온막 생산,
- (21) 생물비료, 고농도 화학비료(칼리비료, 인산비료), 복합비료 생산,
- (22) 고효능/ 저독성/ 화학약품 잔존율이 낮은 농약원료 개발 및 생산,
- (23) 생물농약 개발 및 생산,
- (24) 환경보호용 유/무기 생물막 개발 및 생산,
- (25) 폐가스, 폐액체, 폐지꺼기 종합 이용,

九. 의약제조업;

- (1) 중국에서 특허보호를 받거나 중국의 행정보호를 받고 있는 화학원료 약 생산,

- (2) 비타민류, 니코틴산 생산,
  - (3) 아미노산류 (세린, 트립토판, 히스타민 등) 생산,
  - (4) 신기술, 설비에 의한 해열, 진통제 생산,
  - (5) 신형 항암약물 및 신형 심장, 뇌혈관 계열 질환약 생산,
  - (6) 효과가 높고 경제적인 신형의 피임약품 및 기구 생산
  - (7) 생물공학기술을 채용한 신형 약물 생산,
  - (8) 고기술에 의한ワクチン 생산(에이즈ワクチン, C형간염ワクチン, 피임ワクチン 등),
  - (9) 해양 약물 개발 및 생산,
  - (10) 에이즈 및 방사선 면역류 질환 등의 진단시약 생산,
  - (11) 약품 제재(방출조절, 미사일요법, 피부흡수 등의 신기술을 도입한 신제형, 신제품).
  - (12) 신형 좌제의 개발응용,
  - (13) 중약재, 중약채취물, 중약가공 및 생산(전통적인 음용한약재 조제기술 제외),
  - (14) 생물의학재료 및 제품 생산,
  - (15) 동물용 항균원료약 생산(항생소, 화학합성류 포함),
  - (16) 동물용 항균약, 구충약, 살충약 신산품 및 신제형 개발 및 생산,
- 十. 화학섬유제조업;
- (1) 차별화한 화학섬유 및 향기나는 섬유, 스판덱스, 탄산 섬유 등 고기술 화학섬유 생산,
  - (2) 환경보호형 화학섬유 생산,
  - (3) 일일 400톤이상의 섬유 및 비섬유용 폴리에스테르 생산,
- 十一. 플라스틱제품업;
- (1) 폴리아미드 랩 생산,
  - (2) 신기술, 신형 농업용 막 (광분해, 다기능 막 및 원료) 개발 및 생산,
  - (3) 폐 플라스틱 분해 및 재활용,
- 十二. 비금속광물제품업;
- (1) 일일 용해량 500톤 이상의 우량 float glass 생산,
  - (2) 일일 생산 2,000톤 이상의 신형 건조법 시멘트 생산라인(중서부 지역

에 한함),

- (3) 연산 1만톤 이상의 유리섬유(가마용 공예 생산라인) 및 강화유리제품 제조,
- (4) 연산 50만건 이상의 고급 위생도자 생산라인,
- (5) 도자 원료용 표준화 정제품 및 고급 장식재료 생산라인,
- (6) 유리, 도자, 유리섬유 가마용 내화재료 생산라인,
- (7) 무기 비금속 재료 및 제품(인공수정, 고성능 합성재료, 특종 유리, 특종 도자, 특종 밀봉재료, 특종 합성수지),
- (8) 신형 건축재료(담벽재료, 장식재료, 방수재료, 보온재료), (9) 비금속 광물 가공(분쇄, 정화, 정제, 개조),

十三. 흑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 (1) 두께·폭이 큰 강판 제조,
- (2) 아연도금 및 내식성이 강한 알루미늄/아연 합금강판, 칼라강판 제조,
- (3) 직접 환원철과 용해 환원철 생산,
- (4) 폐강 가공,

十四.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 (1) 연산 30만톤 이상의 산화알루미늄 생산,
- (2) 저질, 고난도의 야금광석 제련(합자, 합작에 국한, 단 서부지역은 독자도 가능),
- (3) 경질 합금, 주석화합물, 안티몬화합물 생산,
- (4) 유색금속 합성재료, 신형 합금재료 생산,
- (5) 희토류 응용,

十五. 금속제품업;

- (1) 비금속제품용 금형의 설계, 제조,
- (2) 자동차, 오토바이 주물(사출성형금형, 다이프레스 등) 및 연결집개(용접용, 검사용)의 설계, 제조,
- (3) 고급 건축용 금속제품, 온수 난방설비 및 금속제품의 개발, 제조,

十六. 일반기계제조업;

- (1) 3축 베어링 이상의 디지털 기계선반, 디지털 통제시스템 및 보조장치 제조,
- (2) 고성능 용접용 로봇과 고효율 용접 생산라인 설비 제조,
- (3) 내고온 절연재료(절연등급 F, H급)와 절연성형품 생산,
- (4) 비례 및 서보형 액압 기술, 저출력 공기압축조절 핵심부품과 정밀부품 생산,
- (5) 정밀 주형, 정밀 내부주물 및 표준화 주물 생산,
- (6) 정밀 베어링 및 각종 주요기기 전용 베어링 제조,
- (7) 자동차, 오토바이용 주단조 반제품,

十七. 전용설비제조업;

- (1) 곡식, 면화, 채소, 과일, 화초, 육류식품, 수산품의 저장, 신선보관, 건조, 운수, 가공 신기술 및 신설비 개발과 제조,
- (2) 농업시설용 설비 제조,
- (3) 농업, 임업기계 신기술설비 제조,
- (4) 트랙터, 연합 수확기 등 농업용 엔진의 설계와 제조,
- (5) 농작물 줄기/대의 종합이용 설비 제조,
- (6) 농업용 폐물의 종합이용 및 대규모 가축 양육 폐물의 종합이용 설비 제조,
- (7) 절수용 관개 신기술설비 제조,
- (8) 습지토방, 진흙제거 기계 제조,
- (9) 수질 생태환경 등 환경보호기술 및 설비 제조,
- (10) 장거리 수리조절시설의 통제시스템 설비 제조,
- (11) 수재방지 기계 및 설비 제조,
- (12) 식품영역의 고속·무균 주입설비, 상표 입착기 등 핵심설비 제조,
- (13) 아미노산, 효소제, 식품첨가제 등 생산기술 및 핵심설비의 제조,
- (14) 시간당 10톤 이상의 사료가공설비 및 핵심부품 생산,
- (15) 다색 읍셋 인쇄기 제조,
- (16) 피혁제품 후공정 신기술설비 제조,
- (17) 고기술의 특종 공업용 봉제기 제조,

- (18) 신형 방직기계, 제지기계(펄프 포함) 등 설비의 제조,
- (19) 도로, 항구용 신형 기계설비의 설계와 제조,
- (20) 도로용 교량의 유지보수, 자동 측정설비의 제조,
- (21) 도로용 터널의 운영통제시스템과 통풍, 재해방지 및 구조시스템 설비의 제조,
- (22) 철도 대형 프로젝트 및 유지보수 설비의 설계와 제조,
- (23) 조경 기계 및 기구의 신기술설비 제조,
- (24) 도시 환경보호 특종설비 제조,
- (25) 도로용 프레이즈, 수리보완 기계설비 제조,
- (26) 터널 굴착기, 도시지하철 굴착설비 제조,
- (27) 일일 8만톤 이상의 도시 오수처리설비, 공업용 폐수 이온처리 설비, 비등식 산소처리 설비 및 기타 생물처리폐수 설비, 폐플라스틱 재생처리 설비, 공업용 보일러 탈유황 탈질소 설비, 대형 내고온 내산성 집진기 제조, 쓰레기 소각처리설비 제조,
- (28) 연산 30만톤급 이상의 합성암모니아, 48만톤급 이상의 요소, 45만톤급 이상의 에틸렌 플랜트설비중의 수평압축기, 혼합조립기 제조,
- (29) 화력발전소 탈유황 기술 및 설비 제조,
- (30) 박판 연속주조기 제조,
- (31) 평판유리 고도 가공 기술 및 설비의 제조,
- (32) 무궤도 채굴, 적재, 운반설비, 100톤급 이상 기계동력식 광산용 덤프카, 이동식 과쇄기, 시간당 3,000m<sup>3</sup> 이상 굴착기, 5m<sup>3</sup> 이상 광산용페이로더, 전단면 향도 굴진기 제조,
- (33) 석유 탐사개발 신형기기 설비설계 및 제조,
- (34) 갱청소용 기계, 전자 설비 제조 및 약품 생산,
- (35) 전자 내시경 제조,
- (36) 고주파 기술, 디지털 화면처리기술, 복사제량 80KW 이상의 의료용 X-ray기기,
- (37) 초도형 자기감응 성향장치(MRI)의 제조,
- (38) 단일 혈액추출 기기의 제조,
- (39) 자동 효소면제 시스템(샘플 채집, 표본, 부화, 데이터 사후 처리 등

성능 포함) 설비 제조,

- (40) 의약품 품질통제 신기술, 신설비 제조,
- (41) 중약재 유효성분 분석 신기술, 채취 신공예, 신설비의 개발과 제조,
- (42) 신형 약물 포장재료, 용기 및 선진제약 설비의 제조,

十八. 교통운수설비제조업;

- \* (1) 자동차, 오토바이 완성차 제조,
- (2) 자동차, 오토바이 엔진 제조,
- (3) 자동차 주요 부품 제조 : 브레이크, 클러치, 변속기, 디젤엔진연료펌프, 피스톤, 밸브, 유압레버, 부싱(축받이용), 승압기, 여과기(三濾), 등속방향조절기, 완충기, 계기판, 자동차 전용 고강도부품,
- (4) 전자제어 가솔린 분사시스템, ABS, 에어백, 기타 자동차 전자설비 시스템,
- (5) 오토바이 주요 부품 제조: 기화기(카뷰레터), 마그네트, 엔진시동기, 디스크브레이크,
- (6) 석유공업 전용 사막차 등 특장차,
- (7) 철도운수 기술설비: 기관차 차량 및 주요부품 설계 및 제조. 선로설비 설계 및 제조. 고속도로 관련 기술과 설비 제조. 통신신호와 운수 안전감시 설비 제조. 전철 설비와 기재 제조,
- (8) 도시철도 교통운수 설비: 지하철 및 도시 경레일 철도 기관차 및 주요 부품 설계 제조,
- (9) 민간항공기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 (10) 민간항공기 부품 제조,
- (11) 민간 헬리콥터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 (12) 항공기 엔진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 (13) 민간항공기 탑재 설비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 (14) 소형 가스 터빈 제조,
- (15) 저속 선박 디젤엔진의 크랭크 축 설계 및 제조,
- (16) 특장선박, 고성능 선박의 수리,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상대적 지배 지위를 점함),

(17) 선박중 고속 디젤엔진, 보조기, 무선통신, 항해원조 및 부품 설계 제조(중국측이 상대적 지배 지위를 점함),

(18) FRP 어선, 유람선 제조,

十九.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1) 화력발전 설비: 60만kW 이상 수퍼크리티컬 세트, 대형 증기 터빈기, 10만 kW이상 가스-증기 연합순환 발전설비, 석탄가스화 연합순환 기술 및 설비(IGCC), 증압류화상(PFBC), 60만 kW이상 대형 냉각기 세트(합자, 합작에 국한),

(2) 수력발전 설비: 15만 kW이상 대형 양수발전기 세트, 15만 kW이상 대형 관류식 발전세트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3) 핵발전세트: 60만 kW이상 발전 세트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4) 송변전설비: 500kV이상 초고압 직류 송변전 설비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二十. 전자, 통신설비 제조업;

(1) 디지털 텔레비전, 디지털 캠코더, 디지털 VTR, 디지털 음향 설비제조,

(2) 신형 평면 디스플레이어 부분품(칼라현상관 등) 생산,

(3) 디지털 오디오/비디오 코더 및 디코더 설비, 디지털 방송 TV 스튜디오 설비, 디지털 CATV 설비, 디지털 오디오 방송 송신 설비 제조,

(4) 집적회로 설계 및 0.35 마이크론 이하 대규모 집적회로 생산,

(5) 대중형 컴퓨터, 노트북 및 고급 서버 제조,

(6) 대용량 光, 자기 정보저장장치 및 기타 부품 개발 및 제조,

(7) CAD, CAT, CAM, CAE 시스템 및 기타 컴퓨터 응용 시스템 제조,

(8)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및 제조,

(9) 반도체, 부품전용재료 개발 및 제조,

(10) 전자전용 설비, 계측기기, 공업용몰드 제조,

(11) 신규 전자부품( 편식 부품, 민감부품 및 감응전달기, 주파제어 및 선택성 부품, 혼합성 IC회로, 전력전자부품, 광전자부품, 신형 기전부품) 생산,

(12) 알칼리성 전지, 동력니켈전지, 리튬이온전지, 고용량 밀폐형 아연산

축전지, 연료전지, 원주형 아연공기전지 등 첨단기술 무공해 전지의 생산,

- (13) 고밀도 디지털 CD 플레이어용 핵심부품의 개발 및 생산,
- (14) CD-R, CD-RW, DVD-R, DVD-ARM 제조,
- (15) 민간용 위성 설계 제조(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 (16) 민간용 위성 페이로더 제조(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 (17) 민간용 위성 부품 제조,
- (18) 민간용 운반 로켓트 설계 및 제조(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 (19) 위성 통신 설비 제조,
- (20) 전지구 측위 시스템(GPS) 수신설비 및 주요부품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 (21) 광섬유 precast stick제조,
- (22) 622 MB/S 이상 동기 마이크로파 디지털 계열 전송 설비 제조,
- (23) 10 GB/S 이상 동기 광섬유 디지털계열 전송 설비 제조,
- (24) 광역 접속통신 시스템 설비 제조,
- (25) OXC 제조,
- (26) 비동기 전송 모드(ATM) 및 IP 데이터 통신 시스템 제조,
- (27) 이동통신 시스템(GSM,CDMA, DCS1800, PHS, DECT, IMT2000 등)핸드폰, 기지국, 교환설비, 시스템 설비 제조,
- (28) 고급 라우터, 10 GB/S이상의 네트워크 교환기의 개발과 생산,
- (29) 공중교통관제시스템 설비 제조(합자, 합작에 국한),

二十一. 제어계측기계 및 문화, 사무용 기계 제조업;

- (1) 디지털 카메라 및 핵심부품 개발 및 생산,
- (2) 정밀온라인 계측기기 개발 및 제조,
- (3) 안전생산 및 환경보호용 검측기계 신기술 설비 제조,
- (4) 수질 및 대기용 온라인검측기기의 신기술 설비 제조,
- (5) 수문데이터의 채집, 처리, 전송 및 홍수예방경보기기 설비 제조,
- (6) 신형 계측기 부품 및 재료 (인공센서 계측기용 감응기, 접속부품, 연성기관, 광전기 스위치, 접근감응스위치 등 신형 계측기용 스위치, 계

측기용 다기능 재료 등),

(7) 신형 출력장치(레이저프린터 등) 개발 및 제조,

(8) 정밀계기, 설비의 수리 및 A/S,

二十二. 기타 제조업;

(1) 석탄 세척 기술제품의 개발 이용(석탄 기화, 액화, 수석탄 슬러리 생산, 공업형 석탄의 생산),

(2) 석탄 세정 선별 및 분말 석탄(탈유황 석고 포함), 선탄(選炭)후 부스러기 종합이용,

4.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 공급업:

(1) 단기용량 30만KW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 경영,

(2) 석탄 세척 연소기술 발전소의 건설, 경영,

(3) 열 전기 종합 발전소의 건설, 경영,

(4) 천연가스 발전소의 건설, 경영,

(5) 발전위주의 수력발전소 건설, 경영,

(6) 핵발전소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주도적 지위를 점함),

(7) 새로운 에너지 발전소의 건설, 경영 (태양에너지, 풍력, 자기력, 지열 에너지, 조석에너지, 생물질 에너지 포함),

(8) 도시 급수시설의 건설, 경영,

5. 수리관리업:

(1) 종합수리 중추시설 건설, 경영(중국측이 상대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점함),

6.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통신업:

(1) 철도주간선망의 건설, 경영 (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2) 지선철도, 지방철도 및 그 교량, 터널, 페리 시설 건설, 경영(합자, 합작에 국한),

(3) 도로, 독립교량 및 터널의 건설, 경영,

- (4) 항구내 공용부두시설의 건설, 경영,
- (5) 민간 비행장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상대적으로 지배적 지위를 점함),
- (6) 항공운수회사(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7) 농업, 임업, 어업 범용 항공회사(합자, 합작에 국한),
- \* (8) 정기,비정기 국제 해상운수 업무,
- \* (9) 국제컨테이너 다식 연합운수 업무,
- \* (10) 육상 도로화물 운수회사,
- (11) 송유관, 가스관 및 유류 저장탱크, 석유전용부두 건설, 경영,
- (12) 석탄파이프라인 수송설비의 건설, 경영,
- (13) 운수업무와 관련된 창고저장설비의 건설, 경영,

7. 도매 및 소매무역업:

- \* (1) 일반 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8. 부동산업:

- (1) 일반 주택의 개발 건설,

9. 사회서비스업:

一. 공공시설 서비스업;

- (1) 도시밀폐형 도로건설, 경영,
- (2) 도시 지하철 및 전철의 건설, 경영(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3) 오수, 쓰레기 처리공장 ; 위험 폐기물 처리공장(폐기물 소각장, 매각장) 및 환경오염처리설비의 건설, 경영,

二. 정보 컨설팅업;

- (1) 국제경제, 과학기술, 환경보호 정보의 자문 서비스,
- \* (2) 회계, 회계 감사,

10. 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업:

- (1) 노인, 장애인 서비스,

11. 교육, 문화예술 및 방송영화업:

- (1) 고등교육기구(합자, 합작에 국한),

1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 (1) 생물 및 생물의학 공정기술,
- (2) 동위소, 복사 및 레이저기술,
- (3) 해양개발 및 해양에너지 개발기술,
- (4) 해수 담수 이용기술,
- (5) 해양 감측기술,
- (6) 에너지 절약 개발기술,
- (7) 재생에너지 및 종합이용 기술,
- (8) 환경오염처리 및 측정기술,
- (9) 사막화 방지 및 사막 처리기술,
- (10) 민용 위성 응용기술,
- (11) 연구개발센터,
- (12) 첨단기술, 신제품개발 및 기업육성 센터,

13.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허가’분야.

한편,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첨부 문건 一.에서 보다 구체화된 장려산업은 다음과 같다.

- 1. 석유, 천연가스의 고난도 탐사, 개발 : 합작으로 제한
- 2. 저삼투 유전개발 : 합작으로 제한
- 3. 원유 채수율 제고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 합작으로 제한
- 4. 유정측정 등 석유 탐사, 발굴을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응용 : 합작으로 제한
- 5. 자동차, 오토바이 완성차 제조 : 외자참여비율 50% 초과하지 않음
- 6. 정기, 비정기 국제 해상 운수: 외자참여비율 49% 초과하지 않음
- 7. 국제 컨테이너 다식 연합운수: 외자참여비율 50% 초과하지 않으며,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의 지배주주권 허가, 2005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의 독자경영 허가

8. 도로화물 운수: 2002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의 지배주주권 허가,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 허가
9. 일반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 하기 제한산업 (五)항과 동일
10. 회계, 회계감사 : 합작, 공동 경영으로 제한

## (2) 외국인투자 제한산업 리스트

###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 (1) 식량(감자 포함), 면화, 유료종자의 개발, 생산(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2) 진귀한 수종, 원목가공(합자, 합작에 국한),

### 2. 채굴업:

- (1) 텅스텐, 주석, 안티몬, 몰리브덴, 중정석, 형석 광산의 탐사, 채굴(합자, 합작에 국한),
- (2) 귀금속(금, 은, 백금류) 의 탐사, 채굴,
- (3) 금강석 등의 귀금속 및 비금속광석의 탐사, 채굴,
- (4) 희소 석탄의 탐사, 개발 (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5) 보론마그네시아 및 보론마그네시아 철광 채굴,
- (6) 천칭석 채굴,

### 3. 제조업:

#### 一. 식품가공업;

- (1) 황주, 유명 브랜드 백주 생산,
- (2) 외국 브랜드 탄산음료 생산,
- (3) 사카린 등 합성 단맛첨가제 생산,
- (4) 유지 가공,

#### 二. 연초가공업;

- (1) 권연, 필터 등 연초가공업,

三. 방직업;

- (1) 모 방직, 면 방직,
- (2) 제사,

四. 인쇄 및 복사업;

- (1) 출판물 인쇄(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포장 장식용 인쇄제외),

五. 석유가공 및 코크스 생산;

- (1) 정유공장의 건설, 경영,

六. 화학원료, 화학품 제조업;

- (1) 이온막 가성소다 생산,
- (2) 감광재료의 생산,
- (3) 아날린 생산,
- (4) 독성 화학품의 생산(에페드린, 유사에페드린, 에르고메드린, 에르고 타민, 리세르가이드),
- (5) 유산법 티타늄백분말 생산,
- (6) 보론마그네시아 철광석의 가공,
- (7) 바륨염의 생산,

七. 의약제조업;

- (1) 클로로마이세틴, 페니실린-G, 린코마이신, 켄타미아신, 다히이드로스 트렘마이신, 아미카신, 염산테도라싸이클린, 테라마이신, 아세틸나선 마이신, 마이데카마이신, 로이코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시프로후로 키사신, 놀후로키사신, 로메호루키사신 생산,
- (2) 아날긴, 파라세타몰, 비타민 B1, B2, C, E의 생산,
- (3) 국가 예방접종의ワクチン류 및 항독소류, 유독소류(BGG, 脊髓회질염, 삼중혼합, 마진, 율형 뇌막염, 유영성 뇌막염ワクチン 등),
- (4) 중독성 마취약품 및 정신약품 원료약 생산 (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5) 혈액제품의 생산,
- (6) 1회용 주사기, 수액기, 수혈기 및 혈액주머니의 생산,

八. 화학섬유제조업;

- (1) 통상적으로 칩을 사용하는 화섬 방사,
- (2) 1라인당 연간생산능력이 2만톤이하 레이온스테인플 생산,
- (3) 일일 생산량 400톤이하의 섬유, 비섬유용 폴리에스테르 및 아크릴섬유 생산,

九. 고무제품업

- (1) 바이어스 타이어, 구타이어(레이디얼 타이어 제외) 재생 및 저 성능의 공업용 고무부품 생산,

十.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 (1) 회토금속의 제련, 분리(합자, 합작에 국한),

十一. 일반기계제조업;

- (1) 컨테이너 제조,
- (2) 중소형 일반 베어링 제조,
- (3) 50톤 이하의 자동차 기중기(크레인) 제조(합작, 합자에 국한),

十二. 전용설비제조업;

- (1) 중저급 B형 초음파 촬영기,
- (2) 일반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단섬유 설비 제조,
- (3) 320마력 이하의 무한궤도식 굴착기, 3m<sup>3</sup> 이하의 차륜식 동력삽 제조 (합자, 합작에 국한),

十三. 전자, 통신설비 제조업;

- (1) 위성 TV 수신기 및 주요 부품,

4.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 공급업:

- (1) 단기출력 30만KW 이하 발전을 위주로 한 일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경영(소전력망 제외),

5.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통신업:

- (1) 도로 여객 운수,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 \* (2) 국경출입 자동차 운수,
- \* (3) 수상운수,
- \* (4) 철도 화물 운수,
  - (5) 철도 여객운수(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6) 촬영, 광산 탐사, 공업 등의 범용 항공(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 (7) 체신,

6. 도매 및 소매무역업:

- \* (1) 상품무역,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생산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 \* (2)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 소매,
- \* (3)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 (4) 상품경매,
- \* (5) 화물 임대,
- \* (6) 에이전트(선박, 화물운송, 화물관리 외국기선, 광고 등),
- \* (7) 정제유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 (8) 대외무역,

7. 금융 보험업:

- (1) 은행, 재무, 신탁투자,
- \* (2) 보험,
- \* (3) 증권, 증권투자기금관리,
  - (4) 금융리스,
  - (5) 외화중개,
- \* (6) 보험중개(대리),

8. 부동산업:

- (1) 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

(2) 고급호텔, 빌라, 고급오피스 빌딩, 국제회의장 건설, 경영,

9.사회서비스업:

一. 공공시설 서비스업;

(1) 도시가스, 난방 및 상하수도관 건설, 경영(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二. 정보 컨설팅업;

(1) 법률자문,

10. 위생, 체육 및 사회복지업,

(1) 의료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2) 골프장의 건설, 경영,

11. 교육, 문화예술 및 방송영화업:

(1) 중고등학교 교육기관(합자, 합작에 국한),

(2) 영화관 건설, 경영(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12.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업,

(1) 측량(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 (2) 수출입 상품검사 및 감정,

13. 국가정부 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타 산업.

한편, <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 첨부 문건 二.에서 구체화된 제한산업은 다음과 같다.

(一) 국경출입 자동차 운수: 2002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가,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 허가

(二) 수상 운수: 외자참여비율 49%를 초과하지 않음

(三) 철도화물 운수: 외자참여비율 49%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4년 12

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 허가, 2007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 허가

(四) 통신

1. 부가통신, 기초 통신업중 호출 서비스 :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상투자를 허가하지만, 외자참여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음. 2002년 12월 11일까지는 외자참여비율 49%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3년 12월 11일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50%에 달하도록 허가
2. 기초 통신업중 음성 및 정보서비스 :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비율은 25%를 초과하지 않음. 2002년 12월 11일까지는 외자참여비율이 35%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49%에 달하도록 허가함. 2006년 12월 11일이전에 외국측의 독자경영을 허가
3. 기초 통신업중 국내/국제업무: 2004년 12월 11일이전에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비율이 25%를 초과하지 않음. 2006년 12월 11일까지 외자참여비율이 35%에 달하도록 허가하며, 2007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49%에 달하도록 허가

(五) 상품무역, 직판, 우편구매, 인터넷판매, 특허경영,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 생산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 배송 ; 도서, 신문, 잡지의 도/소매 ; 정제유의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1. 수수료(커미션) 대리, 도매(소금, 담배 제외):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비율은 50%에 달함. 그러나,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 등의 경영은 불허함.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을 허가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하고,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의 경영을 허가함.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의 경영을 허가함
2. 소매(담배 제외): 외상투자를 허가하지만,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화학비료, 정제유의 경영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자참여비율이 50%에 달하도록 허가한다.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의 독자경영을 허가하고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정제유의 경영을 허가하며,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 화학비료 경영을 허가함. 취급품목이 자동차(2006년 12월 1일 이전 제한철회),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비닐, 정제유, 화학비료, 식량, 식물유, 설탕, 담배, 면화일 경우 체인점이 30개를 초과하면 외국측 지배주주권을 허가하지 않음

3. 특허경영 및 고정적인 매장이 없는 도소매 :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상투자 허가

(六)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 합작으로 제한하며, 중국측이 지배적 지위를 점함

(七) 화물 임대 :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의 지배주주권을 허가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 허가

(八) 에이전트

1. 선박: 외자참여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음
2. 화물운수(체신분야의 전문경영 서비스 제외) : 외자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음(속달 서비스는 49%를 초과하지 않음). 2002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을 허가하며,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3. 화물관리 외국기선: 합자, 합작에 국한
4. 광고: 외자참여비율이 49%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을 허가하며,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九) 보험

1. 비 생명보험: 외자참여비율이 51%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2. 생명보험: 외자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음

(十) 증권, 증권투자기금관리

### 제 3 장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정비

1. 증권: 2004년 12월 11일 이전에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비율이 1/3을 초과하지 않음
2. 증권투자기금관리: 외상투자를 허가하며, 외자참여비율이 33%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4년 12월 11일까지 외자참여비율이 49%에 달하게 함

(十一) 보험중개(대리): 외자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으며, 2004년 12월 11일까지 외자참여비율이 51%에 달하도록 함.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十二) 수출입 상품검사, 감정 및 인증 : 2003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지배주주권을 허가, 2005년 12월 11일 이전에 외국측 독자경영을 허가

#### (3) 외국인투자 금지산업 리스트

##### 1.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 (1) 희귀하고 진기한 우량품종의 양식, 재배(목축업, 수산업의 우량 유전자 포함),
- (2) 유전자 변형 식물종자의 생산, 개발,
- (3) 중국 관할 해역 및 내륙의 수산물 포획,

##### 2. 채굴업:

- (1) 방사성 광산의 탐사, 채굴, 선광,
- (2) 희토 탐사, 채굴, 선광,

##### 3. 제조업:

###### 一. 식품가공업;

- (1) 중국의 전통공업의 녹차 및 특종차 가공(각 지역 특산차, 홍차 등),

###### 二. 의약제조업;

- (1) 중국정부가 보호하는 한약재 가공(사향, 감초, 황마초 등),
- (2) 전통적인 음용 한약재 연계기술의 응용 및 비방 한약제품의 제조, 연초가공업,

三. 유색금속 제련 및 압연가공업;

- (1) 방사성 광산의 제련, 가공,

四. 무기 탄약제조업;

五. 기타 제조업;

- (1) 상아조각,
- (2) 호랑이뼈 가공,
- (3) 탈태 칠기 생산
- (4) 범랑제품 생산,
- (5) 선지, 떡 제조,
- (6) 암이나 기형을 유발하거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제품과 내구성 유기 오염물 제품생산,

4. 전력, 석탄가스 및 물의 생산 공급업:

- (1) 송전망의 건설, 경영,

5. 교통운수, 창고 및 우편통신업:

- (1) 항공 교통관제,
- (2) 통신,

6. 금융, 보험업:

- (1) 선물,

7. 사회서비스업:

- (1) 정부가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자원 개발
- (2) 동식물 자연보호구의 건설, 경영,
- (3) 도박, 복권업(도박형 경마장 포함),
- (4) 음란업,

8. 교육, 문화예술 및 방송영화업:

- (1) 기초교육(의무교육) 기관,
- (2) 도서, 신문, 잡지의 출판, 발행과 수입,
- (3) AV제품과 전자출판물의 출판, 제작, 발행과 수입,
- (4) 신문사,
- (5) 각급 방송국, TV, 라디오 네트워크 (유선 TV네트워크 및 송신국, 중계소 포함),
- (6) 방송, TV 프로그램의 제작, 출판, 발행, 방송,
- (7) 영화제작, 보급,
- (8) 비디오 방영,

9. 기타 분야:

- (1)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에 해를 끼치는 산업,

10. 국가정부 규정 및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타 산업.

(4) 평 가

신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WTO가입 등 중국의 투자환경이 과거 여느 때 보다 양호한 시기에 개정, 공표된 것으로 향후 중국정부가 대외개방 확대, 선진기술 도입, 투자의 질적 제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산업구조조정 강화 등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 방향의 기초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 《외국인투자 산업지도 목록》은 장려영역이 기존 186개에서 262개로 증가시키고 제한영역은 112개에서 75개로 축소하여 개방영역을 크게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구 목록’에서 장려영역이었던 경공업품목을 허가영역으로 전환하였는 바, 향후 경공업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선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경공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된다. 앞서의 ‘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부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허가/제한 영역인 경우에도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에 속하는 경우에는 장려영역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배려를 하였다.<sup>258)</sup>

## 제 5 절 외상투자기업의 국내재투자

### 1. 제정목적

대외무역경제합작부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2000년 7월 25일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잠행규정》(이하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외상투자기업의<sup>259)</sup> 국내<sup>260)</sup>투자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1조)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또 다른 기업(이하 “피투자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행위 그리고 피투자기업 지분권을 투자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에 관한 요건·절차 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외상국내투자잠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도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으며 지극히 간단한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예컨대, 《외상투자기업의 회사의 주주 또는 발기인인 경우의 등기관리에 관한 약간의 규정》(이하 “등기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하여 약간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외상투자기업의 등기를 관리하는 기관<sup>261)</sup>(이하 “원등기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심사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sup>262)</sup> 다른 기관의 인가가 필요한가 또는 기타 어떠한 절차를 행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

258) 최근 서부대개발을 위하여 중앙에서부터 서부의 各省市까지 이에 상응하는 외국인 투자세수우대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런데 입법기술의 미성숙과 정책방향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서부의 현행 세수우대제도상의 외자기업 우대는 많은 폐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면관계상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외자 투자에 대한 현저한 차별에 따른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趙成峰, “WTO與我國西部的涉外稅收優惠制度之調整”,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374](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374).

259) 외국자본을 도입한 중국기업, 즉 외자계중국기업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60)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을 제외한 중국 국내를 의미한다.

261)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을 정점으로 하는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여기에 해당한다.

262) 등기관리 규정 제7조.

라 규정내용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은 외국인 재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의 일환으로서,<sup>263)</sup>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요건, 절차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인정받고 있다. 외상투자기업 잠행규정의 시행에 의하여 등기관리규정이 실효되는가에 대해서는 잠행규정에 등기관리규정을 폐지하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없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동 잠행규정과 등기관리규정간의 모순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후법은 전법을 破한다는 원칙에 의하여<sup>264)</sup> 동 잠행규정이 적용되고 등기관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sup>265)</sup>

## 2.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의 개요

### (1) 적용범위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라 함은 국내에서 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의 형식을 채택한 중외합작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이와 더불어 외상투자주식유한회사가 그 기업의 명의의 투자하여 피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또는 당해 피투자기업의 다른 투자자의 지분권을 매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sup>266)</sup> 그러므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뿐

---

263) 본 규정은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의 요건으로, 이익계상을 개시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제5조 제2호), 다른 한편으로는 고정자산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 심사 승인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제13조). 기존의 외상투자기업이 자신이 배당받은 이익이 충분하지 아니하더라도 또 다시 중국 국내에 재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264) 입법법 제83조.

265) 본규정은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동으로 제정한 규정인 반면에, 등기관리규정은 마찬가지로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정한 규정이며 양규정은 모두 부문 규장(우리나라의 部令에 해당)으로서 대등한 효력을 가지며, 이중 어느 규정이 다른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점에 대해서는 《입법법》 제83조에 따라 후법은 전법을 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266)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 제2조 제1항.

만 아니라, 이미 설립된 국내회사의 지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이 잠행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투자성회사에<sup>267)</sup> 의한 국내투자에 대해서는 외상투자에 관한 법률, 법규 및 《關於外商投刺舉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이하 “《외상투자성회사잠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조 제21항), 상기의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투자성회사잠행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sup>268)</sup>

투자성회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하여 《투자성회사잠행규정》은 투자성회사와 그 投資者先 企業과의 관계, 투자성회사가 투자선 기업을 위하여 행한 행위등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반해,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은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에 근거하여 국내투자를 한 외상투자기업과 그 결과로서 설립된 피투자기업과는 독립적인 관계에 있게 되며 통상의 독립투자법인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율을 받게 된다고 생각된다.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은 무엇보다도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며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후의 행위규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은 듯 한다.

어떠한 행위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중요문제 예컨대, 피투자기업의 경영범위에 관한 규율도 명확하지 않다 외상투자기업은 엄격한 업종의 규제를 받고 정관, 영업허가증의 경영범위라는 형식으로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종의 범위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회사인 피투자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경영범위의 규제도 받지 않는가가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는 친회사인 외상투자기업의 경영범위의 구속을 받는가, 받는다면 어떠한 형식과 정도인가라는 점도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267)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또는 합영·합작의 형태로 설립한 직접투자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268) 曾我貴志·栗津卓郎, “中國における「外商投資企業の國內投資に關する暫行規定の制定」, 『國際商事法務』, Vol.28, No.10(2000). p125.

## (2)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요건

외상투자기업이 국내투자를 하는 경우의 요건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1)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요건

국내투자를 한 외상투자기업 자체에 관한 요건으로서 외상투자기업이 1) 등록자본의 납입을 완료하였을 것, 2) 이익계상을 개시하고 있을 것 3) 적법한 경영을 하고 위법경영의 기록이 없을 것이라는 3가지를 열거하고 있다(제5조). 여기에서 보듯이 등기관리규정 제3조와는 달리,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은 외상투자기업이 기업소득세의 납부를 개시하고 있을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국내투자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중에는 기업소득세납부증명 또는 감세증명이 있으며<sup>269)</sup>, 기업소득세면제기간에 있는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기업소득세의 납부개시를 요건으로 하는 등기관리규정 제3조 제3호는 이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고, 기업소득세 면제기간에 있는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외상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이익계상이 되고 있다면, 국내투자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외상투자기업에서 이익계상이 개시되었으면 적자년도의 차년도에도 국내투자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내투자의 前년도가 흑자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이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문언 해석으로서는 전자가 유력하지만 외상투자기업이 그 이익을 중국국내에서 재투자하는 것을 장려·촉진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라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적어도 과거의 1 또는 그 이상의 연도에 이익이 발생하여 배당을 받아 누적이익이 존재하지 하지 아니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 국내투자(즉 재투자)의 전년도에는 흑자여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sup>270)</sup>

269) 제7조 제5호.

270) 曾我貴志·栗津卓郎, *op.cit.*, (*supra* note 268), p.1226.

## 2) 피투자기업에 대한 요건

피투자기업에 관한 요건으로서,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자집행규정》은 피투자기업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제4조). 이러한 규정은 피투자기업이 《公司法》(회사법)상의 公司(회사)에 해당할 것임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외상투자기업도 원칙적으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의 형식을 채택하여야 하므로 회사법상의 회사에 해당되지만 외상투자기업에 관한 특별법<sup>271)</sup>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 때문에<sup>272)</sup> 《公司法》상의 중요한 규정들이 적용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예로 열거되는 것은 1) 외상독자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지분권자가 2인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회사법 제20조 제1항은 외상투자기업에 관하여서는 배제되며 2) 외상투자기업은 대체로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여 회사가 설립되면서부터 출자불입을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 설립의 전제조건으로 출자불입과 檢資를 요구하고 있는 회사법 제27조도 배제되며 3) 외상투자기업에서는 이사회가 최고권력기관이 되며 《公司法》 제37조에서 최고권력기관인 持分權者會는 설치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면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

다른 한편으로,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피투자기업은 다른 외국투자가와의 공동출자로 설립한 경우<sup>273)</sup>를 제외하고는 국내투자기업으로 분류되어 그러한 특별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상기 3가지를 포함하여 회사법의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술하듯이 외상투자기업대우를 향유하는 일정한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심사인가 신청을 하면,<sup>274)</sup> 외상투자기업인가증서가 발급되므로<sup>275)</sup> 회사법의 규정중에서 적어도 일부에<sup>276)</sup>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

271)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 그리고 이들 법률의 부속법령을 말한다.

272) 《公司法》제18조.

273) 제2조 제3항.

274) 제17조.

275) 제18조 제2항.

276) 예컨대, 설립절차에 관한 상기 2)의 출자불입시기의 규정 등.

적이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는 국가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sup>277)</sup> 《외상투자기업지도방향 집행규정》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sup>278)</sup>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야 하므로 외상투자의 금지류에 속하는 업종에는 투자를 할 수 없다 규정하고 있다.<sup>279)</sup>

### 3) 투자액에 관한 요건

한편,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집행규정》은 투자액에 관한 요건으로서 1) 다른 외국투자자와 공동으로 국내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25%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되며,<sup>280)</sup> 2) 외상투자기업의 투자누계액이 (피투자기업이 발생한 이익금으로 증자함으로써 투자누계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상투자기업 순자산의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을<sup>281)</sup> 요구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는 《등기관리규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만 제한류를 업종으로 하는 피투자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투자가 피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제한을 가하고 있었는데<sup>282)</sup>,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집행규정》에 의하여 폐지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점, 외자의 비율이 25%이상이 되는 중서부지역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의 대우의 부여 절차에서, 피투자기업의 경영범위가 제한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는데,<sup>283)</sup> 적어도 중서부지역에서는 외자비율이 25%이상인(그러므로 당연히 외상투자기업의 지분비율이 25%이상인) 제한류를 업종으로 하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 제17조 제4호, 제18조 제2항과 등기관리규정

---

277) 제3조 제1항.

278) 이들 문서에서는 각각의 업종들을 외자도입정책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권장류, 허가류, 제한류 및 금지류 등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절차도 달리 규정하고 있다.

279) 제3조 제2항.

280) 제2조 제3항.

281) 제6조.

282) 《등기관리규정》 제4조 제2호.

283)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18조 2항.

제4조 제2호는 모순되며<sup>284)</sup>, 따라서, 후법은 전법을 파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적어도 중서부지역에의 투자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투자가 피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의 25%를 초과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sup>285)</sup>

또한, 아래에서 후술하다시피 (문언해석으로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만) 외자비율이 25%이상인 피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부여 절차에 이러한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 제18조의 규정은 중서부지구에서의 투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한 해석이 채택되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지구가 어떠한 지역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류를 업종으로 하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가 존재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입장에 설 경우에는 등기관리규정 제4조 제2호는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해석상이 불명확성이 남아 있어 금후의 실무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3)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구체적인 절차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은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바, 피투자기업의 업종이 제한류에 해당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을 새롭게 신설하는 경우, 국내투자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의 경영 규모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피투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경우와 다른 경우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 및 그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절차를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1) 외상투자기업내부의 절차 - 이사회 전원일치 승결의 (모든 경우에 적용)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에서 외상투자기업이 국내투자를 하는 때에 이사회 전원일치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직접 규정한 조문은 존

284) 그러나, 외자의 비율, 즉 외상투자기업의 출자비율이 최소한 25%가 되는 경우만을 상정하는 것이라면 양 규정간에는 모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지만,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85) 曾我貴志·栗津卓郎, *op.cit.*, (*supra* note 268), p.1227.

재하지 않지만 제7조 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이 등기신청서의 제출서류의 하나로 이사회 전원의 일치 승인 의결 의사록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사회 전원의 일치 승인의결은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필수적인 절차가 된다고 해석된다.<sup>286)</sup>

이와 관련하여 재적하고 있는 이사회 전원의 일치된 승인 의결이 필요한가 아니면 당해 이사회 출신이사 전원의 일치된 승인의결이 필요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상기의 각 조항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중외합영기업에 있어서 해산 등의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출신이사 전원의 일치된 승인의결로 충분하다<sup>287)</sup>는 것을 고려하여 형평상, 국내 투자에 관한 결의의 경우에도 출신이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실무상으로는 운용당국에 의하여 다른 해석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으며 재적이사 전원의 일치된 승인의결을 얻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된다.

## 2) 외상투자기업에 관련된 기관의 절차

### ① 原등기기관에 대한 승인신청<sup>288)</sup>

전술한 바와 같이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의 시행에 의하여 등기관리규정이 실효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그 시행후에도 등기관리규정은 실효하지 않는다면, 외상투자기업은 원등기기관에 심사승인을<sup>289)</sup> 신청하여<sup>290)</sup>, 투자자격증명을<sup>291)</sup> 취득하여야 한다. 등기관리규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한 바 있듯이 애매한 점이 남아있다.

---

286) *Ibid.*, p.1228.

287)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제36조 제1항 제3호

288) 이 부분은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289) 《등기관리규정》 제7조 제1항.

290) 제출자료는 ①외상투자기업의 신청보고서, ②이사회결의사록, ③대차대조표, ④출자불입검증증명서 ⑤ 외상투자기업의 생산경영상황보고서 ⑥ 세무기관이 발행한 기업소득납세완료증명이다. 이 중 ⑥의 기업소득세납세완료증명에 대해서는 본규정 제7조 제5호가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납부증명 또는 감면증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기업소득세납세증명 또는 감면증명을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291) 등기관리규정 제7조 제2항.

② 외상투자기업의 원심사인가기관(이하 “원심사인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보고<sup>292)</sup>

외상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을 설립한 경우, 설립일<sup>293)</sup>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심사인가기관에 대하여 보고<sup>294)</sup>를 하여야 한다는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제12조의 규정은 이미 설립되어 있는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구입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준용되지 아니하겠지만, 이미 설립되어 있는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보고가 필요한가와 관련하여서는, 당해 외상투자기업을 관할하는 원심사인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피투자기업의 신규설립의 경우에도 기존 회사인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양수의 경우에도 그 자회사가 신설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으므로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 제12조는 기존의 피투자기업의 지분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생각된다.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은 원심사인가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사후보고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신규설립 및 지분양수의 경우를 불문하고 원심사인가기관에 대하여 본규정의 요구를 초월하여 사전의 자문·신청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취급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③ 원심사인가기관에 대한 사전 승인신청<sup>295)</sup>

외상투자기업이 그 고정자산에 의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 그 경영규모 또는 경영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원심사인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sup>296)</sup> 이것은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는 당해 기업에 발생한 이익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외상투자기업국내투자잠행규정》에서 당해 기업 자체의 경영규모의 축소를 야기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에 의한 투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신에 원심사인가기관의 심사승인절차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92) 조문상으로는 신설피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93) 설립일은 영업허가증 발급일이다(《公司法》(회사법) 제27조 제4항, 제95조 제2항).

294) 제출자료는 ①외상투자기업의 투자신청표 ② 피투자기업의 영업허가증(사본) ③ 피투자기업의 업종에 제한류에 속하는 경우, 현지성급심사인가기관의 승인문서이다.

295) 고정자산투자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의 경영규모,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96) 제13조 제1항.

어떠한 신청을 접수한 원심사인가기관은 신청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답을 하여야 하며 동기간을 경과하여서도 회답을 하지 아니한 경우, 승인이 이미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sup>297)</sup> 이는 인가승인의 신속화를 도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승인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길도 열어놓고 있는데 원심사인가기관이 승인을 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의 회답을 한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그 상급심사인가기관 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상급심사인가기관 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이의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외상투자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답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98)</sup>

### 3) 피투자기업과 관련된 기관의 절차

① 피투자기업의 소재지에 있는 성급외경무주관부문(이하 “현지 성급심사인가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신청(피투자기업의 업종이 제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피투자기업의 업종이 제한류에 해당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은 현지 성급심사인가기관에 대한 승인신청을<sup>299)</sup> 하여야 한다.<sup>300)</sup> 이러한 신청을 접수한 현지 省級심사인가기관은 피투자기업의 경영범위에 따라 동급 또는 국가

297) 제13조 2항.

298) 제13조 제2항.

299) 제출자료는 ① 투자에 관한 외상투자기업 이사회 전원일치의 승인의결의사록, ② 외상투자기업의 인가증서(사본) 및 영업허가증(사본) ③ 출자납입검사증명서, ④ 대차대조표 ⑤,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납부 증명 또는 감면증명, ⑥ 법률, 법규 또는 규장에 규정된 기타의 자료, ⑦ 피투자기업의 정관 등이다(제7조, 제9조 제1항). 투자자격증명은 ⑥의 법률 등에 규정된 기타 자료에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투자기업의 정관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① 기업의 명칭 및 주소, ② 기업의 경영범위 및 제품국내외판매비율, ③ 기업의 등록자본, ④ 투자자의 명칭 또는 성명, ⑤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⑥ 투자자의 출자방식 및 출자액, ⑦ 투자자의 지분권 양도의 조건, ⑧ 기업의 기구 및 그 설치방법, 직권, 의사규칙, ⑨ 기업의 법정대표자, ⑩ 기업의 해산사유 및 청산방법, ⑪ 투자자가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기타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며(제9조 제2항), 투자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제9조 제3항). 그러나 정관 필수적 기재사항중 상기 ②에서 “제품국내외판매비율”은 중외합작기업법의 개정 등을 통해 그리고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TRIMs협정에의 부합성으로 인해 이미 死文化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00) 제9조 제1항.

급의 업계 관할부문에 의견을 구하고,<sup>301)</sup> 동 부문의 동의 또는 부동의의 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상투자기업에 회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sup>302)</sup> 현지 省級심사인가기관에 대한 승인신청은 투자시에는 장려류, 허가류를 업종으로 하였던 피투기업이 추후에 경영범위의 변경에 의하여 제한류의 업종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필요하다.<sup>303)</sup>

② 피투기업의 소재지에 있는 등기기관(이하 현지등기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등기신청(모든 경우에 적용)

피투기업의 업종여하에 관계없이 외상투자기업이 피투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는 경우, 현지등기기관에 대하여 등기를<sup>304)</sup> 신청<sup>305)</sup>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을 받은 등기기관은 회사법,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를 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등기가 허가된 경우, 그 기업류 별란에 외상투자기업투자라는 문언이 가필된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이하 “加筆 영업허가증”이라 한다)이 발급된다.<sup>306)</sup>

③ 외상투자기업지분권변경절차(피투기업이 외상투자기업인 경우에만 적용)

피투기업이 외상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그 지분권을 구입하는 때에, 외상투자기업투자자의 지분변경에 관한 약간의 규정 등의 규정에 정하여진 각종 절차도<sup>307)</sup> 행하여야 한다. 본 규정 제15조 제4항은 이 점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301) 제10조 제1항.

302) 제10조 제2항.

303) 제14조.

304) 피투기업을 설립하는 때에는 설립등기(제7조, 제11조)하고, 이미 설립된 피투기업의 지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제15조 제1항, 2항)를 한다.

305) 제출자료는 장려류, 허가류를 업종으로 하는 피투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① 투자에 관한 외상투자기업의 이사회 전원일치의 승인의결의사록, ② 외상투자기업의 인가증서(사본) 및 영업허가증(사본) ③출자납입검사증명서 ④대차대조표, ⑤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납부증명 또는 감면증명, ⑥ 법률, 법규 또는 규장에 규정된 기타의 자료라고 정하고 있다(제7조, 제15조 제1항). 제한류를 업종으로 하는 피투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의 제출서류로는 현지성급심사인가기관의 승인문서만이 열거되어 있지만(제11조 제1항, 제15조 제1항) 공상행정관리실무의관점에서는 그밖에도 현지성급심사인가기관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06) 제8조, 제11조 제2항 및 제15조 제3항.

307) 구체적으로는 피투기업의 설립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컨대, 중외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한다면 《외상투자기업투자자의 지분권변경에 관한 약간의 규정》 및 《중외합자경영기업법》과 그 실시조례에 따라 ① 다른 출자자 전원의 동의, ② 이사회 출석이사 전

(4) 외자의 비율이 25%를 초과하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대우의 부여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의 주된 취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외상 투자기업이 국내투자를 하는 경우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데 있으며, 또 다른 한가지 취지는 중서부지구에 대한 외국투자를 활성화시켜 동 지구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서부지구의 피투자기업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킨 경우 외상투자기업대우를 향유하도록 정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sup>308)</sup>

외상투자기업 대우를 향유한다는 의미는 기업소득세의 감면조치 및 수입관계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제적인 우대 부여에 주안점이 주어져 있으며 기타의 면에서 외상투자기업으로서 취급되는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노동규제, 공상행정관리규제, 외화관리규제, 중재관할 등 많은 측면에서 국내자본기업과 외상투자기업간에는 다른 취급이 존재하고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에 의하여 외상투자기업대우를 부여받은 피투자기업이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취급을 받을 것인가라는 문제는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에서는 완전히 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규제마다 적절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2)에서 설명하다시피 외상투자기업대우를 향유하는 일정한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에 따라 설립심사인가신청이 되고,<sup>309)</sup> 외상투자기업인가증서가 발행되므로,<sup>310)</sup> 실무의 운용상, 외상투자기업으로서 취급되는 측면이 많을 것임은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피투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대우를 향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 절차에 대하여 상술한다.

---

원일치의 의결, ③ 원심사인가기관의 인가, ④ 원등기기관에 의한 변경등기 등을 들 수 있다.

308) 曾我貴志·栗津卓郎, *op.cit.*, (*supra* note 268), p.1230.

309) 제17조.

310) 제18조 제2항.

## 1) 외상투자기업대우 부여의 요건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은 피투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를 부여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1) 피투자기업이 중서부지구에 설립되어 있을 것, 2) 피투자기업의 등록자본중 외자의 비율이 25%를 하회하지 아니할 것 등 2가지를 지적하고 있다.<sup>311)</sup>

먼저, 피투자기업이 중서부지구에 존재한다는 요건(이하 “지역요건”이라 한다)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외상투자기업대우부여의 절차와 관련된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이 제16조가 정한 지역요건을 충족시킨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의 절차를 부여한 것이라면 지역요건은 아무래도 충족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제17조 내지 제19조는 특단의 지역요건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와 관련된 피투자기업에 대한 외상투자기업 대우향유 절차를 정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된다면 지역요건이 절대적인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더욱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항에 뒤이어 제20조에서 중서부지구의 피투자기업이 제19조에서 언급된 외상투자기업인가증서 및 가필영업허가증에 기초하여 외상투자기업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것이므로 아무래도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의 입장은 지역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312)</sup>

다음, 외자의 비율이 25%를 하회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외자의 비율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된다. 여기에서는 외상투자기업의 지분비율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외자의 비율의 계산방법은 외상투자기업에서의 외국투자자의 출자비율과 비투자기업에서의 외상투자기업의 출자비율을 乘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sup>313)</sup> 또한,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의 공포전에 관계법령의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에 의하여 설

311) 제16조.

312) 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금후의 실무의 운용에서 임기응변의 조치가 채택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313) 예컨대, 외상투자기업의 외국측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40%이고 피투자기업의 외상투자기업의 출자비율이 60%인 경우, 피투자기업에서의 외자의 비율은  $60\% \times 40\% = 24\%$ 가 되며,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를 받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게 된다.

립된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에서 정한 보충절차를 거쳐, 외상투자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sup>314)</sup>

## 2) 현지 성급심사인가기관에 대한 인가신청

피투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sup>315)</sup>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현지 성급 심사인가기관에 인가를 신청하여야<sup>316)</sup>한다.<sup>317)</sup> 이 신청을 받은 현지 성급 심사인가기관은 외상투자기업의 투자가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에 부합하고 피투자기업의 등록자본중 외자의 비율이 25%를 하회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신청자에 대하여 인가문서를 발급하고 (피투자기업에 대하여) 외상투자기업대우를 부여한다는 문언이 가필된 외상투자기업인가증서를 발급한다.<sup>318)</sup>

피투자기업의 경영범위가 제한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현지의 성급 심사인가기관의 심사에 앞서, 피투자기업의 경영범위에 기초하여 동급 또는 국가급의 업계주관부문에 의견을 구하고<sup>319)</sup>, 동 부문의 동의 또는 부동동의의 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상투자기업에 회답을 하게 된다.<sup>320)</sup>

또한, 중서부지구에 설립된 피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 현지 성급심사인가기관의 승인권한범위밖에 있는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심사인가를 얻

---

314) 제23조.

315)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규정에서는 명확히 하고 있지 않지만 합리적인 해석을 한다면 외상투자기업 및 기타의 피투자기업의 출자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6) 제출자료는 ① 투자에 관한 외상투자기업 이사회회의 전원일치 승인의결의사록 ② 외상투자기업의 인가증서(사본) 및 영업허가증(사본). ③ 출자납입검사증명서, ④대차대조표, ⑤ 외상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납부증명 또는 감면증명, ⑥ 법률, 법규 또는 규장에 규정된 기타의 자료, ⑦ 피투자기업의 명칭, 주소 ⑧ 피투자기업의 투자계약 및 정관, ⑨ 피투자기업의 경영범위가 제한류에 속하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의 사업건의서 및 사업타당성 연구보고서로 정하고 있으며(제17조 제1항), 그 투자자가 지분권을 양도하는 피투자기업이 외상투자기업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밖에 지분권양도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317) 제17조 제1항.

318) 제18조 제1항.

319) 제18조 제2항, 제10조 제1항.

320) 제18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어야 한다.<sup>321)</sup> 피투자기업이 법률, 법규 및 부문 규장의 명확한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특정한 유형 또는 업계에 속하는 경우에도 현지 성급심사인가기관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대하여 그 심사인가를 위한 신청자료를 송부하고, 그에 대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관련된 법률, 법규 및 부문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의 결정을 내린다.<sup>322)</sup>

### 3) 피투자기업 소재지의 등기기관에 대한 등기신청

신청자는 외상투자기업인가증서를 가지고 피투자기업의 현지 등기기관에 등기신청을 하고,<sup>323)</sup> 그 신청을 받은 등기기관은 《회사등기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를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등기를 허가하는 경우, 가필영업허가증을 발행하게 된다.<sup>324)</sup> 이상의 절차를 거쳐 취득한 외상투자기업인가증서 및 가필영업허가증에 근거하여 피투자기업은 국가의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외상투자기업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sup>325)</sup>

## 3. 평 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은 종래의 규정에서는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의 요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서부지구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 지구에 설립된 피투자기업에 외상투자기업의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의 시행에 의해, 요건, 절차가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국내시장지향형의 상품제조업자 등이 판매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지사(分公司) 또는 지점 형태의 조직에 의해서는 얻을 수 없는 세계 기타의 면에서의 우대를 향유할 가능성이 생겨났다는데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

321) 제21조.

322) 제22조.

323) 제19조 제1항.

324) 제19조 제2항.

325) 제20조.

러나 이상에서 설명하였듯이 이익계상을 하고 있는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국내투자만이 그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것, 이사회와 전원일치의 승인의결이 요구된다는 것 등 그 장애물도 결코 만만치 않다.

또한 이상의 설명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의 내용, 《등기관리규정》과의 관계등에서 아직 불명확한 점이 많으며 그 밖에도 피투자기업의 행위규제등 여러 측면에서 《외상투자기업 국내투자잠행규정》에 의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적지 아니 존재하고 있으며 당장은 외상투자기업으로서도 시행착오를 무릅쓰고 국내투자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밖에 없으며, 향후의 운용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제 6 절 IT 분야에 관한 중국의 투자관련 법제

### 1. 의 의

중국의 IT 산업도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고 이에 따라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어 있으며 향후에 그 입법속도가 빨라지고 관련 법령의 정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물론, 현재 중국의 IT 관련 법령은 중국의 다른 분야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원칙적 수준의 규정과 불확정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WTO에 가입함에 따라 그 투명성(transparency)을 높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WTO 협정,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따라 더욱 더 많은 IT 관련 법령들이 개정, 제정 또는 폐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러한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sup>326)</sup>

326) IT와 직접관련 된 것은 아니지만,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2년 6월 <정부조달법>(政府採購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은 중국에서 6년간 시험적으로 시행한 정부의 조달제도가 입법의 형식으로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2000년 전국의 재정지출총액은 15845.4억 원의 인민폐에 달하는데 그 중의 327.9억원은 정부조달이 점하고 있다. 종전에는 대부분의 정부조달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여 중국의 정부조달은 시장경제원칙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지게 되었고 腐敗의 발생도 억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중국정부는 情報化工程과 政務處理의 電子化工程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IT 外商投資기업들이 중국의 IT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 WTO 협정상의 내국인대우 원칙 및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 따라 外資系 기업도 정부조달에 있어서도 중국기업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되었다. 《정부조달법》 제정 前이기는 하지만 2001년 北京市政府和 廣東省政府的

한편, 현행 중국의 IT관련 법령들은 중국의 법체계가 그러하듯이 국가법과 지방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법은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데 그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법의 경우도, 법률, 행정법규, 규장 등 그 유형이 대단히 다양하다. 또한 IT산업에 대한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IT 관련 법령의 범주는 대단히 광범위하여 이들 모두를 짧은 지면으로 소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sup>327)</sup>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로 전기통신분야, 인터넷분야 및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도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분석하기로 한다.

---

두 차례 大規模의 소프트웨어 입찰에서 중국의 국내기업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중국의 學界에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공평하지 못함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외자계 기업의 중국본토화가 정부조달의 낙찰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microsoft사는 2001년부터 정부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기업들과 협력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협력의 典型的인 예로서 中關村과학기술단지의 中關村과학기술회사와의 합영회사 설립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上海市 정부와 관련있는 투자성 회사와 합영기업을 설립하였다. motorola도 중국 내에 합영기업과 研究開發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볼 때 중국 입법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IT外商投資企業은 중국의 법체환경과 사법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입법체계로부터 볼 때 중국의 법률은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그리고 部門規章 및 지방정부 규장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外商投資企業에 관한 기본법률과 行業管理에 관한 특수한 법규 및 부문규장 이외에 정부의 산업정책과 각 지방의 과학기술단지의 지방성 법규 및 지방정부 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327) IT 기업은 기술의 尖端性和 投資의 冒險性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88년5월 중국 국무원은 북경시 정부가 지방성 법규로 제정한 《北京市新技術產業開發實驗區暫行條例》를 승인하였다. 이 조례는 中關村지역을 중심으로 북경에서 100km<sup>2</sup> 좌우 지역을 外向型·開放型的 과학기술단지로 확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중국에는 현재 53개에 달하는 과학기술단지가 있다. 中關村과학기술단지·上海浦東新區·天津경제기술개발구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조례> 제4장은 국제적인 경제기술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내 기업과 연구업체는 업체의 登錄·자금의 대출·稅關手續·인원의 출입국·토지의 사용·공용시설의 사용·保稅公단의 설립 등 여러 분야에서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있다 또한, 외국의 경제조직과 개인은 국내의 조직 및 개인은 中關村과학기술단지에서 합영 또는 합작 형태의 尖端기술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외국인 단독투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 2. IT 분야 법령의 특징과 체계

### (1) 기본적 특징

#### 1) 전기통신분야의 개방 및 국가독점체제로부터 경쟁체제로의 전환

종래, 중국에서는 국가의 우편통신부문이 통신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 1993년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선언과 더불어 국무원은 1993년 55호 문건을 공포하여 통신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독점적인 통신서비스의 일부 항목을 중국 국내기업들에게 개방하였다. 즉, 당시 郵電部는 1993년 11월 정식으로 일부 통신사업 분야 개방을 공표하였는데, 그 중에서 무선호출, 800메가헤르츠 集郡전화, 450메가헤르츠 무선이동통신, 국내 VSAT통신 등에 대해서는 경영허가증제도를 시행하되, 전화정보서비스, 컴퓨터정보서비스, 전자우편, 전자데이터교환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의 독점경영을 포기하고 중국 국내기업들에게 개방하였다.<sup>328)</sup>

이러한 1993년의 조치를 통해 중국의 통신서비스분야는 비록 초보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고도의 독점경영구조에서 벗어나게 될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방된 통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법인격을 가진 국유기업, 사업단위 또는 집체소유제기업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사영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되었으며 경영이 개방된 항목을 보면 그 대부분이 부가통신서비스 또는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지 아니한 서비스였으며, 전화, 전보, 전기통신(電通) 등 기초통신사업은 여전히 국가독점경영체제가 유지되었다.

그후 1994년 7월 연합통신유한공사(郵電部에 소속되지 아니함)가 국가로부터 승인을 얻어 설립되었고 장거리전화, 시내전화, 무선통신, 부가통신 서비스 및 기타 새로운 유형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지만, 이로써 기초통신사업분야의 국가독점체제가 진정으로 타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과거의 독점이 複占으로 변화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WTO 가입과 더불어 WTO 제협정, 가입의정서, 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

328) 李本森, WTO與國際服務貿易法法律實務,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1), p.11

(중국의 WTO가입에 대한 실무작업단 보고서 등에 포함되어 있음) 등에 따라 통신분야에 관한 시장개방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 2) 정보분야에 대한 장려와 국가의 관리감독

중국으로 송신되는 정보의 통제에 관한 중국정부의 민감성은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을 비롯한 출판, 방송 및 전자통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 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예컨대, 1997년 12월 30일 중국의 公安部長은 5장 25조로 구성된 국내 및 국제 컴퓨터정보네트워크의 안전·보호·관리를 위한 새로운 辦法인 컴퓨터정보네트워크 인터넷접속안전보호관리관법 《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安全保護管理辦法》을 공표하였다.

이 辦法은 중국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및 국가기밀을 누설 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또는 유해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辦法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위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의 暫行規定에<sup>329)</sup> 비해 절차와 책임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을 뿐이라는 평가가 외국으로부터 나왔음은 이 辦法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반면에 중국의 관료들은 중국의 정책은 인터넷이 정보에 대한 접근의 잠재력을 갖도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여 인터넷의 사용을 장려하고 대중화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국무원 국가정보기반조정위원회 부주석은 북경주재 미국대사관 관리에게 이 새로운 辦法은 더욱 광범위한 인터넷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였으며 현실적으로 모든 유해한 인터넷 사이트를 봉쇄하기가 불가능하며 그러한 봉쇄를 우회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329) 여기에서 잠정규정이라 함은 1996년 2월 1일 중국 國務院令 195號로 발표되고, 97년 5월 20일 일부 내용이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 관리 잠정규정》(中華人民共和國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管理暫行規定)을 말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중화인민공화국 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넷 접속관리 잠정규정 실시방법》(中華人民共和國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管理暫行規定實施辦法)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96년과 97년 동안, 각급 공안기관들은 네트워크화 응용 및 컴퓨터불법범죄활동에 대한 엄격한 단속·방지분야에서 비교적 큰 진전을 보았다. 1998년 1월 28일 개최된 전국공안컴퓨터관리감찰공작회의에서 전국의 180개 도시의 공안국이 범죄정보센터(CCIC) 데이터 뱅크 또는 작업소 600여개를 설치, 도피자 정보 11만 5천여건, 도난 자동차 정보 30여만건을 수록하여, 지역, 부처를 초월하여 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에 앞서 1997년 인터넷 호스트단위에 대하여 또한 접입단위와 대규모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개정 형법도 맨 먼저 컴퓨터범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안기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컴퓨터분야의 형사범죄활동을 단속하고, 국가의 중요한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안전과 정상운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공안부가 1997년 12월 30일 《컴퓨터정보네트워크 인터넷안전보호관리辦法》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직전인 1997년 12월 12일 《컴퓨터情報시스템安全專用製品檢測 및 賣買許可證管理辦法》을 공표한 바 있다. 또한 2000년 12월 28일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全國人大常委會關於維護互聯網安全的決定》를 공표함으로써 인터넷 네트워크의 안전문제가 국가적 관심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 (2) 체 제

중국은 현재 통일적인 전기통신법률(電信法)이 없으며 통신서비스무역에 대한 규율은 주로 行政條例와 規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이외에도, 행정법규로서 최근 제정된 대표적인 것들은 2001년 12월 19일 제정 2002년 2월 1일 시행된 《電信業務經營許可證管理辦法》, 2002년 6월 21일 제정 8월1일부터 시행된 《國際通信設施建設管理規定》, 2002년 6월 21일 제정되어 10월 1일 시행된 《國際通信出入口局管理辦法》, 2002년 6월 21일 제정, 10월1일부터 시행된 《建立衛星通信網和設置使用地球站管理規定》,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電信建設管理辦法》, 2001년 12월 2일 제정되어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通

信工程質量感督管理規定》등이 있다.

그 밖에도 중국의 WTO가입의 필요에 따라 1993년 9월 11일 제정된 《從事放開經營電信業務審批管理辦法》과 1995년 11월 10일 제정된 《放開經營的電信業務市場管理暫行辦法》은 2001년 12월 11일 폐지되었으며, 《高樓高塔高山設置無線尋呼發射基站管理規定》(2001년 11월 19일 제정 2001년 12월 1일 시행), 《電信網互聯爭議處理辦法》(2001년 11월 19일 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中華人民共和國無線電頻率劃分規定》(2001년 11월 12일 제정), 《通信行政處罰程序規定》(2001년 5월 10일 시행), 《公用電信網互聯管理規定》(2001년 5월 10일 제정), 《互聯網上服務營業場所管理辦法》, 《電信用戶申訴處理暫行規定》(2001년 1월 11일 제정), 《電信網碼號資源管理暫行辦法》(2000년 4월 25일 제정), 《信服務質量監督管理暫行規定》(2001년 1월 11일 시행) 등이 있다.

한편, 행정규장 또는 규장성 문건중 몇가지 대표적인 것들로서는 《電信終端設備進網審批管理規定》(1995년 11월 14일 우전국 공포), 《計算機信息網絡國際連網出入口新道管理辦法》(1996년 4월 우전국 공포), 《專用網與公用網聯網的暫行規定》(1996년 7월 24일 우전국 공포), 《電信服務標準(試行)》, 《中國公用計算機互聯網國際連網管理辦法》(1996년 4월 9일 우전국 공포), 《通信建設市場管理辦法》(1995년 4월 11일), 《通信行政處罰程序暫行規定》(1995년 10월 27일), 《中國公衆多媒體通信管理辦法》(1997년 9월 10일 제정되어 동년 12월 1일부터 시행), 《建立衛星通信網和設置使用地球站的管理規定》<sup>330)</sup>(2002년 6월 21일 제정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 《電信服務明碼標價規定》(2002년 7월 25일 국가계획위원회, 신식산업부<sup>331)</sup>가 공동으로 제정), 《電信資費審批備案程序規定(試行)》(2002년 8월

330) 이 규정의 제정으로 1995년 1월 15일 建立衛星通信網和設置使用地球站的暫行規定은 2002년 10월 1일자로 폐지됨.

331)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인 중국통신과 정부의 규제부문인 신식사업부는 우편 부문과 통신부문으로 이루어진 종래의 郵電部에 소속되었던 것으로 1997년 政企分離의 명분하에 이루어진 우전부를 재편하여 기기제조를 행하였던 전자공업부와 우전부의 통신부문을 통합한 신식산업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신식산업부는 종래의 우전부와 전자공업부 세력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통신사업에 대한 외자진출 및 WTO 가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29일 제정하고 동년 10월 1일부터 시행), 《互聯网络出版管理暫行規定》(2002년 6월 27일 제정되고 8월 1일부터 시행), 《中國互聯网络域名管理辦法》(2002년 8월 1일 제정되고 동년 9월 30일부터 시행), 《關於傳粉電信業務實行市場調節價的通知》(2002년 7월 6일 공표) 등이 있다.

한편 조만간 출현하게 될 《電信服務質量報告制度》는 각각의 통신사업기업들로 하여금 정부 주관부문에 서비스 품질 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電信服務質量公告制度》는 공고의 형식으로 정기 및 부정기적으로 각각의 통신사업기업들로 하여금 서비스 품질과 사용자 평가 결과를 사회에 공표한다. 그 밖에도 곧 출현할 것으로는 《電信服務質量監督管理暫行辦法》, 《電信用戶申訴受理暫行辦法》, 《電信服務用戶滿意度評價制度》등이 있다.<sup>332)</sup>

상기의 입법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통신사업에 대한 관리규제는 그 대부분이 조례와 부문 규장 및 각지구의 관련 부문과 지방의 법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법규의 종류가 많고 특히 지방성법규는 때로는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의 현재의 통신서비스의 입법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통신서비스무역의 원칙과 요구에 근거하여 관련 규장을 정비하고 입법 속도를 서두르고 입법 품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3. 《電氣通信條例》

#### (1) 제정배경

2000년 9월 25일의 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이하 “《전기통신조례》”라 한다)의 제정은 중국이 통신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로 해석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중국이 통신관련 법규의 정비는 상당한 정도까지 진행되었다. 전기통신조례 제1조에 의하면 전기통신시장 질서를 규율하고 전기통신 이용자와 전기통신 업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전기통신 네트워크와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통신사업(電信業)의 건전한 발전

332) 李本森, *op.cit.*, (*supra* note 328), p.115.

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전기통신조례는 총칙, 전기통신시장, 전기통신서비스, 전기통신건설, 전기통신안전, 벌칙, 부칙 등 7개 장, 81개조로 구성된 중국의 최초의 통신사업관련 종합적 행정법규이다. 이 조례는 중국정부의 통신시장 개방에 대한 원칙 및 태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중국정부가 초안을 마련 중인 《전기통신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기통신조례》가 기본적인 전기통신관련 법령이다. 비록 외국인투자진출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지는 않았지만 동 조례로 기초전기통신 및 부가통신에 대한 정부당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타나 외국인 투자사의 기초 가이드 라인이 되고 있음에는 틀림없다.<sup>333)</sup>

이와 같이 전기통신조례의 제정은 중국의 통신입법분야의 중대한 발전이며 이 조례 및 이와 동시에 등장한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관법(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은 중국 통신사업이 법에 의존하지 아니하던 종래의 상황을 타파한 것으로 중국 통신사업의 개혁과 발전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왔음을 의미한다.

## (2) 특 징

전기통신조례는 중국의 전기통신개혁을 결산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음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첫째, 정부·기업의 분리 및 공평·공정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것이다. 제4조는 “전기통신감독관리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 독점방지, 경쟁장려, 발전촉진과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을 준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주관 부문은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공개, 공평, 공정하게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공정경쟁을 보호하게 된다.

둘째, 경쟁 보호 및 발전 촉진의 원칙이다. 전기통신조례는 새로운 전기통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여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교적 관대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의 필요와 통신자원 상황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산업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동 조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전기통신기업에 대하여 상호접속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자를 배제시키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에 대하여 제

333) *Ibid.*, p.112.

한을 가하고 있다. 전기통신조례는 비국유경제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사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던 규정을 개정하여, 기간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전기통신기업중의 국유지분은 51%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외에는 국내의 사영경제를 포함하는 비국유경제가 전기통신사업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데는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셋째, 최신의 통신·정보기술 발전상황을 반영하였다. 예컨대, 조례는 각국의 전기통신입법중에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국제전기통신연맹의 전기통신에 대한 정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의 전자시스템 또는 광전자시스템기기를 이용하여, 음성, 문자, 데이터, 화상 기타 모든 형태의 정보를 전송, 발신 또는 접수하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34)</sup> 이러한 정의는 현재의 통신과 정보기술의 발전 성과와 발전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전화·컴퓨터·텔레비전의 3종류의 네트워크와 사업의 융합을 실현하고 정보네트워크화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조례는 “공용전기통신망, 전용전기통신망, 텔레비전 방송중개망(廣播電視傳輸網)의 건설은 國務院 정보산업(중국어로는 “信息産業“이며 이하에서는 “정보산업“이라 한다) 주관부문의 통일적인 기획과 사업관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조례는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대외적 협상 내용에 따라 컴퓨터인터넷 기타 관련 서비스도 전기통신관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넷째, 조례는 외국의 전기통신입법의 경험을 토대로 검토하여 선진국의 경쟁돌입후의 전기통신감독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예컨대, 조례는 기간전기통신사업경영허가증과 희소한 전기통신자원의 분배에 대하여 경매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기초통신사업 요금의 조정에 대해서는 청중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334) 제2조 제2항.

### (3) 주요 내용

#### 1) 전기통신서비스의 분류와 경영허가제도

##### ① 의의

중국은 현재 전기통신사업경영에 대하여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모든 전기통신사업수행기업은 반드시 주관부문이 발급하는 전기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획득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조례는 통신사업을 기초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초통신사업은 공공 네트워크 기초 시설, 공공 데이터 전송과 기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부가전기통신사업은 공공 네트워크 기초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통신과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335)</sup>

전기통신조례는 기초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을 구분하여 기업설립 조건과 관련 허가증 신청의 조건, 절차 및 수리기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통신사업의 특징과 국제관례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조례는 “국가는 통신사업에 대하여 경영허가제도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통신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하 양자를 “통신감독기관”이라 통칭한다)이 발급한 통신사업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통신자원의 유한성에 감안하여 불필요한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조례는 기초통신사업경영허가증 발급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국가의 관련 규정이 채택한 표준방식에 따라 진행된다. 기술창조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조례는 신기술을 이용한 新型 통신사업의 시범실시(試辦)에 대해서 예외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전기통신감독기관에 등록하기만 하면 가능하다.<sup>336)</sup>

##### ② 기초통신사업

기초통신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 부서의 허가를 얻고 ‘기초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경영이 가능하다. 신청자의 요건과

335) 제8조.

336) 李本森, *op.cit.*, (*supra* note 328), p.116.

관련하여, 사업자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초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업체여야하며 동 회사의 중국측 투자자의 지분비례가 최소 51%이상일 것, 사업타당성조사서와 네트워크설정 기술력이 있을 것, 경영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인력이 있을 것, 경영에 적합한 장소 및 자원이 있을 것, 사용자에게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도와 능력을 보유할 것, 정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허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기 신청자조건에<sup>337)</sup> 규정된 관련 문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후 180일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허가할 경우 ‘기초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허가여부는 국가안전, 통신네트워크안전, 통신자원 지속이용, 환경보호, 통신시장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한 ‘기초통신업무경영허가증’은 정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입찰방식을 이용해 낙찰한 업체에게 발급한다. 경영주체의 변경, 업무범위의 변경, 경영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90일전에 종전 허가증발급기관에 신청해 관련 변경·중지 수속을 밟아야 하며 폐업시에는 정부 관련 규정에 의해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 ③ 부가통신 서비스

2개 이상의 성·자치구·직할시를 커버하는 부가통신사업을 신청시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의 허가를 얻고 ‘다지역 부가통신사업 경영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경영지역이 하나의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내에 제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성·자치구·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어 ‘부가통신업무경영 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신청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경영자가 합법적으로 설립된 회사일 것, 경영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사용자에게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용도와 능력을 보유할 것, 정부가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듯이 기초통신서비스의 요건과는 달리 전문업체일 것, 중국측 투자지분 51%이상일 것,

---

337) 제10조.

타당성조사서와 네트워크설정기술력이 있을 것 등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허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 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이 신청을 접수한 6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허가할 경우 ‘다지역 부가통신 업무경영 허가증’ 또는 ‘부가통신 업무경영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허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통지기한이 기초통신사업자의 경우는 180일인데 반해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60일로 단기이다.

한편, 기초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경매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영주체의 변경, 업무범위의 변경, 영업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90일전에 종전 허가증발급기관에 신청해 관련 변경·중지 절차를 밟아야 하며 경영을 중지할 경우 정부 관련 규정에 의해 사후처리를 해야 한다.

## 2) 통신망간 상호접속 조정제도

전기통신조례는 각 통신업체 네트워크간에 상호접속을 확보하도록 하고 각 통신경영업체 네트워크간 상호접속스케줄을 작성하고 규정된 기한내에 관련사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네트워크간의 요금결제는 정부 관련 규정에 의하고 정부 규정외에 기타 비용을 추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전기통신망간의 상호연결분야에서는 전기통신망간에는 기술적 가능성, 경제적 합리성, 공평공정, 상호배합의 원칙에 근거하여 상호접속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동시에 접속에 관한 협의, 비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성 규정을 두고 있다.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은 사용자의 편이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통신사업간의 경쟁체제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통신사업의 특징에 근거하여 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는 대체적으로 이미 구축된 광범위한 사용자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는 사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후발 시장진입 사업자는 반드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러한 주요 사업경쟁자의 네트워크와 상호접속되도록 할 수 없다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게 된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통신사업자가 어떠한 구실을 들어 네트워크간 상호접속을 저지하거나 연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조례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 경영자로 하여금 다른 통신사업자와 專用네트워크 운영단위가 제시한 상호접속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네트워크간 접속분쟁에 대한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적 조정(협조, 裁定) 직무, 요구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통신네트워크간 접속은 먼저 접속 쌍방이 협상을 진행하고 규정된 기간내에 협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전기통신감독기관에 협조를 신청하고 규정된 기간내에 협조를 통해서도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협조기관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개논증을 진행하여 네트워크간 접속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협조기관은 전문가 논증과 접속방안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상호접속을 실시하는 결정을 한다.<sup>338)</sup>

### 3) 통신요금(資費)관리

통신요금은 원가를 기초로 하는 定價원칙을 실시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요구에 부합되고 통신업의 발전과 통신소비자들이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요금은 시장조절가(企業定價), 정부지도가 및 정부 定價로 나누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각의 통신사업들이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므로 개개의 상황에 근거하여 상기 3종류의 정가방식을 시행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시장경쟁이 충분한 통신사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장조절가를 시행하고 자연적 독점주세인 전기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가를, 기타 전기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초통신업무의 요금은 정부정가, 정부지도가 또는 시장조절가를 적용하고, 부가통신업무요금은 시장조절가 혹은 정부지도를 적용한다. 정부정가와 정부지도를 시행하는 통신요금 표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廳證會의 형태로 사회 각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국가 계획과 국민생활과 관계가 있는 중요한 전기통신사업의 정부정가에 대해서는 정보산업부가 방안을 제시하고 국무원 가격주관부문의 의견을 구하여 국무원에 보고하여

338) 李本森, *op.cit.*, (*supra* note 328), pp.116-117.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 4) 전기통신 資源의 유상사용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원을 점유·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통신자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신자원이라 함은 무선 주파수(電頻率), 위성궤도위치, 전기통신망번호 등 전기통신성을 실현하는데 사용되면서 수량이 제한된 자원을 말한다. 전기통신 資源의 관리분야에 대하여는 국가가 전기통신자원에 대하여 통일적인 기획, 집중관리, 합리적 분배를 하고 유상사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자원 배정은 '정부명령'과 '경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부족한 전기통신자원의 분배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경매(拍賣) 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통신자원 사용권을 취득한 경영업체는 규정된 기한내에 배정된 자원을 이용하며 통신자원사용량이 규정된 최소사용규모에 도달해야 한다. 통신자원을 사사로이 사용·양도·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통신자원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 성·자치구·직할시 정부통신관리기관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양도·임대·변경이 가능하다. 전기통신자원의 사용료 징수방법은 정보산업부가 국무원 재정, 가격 주관부문과 함께 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시행할 수 있다.<sup>339)</sup>

#### 5) 통신서비스 품질감독제도

전기통신조례 총칙에서는 통신서비스경영자는 전기통신사용자에게 국가가 정한 표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합리적인 가격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를 위한 통신터미널 설비를 설치(安裝), 이동설치(移裝)하고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에게 무료로 공익성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의무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기계장착(裝機) 장애복구, 사용료지불(交費), 조회(查詢) 등 사용자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환경에 대하여 서비스품질표준과 기한을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조례는 전기통신사업경영자로 하여금 각종 형식을 채

339) *Ibid.*, p.117.

택하여 광범위하게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용자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감독기관도 사용자의 申訴를 수리하여 법에 따라 전기통신기업의 서비스 품질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검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조례는 사업자가 규범에 의거하지 아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합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6종류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6) 통신시설건설관리제도

통신시설건설분야에서 국가자원의 유효한 배분과 합리적 이익을 실현하고 불필요한 중복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조례는 공용통신망, 전용통신망, 텔레비전방송중개망(廣播電視傳輸網)의 건설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이 통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 정보통신네트워크공정 또는 국가가 규정한 한도액 이상의 건설항목에 속하는 모든 공용통신망, 전용통신망, 텔레비전방송중개망 건설은 국가의 기본건설항목 심사승인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기초통신건설항목은 지방 각급인민정부 도시건설종합계획 및 村鎮, 集鎮 건설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조례는 전기통신건설중에 발생할 수 있는 市政건설, 기타 기초건설부분, 기타 전기통신기업간의 상호관계는 국가 전체의 이익이라는 차원에서 규율하게 된다.<sup>340)</sup>

#### 7) 전기통신건설 進網제도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기통신질서를 보호하고 전기통신망 상호접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조례는 “국가는 전기통신터미널설비, 무선통신설비 및 網간의 상호접속과 관련된 설비에 대해서는 進網허가제도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용통신망에 접속하는 상기 3종류의 설비는 반드시 국가가 규정한 기술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국무원 상품품질감독부문이 인가한 기구의 검측, 인증을 통과하여야 정식으로 정보산업주관부문에 설비진망허가증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340) *Ibid.* p.118.

## 8) 전기통신안전보장제도

정보네트워크화를 추진하고 네트워크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통신네트워크와 정보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조례 총칙은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전기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국가안전, 사회공공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위해한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의 前 3개조는 구체적으로 전기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범죄 또는 위법활동을 수행하는 17항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전기통신조례는 국제통신업무는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이 설립을 승인한 국제통신출입구국을 통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기통신조례는 또한 전기통신사업경영자, 사용자 및 관련 기관의 국가네트워크와 정보안전의 유지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341)</sup>

## 9) 외상투자전기통신제도

전기통신조례 제2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에서 전기통신활동 또는 전기통신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조례의 적용범위에는 외상투자기업도 포함되며 따라서 WTO가입후 중국 국경내의 외상투자기업도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이 조례가 부여한 권리를 향유하며 법에 의하여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중국이 WTO가입을 위한 국제협상이 완성되기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외상투자비율, 개방일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조례를 통하여 규정할 수 없었다. 동시에 외상투자경영전기통신기업은 제1차적으로 외상투자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들 법률도 WTO 가입이후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례 제80조는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의 투자와 전기통신사업경영 및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특별행정구의 조직 또는 개인의 中國內地

---

341) *Ibid.*, p.119.

투자와 전기통신사업경영의 구체적인 방법을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0)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제도

전기통신조례 제6장은 이 조례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제3조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국전기통신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영도하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내의 전기통신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이라 함은 현재는 정보산업부를 말한다. 각 성(구, 시)에 설치된 통신관리국은 정보산업부의 직접적인 영도하에 이 조례 및 기타 전기통신관련 법률, 법규를 철저히 집행할 책임을 지며 법에 의거하여 당해지구내의 전기통신사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하여야 한다. 상기의 양급 전기통신감독기관은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에 근거하여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경고하고 위법으로 얻어진 소득을 몰수하고 최고 100만원 또는 불법소득의 3 내지 5배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4. 인터넷 분야

#### (1) 인터넷 안전관리

中國으로 송신되는 情報의 통제에 관한 中國政府의 민감성은 중국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을<sup>342)</sup> 비롯한 출판, 방송 및 전기통신에 대한 엄격한

342) 중국에서 전국규모의 인터넷 도입은 1996년 우전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최초의 1차 ISP는 ① CHINANET(중국컴퓨터네트 :中國電信이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대규모를 가짐), ② CERNET(중국교육 및 연구컴퓨터 네트 : 국가교육위원회가 관리, 두번째로 큰 규모), ③ CHINA GBN(中國金橋情報網 : 吉通이 상용으로 제공) 및 ④ CSTNET CASNET(중전의 CASNET으로 중국과학원이 관리) 등 4개로서 이들은 모두 국제 Gate way로 되었으며 1999년 말에는 ① UNINET(聯通系), ② CNC(china netcom cooperation : 텔레비전 회사, 철도, 상해정부, 중국과학원이 참가), ③ 長城(軍系) 및 ④ 대외무역망(對外貿易經濟合作部系) 등 4개가 1차 ISP로 추가·결정되었다.

통제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sup>343)</sup> 현재 중국의 컴퓨터네트워크관리측면에서 가장 상위의 법령은 1997년 12월 30일의 《中華人民共和國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管理辦法》이다. 이 辦法은 그것에 의하여 대체된 종전의 暫行規定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컴퓨터情報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安全·保護·管理辦法은 暫行規定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또한 책임, 절차 및 처벌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辦法은 중국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와 책임 및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손상시키거나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또는 유해한 정보를 보급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辦法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단속”을 위한 것일 뿐이고 별다른 새로운 내용의 규정이 추가되지 아니하였으며 종전의 暫行規定에 비해 절차와 책임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더 구체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을 뿐이라는 평가가 외국으로부터 나왔음은 이 辦法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국무원정보화업무추진을 위한 하위부서인 국무원 정보주관부문(國務院信息辦)을 조직하고 국제적인 인터넷 운영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조할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한다. 또한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도 반드시 중국 전기통신국 국가공용전기통신망에서 제공하는 국제수출입정보통신 국제인터넷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인터넷을 이용한 영업활동이나 비영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제인터넷경영허가를 얻어야 한다. 사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상술한 인터넷 등록기업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에게 기술과 관리교육 등

343) 중국에서는 1차 ISP 허가를 취득하기가 어려우며 “接入單位”로 불리는 2차 ISP에 게도 외자의 직접투자, 벤처투자가 금지되는 등 서비스는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이와 관련, 1999년 9월 27일 상해에서 개막된 “포춘”의 세계포럼 석상에서 신식산업부는 외국기업의 인터넷업 투자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나 1999년 말에 발표될 새로운 법률은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하여 외국기업의 투자에 대한 배려를 시사하였다. 즉, 외국기업에 의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나 인터넷 콘텐츠 제공자(ICP)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해결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결국 1999년 중에는 새로운 법률이 발표되지 않았다).

의 책임을 부담한다.

국제인터넷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제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비밀을 누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회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정보나 음란물 등을 제작 열람 복제 발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상기의 규정이외에 이 판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중국 郵電정보총국에서 건설과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공영컴퓨터네트워크(Chinanet)는 중국인들에게 컴퓨터국제인터넷서비스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앞서 언급한 《中華人民共和國公用計算機互聯網國際聯網管理辦法》<sup>344)</sup>에 근거하고 있다. 이 판법은 중국 공용 국제인터넷업무 기업의 설비조건, 관리절차, 사용자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용자와 기업간의 상호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과 개인 모두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함과 동시에 본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대중매스미디어통신망관리에 대한 법령으로는 앞서 언급한 《中華人民共和國公衆多媒體通信管理辦法》이 있다. 중국우전전기통신총국이 국가공용전기통신망에 대한 기초설비와 경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업무범위는 전국적인 대중매체통신과 정보서비스이다. 동 규정은 최초로 법령의 형식을 빌어서 서비스경영자와 정보제공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전자에게 경영허가제도를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2) 전자상거래

### 1) 관련 분야의 개관

2000년 중국의 第9屆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의 첫 번째 안건은 바로 전자상거래입법의 제안이었으며, 이 제안에서 전자상거래입법이 이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sup>344)</sup> 전자상거래관련 법제를 제정하기 위하여 중국의 주요 관련 부서들은 전자상거래관련 법률을

344) 중국의 학자들이 이해하는 전자상거래에 따른 국제적인 법률문제들은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이에 관한 연구논문으로는 陳延忠, “電子商務環境下常設機構原則問題探析”,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029](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029) 참조.

연구, 수정 및 제정하도록 지시하여<sup>345)</sup> 국무원, 郵電部 등은 몇 가지 법률과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중 중요한 것으로는 《中華人民共和國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管理暫行規定》, 《中國公用計算機互聯網國際聯網管理辦法》, 《中國公衆多媒罔通信管理辦法》, 《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出入口信息管理辦法》, 《中國互聯網絡域名注冊暫行管理辦法》, 《中華人民共和國計算機信息系統安全保護條例》, 《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安全保護管理辦法》 등이 있으며, 이는 중국 컴퓨터 정보네트워크의 초보적이고도 신속한 발전에 대해서 양호한 촉진과 규범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sup>346)</sup>

그러나 이와 같은 일련의 법규와 규정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건설, 경영, IP등록, 웹 안전 등 인터넷 발전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웹상거래의 입법에 대해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sup>347)</sup> 비록 중국의 신계약법<sup>348)</sup> 중에서

345) 曹建明(主編), *op.cit.*, (*supra* note 122), p.409.

346) 보다 구체적인 것은 宋波, “中國電信服務業政府管制的法律思考”,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709](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709).

347) 이에 대해서는 曹建明(主編), *op.cit.*, (*supra* note 122), p.408.

348) 계약법은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시킨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다. 계약법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 어떠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시장경제는 바로 계약경제이며 시장경제는 바로 자주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수많은 주체간에 계약관계가 부단히 발생하고 채무는 부단히 이행되고 채권은 부단히 실현되는 과정속에서 존재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계약관계가 없다면 계약관계를 규율하고 보장하는 계약법은 있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시장경제도 없게 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1981년과 1987년 계속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涉外경제계약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을 제정하였다. 이 3가지 계약법은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보호하고 시장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체제개혁이 부단히 심화됨에 따라 병존하는 이들 3 계약법들은 계획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구 법률의 이론적인 내용을 반영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상이한 계약관계를 따로 따로 규율함으로써 상호간에 협조와 일치가 결여되었다(王家福, *op.cit.*, (*supra* note 1), p.4). 계약법의 통일화와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9屆 제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이하 “신계약법”이라 한다)이 통과되어 동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계약법은 3개의 계약법이 병존하는 상황을 없애 거래규칙의 통일화를 실현하였다. 이것은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를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을 반영한 계약자유원칙, 공평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계약의 체결, 효력, 이행 및 위약책임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 그 밖에도 매매, 차관, 용자, 임대 등 15종의 계약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더욱 원활하게 시장경제의 필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법의 입법배경, 지도이념과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王勝明, “合同法的立法背景,指導思想及適用範圍,”<http://www/>

전자계약의 법률효력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간단한 규정들이고, 상해, 광둥 등 경제발전지역 역시 계속적으로 지방 자체의 규정을<sup>349)</sup>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절차상 전자상거래법의 출현은 여전히 오랜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관리규정과 규범 등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의 신속한 발전과 수요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주요 업무 주관부서들이 제정한 일련의 전자상거래의 업무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 인터넷상의 증권위탁거래

1997년부터 중국은 이미 200여개의 시범적인 웹상의 증권거래기구를 두었으며, 여전히 많은 증권거래기업들이 이 시험적인 거래업무에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웹상의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량은 이미 증권시장거래의 2-5%를 점유하고 있다. 웹상에서 증권거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증권사기를 방지하며, 증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증권감독은 2000년 4월 14일부터 《网上證券委托暫行管理辦法》(웹상 증권위탁잠정관리판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 행정규정은 총 6장 35조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총칙, 업무범위, 기술범위, 정보공개, 신청자격, 부칙 등의 내용이 있다. 웹상증권위탁업무범위에 있어서 증권감독회에서 선포하는 증권회사의 경영증권업무 허가증을 취득해야 네트워크상의 증권 위탁업무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증권감독회의 허가비준을 얻지 못하면 어떤 기관도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증권회사 이외의 기타 기관은 증권업무를 할 수 없으며, 기타 유사한 형태의 네트워크상 위탁업무 역시 할 수 없다. 증권회사는 지불이나 여러 가지 거래 절차에 따른 기술이나 서비스 및 정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증권 회사와 합작하여 네트워크상의 위탁업무도 할 수 없다.

네트워크상의 증권위탁업무를 증권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가지 내용의 신청자료를 원본 1부와 복사본 3부를 구비하여, 각각 증권감독회 기관관리부와 정보중심과 소재지 파출지구에 발송해야한다. 또한 증권업

[newchinalaw.com/chi\\_law/1999/2/newlaw\\_chi.htm](http://newchinalaw.com/chi_law/1999/2/newlaw_chi.htm).

349) 예컨대, 홍콩에서는 2000년 초에 《電子交易條例》를 제정하였다.

무를 취득하려면 《증권경영기관영업부정보계통기술관리규범》에서 요구하는 네트워크상의 위탁업무를 행하는 증권영업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상 위탁증권회사를 행할 때 반드시 네트워크상 위탁 고객이 제공하는 필요 대체 거래 방식에 의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내에 네트워크상 투자가가 제공하는 서면장부에서 진행해야 한다. 네트워크상 위탁업무를 증권회사는 직접적으로 고객이 제공하는 컴퓨터상의 네트워크나 전화 등의 방식으로 현금 교환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안전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상 증권위탁업무절차는 반드시 안정적이고 자료의 복구가 용이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술과 관리측면에서 고객거래 데이터의 안전과 완전함 그리고 명확함이 보장되어야 한다. 고객거래의 명령 코드 데이터는 최소한 15년간 보존되어야 하며, 관련된 데이터 전송의 안전과 신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 권익 기관의 안전성에 평가를 받아야 하고, 네트워크상 위탁과 보호 관리제도는 반드시 국가 권익 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네트워크상 위탁절차상의 일일장부와 회계기록 관련 소프트웨어의 기억장치는 반드시 타당하게 관리 조절하여야 한다.

### 3) 인터넷상 경영과 관리에 대한 규정

몇몇 지방행정관리부서는 웹상 경영과 관련된 문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선포하였으며, 웹상에서 취급하는 문서들은 비록 법률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현재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입법에 있어서 시범적이고 중요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2000년 3월 28일 北京市工商局은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웹상 경영행위 등기등록의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이 통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웹상 경영활동행위의 식별과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정부서비스의식을 강화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웹상 경영행위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 북경시 공상국은 전국에서 최상위부서이기 때문에 하위 부서들의 웹상 경영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지시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규정에서 규정한 웹상 경영행위란 북경시 관할구역내에서 국가의 법률과 법규에 의거하여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시장주체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경제조직으로 형상을 설계, 제품소개, 판매,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인터넷 경제조직은 웹상 경영행위에 대한 등기신청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웹상 경영행위의 등기신청과 등록한 웹상의 경제조직은 인터넷을 통하여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이 설치한 HD315홈페이지에 신청과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록에 따른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등기등록기관이 인터넷 경제조직으로부터 웹상경영행위에 대한 등기와 등록을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 즉시 웹상등기를 등록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웹상경영행위등록번호를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상표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선포이후 2000년 5월 중순부터 218개 기업이 신청하여 등록하였으며, 그 중에서 164개 기업이 허가를 취득하였다. 정보산업부,公安부서는 웹상관리와 달리 공상부서는 시장주체진입과 감독관리부서이며, 웹상의 감독과 관리범위 역시 경영에 대한 영역으로 제한하였다.

구체적으로 웹상경영행위를 구체화하며, 웹상 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ISP, 정보서비스업무를 제공하는 ICP, 기술서비스, 전자상거래, 웹상광고, 매매 등의 활동은 모두 등록당시에 당해 업무범위에 대한 등기와 등록을 한다. 등기등록제도는 공상부서가 웹상경영단위에 대한 합법적인 주체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1차적이고 보편적인 심사이며, 등록한 이후에 등록표시를 제공하며, 웹 사용자는 그 등록으로 합법적인 등록기관인지 식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등록기관의 완화된 등록제도는 전통적인 “허가증발급” 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진보한 것이며, 인터넷의 신속한 발전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2000년 5월 18일 북경시 공상국은 대외에 웹상경영행위의 “三章約法”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웹상경영행위등기등록에 관한 보충 통지》, 《웹상광고경영 자격의 규범에 대한 통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상업정보를 발송하는 행위에 대한 규범의 통지》를 말한다. 이와 같은 3항의 통지는 시장진입자격에 매우 적합한 자인지를 조사하고, 직업종사분야에서 최고로 관심을 가진 웹상 경영행위자 인지를 구분하여 등기와 등록하도록 하고, 웹상광고의 주체자격인정과 전자우편을 남발하여 발송하는 것에 대한 제재 등의 측면에 대하여 규범을 두었다.

또한 웹상 무형의 시장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북경시의 웹경제발전의 촉진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 부당경쟁행위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하였다. 이와 동시에 웹 경영행위를 감독하는 “공상국 웹 경제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용하여 이를 정식으로 선포하였다. 새로이 성립한 “웹 경제전문가 자문위원회”는 북경시 부분행정부의 지도와 지명한 웹 공사 책임자와 신문매체대표 등 18명으로 구성한다. 이들 위원회의 책임은 “삼장약법”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웹상경영행위등기등록에 관한 보충통지》에서 등록의 범위를 북경시 관할지역외의 시장주체로 확대하였다. 인터넷자체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이후 웹 경영의 규범은 점차적으로 전통적인 지역의 개념을 벗어날 것이다.

#### 4) 인터넷상의 도서와 AV(음성영상)제품의 발행에 관한 규정

2000년에 제정된 《出版物發行管理暫行規定》에서 1차로 웹상서점의 관리문제를 명확하게 하였다. 본 규정 18조에서 비준을 통하여 출판발행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신문출판행정부서가 비준한 경영범위에 근거하여 원 부서에 등록한 이후에 웹상 출판물의 판매활동을 할 수 있으며, 출판물발행단위가 아니면 “웹상서점” 혹은 웹상출판물매매활동을 할 수 없다. 문화부 역시 《關於音像製品罔上經營活動有關問題的通告》를 통하여 AV제품에 대한 웹상 경영활동에 대한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 《通告》에서 AV제품웹상 경영활동에 있어 허가증제도를 실시하며, AV시장행정관리부서의 등기와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경우 독단적으로 AV제품 웹상 경영활동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V제품웹상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음성영상제품경영단위는 반드시 관할소속 지방 성, 자치구, 직할시 AV시장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비준을 얻은 후에 경영을 할 수 있다. 외상투자, 중외합자합작의 정보통신을 운영하는 웹상의 경영단위는 AV제품에 대해서 웹상 경영활동을 금지한다.

#### 5) 인터넷상의 교육에 관한 규정

2000년 4월 20일에 교육부는 《關於加強對教育罔站和罔較進行管理的公告》를 선포하여 웹상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공고”의 규정

에서 中小學校의 정의와 중소학생의 인터넷학교와 인터넷교육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省級교육행정부서의 동의를 얻고, 국가교육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심사와 비준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인터넷학교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그 절차를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지 못한 학교는 웹상의 교육활동을 정지하여야 한다.

아직 국가행정부의 비준을 받지 못한 어떤 단위 혹은 기구도 “인터넷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웹을 통한 학교명의를 사용하여 IP주소를 등록하고 그에 상응한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학생의 모집 등과 같은 학교활동을 할 수 없다. 원거리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혹은 위성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할 수 없다. 이미 이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새로이 그 업무절차를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비준을 받지 못한 학교는 그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지하여야 한다.

### (3) 인터넷정보서비스 관리

#### 1) 특 징

총 27조로 된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관법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은 인터넷정보서비스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서비스의 건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0월 1일 제정되었다. 이 관법에서 의미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서비스활동을 말하며 영업성과 비영업성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영업성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하여서는 허가제도를 실시하고 비영업성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하여서는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이 관법 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 서비스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당국의 통제가 대단히 강하다.<sup>350)</sup>

#### 2) 서비스 분류 및 관리제도

이 관법에서 인터넷정보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망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하며 영업성성과 비영리성 두 종류로 나누

350) 李本森, *op.cit.*, (*supra* note 328), p.122.

어진다. 소위 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나 홈페이지 제작 등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소위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 중인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공개적이고 공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국가는 영리성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비영리성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는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뉴스,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 및 의료기구 등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관련 주관무문의 심사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경영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문의 심사동의를 얻어야 한다. 영리성인터넷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조례에 규정된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즉, 사업발전계획과 관련 기술방안이 있을 것; 네트워크안전보장조치·정보안전비밀유지관리제도·사용자정보안전관리제도를 포함한 건전한 네트워크와 정보안전보장조치가 있을 것. 서비스항목이 판법에 규정된 범위에 해당하고 이미 관련 주관부문의 동의문건을 취득하였을 것이다.

비영리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에 대해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 대하여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는 경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즉. 주관단위와 웹사이트 책임자의 기본상황, 웹사이트주소와 서비스항목, 서비스항목이 판법에 규정된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미 취득한 관련 주관부문의 동의 문건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관은 등록을 위한 자료가 완비된 경우에는 등록하고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 3) 허가증제도

이 판법은 영리성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전기통신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에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부가전기통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관과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을 경영허가증을 취득하거나 등록절차를 이행한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의 명단을 공포하여야 한다. 인터넷정보 서비스제공자는 허가 받거나 또는 등록을 완료한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등록된 항목이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항목, 웹사이트 망주소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전에 원 심사·증명서 발급 또는 등록 기관에 변경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 첫 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자신의 경영허가증 일련번호 또는 등록증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4) 정보서비스내용제한제도

이 판법은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또는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sup>351)</sup> 즉, (1) 헌법이 규정하는 기본원칙에 반대되는 내용, (2)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거나 국가의 통일을 파괴하려는 내용,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입히는 내용, (4) (중국내) 각 민족들간의 악감정을 선동, 민족들간의 분열을 초래하고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5) 국가의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邪教와 봉건시대의 미신을 퍼뜨리는 내용, (6)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의 안정을 파괴하는 내용, (7) 음란·외설·도박·폭력·테러리즘 등을 전파시키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내용,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9) 법률·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다.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라온 정보가 상기 제15조의 명백히 금지되는 내용에 속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게재를 정지시키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 국가관련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sup>352)</sup>

---

351) 제15조.

352) 제16조.

5) 인터넷 접속 정보의 기록보관

제14조는 뉴스·출판 및 전자게시판(BBS) 등의 서비스에 종사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자사가 제공한 정보의 내용 및 제공 시간·(정보를 게재한) 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을 기록하여야 하며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시간·계정·IP 주소 또는 도메인 네임·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기록하여, 60일 동안 보관하고 국가 관련기관이 법에 따라 同 서류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때, 이를 제공해야 한다.

6) 자금조달 관리제도

이 관법은 영리성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가 중국내에서의 상장 또는 외국인 투자가와의 합자·합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의 심사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중 외상투자의 비율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7) 통일과 분산을 결합한 관리제도

이 관법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문, 출판, 교육, 위생, 약품의 감독관리주관부문, 공상행정관리 주관부문 및 공안·국가안전 주관부문은 각각의 직무범위내에서 인터넷의 내용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4)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이 관법은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허가항목에서 벗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위법행위를 통하여 얻은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만원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반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관법은 등록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비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

스에 종사하거나 등록된 항목에서 벗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웹사이트의 폐쇄를 명한다.

이 관법 제15조에 열거된 내용의 1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작, 복제, 공표, 전파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處罰條例》, 《計算機信息網絡國際聯網安全保護管理辦法》(컴퓨터 네트워크의 인터넷접속안전 보호관리방법) 등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증명서발급기관이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곧바로 허가증을 취소하고 기업등기기관에 통지한다. 비영리성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등록기관이 웹사이트의 잠정 폐쇄 또는 영구 폐쇄시킬 수 있다.

## 5. 전기통신 통신분야의 외국인투자

### (1) 의 의

1999년 4월 공표된 미중 공동선언 및 3건의 부속합의서에 열거된 통신시장 개방리스트에 의하면 중국통신사업은 6년이내에 호출기와 이동전화의 수입제한, 고정전화사업의 구역제한을 폐지한다는 합의가 있었다.<sup>353)</sup> 최근에 들어와

353) 중국은 미국, EU 등과의 WTO 가입 협정에서 기초통신, 이동통신 등 부가통신 분야에 대한 개방을 약속하였다. 특히 EU와 협정에서는 이동통신분야에서 중미간 합의된 시장개방 일정을 2년간 단축시키고 중국내 외자계 이동통신사의 회선 리스 사업을 개방하도록 합의함으로써 중국 이동통신시장의 개방 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의 주요 개방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선 호출 및 부가통신 분야에서는 WTO 가입 즉시 외자지분을 30%까지 허용하고 1년 이내에 49%까지 2년 이내에 50%까지 허용한다. 2) 이동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가입 즉시 외국인투자 지분을 25%까지 허용하고 1년 이내에 35%까지 3년 이내에 외자지분을 49%까지 허용한다. 또한 EU와의 협상에서 기한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중장기적으로 외자 50%도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3) 고정전화 서비스 분야에서는 WTO가입후 3년 이내에 외자비율을 25%까지, 5년 이내에 35%까지 6년 이내에 49%까지 개방한다. 4) 지역제한에 대한 규제철폐와 관련하여 북경, 상해, 광주의 3개 도시의 경우 WTO가입 즉시 부가통신과 이동통신 사업을 위한 합작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2년내에 14개 주요 도시를 개방하며, 부가통신서비스는 2년내, 이동통신 서비스는 3년내에 지역제한을 완전히 폐지한다. 고정전화 서비스는 WTO가입 3년내에 3대 도시를 개방하고 5년내에 14개 주요도시를 개방하며 6년내에는 지역제한을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통신사업분야도 일련의 개혁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의 통신사업은 이미 단계적으로 시장화·자유화·국제화의 길을 걷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외국기업은 어떠한 형태의 통신서비스업체도 보유(또는 경영)할 수 없다.<sup>354)</sup> 그러나, WTO 가입후에는 WTO 경쟁원칙을 도입하게 될 것이며 부가서비스(인터넷 포함)까지도 그 수혜대상이 될 것이다. 통신시장부분에서 중국은 WTO가입에 따라 통신기본협정에 가입해야 하고, 이 협정에 따라 경쟁촉진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sup>355)</sup>

그리고 외국투자회사들은 통신서비스 기술선택권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CDMA 기술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시장 개방일정을 WTO 가입 후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입 2년 내에는 무선호출 및 부가 통신 서비스의 지역적 제한을 철폐되고, 가입 후 5년 내에는 이동전화서비스 업무가 완전 자유화되고, 6년 내에는 유선전화서비스의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전체 통신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 곳은 WTO 가입 즉시 완전 개방하게 된다.

중국은 통신서비스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중국 연통이 중중외방식(China China Foreign; CCF)으로 외국인의 이동통신사업자의 중국진출을 허용하여 왔으나, 1999년부터 중국정부가 이를 불법이라는 이유로 외국기업들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은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이 금지되어 있는 외국기업들과의 제휴를 통해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WTO 가입후 중국 통신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이다.<sup>356)</sup>

---

완전히 폐지한다. 5) WTO가입 3년내에 리스 회선 서비스를 개방한다. 즉 외자 이동통신업체의 유희시설을 중국통신사에 임대하거나 국내의 통신사에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6) 도시간 서비스 허용 및 도시내 업무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

354) Lester Gesteland, "China's Ban on Internet Foreign Investment: A WTO Negotiating Ploy",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1999/September>.

355) 정보통신분야의 개방에 대해서는 Xing Fan, "China's WTO Accession and Telecom Liberalization",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ocom/currentnews/secure/c0003](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ocom/currentnews/secure/c0003).

356)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宋波, "中國電信業應對"入世"衝擊的法律思考",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

## (2) WTO가입이 통신사업분야에 미칠 영향

WTO 가입이 중국 통신시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선진국의 기술과 경영관리경험을 도입할 수 있고 종전의 독점구조를 타파하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 1) 통신경영분야

WTO 가입과 더불어 중국은 많은 국내의 투자자들이 통신사업에 투자하여 다수의 시장주체들간의 경쟁이 시작되어 통신서비스의 품질을 크게 제고할 수 있고 비용도 크게 떨어질 것이다. 동시에 WTO가입으로 치열할 경쟁을 통하여 중국의 통신기업의 경영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경쟁은 장래 중국내 통신경영기업들로 하여금 부단히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여 경영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중국의 통신사업이 세계적인 조류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2) 통신설비분야

최근에 중국산 통신설비기업들이 이미 국제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으며 ISDN등에서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WTO가입으로 이들 기업들이 세계시장 진출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 3) 인터넷서비스 분야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당장은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자금문제가 인터넷서비스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WTO가입후 외국의 자본의 진입이 중국의 법률상, 정책상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아니하므로 인터넷서비스분야도 곤경에서 벗어날 것이다.<sup>357)</sup>

---

D=21708.

357) 중국의 WTO가입에 관한 1999년 11월 US-China Bilateral Access Agreement는 중국의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000년 5월 중국과 EU간에 체결된 쌍무적 협정의 일부 규정도 중국의 인터넷 시장에서 외국인투자에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간의 협정 및 유럽연합과 중국간의 협정은 1999년 9월 중국의 정보산업부(Ministry of Infor-

## (3) 《전기통신조례》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

전기통신조례는 국제관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을 기초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대별하고 있으며 전자의 경우 합자기업에서의 외자비율을 49%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합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적인 기초통신사업을 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조례》는 기초통신사업과는 달리 합법적으로 성립된 회사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투자자의 자국 기초통신서비스시장에 진입에 대해서는 허가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중국의 郵電部는 《從事放開經營電信業務審批管理暫行規定》(1993년 9월 11일) 제6조는 중국밖의 조직과 개인 및 중국 내의 외상독자, 중외합자 및 합작기업은 전기통신사업에 투자하거나 경영 또는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1995년 6월에는 또다시 電司(1995년) 제15호 문건을 통하여 ”국제통신업무는 중국이 아직 그 경영을 개방하지 않고 있고 국가가 郵電部로 하여금 통일적으로 경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무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단위도 국제통신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중국영역내의 공용통신망, 專用통신망의 유선, 무선의 통신사업은 모두 중국밖의 각종 단체, 기업, 개인 및 중국 영역내에서 이미 설립된 외상독자, 합자 및 합작은 동 사업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외자를 도입하여 경영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제정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중에서도 郵政, 電信업무의 경영관리를 금지항목에 포함시켜왔다.

중국은 이미 법률상으로는 외자기업이 합법적으로 인터넷 및 기타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중국의 통신분야

---

mation Industry)가 발표한 중국의 인터넷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금지선언과는 크게 대조를 이룬다. 중국은 외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서방의 문화와 정치이념의 영향 그리고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지배를 제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을 부당한 외국의 영향과 경제적 지배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다. Jon Eichelberger and Annabel Allen, "A Legal Perspective: The Impact of WTO on Foreign Investment in China's Internet/E-commerce Sector," <http://www/perinsoe.com/resource/intldocs/wtoimpact.htm>.

의 대외개방속도는 비교적 완만하며 그 이유는 국가안전이라는 요인이외에 중국의 통신사업이 장기간 독점사업에 속하여 현실적으로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4)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상의 전기통신서비스 시장 개방

1997년12월 국무원이 공포한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전기통신 설비의 제조업은 장려항목에 속하지만 우정, 전기통신서비스 경영분야는 금지항목에 속하였다. 그러나, 2002년 3월 국가계획발전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새로운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는 외상투자 전기통신서비스를 금지품목에서 해제하였는 바,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지역, 수량, 경영범위, 외자 비율 등에 대한 제한이 단계적으로 개방할 것을 대외적으로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358)</sup>

1. 부가통신 및 기초통신중의 호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자비율 30% 한도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그로부터 1년 후인 2002년 12월 11일부터는 외자비율의 한도를 49%까지 다시 1년 후인 2003년 12월 11일부터는 50%까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기초통신중의 이동음성(話音)과 데이터(數據) 서비스: 2001년 12월 11일부터 외자비율 25% 한도내에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되 2002년 12월 11일 이전까지는 외자비율을 35%까지, 2004년 12월 11일까지는 49%까지 허용되고; 2006년 12월 11일 이전에는 100%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게 된다.
3. 기초통신중의 국내업무·국제업무: 2004년 12월 11일 이전까지는 외국자본의 투자를 허용하며 외국자본의 투자비율은 25%를 초과하지 못하

---

358) 여기에서 보듯이 외상독자기업(100%외국인 투자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보다 그 설립이 제한받는 부문과 업종이 많다. 이와 같이 외상독자기업의 설립은 제한하는 이유는 중국의 경제주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외국인본과 이윤의 해외송금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朱作鑫, “論我國立法對外外商獨資企業的監督”,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92](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92).

게 되었고; 늦어서 2006년 12월 11일부터 외국자본의 투자비율은 35% 까지 허용되며 그리고 또 늦어서 2007년 12월 11일부터 외국자본의 투자비율은 49%까지 허용된다.<sup>359)</sup>

(5)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관리규정》

1) 입법배경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중국정부는 시장개방에 대한 대외적 수락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통신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전기통신사업 경영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부가통신(增值電信)분야의 수락내용에 의하면, 장래에 외국 서비스 제공자가 합자 부가통신기업을 설립하고 수량 제한 없이 또한 상해, 광주 및 북경 시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합자기업중 외자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은 가입후 1년이내에 지역이 확대되어 成都 등 14개 도시내에서 그리고 이들 도시간의 서비스를 포함하게 되며, 외자는 49%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가입 후 2년내에 지역제한이 없어지며 외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sup>360)</sup>

기초통신(基礎電信) 분야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의하면 외국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을 설립하고 상해, 광주 및 북경 시내와 이들 도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량제한이 없다. 합자기업중의 외자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의 WTO가입후 1년내에 지역은 확대되어 成都 등 14개 도시내 및 이들 도시간 서비스가 허용되고 이 경우 외자는 49%를 초과할 수 없다. 중국 가입후 2년내에는 지역제한이 없어지고 외자는 50%를 초과할 수 없다.<sup>361)</sup>

이동음성·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항목의 아날로그, 데이터 베이스, 蜂窩서비스와 개인통신서비스 분야에서의 수락내용은 중국가입시부터 외국서비스 제공자가 합자기업을 설립하되 수량제한 없이 상해, 광주 및 북경시 및 이들 도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되 합자기업중의 외자는 25%를 초

359) 楊國華, 『中國加入WTO法律問題專論』, (北京:法律出版社, 2002), p.159이하의 《中國服務貿易減讓票》를 참고하였음.

360)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240.

361) *Ibid.*

과할 수 없다. 가입후 1년 이내에 지역이 확대되어 성도 등 14개 도시를 포함하며 이들 도시간에 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외자비율은 35%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후 3년 내에는 외자지분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후 5년 이내에는 지역제한이 없어지게 된다.

이동음성·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항목하의 국내업무와 국제업무에 관한 수량내용은 중국의 가입후 3년 이내에 외국서비스제공자가 합자기업을 설립하여 수량제한 없이 그리고 상해, 광주 및 북경 시내에서 및 이들 도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합자기업중의 외자는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후 5년 이내에는 지역이 확대되어 成都 등 14개 도시 및 이들 도시간의 서비스로 확대된다. 외자는 35%를 초과할 수 없다. 가입후 6년 이내에 지역제한이 없어지며 외자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sup>362)</sup>

WTO의 요구에 따르면 기초통신서비스 시장은 개방되어야 하며 각회원국들은 음성전화, 이동전화, 이동데이터베이스 전송, 기업임대 개인선로와 개인통신 등의 분야 각 항목의 전기통신업무는 독점체제를 해소시켜 시장진입봉쇄를 제거하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각회원국들은 상호간에 전기통신시장에의 투자·대부·지분보유를 허용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의 WTO가입에 부응하고 중국 전기통신업의 대외개방, 개혁발전의 요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영역 입법의 부단한 준비를 통하여 WTO 가입후의 외상투자경영전기통신기업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외상투자경영전기통신기업에 대한 승인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중국통신시장질서를 규율하고 통신서비스사용자와 통신업무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통신시장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앞서 언급한 《전기통신조례》,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을 제정하였으며 信息産業部는 《電信網間互聯管理暫行規定》, 《設置衛星網絡空間電臺管理規定》, 《衛星電視廣播地面接收設備定點生產管理辦法》등 부문 규장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규들은 통신사업의 대외개방의 필요에 부응한 것으로서 질서있는 경쟁시장 환경을 확립, 통신사업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

---

362) *Ibid.*

장경제법률법규체계를 완비하고 WTO가입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정부는 2001년 12월 11일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국무원령 제 333호)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은 《전기통신조례》와 중국이 WTO가입을 위하여 통신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수락한 내용에 근거하여 주로 외상투자통신사업기업의 경영범위, 설립조건, 심사승인절차 및 합자통신기업의 관리와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2) 외상투자전기통신사업기업의 경영범위 · 조건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투자자와 함께 중국 국경내에 법에 의거하여 중외합자경영형식으로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통신사업을 운용하는 기업이다.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은 기초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분류는 전기통신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사업의 지역적 범위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현재는 信息産業部)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sup>363)</sup>.

한편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관리규정》은 전기통신사업운영의 실제필요에 근거하여 합자전기통신기업에 대하여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등록자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국적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범위를 뛰어넘는 기초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등록자본은 최소한 인민폐 20억원이 되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자본은 최소한 인민폐 1,000억원이 되어야 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범위내에서 기초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자본은 최소한 인민폐 2억원이 되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자본은 최소한 인민폐 100억이 되어야 한다.<sup>364)</sup>

### 3) 중외 합자당사자의 조건

기초통신사업(무선호출사업은 제외)의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외국측 투자자가 당해 기업에서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4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가통신사업(기초통신사업중의 무선호출사업을 포함)을 수행하는 외

363) 《外商投資通信企業管理規定》 제4조.

364) 제5조.

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의 각 시기별 출자비율은 국무원 정보산업주관부문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한다.<sup>365)</sup>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이 경영하는 통신사업은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뿐만 아니라 전기통신조례에 규정된 기초통신사업수행 또는 부가통신사업수행을 위하여 충족하여야 할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sup>366)</sup>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은 합영전기통신기업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이외에도 통신사업의 종류에 근거하여 기초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 각기 외상투자경영기업의 중외 합자당사자들이 구비하여야 할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중 기초통신사업의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중외 합자당사자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기업법인자격을 구비하고 있을 것, 등록된 국가 또는 지구에서 기초통신사업허가증을 구비하고 있을 것, 경영활동에 종사하는데 적당한 자금과 전문인원을 가지고 있을 것 기초통신사업에 종사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sup>367)</sup>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은 부가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중외 당사자가 구비하여야 할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sup>368)</sup> 두 종류의 전기통신사업은 경영조건의 면에서 크게 다르다.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은 중국의 상황과 전기통신사업의 두 가지 유형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전기통신사업의 中外(중국측과 외국측) 당사자에 대하여 각기 다른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기초통신사업의 중외 당사자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과 요구는 대단히 엄격하고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외 당사자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상대적으로 다소 완화되어 있다.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하는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원칙 규정 정도를 두고 있을 뿐이다.

---

365) 제6조.

366) 제7조.

367) 제8조.

368) 제6조, 제10조 등.

## 4) 중외합자전기통신기업의 심사승인 및 관리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 규정》은 중외합자전기통신기업 설립에 관한 심사승인절차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초통신사업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범위를 뛰어넘는 부가통신사업의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국무원 정보주관부문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sup>369)</sup>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을 설립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의 범위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측 주요투자자가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에 신청을 제출하고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이 승인을 한다.<sup>370)</sup>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그 투자항목이 국무원 계획주관부문 또는 국무원 경제종합관리부문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이 《外商投資經營電信業務審定意見書》를 공표하기 전에 모든 자료를 국무원 계획주관부문 또는 국무원 경제종합관리부문에 송부하여 심사승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sup>371)</sup>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기초통신사업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뛰어 넘는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측 주요투자자가 《外商投資經營電信業務審定意見書》에 근거하여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에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설립을 위한 계약·章程안을 송부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내의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국측 주요투자자가 《外商投資經營電信業務審定意見書》에 근거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에 외상투자기업의 설립을 위한 계약·章程案을 송부하여야 한다.<sup>372)</sup>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심사승인후, 외상투

---

369) 제11조.

370) 제12조.

371) 제13조.

372) 제16조.

자기기업심사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현행 법률규정에 부합되며 전기통신업무관리의 실제상황에도 부합된다고 한다.<sup>373)</sup>

#### 5) 중외합자경영전기통신기업과 경영허가증 신청과의 관계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은 합영전기통신기업의 심사승인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후, 승인을 얻어 설립된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전기통신사업 경영 신청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심사승인증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문의 《전기통신사업경영허가증》발급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외상투자심사승인증서와 전기통신사업경영허가증에 근거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외상투자전기통신기업 등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sup>374)</sup>

#### 6) 전기통신기업 중국밖에서의 상장

중국의 WTO가입관련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중국전기통신사업을 위해 설립된 합자기업에서의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일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중국의 일부 전기통신기업의 자산이 이미 중국밖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하여 상장을 하였고 금후에도 일부 전기통신기업들이 계속하여 상장하여 자금을 조달하게 될 것이므로<sup>375)</sup> 중국의 전기통신부문의 대외개방수락에 관한 총체적인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외상투자전신기업관리규정》은 국경내의 전기통신기업의 국경밖에서 상장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의 전기통신주관부문의 동의를 얻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심사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sup>376)</sup>

373)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243.

374) 제17조.

375)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234.

376) 제23조.

## 제 7 절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제도

### 1. 《外商投資企業的合併與分立的規定》

#### (1) 의 의

합병과 분할은 기업경영발전과정에서 흔히 직면하는 문제이며 중국의 회사법에서도 會社制企業의 합병분할에 대하여 원칙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서 발전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을 통하여 자산재편을 하는 현상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회사법)의 이에 관한 원칙적인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입법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에서도 외상투자기업과 중국내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중국의 대외개방의 새로운 추세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도를 더욱 완비하고 외상투자기업과 중국내기업이 합병하는 행위를 규율하여 합병·분할의 각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유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및 외상투자기업관련 법률, 행정법규와 규장에 근거하여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동으로 《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을 1999년 9월 23일 공포하였는 바, 이를 통하여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는 WTO 규칙 및 중국정부가 WTO가입을 위한 대외적으로 수락을 이행하는데 미흡하였기 때문에 2001년 11월 22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外商投資企業的合併與分立的規定》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sup>377)</sup>

377)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188.

## (2) 주요 내용

이 규정은 합자기업, 합작기업, 독자기업, 외국인투자주식회사간의 합병 및 분할시 적용되며 중국기업과 합병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회사의 합병과 분할은 《외국인투자지도방향잠행규정》과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에 포함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독자투자 또는 지배주주권 확보가 불가능한 산업의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이후에도 외국인의 독자투자 또는 지배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는 세관, 세무, 외환관리의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세관과 세무기관의 확인을 받아 원래 회사가 향유하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합병, 분할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의 원 심사기관에서 비준을 받고 등록기관에서 설립을 변경하거나 말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 합병이나 분할로 원 회사가 해산하거나 다른 지역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산 또는 설립할 회사 소재지 심사비준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상장회사의 합병, 분할은 관련 법률과, 국무원 증권감독관리부서의 상장회사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은 합병에 대해서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의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 전자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는 것으로 흡수된 회사는 계속 존재하지만 흡수된 회사는 해체되며, 후자는 새로운 회사가 신설되고 원래의 회사들은 해체되는 방식이다.<sup>378)</sup> 또한 분할의 경우에도 존속분할과 해산분할의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하고 있다.<sup>379)</sup>

## (3) 최근 개정 내용

《外商投資企業的合併與分立的規定》은 외상투자기업 합병분할의 內包, 합병분할의 주체, 합병분할의 절차, 합병분할의 합의, 합병분할후의 채권, 채무 처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게 되었다. WTO가입과 관련하여

---

378) 제3조.

379) 제4조.

서는 주로 다음과 같이 내용들이 개정되었다.

첫째 “투자자가 회사의 계약, 정관 규정에 따라 출자함으로써 합작 또는 합자 조건을 제공하고 실제로 생산, 경영을 개시하기 전에, 회사간의 합병을 할 수 없으며 회사 분할도 할 수 없다. 투자자가 이미 회사의 계약, 정관 규정에 따라 출자를 완료하여 합작 또는 합자 조건을 제공한 경우, 회사는 중국내資기업과 합병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투자와 등록자본의 요구 및 산업정책에의 부합 요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즉, “회사와 중국내資기업이 합병한 후 외상투자기업이 되면 그 투자총액은 원래의 회사의 투자총액과 중국내資기업 재무회계보고서에 기재된 기업자산총액의 합계가 되며, 등록자본은 원래의 회사의 등록자본과 중국내資기업의 등록자본의 합계가 된다. 합병후의 회사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당연히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關於中外合資經營企業注冊資本與投資總額比例的暫行規定》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하에서 당해 규정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국가공상총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사와 합병되는 중국내資기업은 합병후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이 된 경우에는 중국의 외자이용 산업정책과 요구 및 《關於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에 부합되어야 한다. 합병후의 회사는 외상투자가 금지된 산업의 기업에 대한 지분권(股權)을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셋째, 합병의 일방당사자가 중국에 이미 설립된 내資기업을 위하여 심사승인기관에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추가하였다. 즉 “회사와 중국내資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신청인은 심사승인기관에 중국내資기업이 투자하여 설립한 기업의 영업허가증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20조에 후미에 추가하였다.

넷째, 중국내資기업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새로 신설되는 회사에 대하여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 세관, 토지관리 및 외환관리 등의 기관에서 해당 심사비준절차를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다섯째, 회사가 중국내資기업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국투자자가 내資기업의 주식, 주권을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대금의 지불조건은 《中外合資經營企業合永各方出資的若干規定》에 의거하여 이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

가하였다.<sup>380)</sup>

## 2. 국제적인 합병인수제도의 입법화 필요성

중국 WTO가입이후 외상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중국의 기업들의 세계 진출도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합병인수도<sup>381)</sup> 크게 늘어날 것이다. 경제의 범세계화 경향에 따라 전략적인 합병인수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의 시장에 진입하고 경쟁우위를 확대하는 주요방식이 되었으며 나날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미 외국직접투자의 주요 방식이 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한편으로는 중국의 외자전략이 조정을 받게 되었고 기업의 관념도 새로워지고 있는 바 이것은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합병인수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져다주었다. 이로써, 중국기업들은 자금, 기술 및 관리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중국기업이 외국기업을 합병인수한 경우도 있었다. 중국의 海油가 6억 달러로 스페인석유회사의 인도네시아의 자산을 인수하였고 海爾집단이 이태리의 냉장고 공장을 인수하였다.<sup>382)</sup>

중국이 매년 도입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300억 달러 내지 400억 달러로서 전세계 외국인 직접투자의 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금액중에서 국제적 합병인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6%를 점하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중국 내에서의 합병인수는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닐뿐더러 주로 비전형적인 국제적 합병인수방식인 합자를 통한 합병인수, 증자를 통한 인수합병, B주의 해외매입을 통한 합병인수 등이다. 중국이 외상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외자이용방식을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sup>383)</sup>

380)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p.190-196 참조.

381) 중국 시장내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투자 위험이 큰 기업설립형 직접투자보다는 부품 수출이나, 라이선싱, 인수합병방식에 의한 직접투자로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경향도 생겨날 것이다.

382) 何譜, “完善法律制度環境迎接跨國并購浪潮”, 『法制日報』, 2002年 2月 27日字.

383) 이에 대해서는 黃輝, *op.cit.*, (*supra* note 32), pp. 158-162.

국제적 인수합병인수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합병인수를 진행하는 경우 왕왕 중국시장에 대한 지식이 극히 부족하여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동시에 관련 정보의 투명성이 높지 않고 합병인수절차도 번거롭다. 그 밖에도 국제적 합병인수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기에는 해결하여야 할 법적 문제점들이 많다.<sup>384)</sup> 공평하고 합리적인 법률환경이 결핍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중국의 적지 않은 현행법령들이 계획경제 하에서 제정된 것이며 이것들은 국외의 법률들과 충돌할 뿐 만 아니라 이들 법령 상호간에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WTO가입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는 1600여조항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sup>385)</sup>

중국의 현행 합병 관련 법률제도를 보면 먼저 여러 종류의 기업법, 특히 《公司法》(회사법)에 합병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들 법률은 합병의 형식·효력·심사승인·등기 등에 대해서 비교적 완비된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합병과 관련된 법률,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및 부문 규장들이 있다.<sup>386)</sup> 이러한 주요 기업입법의외에도 은행법, 보험법 등에도 당해 산업 분야에서의 합병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제도에는 아직 공백이 많다. 예컨대, 합병에 대해서 《公司法》 규정만이 비교적 상세하지만 《公司法》은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이며 기타 형태의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상의 합병에

384) 이에 대해서는 劉文華, *op.cit.*, (*supra* note 111), pp.391-392.

385) 何譜, *op.cit.*, (*supra* note 382).

386) 인수합병에 대한 중국의 관련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89년 2월 19일 國家體改委, 國家計委, 財政部, 國家國有資產管理國이 공동으로 공포한 《關於企業兼并的暫行辦法》, 같은 일자에 國家體改委, 財政部, 國家國有資產管理國이 공동으로 공포한 《關於出售國有小型企業產權的暫行辦法》, 1994년 7월 24일 國家經貿委, 國有資產管理國이 공동으로 공포한 《國有企業資產監督管理條例》, 1995년 12월 25일 국무원이 공포한 《關於股份有限公司境內上市外資股的規定》 및 그 실시조례, 1996년 6월 17일의 《關於推薦境外上市豫選企業的條件程序及所需文件》, 1998년 2월 23일 공포된 《境內上市外資股(B股)公司增資發行B股暫行辦法》, 1997년 5월 28일 공포된 《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 1997년 8월 7일 공포된 《企業兼并有關會計處理的問題暫行規定》, 1997년 4월 28일 國家稅務總局이 공포한 《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 分立股權重組, 資產轉讓等重組業務所得稅處理的暫行規定》, 1999년 12월 25일 개정된 《公司法》(회사법)등이다. 黃輝, *op.cit.*, (*supra* note 32), pp.154-155.

관한 규정들도 상호간에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합병의 개념, 심사절차 및 채권자 보호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그 밖에도 공평성·효율성·합리성의 측면에서도 이들 제도는 결함이 있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합병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 회사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관련 분야의 합병에 관한 단일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sup>387)</sup>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합병인수(並購)방식을 채택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진행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과거 20여년 동안 초국가적인(transnational)한 합병인수 발생금액은 대략 년 평균 42%의 속도로 증가하여 와서 현재는 이미 국제직접투자의 주도적인 방식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외국인직접투자의 대국이면서도 20여년 동안 외자도입방식은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며 여전히 합자, 합작 및 독자형식을 위주로 하고 있다. 중국의 WTO체제내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외국인직접투자 도입에 관한 사고방식도 국제직접투자의 주도적인 방식에 순응하여 대담하게 초국가적인 합병인수 방식을 채택하여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도입하고 국제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여 중국산업의 구조를 한 단계 상승시켜야 한다는 지적은<sup>388)</sup> 주목할 만하다.

## 제 8 절 기타 주요 분야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

### 1. 금융분야

#### (1) 외상투자성회사잠정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

투자성 회사라 함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또는 중국투자자와 합자의 형식으로 설립한 직접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고, 외국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고 투자성 회사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외무역

387) 何譜, *op.cit.*, (*supra* note 382).

388) 張宏, *op.cit.*, (*supra* note 155), p.18.

경제합작부는 1995년 4월 4일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을 공포하였다.<sup>389)</sup> 이 규정은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투자성 회사에 대하여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다. 2001년 5월 31일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WTO 규칙과 중국 정부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的補充規定》을 공포하였다. 추가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성 회사가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상품의 국내위탁판매상, 代理商 및 투자성회사 또는 모기업과 기술양허(technology license)계약을 체결한 국내의 회사, 기업에 대하여 관련 기술훈련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성 회사가 주식회사의 중국밖의 발기인이 되어 외상투자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거나 또는 외상투자주식회사가 아직 상장유통시키지 아니한 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투자성회사가 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구매하여 시스템 집적을 진행한 후 국내외에서 판매하는 것 예컨대 투자기업이 생산한 상품이 시스템 집적의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는 투자성 회사가 국내외에서 시스템 집적 부속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다만, 구입한 시스템 집적 부품의 가치는 시스템 집적이 필요한 전체 상품 가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투자성 회사가 투자기업이 생산하기 전 또는 투자기업의 신상품 생산 前에, 상품시장 개발을 하기 위하여 원 심사부문의 승인을 얻은 경우, 투자성회사가 그 모회사로부터 투자기업이 생산할 상품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수입쿼터관리 대상이 아닌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시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성회사가 상기의 시스템 집적 부속상품을 수입하거나 시험판매용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성회사 등록자본중의 현금출자, 외환 이윤 또는 중국밖의 외환차입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기의 수입금액은 매년 누계가 당해 회사 등록자본중 현금출자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당해년도 수입금액이 공사등록본중의 현금출자의 20%의 잔여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차기 연도의 사용으로 이월시킬 수 없다.

389) 입법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217-218.

넷째, 보충규정이 한정된 경영범위에 따라 경영을 하는 투자성회사의 등록자본은 계약,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간별로 납입되어야 하며 실제 납입되는 등록자본액은 3000만 달러이상이어야 한다.

(2)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잠정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的暫行規定)

《關於設立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的暫行規定》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공상행정관리 총국이 공동으로 제정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정의 제정근거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회사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그 입법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외국인투자가 각종 형태와 방식으로 행하여져 왔는 바, 그중 전문적으로 주식투자에 종사하는 기업도 대단히 많다. 현재 중국의 벤처캐피탈기업은 주로 북경, 상해, 심천 등에 집중되어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2001년 6월말까지 중국 전역에 약 160여개의 벤처캐피탈기업이 설립되어 있으며 약 180억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벤처 투자된 금액은 약 30억원이다. 그중 외국의 벤처캐피탈기업이 투입한 자금은 대략 3억달러에 달하였다. 그리고 약 15개의 벤처캐피탈관리회사가 있다. 중국에서는 현재 벤처캐피탈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으며 중국의 벤처캐피탈사업은 다음.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해왔다.<sup>390)</sup>

첫째, 법적 환경이 성숙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중국내 자기업과 외상투자기업에 의한 벤처캐피탈사업의 발전을 규율할 전문적인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족하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벤처캐피탈기업에는 중국 정부가 투입한 자금이 대단히 많으며 민간투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자를 포함하여 각종 자금이 벤처캐피탈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벤처캐피탈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 벤처캐피탈사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390) *Ibid.*, pp.217-218.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넷째, 인재 양성이 지체된 후 벤처캐피탈기업의 경영자가 그러한 기업을 경영관리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급히 선진적인 관리이념과 관리경험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중국의 벤처캐피탈기업의 규모가 너무 영세하여 신속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섯째, 중국의 WTO가입한 후 WTO요구와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부합되는 법률법규를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暫行規定》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暫行規定》에 의하면, 벤처투자라 함은 주로 비상장 하이테크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벤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본의 부가가치를 획득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sup>391)</sup> 따라서,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기업은 중국의 비상장 하이테크 사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벤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기업은 1) 중국이 외국인투자를 장려, 허용하는 하이테크 산업 및 국가가 허가한 기타 영역에 자산 투자, 2) 벤처캐피탈 컨설팅 제공, 3) 투자대상기업에 컨설팅 제공, 4) 심사비준기관이 비준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sup>392)</sup> 그러나,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기업은 1) 국가가 외국인투자를 금지하는 영역에 투자, 2) 직접 또는 간접으로 증권, 채권, 선물거래 등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다만, 투자기업이 상장된 후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 기업이 소지한 지분 및 배당지분은 제외), 3) 비업무용 부동산에의 직접 또는 간접의 투자, 4) 대출금에 의한 투자, 5) 자기 자본이외의 자금으로 투자, 6) 대출 또는 담보의 제공, 7) 법률, 법규에 의하여 금지되는 기타 활동에 종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sup>393)</sup>

한편 투자자의 자격요건으로, 외국투자자의 경우에는 기업 설립 신청전 3년동안 자본누계액이 1억 달러이상이어야 하고 중국투자자의 경우에는 기업 설립신청전 3년간 투계액이 1억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든 투자

391) 제3조.

392) 제12조.

393) 제13조.

가는 3년 이상 벤처투자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sup>394)</sup> 그밖에도 공히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과 정당한 자금출처를 가져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기업과 중외합자, 중외합작은 물론이고 獨資의 형식으로도 그러한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중외합작의 경우에도 비법인 형태를 채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제관례에 따라 합작계약에 내부 수익분배제도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다.<sup>395)</sup> 비법인 중외합작 형태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 기업의 투자자는 외국인투자 벤처캐피탈투자기업에 대하여 연대채무를 지게 된다.<sup>396)</sup>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되는 벤처캐피탈은 투자자가 정관에 관리인원의 실적보수를 약정할 수 있다.<sup>397)</sup> 다만 외국인 투자비율이 총 출자액중 25% 이상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sup>398)</sup> 한편,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은 이사회를, 비법인 중외합작방식의 기업은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가 경영관리기구가 된다.

### (3)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

중국은 WTO 협정 및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따라 금융시장의 개방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감독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sup>399)</sup> 국무원은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를 2001년 12월 12일 공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1994년 2월 25일의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금융기관관리조례》를 폐지하였다.<sup>400)</sup> 종전의 관리조례와 대비하여 변화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394) 제5조 및 제6조.

395) 제15조.

396) 제16조.

397) 제15조.

398) 제7조.

399) 입법배경에 대해서는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p.90-91.

400) 이 조례에 대한 기타 자세한 평가에 대해서는 胡建芳, *op.cit.*, (*supra* note 93), pp.790-795 참조.

첫째, 외자금융기구의 위안화 업무취급지역과 서비스 대상범위를 중국인민은행이 심사·확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둘째, 외자금융기구의 영업허가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전 3년간 중국에서 영업경험이 있고 신청전 2년동안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하였고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세부조건에 부합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중국인민은행은 외자금융기구의 업무범위와 심사 및 감독관리의 필요에 따라 등록자본금 및 운영자금의 최저한도를 높이고 그 중 위안화 보유금액을 규정하였다.

넷째, 합자은행 및 합자캐피탈회사의 중국측 합작당사자의 자격요건을 금융기관이외에 일반기업까지 확대하였다.

다섯째, 중국인민은행이 외자금융기구에 대하여 인가하는 업무범위를 종전의 외화예금과 대출 등에서 일반예금, 대출 및 외화의 예금, 대출, 어음인수, 정부채권, 금융채권, 주식이외에 기타 외화 유가증권 매매, 신용장 업무, 콜시장 업무까지로 확대하였다.

여섯째, 외자캐피탈회사, 합자캐피탈회사의 업무중 1백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유대환화폐의 수수(최소 3개월 이상)업무를 추가하였다.

일곱째, 외자은행, 합자은행, 외자캐피탈회사 및 합자캐피탈회사의 건전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기자본비율(BIS)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여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외자금융기구라 함은 외국인독자은행, 외국은행의 지점, 중외합자은행, 외자캐피탈회사(본점이 중국 국내에 있는 외국자본의 재무공사), 및 합자캐피탈회사등을 말한다.<sup>401)</sup> 이 조례에서는 합작방식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4)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

국무원이 WTO가입이후 금융시장의 대외개방에 따른 자국 보험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위하여<sup>402)</sup> 《보험법》에 근거하여 2001년 12월 22일 공포,

401) 제2조.

402) 입법배경에 대해서는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p.96-97.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외자계 보험회사는 중외합자, 독자 및 지사 형태의 보험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sup>403)</sup>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중외합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합작에 형태의 외자계 보험회사는 설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에 대해 독자, 중외합자, 중외합작을 허용하고 합작의 경우에도 비법인 형태까지 인정한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와는 다르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의 경우에도 합작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중외합자 형태의 보험회사 또는 은행은 설립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 생명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외자비율을 50%까지, 손해보험회사의 경우에는 합자기업의 설립에 대해서는 외자비율 51%까지 인정하되, 가입후 2년이내에는 외자의 생명보험회사 이외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100 출자의 자회사 설립도 인정된다. 한편 외자보험중개회사의 경우에는 WTO 가입시에는 외자비율을 50%까지 그리고 가입후 3년 이내에는 51% 이상, 5년 이내에는 100%까지 허용하게 된다.

외자계보험회사의 설립조건은 다음과 같다.

- 합자 또는 독자 보험회사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2억원 인민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국제통화여야 하다. 외국의 보험회사는 국제통화로 출자하여야 한다.
- 외국보험회사의 지사(分公司)는 그 총공사가 최소 2억원 인민폐에 상당하는 국제통화를 운영자금으로써 무상지급하여야 한다.
-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외자보험회사의 업무범위, 경영규모에 근거하여 외자보험회사의 등록자본금 또는 운영자금의 최소 한도액을 상향 조절할 수 있다.
- 외자계설립조건은 1) 30년 이상 보험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것, 2) 중국내에 대표기구를 설치하여 2년이상 유지하였을 것, 3) 설립신청서를 제출하기 1년 전의 연말 총자산이 40억 달러 이상일 것 등이다.

---

403) 제3조.

-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에 종사하는 외자계 보험회사의 설립 형태 및 외자지분 비율은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 외자계보험회사는 기업설립후 등록자본이나 총운영자금의 20%에 상당한 금액을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은행에 보증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외자계 보험회사의 업무범위로서는 재산손실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의 재산보험 및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생명보험이다.<sup>404)</sup>

(5) 외국인투자리스회사심사승인관리판법(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

《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은 중국내 외국인투자리스회사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활동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회사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투자리스회사는 금융리스회사와 기타 리스 회사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합작, 합영의 형태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독자기업형태의 외국인투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辦法은 조문 수가 불과 21개에 불과하여 향후에도 추가보완이 예상된다.

1) 입법배경

이 판법의 제정목적은 리스業의 발전을 규율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이라는 절박한 필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리스는 시장경제의 산물이며 리스業은 투자, 금융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판매 촉진 및 자산관리 등의 여러 측면에서 효능을 가지며, 리스거래에 대한 규율, 리스업에 대한 감독, 회계준칙, 세수정책 및 외환관리 등 여러 가지 경제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중국의 리스업의 발전상황을 보면, 리스업은 부침의 과정을 반복하여 왔으며, 완비

404) 이 조례에서도 명확하지 아니하여 투명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제12조 제7目的 「중국보험감독회가 규정하는 기타 신중하게 대응하는 조건…」, 제11조의 「신청자는 정식 신청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립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규정된 기한내에 설립준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증권감독회의 동의를 얻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등의 규정에서 밀줄 친 부분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沙銀華, “中國WTOの加盟後外資保險公司に對する新しい法規則-「外資保險會社の管理條例」の構造解明問題點(下)”, 『國際商事法務』, Vol.30, No.3 (2002), p.345.

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법적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였다. 중국의 리스업의 발전은 크게 다음 세 단계를 거쳐왔다.

첫째, 1980년대초부터 중후기까지 이며 리스업은 금융리스를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당시 개혁개방초기였기 때문에 경제법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아니하여 리스업도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0년대 중후기부터 1990년대 중기까지이며 중국의 산업구조가 조정을 거치고 있었으며 국유기업은 큰 곤란을 겪고 있었고 시장환경은 변화되고 신용질서도 혼란에 빠져 리스업에 대한 감독도 취약하였고 리스업 내부에서도 관리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리스업은 리스료의 미수금이 엄청나게 누적되는 지경에 이르렀다.<sup>405)</sup>

세 번째는 1990년 중기이후이다. 內資리스기업과 중외합자리스리스 기업의 조직개편과 창업으로 리스업계에는 새로운 상황이 출현하게 되었지만 리스업이 시장경제에 부응하여 발전하는데 필요한 법적 환경이 여전히 조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중국의 리스기업의 상당수가 중외합자기업이며 금융리스 분야에서 7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누적 리스실적은 80% 이상이다.<sup>406)</sup> 중국은행은 2000년 6월 30일 《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을 공포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외국인투자리스업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였다.

대외경제부역부가 2001년 8월 공포한 《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은 《金融租賃公司管理辦法》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법에 의거하여 외상투자리스기업의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중외 투자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리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이후 서비스무역의 양허협정에 따라 리스업은 가입후 1년내에 외자가 다수지분을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3년내에는 外資獨資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여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내용도 법률, 법규중에 반영되어야 한다.

405)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225.

406) *Ibid.*, p.225.

## 2) 주요내용

이 판법에서 외상투자리스회사라 함은 중국의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얻어 설립되어 금융리스업에 종사하는 리스회사(금융리그회사)와 그 외의 리스업에 종사하는 리스회사(기타 리스회사)를 말하며 모두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sup>407)</sup>

설립요건으로는 첫째 금융리스회사는 등록자본금 2천만 달러 이상이고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액이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경영기간을 3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408)</sup> 또한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는 각각 설립신청前 1년동안의 총자산이 각각 4억원 인민폐, 4억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측 투자자는 5년 이상의 금융리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sup>409)</sup> 둘째, 기타 리스회사는 등록자본금 5백만 달러 이상이고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액이 등록자본금의 2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경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sup>410)</sup> 또한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는 각각 설립신청前 1년 동안의 총자산이 각각 3억원 인민폐와 5,000만 달러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측 투자자는 3년 이상의 리스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sup>411)</sup>

금융리스회사의 경영범위는 국가의 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승인을 얻어 ① 국내외의 각종 선진적 또는 응용성 생산설비, 통신설비, 의료설비, 과학연구설비, 검사검측실험설비, 공정설비, 교통운송수단(항공기, 자동차, 선박) 등 기계설비 및 附帶기술의 직접 리스, 再리스, 리스회수, 위탁리스, 연합리스 등과 관련된 각종 방식의 인민폐 및 외화의 융자성 리스 업무, ② 임차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국내외 리스업무에 필요한 물품 및 부대기술의 구매, ③ 리스물품 잔여가치 매매 및 처리업무, ④ 리스거래의 자문 및 담보 업무, ⑤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얻은 기타 업무 등이다.<sup>412)</sup> 금융리그회사가 상기의 규정된 범위 이상으로 영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중국인민은행의 《金

---

407) 제3조.

408) 제7조.

409) 제6조.

410) 제9조.

411) 제8조.

412) 제12조.

融租賃公司管理辦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의 별도의 허가를 요한다.<sup>413)</sup>

기타 리스회사의 경영범위는 ① 국내외의 각종 선진적 또는 응용성 생산 설비, 통신설비, 의료설비, 과학연구설비, 검사검측설비, 工程기계, 교통운 송수단 등의 설비에 대한 리스업무, ② 리스 물품의 잔여가치 매매 및 처리 업무, ③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 승인을 얻은 기타 업무이다.<sup>414)</sup>

한편, 금융리스회사의 리스 항목으로 상품과 그 부대기술의 수입이 쿼 터·허가증 등의 전문적인 정책관리와 관련된 경우, 임차인 또는 금융리스 회사는 규정에 따라 신청·수령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기타 리스회사가 리스에 사용할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현행 외상투자기업의 설비수입에 관 한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sup>415)</sup>

설립을 위한 신청서류는 중국 및 외국측 투자자가 서명한 외국인투자리그 회사 타당성 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중국 및 외국측 투자자의 자본등기 증명, 은행잔고 증명 등이다.<sup>416)</sup> 또한 금융리스회사의 위험을 방지하고 경 영상의 안전을 위하여 금융리스회사의 담보잔액에 포함되는 리스크 자산액 은 총 자본액의 10배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sup>417)</sup>

#### (6) 외국인투자주식회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外商投資股份 有關問題的通知)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關於外商投資股份有關問題的通知》(외국인투자주 식회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가 《關於設立外商投資有限股份公司的若干問 題的暫行規定》(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설립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 정)에 근거하여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이 후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개방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중국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민폐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 고 주식시장의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회사 전환에 따 라는 중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가할 것이다.

413) 제13조.

414) 제14조.

415) 제15조.

416) 제10조.

417) 제16조.

이 통지에 의하여 외자계 기업은 법적으로 B주 시장뿐만 아니라 A주 시장 상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의 주식회사 설립 또는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전환은 《關於設立外商投資有限股份公司的若干問題的暫行規定》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 설립된 외국인투자 주식회사가 A주 또는 B주를 공개발행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장시 외자소유의 비유통주 비율은 총 발행주식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B주를 발행한 후, 비상장 증의합자 주식회사가 외국인투자자 보유분의 B주를 상장하여 유통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자의 비유통 주식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유통후 외자소유의 비유통주 비율이 총 발행주식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2002년 8월 19일 대외경제무역부는 《외자투자주식회사 비 상장의 자주식을 B주식시장에서 유통하는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를 공포했다. 이는 중국내의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하여 B주식을 포함한 외자투자기업의 비상장외자주식을 B주식으로 전환하여 유통하는 행위를 규범하기 위하여 공포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B주식을 가지고 있는 외자투자 주식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B주식시장에서 유통하는 것을 허락한다. 유통과정에서 반드시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중국 증권 감독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2001년 10월 8일 공포한 《상장회사의 외자투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의견》에 따라 집행한다. 상장유통에 관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조건 6가지가 있고 절차 구비서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석유자원개발채굴분야

### (1) 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采海洋石油資源條例)

#### 1) 개정배경

1982년 공포된 《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采海洋石油資源條例》(이하 “해양석유자원조례”라 한다)는 중국 최초로 석유개발채굴의 대외합작분야를

조정하는 행정법규이며, 이 조례 실시이후 법에 따라 석유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석유자원개발채굴을 위한 대외합작 촉진 등 각분야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사회효용과 경제효용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중국의 개혁개방의 심화 및 석유사업의 발전에 따라 특히 중국의 WTO가입과 국무원행정기구 개혁의 추진에 따라 原조례의 일부 규정들이 이미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부합될 수 없게 되어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sup>418)</sup>

2001년 9월 23일 국무원은 《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發海洋石油資源條例〉的決定》(국무원령 제318호)을 공포하였으며 이 결정은 중국의 현실에 근거하여 해양석유자원조례에 존재하는 주요 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개정으로 하였다. 이 번의 개정은 收用원칙, 관리기관, 기술양허와 노동자 고용제도 및 외환관리 등에 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는 중국의 WTO가입과 내부 행정기구개혁후의 새로운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배경과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 12월 11일 중국의 WTO가입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고, 입법을 조정하여 WTO의 관련 규칙 및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실무작업단 보고서의 내용을 일치시켜 회원국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었다. 종전의 《해양석유자원조례》에서의 기술양허, 상품판매, 원자재 구매 및 노동분야의 일부 규정이 WTO 관련 규칙과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의 관련 내용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중국정부 개혁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었다. 《해양석유자원조례》의 공포후 경제체제개혁의 심화에 따라 행정체제개혁도 병행적으로 행하여졌다. 특히 1998년 이후 중국의 국무원은 대규모적인 행정기구개혁을 진행하였는데 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 개발·채굴 관리 부문과 관리 직능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졌다. 종전의 《해양석유자원조례》에 규정된 “석유공업부”는 이미 기구개혁과정에서 폐지되었으며 그 관리직능은 석유화학공업부, 국가석유화학공업관리국에 담당하게 되었는데 2000년말 다시 석유화학공업관리국이 폐지되면서 그 관리직능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418)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230.

따라 《해양석유자원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sup>419)</sup>

## 2) 주요 개정내용

종전의 《해양석유자원조례》는 모두 4장 제31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원래의 골격과 구조는 유지하면서 앞서 언급한 배경에 근거하여 약 20여 군대를 개정하여 최종적으로는 4장 27조로 구성되게 되었다. 개정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다.

① 징수원칙에 대한 명확히 기준설정을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익보호  
 개정후의 《해양석유자원조례》는 외국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원칙을 강화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징수행위를 규율하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다. 징수는 국가가 그 영역내 외국기업의 투자 또는 수익을 무상으로 박탈하는 행위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이후 외국기업과 개인의 중국투자를 장려하고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입법에서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종전의 《해양석유자원조례》 제3조 제1款은 “중국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해양석유자원의 개발·채굴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투자, 이윤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의하여 외국기업의 합작 개발·채굴활동을 보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외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한다는 입장에 따라 종전 제26조의 “전쟁, 전쟁위험 또는 기타 긴급한 상태하에서 중국정부는 외국계약자가 획득하고 구매한 석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매입 또는 징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4조로 바꾸고 “국가는 해양석유자원의 개발·채굴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수익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외국기업의 합작개발·채굴과정에서 마땅히 얻어야 할 석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률절차에 따라 징수를 진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개정후의 《해양석유자원조례》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수익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없다는 징수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징수에 대해서도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일정

419) *Ibid.*, p.231.

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징수절차를 진행하되,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② 관리기구관련 규정의 조정

석유자원의 보호와 합리적인 개발·채굴을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해양 석유자원의 합작개발채굴을 규율하고 대외개방과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석유자원조례》의 주관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었지만, 조례 공포후 수차례의 행정기구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성을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주관기관의 조정이 이번 개정의 중점내용의 하나이다. 첫째, 주관부문을 “석유공업부”에서 “국무원이 지정한 기관”으로 변경하고 “국가장기 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외국기업과의 석유자원합작개발·채굴계획을 수립한다; 대외합작석유자원개발채굴사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해양유전의 종합적인 개발방안을 승인한다”라는 직능을 갖도록 하였다(개정후 제5조).

이 규정에 상응하여 종전의 제25조와 제29조(개정후 제23조와 제26조)을 개정하였다. 또한 개정후의 조례는 종전 조례의 관련 규정에 대하여 적절한 조정을 하였던 바, 종전의 제7조와 제8조중의 “석유공업부 또는 석유계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을 “법률, 법규가 달리 규정하거나 석유계약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으로 개정하였다. 또한 그 동안 외국투자관리위원회가 이미 폐지되고 그 직능이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이관되었으므로 석유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지체없이 효력이 발생한다”는 종전 제6조 제2관의 규정에서 ‘외국투자관리위원회’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로 변경하였다.

## ③ WTO 규칙과 중국 가입의정서내용에 배치되는 관련 규정의 개정

첫째, 합작 당사자들간의 기술양허와 노동자 채용문제와 관련하여 종전의 《해양석유자원조례》 제12조는 “외국계약당사자는 석유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응용성·선진성 기술과 경영관리경험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국측 당사자의 석유계약집행 관련인원(중국측 인원)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경험을 전수하여야 한다; 외국계약당사자는 석유작업중에서 중국측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중국측 인원의 비율을 확대하여야 하며 중국측 인원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훈련을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

었다.

그런데,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하여 이러한 조건중 기술양허에 관한 표현은 가입의정서상의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 중국가입의정서에서는 “중국은 투자과정에서 기술양허에 관한 모든 요구와 조건은 투자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해양석유자원조례》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였는 바, 개정후의 제13조는 “석유계약에서는 석유개발·채굴 작업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중국 공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

둘째, 관련 분야의 공정설계, 시설, 원자재 및 관련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우선권에 관한 종전 《해양석유자원조례》상의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WTO의 관련 규칙이 확립한 내국민대우원칙 및 중국가입의정서의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삭제하였다.

## (2) 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 開采陸上石油資源條例)

### 1) 개정배경

중국의 석유공업 발전을 보장하고 국제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촉진하고 중외합작육상석유자원 개발·채굴을 규율하기 위하여 중국은 1993년 10월 《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采陸上石油資源條例》(이하 《陸上石油資源條例》라 한다)를 공포하였다. 그 후 중국이 개혁개방의 적극적인 추진과 석유공업관리체제의 발전에 따라 특히 중국의 WTO가입이 임박하게 되었고 국무원 행정기구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자. 그에 대한 개정이 필요성이 생겨났다.

이리하여 2001년 9월 23일 국무원은 《國務院關於修改〈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采陸上石油資源條例〉的決定》(국무원령 제317호)을 공포하여 《陸上石油資源條例》에 대한 체계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

은 관련 관리기구, 중축축 합작주체, 기술양허, 대외합작석유가스자원개발·채굴 및 외국계약자의 중국 分支機構(지사·지점 등)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행하여졌으며 전체적으로 중국의 WTO가입후의 새로운 특징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의 배경과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420)</sup>

첫째, 당시 중국의 WTO가입이 임박하여 WTO 관련 규칙과 중국가입 의정서의 관련 규정들을 준수하여 WTO회원국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했다.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의 기술양허, 설비구매, 상품판매 등의 분야에 관한 일부 규정이 WTO의 관련 규칙과 중국가입의정서와 부합되지 아니하여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중국의 석유공업관리체제와 석유기업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 1998년 이후 국무원이 대규모의 행정기구개혁을 진행하였는바 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의 관리부문과 관리직능에 대해서까지 그에 상응하는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으로는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의 공포 당시의 석유공업주관부문과 직능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기업 분리(政企分離) 원칙에 따라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에 의거하여 일부 행정관리직능을 행사하던 대형 국유기업도 순수한 경영주체가 되어 더 이상 그러한 행정권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의 석유사업에 대해 1998년 중대한 개혁이 행하여져 中國石油天然氣集團公司와 中國石油化工集團公司라는 양대 석유공사가 설립되어 中國海洋石油總公司와 더불어 이들 3대 공사가 경쟁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 2)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후의 《陸上石油資源條例》는 6장 3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章節구조와 체제의 변함없이 다음 몇가지 분야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

420) *Ibid.*, p.235-236.

## ① 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개발·채굴 주관부문

석유자원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고 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개발·채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유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관리부문들이 국무원이 승인한 합작구역내에서 배정된 합작小區에 대하여 합작방식을 정하고 관련 계획과 정책들을 수립하여 심사승인을 얻은 후, 국가의 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개발·채굴에 대한 감독을 시행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 제6조는 “국무원의 수권을 받은 관련 부문과 단위”가 그러한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국무원의 관련 부문 직능획정에 따라 그러한 관리직권을 행사하는 “부문”에는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국토자원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등 다수의 행정부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밖에 1998년 행정기구개혁이전에는 몇 개의 石油天然가스事業總公司들도 부분적인 행정관리직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공사들이 상기의 “單位”에 속하였다.

그러나, 그후 진행된 행정기구의 개혁의 성과를 반영하고 행정관리효율성을 높이고 대외합작석유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 제6조의 “국무원의 수권을 받는 관련 부문과 단위”를 “국무원이 지정한 부문”으로 개정하여 정부·기업 不分離의 폐단을 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에서의 “부문”을 “국무원이 지정한 부문”으로 개정하였다.<sup>421)</sup>

## ② WTO 관련 규칙과 중국가입의정서의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

첫째,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의 기술양허, 훈련과 고용원 비율 등을 강제하였던 규정들을 폐지하였다.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 제18조의 “외국계약당사자는 석유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선진 기술과 관리경험을 채용하여야 하며 중국 인원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경험을 전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중국 인원에게 훈련을 진행할 책임을 진다. 외국계약당사자

---

421) *Ibid.*, p.237.

는 석유작업중에서 중국측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중국측 인원의 비율을 확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외에 제22조의 설비구매, 작업인원 및 도급자 채용등의 사항에서 중국측이 우선권을 향유한다는 규정도 중국 정부의 《중국의 서비스무역수락양허표》상의 양허내용과도 불일치하고 가입의정서상의 “기술양허에 관한 모든 요구와 조건은 투자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는 내용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해당 부분을 개정하였는 바, 개정후의 제21조는 “석유계약에서는 석유개발·채굴 작업에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작업자는 중국 공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되었다.<sup>422)</sup>

둘째, 석유수매에 관한 강제성 규정을 개정하였다.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 제15조 제2관은 “외국계약당사자가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할 석유를 중국 영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가 통일적으로 수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WTO의 GATS 협정중의 내국민대우에 관한 규정과 배치되어 “외국계약당사자가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할 석유를 중국영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국측 석유공사가 수매하되, 계약 쌍방이 약정한 기타 방식을 채택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다만 국가의 중화인민공화국영역내의 석유산품판매에 관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하였다.

③ 외국측 투자방식과 분지·대표기구의 설립지점에 관한 규정추가

외국계약당사자에 대한 투자관리를 강화하고 외국계약당사자의 투자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6조에 하나의 款을 第2款으로 추가하여 “외국계약당사자의 투자는 미화 또는 기타 자유태환화폐를 채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것은 외국계약당사자의 투자방식을 명확히 한정한 것이다. 《陸上石油資源條例》 한편 중외합작계약의 이행을 촉진하고 계약당사자들의 연락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 제17조는 “외국계약당사자는 법에 의하여 중국 영역내에서 분지기구 또는 대표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원

422) *Ibid.*, p.238.

칙적인 내용만 있을 뿐 그러한 분지기구 또는 대표기구의 설립지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 제17조에 제2관 “前款의 機構(외국 계약당사자가 중국내에 설치하는 지사 또는 자회사 또는 대표기구) 설립 지점은 합영계약당사자와 중국측 석유공사가 협상하여 확정한다”를 추가하였다.

④ 《陸上石油資源條例》중의 중국측 합작주체의 표현 변경

종전 《陸上石油資源條例》 제7조 이하의 관련 조항중에서는 중국측 합작주체로서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당해 公司에 대하여 독점적인 대외합작권을 부여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8년 국무원이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와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의 설립을 승인하여 이들도 모두 동등한 육상석유자원에 대한 대외합작개발·채굴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동 제7조의 규정상의 중국측 합작주체로서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중국석유화공집단공사(이하 “중국측 석유공사”라 한다)”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통하여 중국석유기업의 이익에 더욱 부합되도록 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대외경제합작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 3. 운수분야

(1) 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관리규정  
(外商投資國際貨物運輸代理企業管理規定)

《外商投資國際貨物運輸代理企業管理規定》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國際貨物運輸代理業管理規定》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합자, 합작 및 독자투자의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의 설립요건과 관련 업종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합자, 합작법인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많은 중외합자, 중외합작의 경우 또는 외국인 독자

투자의 경우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 즉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별도의 신청수리기간을 발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423)</sup> 그러나 제2조의 규정을 보면 분명히 중외합자나 중외합작 이외에 외국인 단독투자 형태까지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단독투자나 외국인 다수 지분의 합작 또는 합병의 경우에는 다소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합작당사자중 중국측 당사자중 최소 1개 기업은 국제화물운수대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하고 수출입 경영권을 1년 이상 획득한 기업 또는 교통운수, 창고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기업이어야 한다. 또한, 외국측 당사자는 국제화물운수대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 제2의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을 설립하려면 이전에 설립한 기업의 경영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자본금은 1백만 달러 이상이고 3년 이상 동일 업종에 종사한 직원이 5인 이상 있어야 하며 기업운영에 필요한 통신, 운송, 선적, 하역, 포장 등 영업시설을 보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의 경영기간을 20년이며 외국인 투자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이 정식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고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다. 이 경우 總공사가 分공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매 분공사 설립시마다 12만 달러씩 증자하여야 한다.

## (2) 외상투자도로운수기업관리규정 (外商投資道路運輸企業管理規定)

외상투자도로운수업을 규율하기 위하여 중국의 교통관리부문이 1993년 공포한 《中華人民共和國交通部外商投資道路運輸業立項審批暫行規定》을 제정한 바 있다. 이 집행규정은 외상투자운수업에 대한 심사승인의 절차, 범위, 구체적인 요구 등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들을 두고 이었다. 그런데 개혁개방의 확대에 따라 특히 중국이 WTO가입과 더불어 WTO규칙과 대외적

---

423) 제4조.

수락내용에 의거해 볼 때, 원래의 규정에 있던 많은 내용들이 새로운 상황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개혁개방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에 부응하고 도로운수업의 대외 개방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외상투자도로운수업의 심사승인관리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또한 WTO 규칙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2001년 11월 20일 중국의 교통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外商投資道路運輸業管理規定》를 새롭게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원래 교통부가 제정하였던 《中華人民共和國交通部外商投資道路運輸業立項審批暫行規定》은 폐지하였다.<sup>424)</sup>

이 규정은 여객운수, 화물운송, 하역·창고 저장 등 도로 운수와 관련된 합자, 합작 및 독자 형태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련 내용을 두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의 도로여객운수업 종사자격과 관련하여, 주요 투자자중 최소한 1개사는 5년이상 중국에서 동일 업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등록자본의 50%는 여객운수 기초시설 건설 및 개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허가범위를 벗어난 경영규모 확대, 합병, 분할 등 외국인투자기업에 변동사항이 있으며 교통주관부문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업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1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투자금액중 50%가 여객화물운수 기초건설에 사용된 경우에는 20년까지 연장가능하다.

### (3) 외상투자민간항공업규정 《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

민항총국, 대외경제무역부와 국가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은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공포되어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투자범위·방식·비율·관리권 등을 확대하고 있다. 지금

424) 張德霖, *op.cit.*, (*supra* note 89), p.212.

까지의 외국인에 의한 민간항공업투자에 관한 정책은 1994년 국무원이 승인하고 민항총국과 대외경제무역부가 공동으로 공포한 《關於外商投資民用航空業有關政策的通知》 및 그 해석문건이었다. 이 《關於外商投資民用航空業有關政策的通知》와 비교해볼 때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은 시장개방의 요구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먼저 투자범위를 확대하여 상기의 통지가 외상투자 공공항공운수기업을 12개 정도만 실험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수량제한을 폐지하고 현재의 어떠한 공공항공운수기업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425)</sup>

외상투자가 행하여지는 항공업 분야는 국가기밀에 속하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며 외상투자방식을 확대하여 외상이 합자 또는 합작 방식이외에 주식인수를 통한 투자참여 등 새로운 투자방식 및 “기타 승인을 얻은 투자방식”에 의해서도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외상투자비율을 확대하여 민간용비행장에 대한 외상투자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외상투자민용비행장은 중국측이 지배적 지분(控股)을 가져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또한 “공공항공운수기업은 외가지분비율이 3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의결권비율은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원래의 규정도 외상투자공공항공운수업에서 “중국측이 상대적으로 지배적 지분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어느 한 외상(그 관련기업을 포함한다)이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개정하였다.

민용항공업에 대해 종전의 규정은 외상투자농림업항공만을 허용하였고 외상투자비율도 중외 쌍방이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각각의 항목별로 그 성질에 따라 외상투자비율을 달리 정하여 공중유람 및 공업서비스 항목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지배적 지분을 갖도록 하였다. 항공운수관련 항목의 외상투자비율은 종전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신규정은 각각의 경영항목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 항공연료공급, 비행기 정비항목에 대해서는 중국측이 지배적 지분을 갖도록 하고 화물운송창고·지상서비스·항공식품·정차장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중외쌍방이 협상을 통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민용비행장, 항공운수기업의 이사장과 사장은 반드시

425) 『法制日報』, 2002年 7월 4日字.

시 중국측이 담당하도록 한 종전의 규정을 외상투자민항기업의 이사장, 사장을 중국측 또는 외국측중 어느 쪽이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조건을 폐지하고 회사법 등의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하도록 개정하였다.

## 제 4 장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와 입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전망

### 제 1 절 외국인투자관련법 정비의 기본방향

#### 1. 의 의

중국에서는 3자기업과 외상투자주식회사<sup>426)</sup>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외상투자기업<sup>427)</sup>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근년 중국에서는 법률, 법규, 외자유치정책 등의 정비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준 한편 종래의 외상투자기업관련법체제가 차츰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리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WTO가입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모순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은 WTO의 방침에 근접시키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sup>428)</sup>

중국의 대외무역을 조정하는 기본법인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 제6조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다른 계약당사자, 참가당사자에게 또는 호혜평등원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WTO가입전후에 중국이 외국자본의 진입허용의무를 구체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거시적인 지표를 작성한 것이다.<sup>429)</sup>

426) 중국어로는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이다. 흔히 외국투자가투자주식회사라고 번역되기도 한다. 외국투자가투자주식회사는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대외무역경제합작부 1995년 제정)에 기초하여 설립되며 外國株主의 持株가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5%이상인 주식회사이며 동 잠정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 기타의 관련법규정이 적용된다(동 暫行規定 제2조, 제3조, 제25조).

427) 우리나라에서는 통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외국투자가투자기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428)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3.

429) 陳俊,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op.cit.*, (*supra* note 58).

중국의 외자관련법은 2000년과 2001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 협정이 요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sup>430)</sup> 외상투자기업의 승인문제, 외국인 투자와 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문제, 수량제한문제<sup>431)</sup>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WTO가입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종전의 그 어느 때보다 중국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외상투자기업관련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적인 단일의 외국인투자기업법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러한 외국인투자기업법과 회사법의 협력 및 상호관계도 입법론적으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432)</sup>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중국내자기기업보다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참입 규제 기타 관계에서 내자기기업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하거나 내수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병행하여왔다.<sup>433)</sup> 그러나 앞으로 아직까지 외국인투자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제조업분야중 상당부분이 단계적으로 외국인 투자허용분야로 편입될 것이며 특히 WTO 가입시 대외적으로 수락한 시장개방 스케줄에 따라 서비스 시장분야의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그러한 시장 개방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예상되는 외국인투자관련법 개정원칙의 방향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434)</sup>

## 2. 정비의 기본방향

중국도 외자도입자유화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한편으로는 투자장벽을 감소시키고 투자보호를 강화하고 투자통제를 완화하고 정부간섭을 축소시키는

430) 예컨대, 합자경영기업법 개정법률의 “이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 자체도 WTO협정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張桂紅, *op.cit.*, (*supra* note 82), p.184.

431) 예컨대 《福建省人民政府貫徹〈國務院關於外商投資的規定〉的補充規定》 제5조 등도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op.cit.*, (*supra* note 190), p.16.

432) 張桂紅, *op.cit.*, (*supra* note 82), p.185.

433) 중국의 외자법령과 WTO 규범과의 불일치와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曹建明(主編), *op.cit.*, (*supra* note 122), pp145-170 참조.

434) 姜一春, *op.cit.*, (*supra* note 14), p.958.

것이 필요하며 외자에 대하여 비시장경제적 성격의 과도한 요구 또는 장려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초하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첫째, WTO의 각종 투자관련 협정의 관련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국내입법 또는 국내입법중의 관련 조항과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超내국민대우”와 “低내국민대우”는 “내국민대우”로 전환될 것이다.<sup>435)</sup>

둘째, WTO 제협정의 요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진입제한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지만,<sup>436)</sup> 장기적으로 각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內資企業이 외자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부문별, 층차별 시장개방을 해나갈 것이다.

셋째, 외국인투자관련법의 개혁은 투명성원칙에 입각할 것이며 정부간섭을 축소시켜 공정경쟁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sup>437)</sup> 이를 위하여 불필요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감소시키되, WTO 관련 협정의 예외적인 조항을 입법화하여 일시적으로 내국민대우의 의무에서 이탈하여 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sup>438)</sup>

435) 梁咏·章海彤, *op.cit.*, (*supra* note 152).

436) 시장진입제한조치는 투자관련조치(TRIMS)중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고 숫자가 가장 많은 분야이며(徐勤松, “論‘與投資有關的貿易措施’”, 『中國法學』 2001年 1期, p.6. p.115.), 여기에는 원산지규칙, 국가기술표준, 특정산업부문의 무역제한, 반덤핑과 반보조금조치 등이 포함된다.

437) 梁咏·章海彤, *op.cit.*, (*supra* note 152).

438) *Ibid.*; 선진국들도 적지 아니한 분야에서 외자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쌍무적인 차원에서 예컨대, 미국식 쌍무적인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포함하는 모든 쌍무적 투자협정은 모두 자본도입국의 외자에 대한 관할권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관련 다변적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예컨대, TRIMs협정과 GATS 협정 등 WTO 체제하의 투자관련 협정들은 모두 GATT체제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특색인 “규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WTO 체제하의 투자협정상 시장진입자유화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협정의 적지 아니한 조항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고려를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수준이 같지 아니한 세계에서 각국 외자자유화의 정도와 범위는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일치하여 허용하는 통일적인 고도의 시장진입 자유화 규칙이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3. WTO 가입이후 외자의 대우에 관한 입법방향

첫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은 WTO 가입을 전후하여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관련법상의 수출의무 조항, 외환수지균형 의무조항, 현지물품우선구매((Local Contents)조항<sup>439</sup>) 및 생산경계계획보고의무조항들을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이미 1995년 경제특구와 상해시 등 연해도시지역에서 내수판매와 수출비율을 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기업에 부여하여 수출의무 규정도 사전심사단계에서만 점검하고 사후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지는 않는 실험적인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2000년 10월, 2001년 3월과 7월 외상투자 3법과 그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미 그러한 의무조항들은 사문화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WTO가입이후에는 이러한 규제적 내용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sup>440</sup>

둘째,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내국민대우라 함은 국내시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하고 서비스 시장을 비롯한 각 부문별 국내시장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개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sup>441</sup>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여되었던 각종 특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부여하였던 세제측면에서의 우대조치는 WTO가입이후 내외자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39) 1994년 2월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정한 《汽車工業產業政策》 제31조 제1항도 “합자기업이 부품을 선정할 경우 국내부품이 동등하면 우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기타 지방성 법규 및 중국심사기관의 외자심사항목에서도 그러한 국산화율을 승인조건외 하나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법령 등의 규정과 관행도 TRIM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향후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盧炯星, *op.cit.*, (*supra* note 190), pp.14-18.

440) 1987년 국가계획위원회가 공포한 《關於中外合資, 合作經營企業產品以產項進辦法》 제9조 및 1987년 10월 국가경제위원회가 공포한 《中外合資, 合作經營企業機電產品以產進項管理辦法》의 규정 등이 아직도 개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Ibid.*, p.14.

441) 沈敏榮, “WTO與國民待遇,” 『法學雜誌』, 2001年 第3期(總 第126期), pp.36-37.

지금까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법, 노동법, 외국환관리 기타 영역에서 일반 중국기업(內資企業)과는 달리 취급되어 왔는데,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은 모두 중국법에 기초하여 중국국내에 설립된 중국기업(법인격을 갖는 경우에는 중국법인)이지만 외국기업을 우대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중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향후 외상투자기업 관련법의 단계적인 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sup>442)</sup>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의 우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를 위한 우대조치 그 자체가 WTO의 위반은 아니며 오히려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국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그러한 역차별을 받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정도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중국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 우대조치의 폐지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향후 내외자 평등의 원칙이 법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1994년 이후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增值稅(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일정한 수입에 대해 관세면제조치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외국인투자의 격감이 발생하자 그러한 우대조치를 부활시켰다는 점에서 외국인우대조치의 항구성은 단언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sup>443)</sup>

셋째, 특정지역에 대한 우대조치가 축소될 것이다. 개혁개방초기부터 중국의 외자유대정책은 내륙지역에 비해 연해지역 특히 경제특구내의 기업에 치우쳐 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이러한 지역에 편중되는 외자유대정책에서 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하고 내륙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중국국가세무총국은 내륙지역내 장려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윤발생후 3년간 면세, 그후 2년간 50% 감면이라는 현행 조세감면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5년의 우대기간 만료후에도 3년동안 기업소

442) 系賀了·森川伸吾·大西宏子, *op.cit.*, (*supra* note 216), p.53.

443) 중국의 전인대에서 1995년 통과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95”계획 및 2010년 장기 계획綱要》(國民經濟和社會發展“九五”規劃和2010年遠景規劃綱要)는 “단계적으로 내외기업에 대한 정책을 통일하여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내국인대우를 실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천명하고 있다. 陳俊,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op.cit.*, (*supra* note 58).

득세를 15%만 징수하는 우대조치를 부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내륙지역에 재투자된 사업에 대해 외국인투자지분이 25%이상이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우대조치를 부여하며 내륙의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외자도입 우선 분야에 속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설비, 관련기술, 부품 등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에서의 각종 세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정부가 최근 내륙지역에의 투자를 우대하기 위해 국내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지만, WTO가입이후에는 중국이 WTO의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는 상당한 축소될 것이다.<sup>444)</sup>

넷째, 외국자본의 시장침입의 허가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WTO가입이후 대외적으로 수락한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방에 대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금융서비스의 자유화는 효과적인 규제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중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최근의 발전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조치들이 필요하다.<sup>445)</sup>

또한 1992년 이후 외자에 대한 업종규제가 완화된 항목, 예컨대, 방직업, 화학, 석유공업, 건설업에서의 외국인투자를 확대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광산자원, 서비스무역, 여행자원의 개발, 수상운송 등에의 외자침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 밖에도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진출허가 기준의 완화·개방에 관한 세척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WTO가입과 더불어 중국의 외국인투자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①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이상을 차지하던 제조업분야의 외자투자율이 낮아지고 종전에는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부동산과 호텔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WTO가입이후에는 금융, 통신, 유통, 전문 서비스 분야가 시장규제 완화와 더불어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② 선진국이 직접투자의 주도세력이 될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해외투자 경향은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60-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의 WTO 가입이후 선진국에 의한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444) 姜一春, *op.cit.*, (*supra* note 14), pp.958-959.

445) 史樹林, *op.cit.*, (*supra* note 87), p.6.

③ 중국에 진출하는 투자형태도 종래의 합자경영기업, 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등 이른 바 3자기업의 설립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향후에는 M&A에 의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선진국의 해외투자 경향이 국경을 초월하는 M&A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역시 WTO 개방에 대비한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에서 외자에 의한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M&A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외자측에 대한 진출허가절차의 간소화이다. 종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장려, 제한, 금지되는 업종을 두었으며 투자규모에 따라 정부행정의 다른 레벨에서 직접심사하고 인가를 부여하였다. 향후에는 정부행정의 제한, 금지 항목의 심사와 장려, 우대항목의 자격 인정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의 등록 및 심사업무를 산업관리부문에 귀속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대외무역권 확대이다. 중국은 TRIMs협정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투자관련 이행요건(performance requirements)을 폐지하고 모든 법적 실체(corporate entities)가 대외무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록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제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불허, 이들 기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수 없었으나 WTO가입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무역권을 개방해야 하므로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중국수입시장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sup>446)</sup> 한편, 대외무역권의 개방은 외자기업의 직접 수출 또한 가능케 하므로 외자기업은 자사 생산품 이외의 상품도 해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sup>447)</sup>

중국은 대외무역경제협약부는 2001년내 WTO가입이 확실시 되자 2001년 7월 20일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입 경영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공표하였다. 생산형 외자기업의 수출경영권, 모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투자성 회사의 수입경영권, 연구개발센터의 테스트용 하이테크 제품 수입경영

446) 중국의 무역권에 관한 현행 법령과 그 정비현황 및 WTO 규범과의 불일치에 대해서는 曹建明(主編), *op.cit.*, (*supra* note 122), pp.111-112.

447) Benjamin Hamm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american.edu/projects/mandala/TED/smith/hammer.htm>.

권 등 3개 부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통지문은 중국이 WTO가입을 앞두고 외국인투자자기업에 대해 수출입 권한을 소폭으로나마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간 수출액 1천만달러 이상의 (신청전) 2년 연속 세수, 외환 및 수출입과 관련한 위법 기록이 없고 국제 무역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형 외자기업은 非쿼터허가관리 품목 및 非특정상품(전문적으로 수출상 지정하지 않는 상품) 수출에 종사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자사 생산 제품의 수출 쿼터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모기업이 생산을 위주로 하는 투자성 회사의 수입경영권을 확대한다. 투자성 회사가 시스템 부품 및 테스트용 제품을 수입할 때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的補充規定》(외상투자기업이 설립한 투자성 기업에 대한 잠행규정의 보충규정)에<sup>448)</sup> 의거하여 시행한다.

③ 외상투자 연구개발센터는 연구개발 상품의 시장 테스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모기업이 생산한 첨단 기술 제품을 수입 혹은 판매할 수 있다. 수입량은 시장 테스트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

그밖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통지문에서 생산형 외자기업, 투자성 회사, 외상투자 연구개발 센터의 상술한 수출입 권한과 관련, 기존 허가부서에서 경영범위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제 2 절 외상투자3법에 대한 개정 전망

### 1. 외상투자법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현재 중국에서는 외상투자기업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수천건에 이르는 외국투자에 관한 법

448) 보충규정 2의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다:투자성 회사의 기투자기업 생산제품 및 관련 시스템의 국내외 판매를 허가한다. 투자기업이 생산한 제품이 시스템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국내외에서 관련제품 구매를 허가하나 구매한 제품의 가치가 전체 시스템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를, 법규, 외자유치정책 등을 정리하여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이라는 3가지 법을 단일의 법률로 통합한 외상투자기업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비준제도(면허주의)를 폐지하고 완전한 내국민대우를 외국투자자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그러한 비준제도는 당장은 폐지하지 말고 외상투자기업에 적용될 법률을 현행 회사법의 특별한 장으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회사법에서 그러한 특별한 장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내의 다른 장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001년 3월 14일의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主席團 제3회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위원회에 의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안의 심사결과에 관한 보고서」가<sup>449)</sup> 채택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에 관한 많은 제안은 합자경영기업의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반영한 것이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다른 문제들과 결부되어 복잡한 양상을 지니고 있어서 당장 채택하기는 곤란하며<sup>450)</sup> 다시 조사와 논증을 거쳐 향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451)</sup>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의 3개의 외자관련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기업형태마다 다른 기준을 두고 있다. 1993년 회사법이 제정되었지만 여기에서 불통일적인 면이 남아 있다. 예컨대 외자에 의한 투자총액과 경영기간, 중대사항의 의결요건 등은 회사법에서의 규정에 비교해보아도 불일치하는 점이 발견된다. 향후 이러한 3개의 외자법률을 폐지하고 통일적인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고 회사법에 상응하는 내용중에서도 수정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는 《중외합자경영기업

449) 이에 관한 내용은 『人民日報(海外版)』 2001年 3月 15日字 참조.

450) 예컨대,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등의 면에서의 우대조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 형식상의 중외합자경영기업(중국어로는 假合資)라고 함)을 설립하는 중국기업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심사승인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등의 면에서의 우대조치를 폐지하고 내외자기업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방침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면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승인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 등이다.

451)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4.

법》을 중심으로 외상투자기업법에 관한 중요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의 제안 및 일부 학자, 변호 그리고 실무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 2. 외상투자비율의 최저한규제의 폐지

합자경영기업법 제4조 제2항은 「합자경영기업의 등록자본에서 외국측 당사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를 하회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놓고 해석상의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sup>452)</sup>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5년 공포한 《외상투자기업등기관리에 관하여에 대해 공사등기관리법규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의 집행의견》 제1조에서는 「외국투자가와 국내기업의 공동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에서 외국투자가가 납입한 출자액이 등록자본 총액의 25%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의 심사인가를 거쳐, 관계 외상투자기업등기관리의 규정에 따라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外資成分을 포함하고 있지만 내자기업으로서 인가를 부여한 지방의 심사승인기관(대외경제무역위원회)이 있는 바 「25%미만의 기업은 중외합자경영기업이 아니라 내자기업으로 취급되므로 그러한 심사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외자 비율이 25%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통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편의상으로 그 등기와 관련하여 내자기업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지방의 행정법규마다 동일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sup>453)</sup> 이러한 실정때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에서는 외상투자비율

452) *Ibid.*

453)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이 1997년 공포한 503호 문서 「대외개방의 촉진과 외자의 이용확대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4조는 내자합자경영기업의 설립이 장려되며 외상투자가와 국내기업이 공동투자하여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합작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러한 외상투자가가 차지하는 자본비율이 등록자본액의 25%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법인영업허가증(국가가 금지하는 외상투자프로젝트는 제외)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월 1일 기업법인영업허가증과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일원화할 때까지, 중국은 국내기업에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행한데 반하여 외상투자기업에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행하였다. 외자 25%미만의 기업에 대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1995년의 규정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발급하였던데 반해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의 최저한도를 25%로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sup>454)</sup>

### 3. 출자자의 채무부담과 리스크 배분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합자경영기업출자자의 채무부담 및 리스크 배분에 대하여 합자경영기업법 제4조 3항에서는 「합자경영기업의 각 당사자는 등록자본의 비율에 따라 이익배분을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분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의 의문이 발생한다. 즉, 각 합영 당사자들에게 직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시키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한 합영기업의 채권채무는 합영기업의 권리의무이며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는 아니다. 이 규정은 각 합영당사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이지 투자비율에 합영기업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합영 당사자가 출자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 정부심사부문이 합영파트너에 대하여 합자경영기업 자체의 채권채무의 분담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오해에 기초한 것일 것이다.<sup>455)</sup> 이 규정의 그와 같이 잘못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후단의 「위험 및 손실을 분담한다」라는 구절을 삭제하여야 한다.

### 4. 이사회 의 기능재조정

중국 국내기업을 규율하는 회사법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합자경영기업의 출자자(합영당사자)의 권리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 합자경영기업에서는 예컨대, 정관의 개정, 기업의 합병·분할·해산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전원일치의 의결을 요한다. 그러나 회사법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주(출자자)는 주주이외의 자에 그 출

발급하였다는 점에서 외자 25% 미만의 기업의 성격에 대해 인식의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54) 외자의 투자비율의 최저한을 25%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25%미만의 외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은 외자성분을 갖는 내자기업으로 취급하여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합자경영기업법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劉新宇, *op.cit.*, (*supra* note 209), p.584.

455) *Ibid.*

자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에서는 「반드시 전주주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한 주주는 당해 양도분에 상응하는 출자분을 매입할 수 있으며 당해 양도출자분을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양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합자경영기업법의 경우에는 모든 출자자의 동의를 얻고 이사회 전원일치의 의결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합자경영기업의 출자자의 권리가 법률로 제한되고 있는 것은 국내기업에 비교해 볼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며, 정관의 수정, 기업의 합병·분할·해산 등에 대해서 이사회 전원일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sup>456)</sup>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 지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행법하에서 합자경영기업의 이사는 그를 파견한 합자경영당사자인 출자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가 대표하는 출자자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면 합자경영기업의 이익은 후순위가 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합자경영기업의 경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합자경영기업의 중요한 모든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맡기고 있는 현행법의 체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sup>457)</sup> 다시 말해서 주주총회를 두어 주주총회를 합자경영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하여 회사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의결방법을 참조하여 합자경영기업의 운영제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sup>458)</sup> 것이다.

---

456) 2000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중국변호사 2000년 대회」에서도 합자경영기업의 이사회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下)”, 『國際商事法務』, Vol.29, No65(2001), pp.728-729.

457) 한편, 현행 중외합자경영기업의 기구체제상의 문제로서 이사회지도제도가 갖는 폐단으로 이사회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이중적인 직책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사장(總經理)책임제의 문제로서 사장은 자신을 파견한 합영기업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점에 대해서는 徐崇利, “從中外合營企業到中外合資公司:內部組織機構體制多樣化”, 『政法論壇』, 2000年 5期(總 第95期), p.129-131 참조.

458) 劉新宇, *op.cit.*,(下), (*supra* note 456), p.727.

##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제(준칙주의)의 점진적인 실시

현재의 외국인투자심사인가제도는 과거보다 대단히 간소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금지류, 제한류 업종 이외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내기업(유한책임공사)에 대한 신고제를 적용함으로써 정부의 심사인가(승인제)를 점차 폐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up>459)</sup> 기업심사승인 전치주의는 중국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특정한 시기에 시행된 일종의 특수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혁개방초기, 일부 산업분야를 각각 제한, 장려하거나 완화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유지·보호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그러나 각급 주관부문이 첩첩산중으로 존재하고 있어 기업심사승인 전치주의가 남용됨에 따라 기업설립의 정상적인 수행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시장개방원칙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국무원의 지시에 의거하여 기업심사승인 전치주의를 정리하는데 전력을 다 하였는 바, 600여건의 법률, 법규 및 문건을 조사하여 법률로 제한을 받은 업무 또는 항목 37항, 행정법규로 제한을 받은 업무행위 또는 항목 50항, 국무원과 국무원 판공청의 발송문서에 의하여 제한 받는 업무 또는 항목은 30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공상행정관리국과 기타 부문이 공동으로 발송한 문서에 의하여 제한 받는 업무와 항목은 36항 등 이상과 같은 총 153항을 찾아내었다. 또한, 중국의 일부 지방에서의 기업심사승인 전치주의 대상이 되는 업무 또는 항목을 400여항에 달하였다. 현재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이러한 정리결과를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엄격한 선정작업을 하여 필수적인 것만 유보하여 주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국무원에 품신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기업들로 하여금 완화된 법률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최근 모델계약의 내용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독자적인 내용을 둔 합자경영계약을 작성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합자경영계약서 등의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기준으로 실시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합자경영계약서의 조항을<sup>460)</sup> 심사하는 것

459) *Ibid.*, pp.727-728.

460) 실시조례는 14항목의 합자경영계약의 필요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합자경영계약

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규가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sup>461)</sup>

예컨대, 합자경영당사자(출자자)는 商權移管의<sup>462)</sup> 협의서를 합자경영계약의 부속서류로 하여 제출하였는데, 심사기관으로부터 그것은 심사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도록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 케이스에서 그러한 협의서는 합자경영당사자에 있어서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대전제가 되고 이것을 합자경영계약에 포함시키지 못한다면 충분한 보증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합자경영기업을 설립하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주장이 강하게 외국투자자로부터 제기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다.<sup>463)</sup>

그러므로 현행 외국인투자심사승인제도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겠지만 당장은 정부가 제한업종 이외의 업종에 속하는 합자경영의 계약서 자체에 대한 심사인가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거론한 것 이외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개정을 놓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외상투자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에 삼입하자는 수정제안 그리고 외국측 당사자가 중국국내에서 얻은 외화이익을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중국은행에 예금하는 것을 장려하는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 제 3 절 세제 통일화 문제

#### 1. GATT 관련 규정

무차별에 관한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GATT는 각 계약국들에게 타방 계약국에게 평등한 관세 대우 및 최혜국대우 무역지위 뿐만 아니라 내국민대우

의 부속서류가 합자경영계약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명기하고 있다.

461) 대외경제무역부는 1991년 7월 11일 「외상투자기업계약, 정관의 심사비준의 원칙 및 요점」을 공포하였으며 1996년 11월 5일에는 「『부분업종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심사비준의 원칙과 수단』 발표에 관한 통지」를 제정하였지만 심사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劉新宇, *op.cit.*(下), (*supra* note 456), p.729.

462) 예컨대, 중국측 출자자의 거래처 및 취급 상품의 생산·판매업무를 합자경영기업에 이관시키는 등.

463) 劉新宇, *op.cit.*(下), (*supra* note 456), p.728.

를 부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조세제도가 외국기업 또는 수입품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수입품을 배제하는 위장된 보호장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GATT 제3조는 특별히 국내조세와 법령을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국내 상품에 적용하여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국민대우 원칙하에서 기업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조세 및 기타 부과금, 법령 및 기타 요건들은 평등하게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수입상품에 대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점은 향후 중국에서의 세계 관련 외자기업 대우에 관한 입법방향과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

## 2. 조세제도의 변천

### (1) 1990년 이전의 조세제도

1990년 이전 중국은 국내기업, 외국회사 및 외국인투자기업간은 물론이고 각기 다른 소유형태하의 국내기업간에도 불평등 대우가 존재하는 대단히 복잡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정부는 국내기업에 대해 국가소유, 집체소유, 개인소유 등 그 소유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정하고 있었다. 개혁이전시대에는 국가소유기업은 어떠한 조세부담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히 얻어진 이익금을 국가에 전환하였을 뿐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55%에서 68.5%에 이르는 다양한 세율을 가진 기업 이윤세(profit tax)가 도입되었다. 집체소유기업은 최고 5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었으며 그들은 정부에 직접적으로 그들의 이익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하였다.

국내기업과는 달리 외국인참여기업들은 전적으로 다른 조세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두 가지 그룹으로 분류된다. 즉 외국인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그것이다. 중국법상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기업”이라 함은 중국 내에 사업장(business place)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수입이 중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외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자로 중국에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법적 지위상의 주요 차이점은 외국인기업은 중국법인이 아닌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법인이며 따라서 중국법의 관할하에 있다는 것이다. 외국투자의 유형과 비율에 따라 후자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전액외국인투자기업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내기업에 또 다른 하나는 외국인참여기업에 적용되는 이러한 이중조세제도하에서 그 두 형태의 기업들에 대한 조세율은 결코 비교될 수 없다. 이러한 관행은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중국정부가 외해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참여기업에 대해 조세적 특혜를 부여하였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은 33%의 소득세(30%의 국가소득세와 3%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국가소유기업과 집체소유기업은 누진세율로 최고 55%까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중조세제도는 그 복잡성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초래하였다.

첫째, 외국인참여기업은 기업소득세이외에 공상통일세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공상통일세는 1958년에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각기 다른 기업, 제품 및 거래에 대해 42개의 세율이 적용되는 대단히 복잡한 조세제도였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외국인 참여기업들은 그 산업, 제품 및 거래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조세를 부담하고 있었다.

둘째, 중외합작경영기업 내부에서도 중국측 당사자는 국내기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 외국측 당사자는 특별히 외국기업들을 위해 제정된 별도의 법령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했다. 이러한 복잡한 이중적 조세정책은 중국의 법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초래하였다.

## (2) 현행 조세제도

1990년 새로운 조세법을 제정하여 1991년 4월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인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법은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3가지 유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통일적인 세율을 적용하고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득의 성격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법에 따라 3가지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금의 30%라는 고정세율(flat tax)의 적용 받고 있다. 그밖에 3%의 지방소득세가 과세소득에 대해

부과됨으로 총 33%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1993년 말에는 중국은 국내 기업에 관한 조세법제도를 통일시키기 위한 그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일련의 조세법령을 공포하였다. 그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내기업들에 적용되는 통일기업세가 확립되었다. 또한 그 세율을 33%로 한 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

그 결과 국가소유기업, 집체소유기업 및 사유기업 및 기타 국내 실체들에 적용되는 세율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율과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외국인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는 공상통일세를 폐지하고 종전에 내국기업에 대해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business tax)를 외국인참여기업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매상세 (turnover tax) 제도를 개선하였다.<sup>464)</sup> 다양한 조세특혜대우를 외국인참여기업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새로운 법령은 각기 다른 유형의 국내 기업, 외자기업 및 외국인 참여기업에 대해 과세에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위치에 두고 있다. 조세제도의 통일은 시장경제확립을 위한 중요한 행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의 조세제도를 점차 GATT의 내국민대우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내외 기업에 동일하지 않은 세수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생산성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동안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다. 고도의 신기술, 상품수출형 외상투자기업은 상기의 우대조치이외에도 더욱 높은 우대조치를 향유할 수 있다.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부분에 대해 이미 납부한 40%의 기업소득세를 환급해줄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수출입관세에 관한 우대조치를 받는다. 그 밖의 세목에 대해서는 외상투자기업이 단계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용받아 국내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받고 있지만, 여전히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과 국내소득세법이 병존하는 이른바 雙軌制 기업소득세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sup>465)</sup>

464) 程法光, “中國涉外稅收政策和稅制發展趨勢”, [http://www.newchina.com/chi\\_law/1999/3/obser\\_chi.htm](http://www.newchina.com/chi_law/1999/3/obser_chi.htm).

465) 聲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op.cit.*, (*supra* note 190), p.18

이러한 내외자 기업의 차등과세는 우대정책의 산물로서 내자(중국) 기업들은 평균 33%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지만 외자기업들의 경우(회사 소재지가 경제특구, 기술개발구 등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15% 정도만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특히 개발구 등 외국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2減 3免'이라 하여 기업 설립후 이윤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첫 2년간은 법인세 납부를 면제받고 그후 3년 동안은 7.5%의 법인세만 납부하는 우대조치를 적용받는다.

### 3. WTO 가입이후 세계일원화 논의

중국의 WTO가입이후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 특히 내외자 기업의 세계일원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세무총국 고위 관계자도 최근 WTO 가입이 임박, WTO 규정에 부합하는 환경마련을 위해 대외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세수정책을 철회해 기존 내외자 기업간의 차등 과세에 대한 일원화 방침을 표명하면서 세수정책 조정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sup>466)</sup>

이에 대해 중국의 한 학자는 “점진적인 세계개혁과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공평한 세금부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기업간의 세수 차이는 수입 관세 감면과, 수출 후 관세환급, 기업소득세 감면 등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WTO 가입후 대폭적인 관세인하로, 관세 감면을 통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우대정책의 효과는 점차 축소되어 갈 것이다. 현재 소득세 감면은 아직까지 중국의 외자유치 우대정책의 주요한 내용이다.

시장개방정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득세 감면 정책은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의 불공정 경쟁을 낳을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하에서 소득세감면은 중국이 실시하는 산업 우선 발전정책과 지역 발전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중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간에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

466) 중국은 WTO가입에 앞서 종합적인 조세개혁을 준비중이다. 그러한 조세개혁에는 국내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한 법령상의 규율내용 차이를 단계적으로(step by step) 시정(rectify)하는 것도 포함된다. “Sweeping tax reforms prior to WTO entry,” [http://www.chinaweb.com/english/cw\\_html/economy/latestnews/BJ13410.html](http://www.chinaweb.com/english/cw_html/economy/latestnews/BJ13410.html).

다.<sup>467)</sup> 또한, “단계적으로 세수 장려메커니즘을 위주로 하는 우대조치는 경쟁쟁메커니즘을 위주로 하는 우대조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 장려형에서 規則性型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동일한 論旨라고 생각된다.<sup>468)</sup>

그러나, 이러한 동등한 대우라 함은 원칙적인 측면을 강조한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반드시 WTO 규범하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라는 것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내국기업간의 기계적인 평등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가 정책적인 입장에서 특정한 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469)</sup> 또한 중국 당국도 지속적인 외자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선별적인 우대조치를 앞으로는 계속할 것이며 기존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외자우대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sup>470)</sup> 세무총국 관계자는 외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여 세제 및 투자 영역에서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기존 우대철회로 인한 외자기업의 반발을 감안해 금융, 보험, 광산품 탐사 및 개발 등의 시장개방 확대도 강조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중국의 중점 외자유치 분야인 하이테크, 농업, 에너지, 교통, 대형공업 등의 산업과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차등 과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해 우대정책의 전면철회는 아님을 밝혔다. 그리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우대정책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며 조정세계 부분이 법인세와 같은 국세에 한정될 것으로 밝혔다. 특히 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우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15%라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467) 劉新宇, *op.cit.*(下), (*supra* note 456), p.728.

468) 胡振杰, *op.cit.*, (*supra* note 95).

469) 王嬌莹, “非歧視原則與中國實踐的協調,” 『中國律師』, 2000.7.(總 第129期), pp.47-49.

470) “Preferential Treatment will Continue even after WTO entry, MOFTEC spokesman says,”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B200102630.asp>.

## 제 4 절 회사법 및 외자기업관련법의 조화문제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관련 법률간의 부조화 내지 충돌현상이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1994년 7월부터 8년 이상 시행되어온 회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이상3가지 법률은 이하 “外商投資3法”이라 한다)간에도 부조화현상이 존재한다. 회사법 제18조는 “外商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관련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471)</sup>

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外商이 투자한 유한책임회사에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외상투자3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외상투자3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회사법과 외상투자3법은 동일한 문제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다. 반면에 외상투자3법은 외상이 투자한 유한회사에는 주주총회와 감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이사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률의 부조화, 입법상의 雙軌制(2원화된 입법)는 中資유한회사와 外資유한회사에 대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고 중국의 회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중국의 회사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회사법의 개정은 먼저 중국자본회사와 외국자본회사 모두에 일률적으로 전부 적용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sup>472)</sup>

471) 1999년 9월 23일 공포되고 동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대외경제합작부 국가공상 행정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합병과분할에관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 제1조는 이 규정이 회사법(公司法) 및 외상투자기업의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은 회사법과 외상투자기업의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체계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472) 盧炯星, *op.cit.*, (*supra* note 190), p.17.

중국의 회사법은 회사의 조직과 행위를 규범화하고 회사, 주주 및 채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질서를 유지·보호하고 시정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대해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회사관련입법은 몇 가지 문제 특히 다음 3가지 점에서 아직 완비되지 못하였다. 첫째, 회사법과 관련 법률간의 부조화문제이다. 둘째 회사법 자체의 존재문제이다. 즉 회사법 자신의 존재문제라 함은 그 첫번째가 회사등록자본의 최저한도액과 주주출자납입규정과 같은 규정들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회사관리구조와 같은 적지 아니한 문제들의 규정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다.<sup>473)</sup>

한편, 회사법을 완비하기 위하여 1999년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第9屆 제13차 회의는 회사법개정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회사법이 실시된 이후, 동 법에 대한 첫 번째 개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현재의 중국이 개별적으로 급히 필요한 실제문제에 대해서만 회사법의 관련조문을 개정할 것일 뿐인 바, 다시 말해서 국유독점기업의 외부감사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첨단신기술주식회사가 공업산업권과 비특허기술을 출자액을 환산하여 점유할 수 있는 회사등록자본의 비율 그리고 신주발행과 주식상장신청에 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었다.

중국의 회사법의 개정은 중국의 실제와 부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외국의 회사입법의 경험을 과감하게 흡수·차용하여야 한다. 예컨대, 수권자본인수제도, 회사설립무효제도, 독립이사제도, 소액주주보호와 회사채권자보호제도 등등이다. 개정후의 중국의 회사법은 중국의 실제에 부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접목되는 현대화된 회사법이 되어야 한다.<sup>474)</sup>

한편, 대외무역경제협작부의 《關於外商投資股份有關問題的通知》(외국인

473) 회사법 이외에도 중국에서는 기업관련 법령등이 대단히 많이 있다. 따라서 제1차적으로는 회사법과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의 조화가 문제이지만, 다른 기업관련법령등과의 조화를 요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회사법과 관련하여서는 소수주주의 권익보호, 이사회제도, 감사제도, 채권자 보호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劉文華(主編), *op.cit.*, (*supra* note 111), pp.294-374 참조.

474) 徐崇利, “從中外合營企業到中外合資公司:內部組織機構體制多樣化“, *op.cit.*, (*supra* note 451), pp.135-136.

투자주식회사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가 《關於設立外商投資有限股份公司的若干問題的暫行規定》(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설립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잠정규정)에 근거하여 2001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통지에 의하여 외자계 기업은 법적으로 B주 시장뿐만 아니라 A주 시장 상장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 뒤 2001년 10월 8일 《상장회사의 외자투자와 관련된 문제에 관한 의견》이 공포되었으며 2002년 8월 19일에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외자투자주식회사 비 상장외자주식을 B주식시장에서 유통하는 문제에 관한 보충통지》를 공포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 투자가에 대한 주식 시장 개방도 추진할 방침이며, 당분간 현지법인에 한해 상장을 허용하되 장차 도쿄 주식 시장 외국부처럼 외국인 투자기업의 모기업의 상장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자 100% 출자 기업을 포함한 상장을 인정하되 외자기업의 출자비율을 상장후에도 25% 이상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일부 유력 기업은 이미 상장 준비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제 자본 시장에서도 그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sup>475)</sup>

더 나아가, 중국은 WTO의 자유무역규칙에 합치되면서도 중국국내상황에 적합한 건전하고 완비된 경제법률제도를 가급적 빨리 확립하여야 한다. 경제행정에 있어서도 중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안정적·통일적 법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지난 수년 동안의 중국시장경제입법은 국내법률중에 이미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공동규율을 반영한 법률개념, 법률원칙 및 법률제도에 대하여 각국의 성공한 입법경험과 판례, 학설을 모두 대담하게 흡수하고 차용하고 있다. 2000년에 공포된 신계약법에서 이 점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 있다.

21세기가 도래함에 따라 각국시장의 개발은 가속화되고 있고 정보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교역방식이 부단히 출현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것들이 전세계의 경제단일화 과정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장래 WTO에 가입하게 되면 중국의 시장경제는 급속하게 국제경제속으로 융화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475) 王先東·何紹軍, “入世在即,《公社法》修改不容緩,” 『中國律師,』 2001.3(第125期), pp.32-35.

중국의 시장경제입법도 필연적으로 국제적으로 접목되어야 하며 중국시장경제입법중의 많은 원칙, 제도 및 구체적 규범 등은 모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규칙, 관례의 내용과 상호 조화되거나 더 나아가 일치되어야 한다.

## 제5절 WTO 가입에 따른 입법제도 개혁논의

### 1. 현행 입법제도의 개선의 필요성

#### (1) 투명성 제고

중국내의 시장메커니즘 영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도 고정가격제, 외환 할당, 국영무역, 고관세, 행정규제 등 과거 계획경제체제의 잔재가 뿌리깊게 남아 있고 무역·투자 관련정책과 법규, 관행이 WTO수준과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WTO가입을 위한 쌍무적 협정에서도 중국은 향후 12-15년 동안 법규와 정책상의 투명성 결여,<sup>476)</sup> 불공정무역관행(unfair trade practices), 두터운 무역장벽(trade barriers), 차별적 행정규제, 시장접근의 폐쇄성 등에 있어 비시장경제국가로 분류되므로 일정한 조건하에서 시장경제권의 회원국은 중국에 대해 최혜국대우의 적용을 유보하거나 특별한 긴급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미국도 중국정부 정책 및 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법규의 공개성을

476)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는 GATT 제1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령을 통일적이고,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in a uniform, impartial and reasonable manner)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무역제조업의 핵심적인 가치중의 하나인 투명성요건이다. 그런데 중국의 사법부는 국가 또는 지방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다. 법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가 지방보호주의(local protectionism)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법관들의 법적 지식이 대단히 아직도 미흡하다. 행정과정도 자의적이고 불명료하였다. 중국이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정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입법을 가능한 한 빨리 제정하여야 하는데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 또한 무역관련 법률을 시행전에 공표하고는 있지만 그 제정전에 입법예고와 청문의 기회에 관한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중국이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GATT 제10조의 준수에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시행하는데는 대단히 취약한 상황이다. Stanley Lubman, "China's accession to the WTO: Unfinished business in Genev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legal/currentnews/secure/c00060...](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legal/currentnews/secure/c00060...)

높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이다. 예컨대, 중국정부는 1998년 8월 내부지침을 시달하여 중국내 모든 국내외 기업의 다단계 판매 행위를 금지시켰는데 이러한 내부지침은 공개되지 않아 Amway, Mary Kay 등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 영업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주룽지 총리는 WTO 가입전이라도 필요하다면 WTO 협정에 부합되도록 관련 법규와 절차를 개정하고 이를 공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sup>477)</sup> 지금까지 중국내 무역과 투자관련 정책이나 지침은 비공개 내부지침이나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어 외국인 무역기업이나 투자자들은 잘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의 법제실무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sup>478)</sup> WTO가입이후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정책을 WTO협정과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및 가입실무단 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특수한 경제구(경제특구, 연안개방도시, 경제기술개발구, 고도신기술산업개발구, 보세구 등을 포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공작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WTO규칙의 요구에 근거하여 중국은 WTO가입이후 상품무역, 및 무역과 관련된 지적재산권보호 및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정책 모두를 정부 간행물에 등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정책조치의 공포일과 시행일간에는 일반적으로 1개월 이상의 간격이 있다.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정책조치를 제정(수립) 또는 개정(수정)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와 그 적용대상자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충분히 구하여야 하며 만약 WTO 회원국들이 요구하면 그 문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중국이 WTO가입이후 중앙정부는 조회처(咨詢點)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국내외 기업을 위하여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WTO 회원국들에 제출하는 관련 질의문제에 대하여 권위 있는 답변을 제공하는 대외 창구가

477) Greg Mastel,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oving Forward Without Sliding Backward," the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Spring 2000,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ILJSring2000.htm>.

478) 楊景宇, "目前形勢與法制工作 - 加入世貿組織對法制工作帶來的影響," 『法學雜誌』, 2001年 1期(總 第99期), pp.3-7.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조희처는 권위있는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지 그러한 답변을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법률규정에 따르면 법률해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담당하고 행정법규 해석은 국무원이 담당하며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담당하고 부문 규장의 해석은 그 제정기관이 담당한다.

## (2) 통일적인 법집행

WTO규칙의 요구에 따라 정부기관은 통일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모든 관련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정책조치들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무원의 행정법규, 규장 및 기타 정책조치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원은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 및 국무원 부문 규장의 심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그러한 법규, 규장 등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한다.<sup>479)</sup>

대외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중앙정부이지만 그 구체적인 시행은 각 부서와 각급 지방정부에 달려있다.<sup>480)</sup> 그러나 중국의 지방정부는 WTO규범을 비롯한 국제조약과 협정의 준수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고 당해 지방의 경제성장, 고용, 외환수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각급 정부는 비관세장벽 완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국제규범이나 국내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묵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지방주의의 확산이외에도 중앙정부가 WTO 협정과 관련 국내법규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데는 행정단계별로 정보의 차단·왜곡 현상으로 한계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국의 중앙정부가 무역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WTO규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지방관리들에게 먹혀 들겠

479) 楊景宇, “加入世界貿易組織與我國的法制建設”, *op.cit.*, (*supra* note 26).

480)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법제정비는 단순히 중앙정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방정부는 자신의 지방법에 대해서 WTO 규범에 부합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상해시도 많은 지방 법규를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비하였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Shanghai to align local regulations with WTO rules”, <http://www.chian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0120701.asp>. 참조.

는가라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 중국의 WTO협정이행과 관련하여 가장 큰 도전은 아마도 중앙정부가 그 의지를 지방정부에 강제할 수 없는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모택동 시대에는 경제 전반에 대한 미시적 경영을 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당국에 권한의 상당부분을 이양하였으며 그 결과 이제 중국은 실제로는 단일시장이라기 보다는 각각 독자적인 무역·투자 장벽을 가진 시장들의 집합체(a collection of markets)일 뿐이다.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세계무역체제로의 편입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통제력 결여는 외국에 대해서는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검사와 판사는 자신의 지방에 있는 회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다.<sup>481)</sup>

### (3) 행정기관의 법집행 감독강화

행정기관의 위법한 또는 부당한 집행행위로 인하여 국제분쟁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법집행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WTO분쟁해결기구가 재결하는 것은 회원국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기타 정책조치와 WTO규칙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기는 하지만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법집행행위가 반복되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WTO 회원국들이 행정기관의 그러한 법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률, 법규, 규장 기타 정책조치에 대한 심사(review)를 요구함으로써 국제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sup>482)</sup> 그러므로 행정심판제도, 행정소송제도가 행정기관의 법집행

481) *Ibid.*; 카네기국제평화재단(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학자인 Pei Minxin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에서는 그 지방의 소송당사자는 법원에서 타 지방의 소송당사자에게 2:1로 유리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그 지방의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패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1999년 8월 공영인 신화사는 소송가액의 총액이 310억 달러에 해당하는 850,000건의 법원판결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로 지방의 판리들이 당해 지방의 기업에 불리한 법원 판결의 집행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의 WTO기준의 준수에 대한 기타 많은 장벽들 예컨대, 만연된 부패, 밀수, 부정입찰,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은 중앙정부의 권한 잠식 및 지방의 공산당 지도자들의 국가정책목표에 대한 현지 이익 우선적 입장 때문에 제거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82) 이에 대해서는 江必新, *op.cit.*, (*supra* note 75), pp.66-72.

행위에 대한 감독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강화되어야 하며<sup>483)</sup> 통일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sup>484)</sup>

#### (4) 다층차적 입법과 법률, 법규 및 규장간의 충돌 해소

WTO의 가입에 따라 중국은 통일적인 법제를 갖고 법률, 법규 및 규장간의 충돌의 해소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장간의 충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의 충돌은 상당히 심각하다.<sup>485)</sup> 이것은 일부 법규, 규장의 규정과 내용이 그 한계를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법규, 규장의 규정이 법률과 상충되거나 법규간, 규장간, 법규와 규장간에도 상호 모순·충돌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충돌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중 중국의 다층차적 입법체제와 미완비된 법규, 규장 등록제도는 충돌을 초래하는 제1차적인 원인의 하나이다.<sup>486)</sup>

2002년 7월 1일 발효되어 실시되고 있는 입법법은 중국 입법활동을 규율하는 중요한 기본법이다. 동시에 중국의 입법체제를 확립하는 것이기도 하다. 입법법의 확립된 입법체제를 보면, 중국입법체제는 10개 층차의 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국인민대표대의회의 입법이다. 둘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이다. 셋째는 국무원의 법규이다. 넷째는 지방 성급인민대표대의회의 입법이다. 다섯째는 지방 성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이다. 여섯째는 자치조례의 입법이다. 일곱째는 국무원 각부위의 부문 규장이다. 여덟째는 성급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규장이다. 아홉째는 전국인민대표대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제특구의 입법이다. 열째는 국무원이 승인한 비교적 큰 시의 입법이다.

이와 같이 층차가 많은 입법체제는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할뿐만 아니라 체제상의 폐단도 존재하게 한다. 이로 인하여 법률, 법규, 규장간의 충돌이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입법체제의 폐단은 주로 다음과 같다.<sup>487)</sup>

483) *Ibid.*, pp.73-82.

484) *Ibid.*

485) 林發新, “入世“與立法體制改革”, 『法制日報』, 2002年 2月 3日字.

486) *Ibid.*

487) *Ibid.*

첫째, 입법권한의 명확한 구분이 어렵다. 입법법 제8조는 국가입법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전속입법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전속입법권한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입법권한, 지방인민대표대회입법권을 구분하기 대단히 어렵다. 국무원이 제정하는 행정법규의 입법권한과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규장 입법권한도 구분하기 어렵다. 지방인민대표 및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권한과省政府가 규정제정 입법권 역시 입법법의 공백이다.

둘째, 중복입법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다층차적인 입법체제에는 중복입법현상을 심각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가 제정하는 법률성문건은 모두 300여건이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800여건이다.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는 지방성 법규는 거의 8000건에 달하며 부문 규장, 지방정부의 규장은 3000건을 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법규와 규장을 제정하는데는 대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제정된 법률, 행정법규가 유효하게 집행을 어렵게 하여 입법자원의 중복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충돌하는 국내법규범은 “입법 싸움(立法打架)”을 초래한다. 다층차적 입법체제와 불명확한 입법권한은 입법 싸움(立法打架)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기 마련이다. 주로 법률간, 법률과 행정법규간, 법률·행정법규와 지방성법규간, 지방성법규와 부문 규장·정부규장간의 충돌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488) 입법상 출현하는 법률충돌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래에는

---

488) 중국은 多級多層次의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종각양의 상이한 등급, 상이한 효력의 법률·법규문건은 상이한 입법주체들이 제정한 것이다. 중국 헌법 제5조가 “국가는 사회주의법제의 통일성과 엄격성을 유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입법기술이 낙후되어 있고 입법감독메커니즘이 취약하여 법률, 법규간의 모순은 피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예컨대, 1986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기업파산법(시행)> 제37조는 “파산재산은 우선적으로 파산비용에 지불된 후, 다음의 순서에 따라 청산된다. (1) 파산기업의 미지급 직공임금과 노동보험비용, (2) 파산기업의 미납조세, 3) 파산채권이다. 파산재산이 동일한 순서로 요구되는 사항을 청산하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12월 12일 국무원이 공포한 <關於在清理整頓公司中被撤并公司債權債務清理問題的通知> 제6조는 “해산되는 회사중의 자금이 채무를 변제하는데 부족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청산한다: (1) 합리적인 임금, 생활비, (2) 법에 따라 납부되어야 할 각종 조세, (3) 국가은행, 신용협작사와 기타 금융기구의 대부금, (4) 기타 채무이다. 회사의 재산이 동일한 순서

법률 적용에 영향을 미쳐 사법상의 혼란을 초래하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입법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엄격한 입법감독제도의 외에도 법률충돌시에 적용될 원칙과 법률충돌재결제도를 두고 있다.

넷째, 입법효력이 似而非이다. 입법법은 규장을 입법법의 조정범주에 포함시켰는 바 이것은 규장이 중국법의 연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법법은 지방성법규와 부문 규장간의 효력에 대해 어느 것이 더 상위에 있는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입법법 제80조, 제82조는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본급 및 하급 지방정부 규장보다 상위이다”, “부문 규장간, 부문 규장과 지방정부 규장간에는 동등한 효력을 가지면, 각자의 권한범위내에서 실시된다”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지방성법규의 효력이 지방정부 규장의 효력보다 상위에 있으며 부문 규장의 효력과 지방정부 규장의 효력이 동등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추리해보면 지방성 법규의 효력은 당연히 부문 규장보다 높다. 그러나 입법법 제90조는 “지방성법규와 부문 규장간에 어떠한 사항의 규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원이 의견을 하고, 국무원이 지방성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에서 지방성 법규를 적용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문 규장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입법법은 비교적 큰 시의 지방성 법규의 효력과 지방정부 규장의 효력의 상하위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 2. WTO 가입에 따른 입법체제에 대한 개혁 논의

이상과 같이 2000년 입법법의 제정과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의 입법체제에 대해서는 중국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사

---

에 있는 청구사항을 상환하는데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의 규정은 명백히 기업과산법(시행)의 규정과 상호모순된다. 심지어 동일한 입법기관이 제정한 제정시기가 다른 법률문건간에도 모순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劉和海·李玉福, *op.cit.*, (*supra* note 90), p.164.

람도 있다.<sup>489)</sup> 첫째, 입법 증차를 감소시켜야 한다. 비교적 큰 시의 입법권(비교적 큰 시의 정부의 규장 제정권 포함), 경제특구의 수권입법 등의 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입법에 대해서는 심사승인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가 제정하고자 하는 지방성법규항목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보고하여 법제공작의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닌 입법항목 또는 지방특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입법 항목에 대한 지방성 법규는 제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 규장의 항목은 먼저 국무원의 법제공작의 책임을 지는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그러한 항목에 관한 행정법규가 이미 제정되어 있거나 부문 규장이 불일치하는 규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셋째, 법연원의 효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입법법 제86조의 규정은 정확·유효·적시의 법 실시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넷째, 법규, 규장의 준비안에 대한 심사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기구와 국무원 법제공작기구는 지방성법규, 지방정부 규장 및 부문 규장의 준비안에 대한 심사 공작을 강화하여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 규장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하는 현상을 제거하여야 한다.

### 3. 중국의 국제법규칙의 유효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국내법제도

WTO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WTO가입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관련 법률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의 집행에 대하여 중국은 두 가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첫째는 평등주체간의 민상사 활동을 규율하는 私法性 조약에 대하여는 민법통칙에서 국제법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였다. 동 법 제142조 제2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조약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민사법률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489) 林發新, *op.cit.*, (*supra* note 485).

다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를 선언한 조항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정부행위를 규율하는 公法性 조약에 대하여는 중국은 국제관행에 근거하여 조약의 규정을 국내법으로 변형(transform)하여 집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약은 중국에서 직접 적용될 수 없다. WTO 협정은 정부행위를 규율하는 공법성 국제조약에 속하므로 중국은 국내법을 제정·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WTO 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을 이행하고 있다.<sup>490)</sup>

한편, 법안심사제도를 통하여 지방성 법규, 지방정부 규장 및 기타 정책조치가 WTO 규칙에 부합되도록 한다. 헌법과 입법법의 규정, 모든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자치조례·단행조례·규장은 헌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법률, 행정법규의 효력은 지방성 법규와 지방정부 규장보다 상위에 있으므로 지방성 법규와 지방정부 규장은 법률, 행정법규와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지방성 법규와 부문 규장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 불일치하여 지방성 법규를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부문 규장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지방정부 규장과 부문 규장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무원이 법에 의거하여 재결을 한다. 세수, 세관, 금융 및 대외무역의 기본제도를 포함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전속 입법권에 속하거나 기타 중앙입법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이 지방성 법규 또는 지방정부 규장을 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WTO 협정과 중국의 가입의정서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성법규·지방정부 규장의 안전심사공작을 더욱 강화하여 안전심사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법률·법규·규장 및 기타 정책조치는 WTO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국은 현재 관련 법률제도를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보증하는 申訴 기관·제도의 확립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제도를 통하여

490) 이에 대해서는 曹令良, “WTO協議在我國的適用及我國法制建設的革命”, 『中國法學』, 2000年 6期, pp.41-45.

모든 기업, 개인은 불통일적으로 실시되는 무역제도의 상황을 중앙정부로 하여금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중앙정부의 관련 기구는 그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주관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사실임이 증명된 후, 관련 주관기관은 지체없이 중국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이에 관한 어떠한 결정 및 채택된 조치도 서면으로 관련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申訴기관·제도는 중국의 모든 관련 기관 또는 지방 각급 정부와 그 관련 부문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포함하는 무역에 영향을 주는 법률, 법규, 규장 및 기타 정책조치로 하여금 사회 각 방면의 광범위한 감독을 받도록 하고 WTO협정과 불일치되는 규정이 지체없이 처리되도록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제도를 통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WTO 규범에 부합되어야 한다. 중국의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사법의 구제수단을 통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공작인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법률, 법규, 규장 또는 기타 정책조치를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하여 WTO규칙이 중국에서 유효하게 준수되도록 보증하게 된다.

## 제5장 결론

1. WTO 중국가입실무단은 가입조건 등을 담은 보고서와 가입 의정서를 제출하여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정기 각료회의에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중국은 동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서 무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시장개방과 수량제한 폐지·비관세장벽의 제거 및 투명성(transparency), 공정경쟁에 관한 WTO 규범상의 일반적인 의무 이행이외에 외국인투자 자유화에 대하여 보다 높은 요구를 하고 있는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협정과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등에 규정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의무도 이행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입의정서와 실무작업단 보고서에 나타난 대외적 수락내용도 이행할 의무를 진다.

먼저 중국은 WTO 규칙분야에서 많은 사항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수락하였다. 그 대부분은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법체계와 그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상황 등과 관련하여 중국이 부담하여야 할 특별한 의무와 관련된 것들이다. 여기에는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내국민대우와 관련된 제반 의무 및 무역제도의 통일적인 실시 법령의 투명성과 사법심사, 대외무역권 확대와 국영무역제도, 무역관련 투자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과도기적 심의메커니즘으로서, 중국 가입후 8년 동안, WTO의 관련 위원회로 하여금 WTO 의무 및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의 이해 상황에 대하여 매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중국은 WTO가입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제조업 이외에 그 동안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가해 왔던 금융·은행·증권업·정보통신·여행·의료·법률·회계 등을 포함하는 대부분의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그에 상응하여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각 부문과 업종별로 외국인 투자지분제한도 완화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방식도 기존의 중외합자경영기업·중외합작경영기업·외자기업 등 三資企業 이외의 BOT (Build-Operate-Transfer; 즉 건설-경영-양도)방식, 외자에 의한 합병인수(M&A), 프랜

차이즈, 주식투자 등 신규 투자방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WTO 가입으로 인한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새로운 제도의 창출을 위하여 또는 그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투자관련 법령의 정비를 당분간 계속하여 추진할 것이다.

한편,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의무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WTO 가입의정서에서는 협외경제무역의 법률, 법규 기타의 조치(이것은 대단히 넓은 개념이다)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공포하지 아니하고는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내부 문건 및 고위층에 의한 심사승인 관리에 의존하여 왔지만 투명성의 요구에 따라 그러한 관행을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입의정서는 공정한 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상소를 허용하고 사법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중국법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중국의 가입의정서상의 몇 가지 민감한 조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 추가된 무차별원칙이다. 중국의 가입의정서 제3조는 WTO 협정에 존재하지 아니한 일종의 새로운 수혜대상을 추가시키고 있다. 즉 “외국의 개인과 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이 그것들이다. 새로운 수혜범위는 상품생산·판매과정중의 필요한 원자재, 반제품, 서비스 및 운수, 기초통신, 에너지 분야 기타 생산요소 등의 제공·구매·가격에 대해서까지 미치고 있다.

둘째, 중국에 가장 유리한 조항은 국영무역(state trading) 관련 내용이다. 가입의정서 제6조는 중국에게 계속 허용되는 국가독점무역상품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부속문서 2A state trading 항에서의 수입상품에는 소맥, 옥수수, 보리, 豆油, 화학비료, 면화 등 84종 그리고 수출상품에는 차, 대두 등 88종이 열거되어 있다. 이러한 품목들이 국민생활에 대단히 큰 영향을 주는 것들임은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중국에 가장 불리한 조항은 과도기간동안 외국의 중국수출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이다.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제16조의 “과도기적인 특정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시장교란”이 발생한 경우 당해 국가는 (1)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상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 동종 업계에 “실질적인 손해”(material injury)를 조성하였음(원래의 “심각한 손해”(significant injury)보다는 한 단계 낮은 개념이다)을 입증하기만 하면 선택적으로 중국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2년 내지 3년 동안 중국이 보복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2. WTO가입에 따른 대외적 의무이행에 대비한 법제정비 현황을 보면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하다. 먼저 중앙의 법령 정비를 살펴보면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의 입법작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입법수량이 대규모라는 점이다. 공동심의를 통하여 법률안 16건, 법률해석 1건, 법률문제관련 결정 3건을 통과시켰다. 둘째, 통과된 법률과 법률문제관련 결정은 여러 분야에 걸쳐있다. 특히 중국법률규범이 WTO 규칙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2001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상표법,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셋째, 개정법률의 수량이 새로 제정하는 법률의 수량보다 많다. 16건의 법률안중 10건은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것이었다.

2001년 국무원이 공포하거나 승인한 행정법규 및 규범성 문건은 모두 104건이었다. 국무원은 이미 2000년말까지 756건의 행정법규에 대하여 분석을 하여 그 주요 내용이 새로운 법률이나 이미 개정된 법률 또는 당과 국가의 새로운 정책과 서로 모순되거나, 새로운 법률이나 행정법규로 대체된 경우 이를 폐지하였다. 현재 중앙의 법령정비작업은 기본적으로 완료되었으며 정비작업의 결과에 근거하여,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중국인민은행 등 유관 부문들도 무차별 및 투명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WTO 협정 및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법률, 행정법규, 규장 및 기타 조치에 대한 분석작업결과에 따라 부문 규장의 개정, 폐지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헌법과 법률 및 WTO 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부합되고 중국이 가입한 국제협정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수립이후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600건의 사법해석과 사법해석성 문건에 대해 전면적인 정비작업을 진행하였다. 최고인민검찰

원은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유관부문과 공동으로 제정·공표한 사법해석 및 규범성 문건 총 781건에 대하여 정비작업을 진행하여 그중 140건의 폐지를 선언하였다. 동시에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WTO가입이후 출현한 새로운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였다.

다음, 지방정부의 법령정비작업을 살펴보자. 중국공산당 중앙 辦公廳과 국무원 辦公廳은 2001년 9월 19일 《關於適應中國加入世貿組織進程, 清理地方性法規, 地方政府規章和其他政策措施的意見》(중국의 WTO가입 진전에 부응하여 지방성 법규·지방정부 규장 및 기타 정책조치를 정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공포하여 각급 지방정부의 지방성 법규 정비작업의 통일적 진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01년 8월 30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대외경제무역관련 행정법규 및 규장 정비공작좌담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11월 5일 지방 외경무주관부문에 대하여 《關於適應中國加入世貿組織進程, 清理地方性外經貿法規, 規章的通知》(중국의 WTO가입 진전에 부응하여 지방성 대외경제무역법규와 규장을 정리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여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에 대하여 법규와 규장 정비작업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지방 각급정부의 관련 정책조치가 중국이 대외적 수락내용에 부합되도록 보장하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되는 대외경제 무역 관련법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WTO 협정과 WTO 가입관련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한 분야별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외상품무역과 관련하여서는 2001년 12월 31일 국무원은 《貨物進出口管理條例》(상품수출입관리조례)를 제정하였고, 《技術進出口管理條例》(기술수출입관리조례)를 제정하여 《技術引進合同管理條例》(기술도입계약관리조례)와 그 《實施細則》을 대체하였다. 또한, 《貨物進出口管理條例》와 《技術進出口管理條例》의 실시를 위하여 2001년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14건의 部門 規章을 제정하였다.

그 일례로 대외경제무역부는 《貨物進出口管理條例》의 시행을 위한 《紡織品被動配額管理辦法》을 공포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서비스무역분야, 특히 금융·보험·법률서비스·증권·여행·전기통신·상업소매·항공 등에 관한 입법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으며 불합리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고 법령간의 충돌도 극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WTO가입을 위하여 대외적으로 통신, 해운, 민항, 은행, 보험 등 36개 분야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향후, 이와 같이 새롭게 개방을 약속한 서비스 분야에 대한 관련 입법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개방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여야 한다. 금융업법률분야에서는 국무원이 《外資金融機關管理條例》(외자금융기관관리조례)를 개정하고 《外商投資保險公司管理條例》(외국인투자보험회사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기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2001년 12월 5일 국무원이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외국인투자전기통신기업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信息産業部도 《電信網間互聯管理暫行規定》(전신망상호연결잠정조례), 《設置衛星網絡空間電臺管理規定》, 《衛星電信廣播地面接收設備定點生產管理辦法》 등 부문 규장을 제정하였다.

섭외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2001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中華人民共和國律師法》(변호사법)을 개정하였으며 2001년 12월 국무원도 《外國律師事務所所在華代表機構管理條例》(외국변호사사무소의 중국내 대표기구관리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청각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무원은 《音像製品管理條例》(Audio-Video 제품관리조례)와 《電影管理條例》(영화관리조례)를 개정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대외무역경제합작부·문화부는 《外商投資電影院暫行規定》(외국인투자영화관잠정조례)를 제정하여 200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문화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中外合作音像制品分銷企業管理辦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위생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中外合資, 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辦法》(중외합자·합작의료기구관리잠정판법)을 제정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행사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2001년 국무원은 《旅行社管理條例》를 개정, “外商투자여행사 특별규정”이라는 새로운 장을 추가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0년 8월에는 《專利法》(특허법), 2001년 10월에는 《版權法》(저작권법)과 《商標法》을 개정하였으며 2001년 국무원은 《計算機軟件保護條例》(컴퓨터

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 《專利法實施稅則》(특허법 시행세칙) 등 지적재산법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법규들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보호법률제도가 TRIPs 협정의 요구에 부합되도록 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법규로는 《植物新品種保護條例》(식물신품종보호조례), 《集成電路布圖設計保護條例》(집적회로배치설계보호조례) 등이 있다. 이러한 법규들을 통하여 중국은 식물신품종과 IC회로배치설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기타 법령의 정비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外匯管理條例》(외환관리조례)가 1997년 1월 14일 전문 개정되어 경상항목의 외환자유태환을 실현하였으나, 중국의 WTO가입과 더불어 향후 《外匯管理條例》의 핵심이 되는 외환관리제도 역시 단계적인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입상품검사와 관련하여서는 WTO 가입이후 대외상품무역을 확대, 국가의 수출입상품 검사를 통한 수출입상품의 품질관리, 수출상품의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국가의 대외신인도 제고, 열등상품의 수입방지 등을 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2002년 4월 28일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를 전면개정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운과 관련하여서는 WTO가입의 필요에 따라 2000년 7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中華人民共和國海運法》을 대폭적으로 개정한 바 있으며,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정확히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海關總署는 《中華人民共和國海關審定進出口貨物完稅價格辦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 12월 31일 國務院 關稅稅則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2002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WTO 가입 관련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2002년 관세양허 의무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3. 향후 정비가 요구되는 기본적인 법률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일부 내용이 계획경제체제의 잔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기업관련법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에서는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라

는 두 가지 입법형식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계획경제체제하의 소유제 형식에 의거한 입법, 예컨대 《中華人民共和國全人民所有制工業企業法》, 《中華人民共和國城鎮集體企業法》 및 《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이 있는가 하면, 시장경제체제하의 기업조직 형식을 갖고 있는 입법, 예컨대 《會社法》, 《合資企業法》, 《獨資企業法》 등이 혼재된 중국의 입법상황은 기업의 법률적용분야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앞서 WTO의 협정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의 이행에도 결정적인 장애가 될 것이다.

다음은 독점금지법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진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발표된 결과를 보면 WTO의 기본원칙상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법령과 조치의 투명성과 전국에서의 통일적 실시 등이 반영될 것이며. 중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독점조장행위와 지방의 지방보호주의적 지역봉쇄, 역외적용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물권법과 채권법을 포함하는 민법전을 통하여 민사관계의 계통화·체계화·완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공민과 법인의 민사권리를 법제화·명확화를 도모할 수 있고 각종 행정규장의 제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依法行政을 보장하고 공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대외무역관리와 관련하여서도 1994년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으나, WTO 가입 이후 중국 국내시장과 국제시장간의 융합이 보다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외무역대리체제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보다 많은 국내 기업들이 대외무역대리기업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외무역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정부도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도가 높은 법령을 통하여 대외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입허가증 등 수입제한조치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함으로써 WTO의 규범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4. 중국이 현재까지 제정한 외국인투자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이미 200건을 넘어섰으며 각 지방도 외상투자과 관련된 대규모의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였는바, 이들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성 법규의 규정들을 WTO 규범에의

부합성을 조건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통일시킬 것인가가 중국의 당면과제이다. 중국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및 《외자기업법》 및 이들 법률의 시행령 등 “外商投資3法”중의 超내국민대우와 非내국민대우 등에 대한 해결이외에도 환경·노동·상품품질 등의 외상투자의 관리분야의 법령을 신속히 완비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예컨대, 환경법중에서도 오염지수표준을 정하고 일부 특수한 업종에 대해서는 外資進入을 제한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0년과 2001년에 걸쳐 외상투자3법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의 확립과 WTO 가입을 위한 목적으로 WTO 협정 특히 TRIMs협정 및 중국의 가입의정서 등에서 나타난 대외적 수락내용과 불일치하는 규정들을 대상으로 많은 조항을 개정으로 하였으나,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 있거나 WTO 규범과의 부합성이 문제시되고 있는 내용들이 상당부분 존재하므로 향후에도 그에 관한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정된 내용을 보면 외환수지균형 요구·국내물자우선구입 요구·수출 요구 등 전형적인 무역관련 투자조치(TRIMS)에 해당하는 규정, 생산경영계획의 제출의무·등록자본의 감소불허·기타 외국인투자자의 권리 제약 등 계획경제체제의 잔재로 남아 있는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정 등이며, 설립업종 금지 또는 제한을 완화하고 현행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관련 규정과 명확히 불일치하는 기타 규정의 개정과 공상등기·토지사용권취득과 양도·관세와 공상통일세의 감면·중외합자경영기업노동관리·합영기한·중외합자경영기업청산 등 현행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관련 규정간의 명확히 불일치하는 조건에 대하여 개정을 하였다.

한편, WTO규범에 비추어 보아,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일부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이 수출보조금, 수입제한, 非내국민대우 등과 마찬가지로 공정경쟁과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되어 1997년의 《외상투자방향지도잠행규정》,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여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외상투자기업의 국내재투자와 관련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2000년 7월 25일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관한 잠행규정》을 제정하여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를 규율할 목적으로 외상투자기업이 중국에 투자하여

또 다른 기업을 설립하는 행위 그리고 피투자기업 지분권을 투자자로부터 매입하는 것에 관한 요건·절차등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중국의 IT 분야에 관한 투자관련 법령도 중국의 전기통신분야 등에서의 시장개방을 약속한 WTO 가입의정서와 실무단보고서상의 대외적 수락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근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다. 2000년 9월 25일의 《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 제2조의 외상투자전기통신과 관련된 내용은 중국이 WTO가입을 위한 국제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제정되어 외상투자비율, 개방 일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규정할 수 없었다.

그후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중국정부는 WTO가입 수락내용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기통신업무시장을 개방하여 외상투자기업의 전기통신업무 경영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관법),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을 제정하였으며 信息產業部는 《電信網間互聯管理暫行規定》, 《設置衛星網絡空間電臺管理規定》, 《衛星電視廣播地面接收設備定點生產管理辦法》등 부문 규장을 제정하였다. 특히 2001년 12월 11일 《外商投資電信企業管理規定》(국무원령 제333호) 제정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와 중국이 WTO가입을 위하여 통신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수락한 내용에 근거하여 주로 외상투자통신사업기업의 경영범위, 설립조건, 심사승인절차 및 합자통신기업의 관리와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1999년 9월 23일 제정·공포된 《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외국인투자기업합병과 분리에 관한 규정)은 외상투자기업의 합병과 분할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고자 하였던 것이었지만, 그 내용으로는 WTO 규칙 및 중국정부가 WTO가입을 위한 대외적으로 수락을 이행하는데 미흡하였기 때문에 2001년 11월 22일 다시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외상투자기업 합병분할의 內包, 합병분할의 주체, 합병분할의 절차, 합병분할의 합의, 합병분할후의 채권·채무 처리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하게 되었으며, WTO 가입과 관련된 주요한 조항에 대해서도 개정되었다.

한편, 중국 WTO가입이후 국제적인 합병인수도 크게 늘어날 것이며 현재 외국인 직접투자의 주요방식이 되고 있는 바, 아직도 국제적 합병인수가 중

국에서 이루어지기에는 해결하여야 할 법적 문제점들이 많은 바, 공평하고 합리적인 법률환경이 결핍되어 있을 뿐 만 아니라 시장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현재 중국의 적지 않은 현행법령들이 계획경제하에서 제정된 것이며 이것들은 국외의 법률들과 충돌할 뿐 만 아니라 이들 법령 상호간에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WTO가입에 따라 대외경제무역부는 1600여조항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나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중국에서도 이에 관한 법령정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금융관련 외국인투자법령의 정비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외국인투자로 설립된 투자성회사에 관한 잠정규정)은 1995년 4월 4일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촉진하고, 외국의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고 투자성 회사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제정한 것이었으나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며 2001년 5월 31일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WTO 규칙과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근거하여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暫行規定的補充規定》(외국인투자의 투자성회사의 잠정규정에 관한 보충규정)을 공포하였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과학기술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01년 9월 1일부터 《關於設立外商投資創業投資企業的暫行規定》(외국인투자벤처캐피탈기업잠정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개혁개방이후 외국인투자가 각종 형태와 방식으로 행하여져 왔는 바, 그중 전문적으로 주식투자에 종사하는 기업도 대단히 많고 현재 벤처캐피탈사업이 발전하고 있는 과정중에 있으나 몇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또한, WTO 협정 및 중국의 대외적 수락내용에 따라 금융시장의 개방내용을 반영하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국제감독기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은 2001년 12월 외자금융기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및 외자보험회사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資保險公司管理條例)을 공포하여,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외자계 보험회사는 중외합자, 독자 및 지사 형태의 보험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행은 2000년 6월 30일 《金融租賃公司管理辦

法》(금융리스회사관리판법)을 공포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외국인투자리스업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여 대외경제부역부는 2001년 8월 《外商投資租賃公司審批管理暫行辦法》(외국인투자리스회사심사승인관리잠행판법)을 제정하여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석유자원개발채굴분야에서는 2001년 9월 23일 국무원은 《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采海洋石油資源條例》(대외합작해양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와 《中華人民共和國對外合作開采陸上石油資源條例》(대외합작육상석유자원개발채굴조례)를 개정하였는바, WTO의 관련 규칙 및 중국의 가입의정서와 가입실무단 보고서의 내용을 일치시켜 회원국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었으며 중국의 행정기구개혁후의 새로운 특징을 반영하여 收用원칙, 관리기관, 기술양허와 노동자 고용제도 및 외환관리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였다. 특히 종전의 기술양허, 상품판매, 원자재 구매 및 노동분야의 일부 규정이 WTO 관련 규칙과 중국의 WTO가입의정서의 관련 내용간의 차이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운송관련 분야에서는 2001년 11월 20일 교통부·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外商投資道路運輸業管理規定》을,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外商投資國際貨物運輸代理企業管理規定》(외상투자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합자, 합작 및 독자투자의 국제화물운수대리기업의 설립요건과 관련 업종 등을 명시하고 있다. 2002년 8월 1일부터 민항총국, 대외경제무역부와 국가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외상투자중국민용항공업에 관한 새로운 규정인 《外商投資民用航空業規定》이 시행되고 있는 바. 여기에서는 투자범위·방식·비율·관리권 등을 확대하고 있다.

6. 외국인투자관련법의 정비와 입법체계의 개선에 관한 전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외자관련법은 2000년과 2001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 협정이 요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 외상투자기업의 승인문제, 외국인 투자와 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문제, 수량제한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국의 WTO 가입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종전의 그 어느 때보다 중국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외

상투자기업관련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중국내자기업보다 우대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 참입규제 기타 관계에서 내자기업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하거나 내수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병행하여왔다. 그러나 앞으로 아직까지 외국인투자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제조업 분야중 상당부분이 단계적으로 외국인 투자허용분야로 편입될 것이며 특히 WTO 가입시 대외적으로 수락한 시장개방 스케줄에 따라 서비스 시장분야의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그러한 시장개방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외상투자3법에 대한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외상투자비율의 최저한규제, 합자경영기업 출자자의 채무부담과 리스크 배분, 이사회 기능,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제(준칙주의)의 점진적인 실시가 문제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WTO가입이후 외자기업의 내국민대우, 특히 内外資 기업의 세계 일원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1994년 7월부터 5년 이상 시행되어온 회사법》과 외상투자3법간에 부조화현상이 존재한다. 예컨대, 회사법은 유한회사의 주주총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며,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며 감사회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다.

반면에 외상투자3법에서는 외상이 투자한 유한회사에는 주주총회와 감사회를 두지 아니하며 이사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법률의 부조화, 입법상의 雙軌制(二元화된 입법)는 中資유한회사와 外資유한회사에 대한 법률규범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응하고 중국의 회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중국의 회사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회사법의 개정은 먼저 중국자본회사와 외국자본회사 모두에 일률적으로 전부 적용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의 가입에 따라 중국은 통일적인 법제를 갖고 법률, 법규 및 규장간의 충돌을 해소시켜야 한다. 현재, 중국의 법률, 법규 및 규장간의 충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의 충돌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즉 어떠한 법규, 규장의 규정이 법률과 상충되거나 법규간, 규장간, 법규와

규장간에도 상호 모순·충돌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충돌을 초래하는 원인은 여러 방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중 중국의 다층차적 입법체제와 미완비된 법규·규장 등록제도는 충돌을 초래하는 제1차적인 원인의 하나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2000년 입법법의 제정과 시행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의 입법체제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첫째, 입법충차를 감소시켜야 하며 비교적 큰 시의 입법권(비교적 큰 시의 정부 규장 제정권 포함), 경제특구의 수권입법 등의 제도를 폐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기구와 국무원 법제공작기구는 지방성법규, 지방정부 규장 및 부문 규장의 준비안에 대한 심사 공작을 강화하여 지방성법규와 지방정부 규장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하는 현상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參考文獻

### 《單行本》

- 江必新, 『WTO與行政法治』, (北京;中國人民公安大學出版社, 2001).
- 孔祥俊, 『WTO知識產權協定及其國內適用』, (北京: 法律出版社, 2001).
- 管仁林(主編), 『中國入世承諾: 法律文本解釋』, (北京: 中國民主法制出版社, 2002).
- 繆劍文·羅培新, 『WTO與國際金融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 聲炯星, 『中外外商投資法問題研究』, (北京: 法律出版社, 2001).
- 楊國華, 『中國加入WTO法律問題專論』, (北京:法律出版社, 2002).
- 梁慧星(主編), 『迎接WTO- 梁慧星先生主編之域外法律制度研究集』, 第2輯, 第3輯, (北京: 國家行政學院出版社, 2000).
- 『外商投資企業法律手冊』, (北京: 法律出版社, 2002).
- 劉德標(主編), 『加入WTO後中國涉外經濟立法法律實施體系與規則』, (北京: 中國方正出版社, 2001).
- 劉文華(主編), 『WTO與中國企業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2001).
- , 『WTO與中國金融法律制度的衝突與規避』, (北京: 中國城市出版社, 2001).
- 劉筍, 『國際投資保護的國際法制: 若干重要法律問題研究』, (北京:法律出版社, 2001).
- 劉和海·李玉福, 『立法學』, (北京: 中國檢察出版社, 2001).
- 李徑敬·朱嘉寧, 『WTO與爭端解決機制和反不公平貿易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參考文獻

李徑敬·蔡偉文·朱建農·楊琴, 『WTO與國際貨物貿易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李本森, 『WTO與國際服務貿易法法律實務』,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1).

李雙元·蔣新苗, 『世界組織(WTO)的法律制度 - 兼論中國“入世”後的應對措施』, (北京:中國方正出版社, 2001).

張軍旗, 『WTO監督機構的法律與實踐』, (北京; 人民法院出版社, 2001).

張德霖 (主編), 『中國加入WTO經濟法律調整概覽』, (北京: 法律出版社, 2002).

張曉東, 『中國反傾銷立法比較研究』, (北京:法律出版社, 2000).

曹建明(主編), 『WTO與中國的司法審判』, (北京: 法律出版社, 2001).

鐘立國, 『中國:WTO法律制度的適用』, (長春; 吉林出版社, 2002).

陳洁, 趙倩, 『WTO與知識產權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黃輝, 『WTO與國際投資 法律實務』, (長春: 吉林出版社, 2001).

『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中西部地區外商投資優勢產業目錄』, (北京:法律出版社, 2002).

Will Martin & Christian Bach, “The Importation of State Trading in China’s Trade Regime”, in F. M. Abbot (ed.), *China in the World Trading System: Defining The Principles of Engagement* (Kluwer, Cambridge, 1998).

Protocol on the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CHN/49/October 2001).

《論 文》

郭立剛, “TRIMs協定與我國對外資的待遇標準”, 『法商研究』, 1999年 第1期.

甘文, “WTO與司法審查,” 『中國研究』, 2001年 7期(總 135期).

江姍, “中國獨占禁止法要綱案”, 『國際商事法務』, Vol.30, No.1(2002).

江偉·王景琦, “WTO協議與中國民事司法制度的完善”, 『中國法學』, 2001年 1期(總 第99期).

姜一春, “中國のWTOに加盟に向けての實際と法制度改革の現状課題”, 『國際商事法務』, Vol.29, No8(2001).

系賀了·森川伸吾·大西宏子, “中國外商投資企業法の改正”, 『國際商事法務』, Vol.29, No.1(2001).

劉弓強, “WTO協定及其法律影響”, 『法制日報』, 2001年 11月 14日字.

紀文華, “律師參與WTO爭端解決進程問題研究”, 『法學雜誌』, 2000年 4期(總 121期).

羅勝福, “中國開放法律服務市場之我見“, 『中國律師』, 2001年 1期(總 第123期).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 2000年 4期 (總 第96期),

馬宇, “關於中國的外資導入促進政策的調整,” 『外貿調研』, 1998年 第13期.

方洁·楊國華, “WTO對成員貿易法制度的透明度要求”, 『法學雜誌』, 2001年 2期(總 125期).

潘惜唇. “論GATT環保例外條款的適用條件和發展趨勢”, 『中國法學』, 2001年 5期.

史樹林, “入世“影響我國外貿制度的幾個問題,” 『法學雜誌』, 2001年 21期(總 第125期),

參考文獻

- 沙銀華, “中國WTOの加盟後外資保險公司に對する新しい法規則- 「外資保險會社の管理條例」の構造解明問題點(上)”, 『國際商事法務』, Vol.30, No.2(2002).
- , “中國WTOの加盟後外資保險公司に對する新しい法規則- 「外資保險會社の管理條例」の構造解明問題點(下)”, 『國際商事法務』, Vol.30, No.3(2002).
- 徐箒, “加入WTO與我國外資法的完善”, 『法學』, 2001年 第1期.
- 徐崇利, “從中外合營企業到中外合資公司:內部組織機構體制多樣化”, 『政法論壇』, 2000年 5期(總 第95期).
- “外資准入的晚近發展趨勢與我國的實踐”, 『法學研究』, 1996年 第5期.
- 徐勁松, “論‘與投資有關的貿易措施’”, 『中國法學』 2001年 1期.
- 石佑啓, “WTO與中國行政法治建設的影響”, 『中國法律』2001年 1期(總 第99期),
- 沈敏榮, “WTO與國民待遇”, 『法學雜誌』, 2001年 3期(總 第126期)
- 安心, “WTO《政府採購協定》的幾個問題”, 『中國法律』, 2001年 2期(總 第100期).
- 楊景宇, “加入世界貿易組織與我國的法制建設”, 『法制日報』, 2002年 1月31日字.
- , “目前形勢與法制工作 - 加入世貿組織對法制工作帶來的影響”, 『法學雜誌』, 2001年 1期(總 第99期).
- 楊國華, “世界組織對成員法律制度的影響-知識產權協議規定的義務”, 『法學雜誌』, 2000年 4期(總 121期).
- 楊振山, “社會主義市場經濟與中國物權法制度”, 『法學雜誌』, 2001年 2期(總 第125期).
- 楊海坤, “加入WTO對中國政府的巨大積極影響”, 『法學雜誌』, 2002年 3

- 期(總 132期).
- 揚解君, “WTO加盟餘中國行政法的任務,” 『中國法學』, 2000年 6期(總 第98期).
- 王家福, “WTO與中國社會主義市場法律制度建設問題,” 『中國法律』, 2001年 1期(第99期).
- 王廣耀, “論我國憲法結構的完善”, 『法商研究』, 2000年 第5期.
- 王矯萱, “非歧視原則與中國實踐的協調,” 『中國律師』 2000年 7期(總 第129期).
- 王利明, “建立合作與競爭的規則”, 『法制日報』, 2002年 5月 16日字.
- 王先東, 何紹軍, “入世在即,《公社法》修改不容緩,” 『中國律師』, 2001年 3期(總 第125期),
- 王先林, “反壟斷法的基本性質和特徵”, 『法學雜誌』, 2002年 1期(總 130期).
- 王維澄, “第9屆全國人民代表大會法律委員會關於《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修正案(草案)》審議缺課的報告”, 『法制日報』, 2001年 3月 15日字.
- 楊振山, “社會主義市場經濟與中國物權法制度”, 『法學雜誌』, 2001年 第2期(總 第125期),
- 王會偉, “失業保障:應對WTO挑戰的必要措施”, 『法制日報』, 2002年 7月 7日字.
- 王曉曄, “反壟斷立法不能再拖”, 『法制日報』, 2002年 3月 6日字.
- 于安, “WTO協定的國內實施問題,” 『中國法學』, 2000年 3期(總 第95期).
- 劉筍, “跨國投資國際法制的晚近發展”, 『法學研究』, 第23卷 第5期(總 136期) 2001年 9月.
- , “知識產權保護立法的不足及TRIPs協議國際投資法的關係”, 『政法論壇』, 2001年 2期(總 第98期).

參考文獻

- 劉新宇,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上)”, 『國際商事法務』, Vol.29, No.5(2001).
-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下)”, 『國際商事法務』, Vol.29, No. 6(2001).
- 李曙光·肖建華, “中國市場經濟法律:發展與評價”, 『政法論壇』, 2000年 5期(總 第95期).
- 李戩, “我國《對外貿易法》與WTO規則”, 『法學雜誌』, 2000年 6期(總 第123期).
- 林發新, “入世“與立法體制改革”, 『法制日報』, 2002年 2월 3日字.
- 張宏, “跨國并購和我國利用外國直接投資”, 『山東財政學院報』, 2001年 第5期.
- 張桂紅, “WTO對中國法律的影響”, 『中國法學』, 2001年 4期(總 第102期).
- 張乃根, “論WTO與我國的法律保障機制”, 『復旦學報』. 1999年 第5期.
- 張德修, “WTO的基本原則與幾種例外規定”, 『法學雜誌』, 2002年 1期(總 130期).
- 張若思, “WTO金融服務貿易法類制度”, 『法學研究』, 第22卷 제6期(總131期)(2000.11).
- 張智勇·王慧, “《與貿易有關的投資措施協議》與中國外資法”, 『法學雜誌』. 2001年 1期(總 第118期).
- 張忠軍, “WTO與中國金融法制的完善”, 『中國法學』, 2000年 3期(總 第95期).
- 鄭成思. “WTO與知識財產權研究”, 『中國法學』, 2000年 3期(總 第95期).
- 曹建明·賀小龍, “加入WTO與我國對外經貿立法”, 『中國法學』, 2000年 1期(總 第93期).
- 曹建民, “WTO法律體制餘中國相關法律,法規和定策措施比較”, 『中國工商管理研究』, 2000年 第9期,

- 曹令良, “WTO協議在我國的適用及我國法制建設的革命”, 『中國法學』, 2000年 6期.
- “從法律商制度上迎接入世”, 『法制日報』, 2001年 12月 11日字.
- 周忠海, “對中國”入世”的法律思考”, 『政法論壇』, 2000年 2期(總 第92期).
- 曾我貴志・栗津卓郎, “中國における「外商投資企業の國內投資に関する暫行規定の制定」”, 『國際商事法務』, Vol.28, No.10(2000).
- 陳俊, “WTO與中國經濟特區立法創新研究”, 『法學研究』, 第23權 第3期(總 134期) 2001年 6月.
- , “WTO所要的我國金融立法創新”, 『法學雜誌』, 2001年 4期(總 127期).
- ,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法制日報』, 2001年 9月 2日字.
- 肖永平, 胡英慶, “加入WTO與我國仲裁法律制度改革”, 『中國法律』, 2001年 2期(總 第100期).
- 超維田, “解讀入世後的法律問題”, 『法制日報』, 2002年 5月 16日字.
- “就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修改政況:國務院法制辦外經貿部負責人答記者問”, 『法制日報』, 2001年 8月 3日字.
- 何敏・王娟, “”入世“與我國仲裁制度創新”, 『法學雜誌』, 2000年 4期(總 第121期).
- 胡建芳, “中國WTO加盟後の外資金融機構に對する法規制の動向-「中華人民共和國外資金融機構管理條例」の改正について- 『國際商事法務』, Vol.30, No.6(2002).
- 胡振杰, “加入WTO對我國知識產權法律制度的影響”, 『法學雜誌』, 2002年 2期(總 131期).
- , “入世對外商投資法律制度的影響”, 『法制日報』, 2001年 11月21日字.
- , “入世對地方法制建設的影響”, 『法制日報』, 2001年 11月7日字.

參考文獻

黃欣, “WTO, 經濟全球化, 知識經濟與我國反壟斷立法關係研究”, 『政法論壇』, 2000年 5期(總101期).

----, “反壟斷法應當具有的先進性”, 『法制日報』, 2001年 9月 15日.

----, “中國反傾銷和反補貼條例實施後境內第一起反傾銷案”,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3/landmark\\_chi.htm](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3/landmark_chi.htm).

王勝明, “合同法的立法背景, 指導思想及適用範圍”,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2/newlaw\\_chi.htm](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2/newlaw_chi.htm).

龍翼飛,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保障法律制度”,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1/expert1\\_chi.htm](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1/expert1_chi.htm).

蔣志培, “中國知識產權的司法保護與展望”,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3/obser1\\_chi.htm](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3/obser1_chi.htm).

趙成峰, “WTO與我國西部的涉外稅收優惠制度之調整”,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374](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374).

曾濤, “加入WTO後我國外資銀行准入法律的完善-- 以《巴塞爾核心原則為視覺》”,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310](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310).

梁咏·草海彤, “外國直接投資中國市場准入問題研究”, [http://www.law-lib.com/lw/lw\\_view.asp](http://www.law-lib.com/lw/lw_view.asp).

劉洋海, “入世對中國金融業的影響及其法律對策”,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0](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0).

----“淺談中國現代的民法和民法的現代化”,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6](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06).

蔡受惠, “從WTO規則看中國轉基因條例的實施”,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

20426.

郭彥,“WTO法的法理學分析”,[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63](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63).

趙成峰,“WTO與我國西部的涉外稅收優惠制度之調整”,[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374](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374)

楊國華,“WTO與保障措施基本法律問題研究”,[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514](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514).

朱作鑫,“論我國立法對外外商獨資企業的監督”,[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92](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492).

宋波,“中國電信業應對”入世“衝擊的法律思考”,[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708](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708).

屈廣清,“中國入世後的西部大開發及其法制環境研究”,[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621](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621).

趙雄田,“對補貼要履行的三項義務--《中國入世加入議定書》 諸10條解讀”,  
[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90](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90).

陳嘉珉,“論入世後政府行爲的價值取向”,[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28](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28).

----“論西部大開發的投資需求與法治對策”,[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29](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429).

許增裕,“中國民法典的立法條件是否成熟”,[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168](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168).

參考文獻

陳延忠,“電子商務環境下常設機構原則問題探析”,[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029](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029).

石業西,“入世之後的BOT戰略--兼論國有企業能否作為BOT項目公司”,[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961](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0961).

宋波,“中國電信服務業政府管制的法律思考”,[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709](http://article.chinalawinfo.com/article/user/article_display.asp?ArticleID=21709).

程法光, “中國涉外稅收政策和稅制發展趨勢”, [http://www.newchina.com/chi\\_law/1999/3/obser\\_chi.htm](http://www.newchina.com/chi_law/1999/3/obser_chi.htm).

“MOFTEC official promises transparent legal system after WTO entry,”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0121901.asp>.

Mark Williams and Zianhua Zhong, “The Capacity of Chinese Enterprises to Engage in Foreign Trade: Does Restriction Help or Hinder China’s Trade Relations”, *J. Transnational L. & P.* Vol.8(1999).

Thomas L. Brewe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The Evolving Regime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Law and Policy of International Business*, Vol.26, 1995, pp.658-662.

David Blumenthal. “‘Reform’ or ‘Opening’? Reform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WTO Access- The Dilemma of Applying GATT to Marketing Economies”, *UCLA Pac. Basin L.J.* Vol.16(1998).

Huang Yiping & Ron. Duncan, “How Successful were China’s State Sector Reforms?” *Journal of Compara-*

*tive Economies*, Vol. 24(1997).

- Benjamin Hammer,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http://www.american.edu/projects/mandala/TED/smith/hammer.htm>.
- Greg Mastel, "China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oving Forward Without Sliding Backward," *the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Spring 2000,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ILJSring 2000.htm>.
- Greg May, "Reality Check: Local Protectionism May Hamper China's WTO Compliance", [http://www.ixoncenter.org/publications/reality01%20check/11\\_18\\_99](http://www.ixoncenter.org/publications/reality01%20check/11_18_99) ChinaWTO.htm.
- John Schauble, "China needs more reforms, report finds," <http://www.theage.com.au/bus/20001020/A61462-2000Oct19.html>.
- Li Zhongzhou,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the Impacts on its External Trade Law: Presentation at the German-Chinese Colloquy. Hamburg, 11-12 June, 1998", <http://www3.itu.int/missions/china/lionwto.htm>.
- John Eichelberger and Annabel Allen, "A Legal Perspective: The Impact of WTO on Foreign Investment in China's Internet/E-commerce Sector," <http://www.erinscoie.com/resource/intldocs/wtoimpact.htm>.
- William J. McMahon, "Cina-U.S. Reach WTO Deal", [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NewArchive/secure/1999/november](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NewArchive/secure/1999/november).

參考文獻

- Bruce Stokes, "The China WTO Dilema," <http://socrates.berkeley.edu/~!briewww/forum/berkeley2/strokes.html>.
- Lester Gesteland, "China's Ban on Internet Foreign Investment: A WTO Negotiating Ploy",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1999/September>.
- Xing Fan, "China's WTO Accession and Telecom Liberalization",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ocom/currentnews/secure/c0003](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ocom/currentnews/secure/c0003).
- Brett Williams, "China and the WTO Working Papers 200/1: China's Accession to GATT and the Control of Imports of Goods by State Trading Enterprises in China", <http://law.and.edu.au/china-wto/seminars/seminar1/C&WTOno.1.htm>.
- The United States-China Business Council(1988), "China and the WTO: Critical Issues and Objectives", June 1988 "Market Access and Protocol Commitments", <http://www.uschina.org/public/wto/html>. August 1999; USTR (199a), "U.S. China Sign Historic Trade Agreement", Dec.14, 1999, pp.1-3, <http://www/ustr.gov/releases/1999/11/9-95html>.
- Stanley Lubman, "China's accession to the WTO: Unfinished business in Genev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legal/currentnews/secure/c00060](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legal/currentnews/secure/c00060).
- Wayne M. Morrison, "IB91121: China-U.S. Trade Issues," CRS Issue Brief for Congress, (@000.9.20.) <http://www/cnie.org/nle/econ-35.html>.

- Joseph J. Borich, "China, The WTO, and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With China",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pcom/currentnews/secureC0001](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_analysis/wtpcom/currentnews/secureC0001).
- Max Baucus, "PNTR and the Future of US-China Relations", <http://www.chinaonline.com/commentary-analysis/wtocom/currentnews/secure/c0005>.
- Joseph Fewsmith, "The Impact of WTO/PNTR on Chinese Politics," <http://www/nbr.org/publications/analysis/vol11no2/essay2.html>.
- Mark A. Groombridge, "The Case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http://www.fas.harvard.edu/~asiactr/haq/200001/0001a001.htm>.
- James H. Nolt, "China in the WTO: the Debate," *Foreign Policy in Focus*, Vol.4, No.38(1999), <http://www.foreignpolicy-infocus.org/briefs/vol.4/v4n38china.html>.
- Ingo, M.D. & Ng. F., "Distortionary Effects of States Trading in Agricultur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1915, World Bank Washington 1998, <http://www.worldbank.org/html/dec/publications/workpapers/WPS1900serious/wps1915.pdf>.
- Greg Mastel, "Enforcing a China Deal on the WTO", *Journal of Commerce* - September 24, 1999, <http://www.newamerica.net/articles/Mastel/gm5.htm>.
- "No Permanent MFN For China: Legal Issues in the Congressional Debate over Permanent MFN for China", March 1,2000,<http://no2permanentmf.house>.

參考文獻

gov/Barenbergstat.htm.

“Summary of U.S.-China Bilateral WTO Agreement”, <http://uschina.org/public/991115a.html>.

“Free Traders beware: Renegotiating contracts after China enters WTO can be tricky busines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une/C00061250>.

“Chinese Economist Argue For State-Owned Bank Market Listings”, China On Line,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financial/NewsArchive/Secure/1999/november/B>.

“WTO entry to benefit U.S. companies despite problems”, [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currentnews/secure/C000110652.asp](http://www.chinaonline.com/issues/econ_news/currentnews/secure/C000110652.asp).

“The Impact of WTO membership on China’s domestic economy, Part 1,”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1010160.asp>.

“China to Align Its Laws with WTO, Newspaper,”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NewsArchive/secure/2000/january/C0001103>.

“The Impact of WTO membership on China’s domestic economy, Part 1,”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1010160.asp>.

“China’s Net Czar Downplays WTO Effect On High Tech Industry,” <http://www.chinaonline.com/industry/infotech/NewsArchive/Secure/1999/november/C>.

“Sweeping tax reforms prior to WTO entry,” [http://www.chinaweb.com/english/cw\\_html/economy/latestnews/BJ](http://www.chinaweb.com/english/cw_html/economy/latestnews/BJ)

13410.html.

“Preferential Treatment will Continue even after WTO entry, MOFTEC spokesman says,” <http://www.chin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B200102630.asp>.

“Shanghai to align local regulations with WTO rules”, <http://www.cniaonline.com/issues/wto/currentnews/secure/c00120701.asp>.

[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1update\\_chi.htm](http://www.newchinalaw.com/chi_law/1999/1update_chi.htm).